

OECD 가입과 한국경제의 자유화

- 박찬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조달호(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하영호(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임창규(삼성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
- 최규원(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발간사

지난 30년 간 한국의 경제발전은 경제발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빈곤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준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전모형이 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급속한 경제력 신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무대에서 지위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1996년 OECD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OECD 가입은 물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은 이러한 심리적 파급효과에 그치지 않고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OECD에 가입하면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기 때문이다. OECD 가입에 따른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은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경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의무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직접적이고 가입의 전제가 되는 의무사항으로는 양대 자유화 규약, 즉 경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의무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따라 양대 자유화 규약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의 유보, 또는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OECD 가입은 우리경제의 제반 분야, 특히 가장 낙후되어 있는 금융분야에 외부 개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개방압력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 기조와 병행하여 우리경제의 체질전환에 필요한 자극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은 WTO의 출범과 OECD 가입으로 말미암아 가속화될 우리경제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수용능력을 점검하고 개방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1996년의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우리경제 전반의 자유화 정도를 조사·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자유화 방향과 이에 따라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금후의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바람직한 국가경제 운영방향의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해주신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찬일 연구위원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조달호 선임연구원, 하영호 선임연구원, 임창규 주임연구원과 최규완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고정리를 도와준 박마리아씨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성태

요약문

- 본 연구는 WTO 체제의 출범과 1996년 OECD 가입으로 가속화 될 국내경제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하여 외부 개방압력에 대한 우리경제의 수용능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OECD 가입에 따른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은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경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의무 등 세 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됨.

-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입의 전제가 되는 의무사항은 경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의무임.

-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은 11개 분야 57개 항목으로 구성

-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은 16개 분야 91개 항목으로 구성

- 분야별 자유화지수 비교(표1 참조)

-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같게 하고, 자유화된 경우에는 100, 부분 유보의 경우에는 50, 완전 유보의 경우는 0 값을 주어 분야별로 경상무역외 거래와 자본이동의 자유화지수를 산정함.

- 우선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항목 중에서 한국은 운송, 보험, 은행 및 금융서비스, 여행 및 관광, 영화부문에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자유화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자유화지수가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대분류 산하의 소항목들 거의 모두에서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음을 의미함.

- 자본이동에서의 자유화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유화 유보가 직접투자, 부동산거래, 자본시장,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증권거래 및 외환거래 등에 집중되어 있음.

표 1 대분류별 자유화지수 비교

자유화 규약 분류		대분류별 자유화지수	
		OECD 평균	한국
경 상 무 역 외 거 래	업무 및 산업활동	99	93
	외국무역	100	100
	운송	87	58
	보험	81	58
	은행 및 금융서비스	78	50
	자본소득	100	75
	여행 및 관광	96	50
	영화	90	50
	개인소득 및 지출	100	93
	공공수입 및 지출	100	100
	기타 일반	100	75
	경상무역외 거래 전체	94	77

자유화 규약 분류		대분류별 자유화지수	
		OECD 평균	한국
자 본 이 동	직접투자	75	50
	직접투자의 청산	100	100
	부동산거래	91	75
	자본시장에서의 거래	90	50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92	46
	기타 양도증서와 비증권권리의 거래	96	35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95	44
	부여 및 용역거래 관련신용	96	67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94	50
	담보, 보증 및 모험금융	98	69
	예금계정 거래	97	63
	외환거래	98	50
	생명보험	100	100
	개인적 자본이동	99	63
	자본의 실패이동	99	50
	비거주자 봉쇄자금의 처분	100	100
	자본이동 전체	94	56

표 2 • OECD 회원국가별 자유화지수 비교

1995년 2월 10일 현재

	경상무역외 거래 국가별 자유화지수	자본거래 국가별 자유화지수	OECD 자유화 규약 국가별 총 자유화지수
호주	95	92	93
오스트리아	94	98	96
벨기에	95	95	95
캐나다	95	97	96
덴마크	97	99	98
핀란드	93	93	93
프랑스	92	95	94
독일	93	96	95
그리스	91	97	95
아이슬란드	92	58	71
아일랜드	95	98	97
이탈리아	88	97	94
일본	95	96	96
룩셈부르크	97	100	99
멕시코	86	84	85
네덜란드	95	98	97

	경상무역외거래 국별 자유화 지수	자본거래 국별 자유화지수	OECD자유화규약국별 총자유화지수
뉴질랜드	98	97	97
노르웨이	95	97	96
포르투갈	93	92	92
스페인	97	97	97
스웨덴	98	97	97
스위스	95	98	97
터키	86	89	88
영국	97	98	98
미국	94	96	95
OECD 평균	94	94	94
한국	77	56	64

● OECD 회원국가별 자유화지수 비교(註2 참조)

• 경상무역외 거래에 있어서 자유화지수가 90 미만인 국가로는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3개국에 불과함. 그러나 한국의 자유화지수는 77로서 이들 3개국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 국가 전체의 경제력 측면에서 이들 3개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입과 동시에 이들 국가수준의 자유화 정도는 요구받을 것이 확실시됨.

• 한편 자유화지수 95를 넘어서는 국가들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6개국으로 대부분 선진경제국들임.

- 자본거래 자유화지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 등이 뒤쳐져 있음. 우리나라의 자유화 수준은 아이슬란드와 비슷한 수준임.

- 개방전략 개요

- 바람직한 개방의 방향은 경상무역 거래, 경상무역외 거래, 장기 자본거래, 단기 자본거래, 금융서비스 거래, 외환거래의 순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금융서비스 거래의 개방은 기본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의미함.

- 현재 국내 금융기관은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외국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거래는 자본거래가 개방된 이후에 개방되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개방된 장단기 자본거래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임.

- 외환거래의 완전한 개방은 금융개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함. 외환거래가 완전히 개방되면 자본거래는 자연스럽게 개방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는 효과가 없어짐. 이에 따라 외환거래의 개방은 자본거래의 개방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 외환거래의 개방은 단기 부동자금의 이동을 발생시켜 국내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외환거래의 개방은 금융서비스 거래의 개방보다도 늦게 추진되는 것이 타당함.

- 자본유입에 대한 정책대응

- 장기자본의 경우 투자확충, 기술개발, 생산능력 제고 등의 긍정적 영향이 큰 반면, 환율절상이나 통화량·물가 등에 미치는 부정적 역할은 미미함. 그러나 단기자본의 유입은 부정적 측면이 강하므로 내외금리차를 축소시키고 가급적 유입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트빈세의 도입 및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최소 보유기간 설정 등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불태화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간접 통화관리 방식의 시급한 정착이 요구됨.

- 자본유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거나 흑자규모를 확대시키는 등 재정정책도 적극 활용해야 함.

- 자본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장기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유출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자본유입에 대한 상쇄효과뿐만 아니라 선진기술 습득, 물류비 절감, 환위험 감소 및 마케팅 부문에서의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효과를 지니고 있음.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 향후 가속화될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산업의 체질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됨.

-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요건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전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산업시설에 비해 질적으로나 규모면에서 현

저히 낙후되어 있음.

- 세계적 추세인 은행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 자율화의 조기실현 및 합병인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야 함.

- 우선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으로 실질적인 은행의 민영화가 구축되도록 은행장 인사에 대한 정책당국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의 폐지와 함께 확대이사회 기능을 강화시켜야 함.

- 합병형식으로 대등한 합병을 제약하고 흡수합병으로만 국한시키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증대라는 합병의 기본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음.

-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도록 정책당국의 개입을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합병인가 조건이 대폭 조정되어야 함.

- 금융개방화의 진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상의 금융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도입을 서둘러야 함.

- 1996년 OECD 가입으로 가속화될 금융개방은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폭을 확대시킬 여지가 많음.

- 올해중에 실시하게 될 주가지수 선물거래 이외에도 금융·환율 관련 선물거래뿐만 아니라 옵션거래까지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함.

- 시장이 육성되기도 전에 규제·감독의 강화를 논하기보다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장의 활성화에 우선 역점을 두어야 함.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ve level of liber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relative to OECD member countries and derives valuabl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course of Korean economic deregulation.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level of liber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is far behind the average level of openness of OECD member countries.

For the capital movements, most items remain unliberalized. For example, Relatively unliberalized are such items as direct investment, operations in securities on capital markets, operations on money markets, other operations in negotiable instruments and non-securitised claims, operations i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financial credits and loans, operations in foreign exchange, and physical movements of capital assets. In terms of the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the degree of openness is shown to be higher than the case of the capital movements. Lower level of liberalization is restricted to a few items such as transport, insurance,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and films.

A broad range of policy actio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Included are the optimum order of economic liberalization,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provisions of sterilization, deregulation on capital outflows,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차 례

발간사-4

요약문-6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구성-27

2. OECD의 개요 및 자유화 규약의 구조-31

1) OECD 개요-31

2) OECD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과 양대 자유화 규약의 구조-33

3)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여건 및 절차-49

제2장 자유화 현황 및 평가

1. 자본거래-55

1) 직접투자-55

2) 부동산거래-62

3) 자본시장-65

4) 단기 금융시장-72

5) 기타 양도가능 증서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74

- 6)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 80
- 7) 국제무역,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된 신용 - 86
- 8) 금융상의 신용 및 대출 - 89
- 9) 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 - 93
- 10) 예금계정 거래 - 96
- 11) 외환거래 - 98
- 12) 생명보험 - 101
- 13) 개인적 자본이동 - 101
- 14) 자본자산의 실물이동 - 102
- 15) 비거주자 소유의 봉쇄자금의 처분 - 103

2. 경상무역의 거래 - 105

- 1) 업무 및 산업활동 - 105
- 2) 무역 - 109
- 3) 운송 - 113
- 4) 보험 - 117
- 5) 은행 및 금융서비스 - 120
- 6) 자본소득 - 123
- 7) 여행 및 관광 - 124

- 8) 영화-126
- 9) 개인소득 및 지출-127
- 10) 공공수입 및 지출-129
- 11) 기타 일반-129

3. 종합평가 - 131

- 1) 대분류별 자유화지수 비교-131
- 2) OECD 회원국가별 자유화지수 비교-135

제3장 자본자유화의 영향 및 파급효과

1. 자본자유화의 파급효과 - 149

- 1) 자본 유출입의 영향과 국제자금의 성격-149
- 2) 자본 유출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153
- 3) 자본 유출입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155

2. 주요국의 자본자유화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입 현황 - 157

- 1) 자유화의 배경-157
- 2) 자본자유화 이후 아시아와 남미의 자본이동의 성격비교-159

- 3) 자본자유화의 영향-162
- 4)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입 추이 및 현황-174

3. VAR 모델을 이용한 자본자유화 효과분석 - 177

- 1) 모형의 설정-178
- 2) 충격반응 분석-180

4.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188

- 1) 국내 증권시장의 성숙화-190
- 2) 기존은행의 대형화-201
- 3) 일반 시중은행의 증권업 참여-208

제4장 대책

1. 개방의 선행조건과 순서 - 221

2. 자본유입에 대한 정책대응 - 228

- 1) 단기자본 유입에 대한 억제책-229
- 2) 무역정책-229
- 3) 불태화정책-230

- 4) 재정정책-231
- 5) 자본유출 규제완화 정책-232

3.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234

- 1) 은행산업-235
- 2) 증권산업-236

참고문헌-238

부 록

- 1. VAR 모형의 추정절차-245
- 2. 충격반응 분석결과-249
- 3. OECD 자유화 규약에 비추어본
우리나라의 자유화 현황과 향후계획 및 OECD 회원국 현황-256
- 4. OECD 자유화 규약의 대분류별 쟁점사항과 대응방안-355
 - 1) 경상무역외 거래-355
 - 2) 자본거래-357

contents

1. Introduction

1. The Purpose of Research— 27

2. The Overview of OECD and The Code of Liberalization— 31

1) The Overview of OECD— 31

2) The Outline of Code of Liberalization— 33

3) The Procedure of Joining OECD and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of Korea— 49

*11. The Overall Current Pictures of Economic Liberalization by Code and
Country*

1. Capital Movements— 55

1) Direct Investment— 55

2) Operations in Real Estate— 62

3) Operations in Securities on Capital Markets— 65

4) Operations on Money Markets— 72

- 5) *Other Operations in Negotiable Instruments and Non-Securitized Claims*— 74
 - 6) *Operations i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80
 - 7) *Credits Directly Linked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or with the Rendering of International Services*— 86
 - 8) *Financial Credits and Loans*— 89
 - 9) *Sureties, Guarantees and Financial Back-up Facilities*— 93
 - 10) *Operation of Deposit Accounts*— 96
 - 11) *Operations in Foreign Exchange*— 98
 - 12) *Life Assurance*— 101
 - 13) *Personal Capital Movements*— 101
 - 14) *Physical Movement of Capital Assets*— 102
 - 15) *Disposal of Non-Resident-Owned Blocked Funds*— 103
-
2.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105
 - 1) *Business and Industry*— 105
 - 2) *Foreign Trade*— 109
 - 3) *Transport*— 113
 - 4) *Insurance*— 117

- 5)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120
 - 6) *Income from Capital*— 123
 - 7) *Travel and Tourism*— 124
 - 8) *Films*— 126
 - 9) *Personal Income and Expenditure*— 127
 - 10) *Public Income and Expenditure*— 129
3. *Overall Assessment*— 131
- 1) *Comparison of Liberalization-Index by Code*— 131
 - 2) *Comparison of Liberalization-Index by Country*— 135

III.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Opening*

- 1. *The General Effects of the Opening of Capital Accounts*— 149
 - 1) *The Effects of Capital Inflow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Funds*— 149
 - 2)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Inflow*— 153
 - 3) *Government Policies to Capital Flows*— 155

2. *Case Studies*—157

- 1) *The Backgrounds behind Capital Account's Liberalization*—157
- 2) *Experiences of Asian and Latin American countries*—159
- 3) *The Effects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Flows*—162
- 4) *The Current Capital Controls of Korea*—174

3. *VAR Analysis*—177

- 1) *The Structure of Model*—178
- 2) *Impulse/Response Function Analysis*—180

4. *The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on Financial Industry*—188

- 1) *Matured Securities Markets*—190
- 2) *Formation of larger banks*—201
- 3) *Universalization*—208

IV. *Macroeconomic Policies in the Future*

1. *The Prerequisites for and Sequence of Opening Capital Markets*—221

2. *Macroeconomic Policies Toward Capital Inflows*—228

- 1) *Policy on Hot Money*—229
- 2) *Trade Policy*—229
- 3) *Sterilization of Net Capital Inflows*—230
- 4) *Fiscal Policy*—231
- 5) *Deregulation on Capital Outflows*—232

3. *Policies for Financial Industries*—234

- 1) *Banking*—235
- 2) *Security Markets*—236

References—238

Appendix

1. *The Estimation Procedure of VAR Model*—245
2. *The Results of Impulse/Response Analysis*—249
3. *The Levels of Economic Liberalization of Korea and OECD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the OECD's Code of Liberalization*—256
4. *The Debatable Issues*—355
 - 1) *Current Invisible Operations*—355
 - 2) *Capital Movements*—357

I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구성

한 국가의 시장개방은 최근 국제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시대조류로 등장하였다.

지난 30여 년 간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공업화 정책을 채택하여, 과거 선진국의 경우 1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 과정을 단기간의 고도성장으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었으나, 그동안 엄청난 제도상의 왜곡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이제까지 국제적 역할 분담의 부담 없이 우리입장만을 고려해 산업, 금융 및 거시정책을 운영했지만, 이제 국제 경제질서가 변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경제의 개방화·국제화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반규범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 스스로의 독단적인 제도나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 정부가 보조금, 조세감면, 정책금융 등의 수단을 가지고 국내외 기업이나

상품간, 또는 국내산업, 기업별로 차별정책을 쓰는 것이 정부 본연의 역할인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5년 WTO 출범, 1996년 OECD 가입 등에 따라 정부는 경쟁적인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각종 제도를 국제규범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교류, 교역을 가로막고 있던 제약요인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고, 기업들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세계의 어디든지 유리한 입지를 찾아 자유로이 움직이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경 없는 세계화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 투자, 금융 등 과거의 제반 경제제도와 관행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에 일치,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높아졌다. 이제 우리정부도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응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6년중 OECD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도의 변화는 우리경제의 행태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OECD 가입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시장기구의 경쟁압력을 높여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틀을 제공할 수 있다.

WTO의 출범과 1996년의 OECD 가입은 국내경제의 개방, 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의 준수압력도 급속히 강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은 OECD 가입과 관련하여 경제의 자유화, 개방화에 따른 우리의 수용능력을 점검하고 개방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단계라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96년의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우리경제 전반의 자유화 정도를 조사·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자유화 방향과 이에 따른 국내경제 과급효과 및 금후의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바람직한 국가경제 운영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국경제의 부문별 자유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특히 19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각 분야별 자유화 현황과 그 정도를 OECD의 양대 규약인 자본거래 자유화 규약 91개 항목,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 57개 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화 현황을 관련제도, 법령 등을 중심으로 파악해보고, 이어 각 항목에 대한 자유화 정도를 OECD 기존 가입국과 비교·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현황분석에 기초하여, 현재 OECD 규약에 비추어 부분 유보, 또는 완전 규제되어 있는 자본 및 경상무역외 거래 항목들이 자유화되었을 때 예상되는 영향과 과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자본자유화의 과급효과를 일반화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아시아와 남미의 자본자유화와 그 과급효과를 대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어서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자본자유화가 통화량, 물가,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4절은 자본자유화가 개별 금융산업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은행과 증권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자유화의 선행조건과 순서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특히

자본유입과 금융산업 개방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대응방안들이 가지는 장단점들을 우리현실에 비추어 정리하였다.

2. OECD의 개요 및 자유화 규약의 구조

(1) OECD 개요

1) 성격과 조직

OECD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부흥을 목적으로 미국이 구상한 마샬플랜에 따라 결성된 구주 경제협력기구를 모태로 1961년 9월 30일에 발족된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기구이다. 1995년 현재 선진공업국 중심의 총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간 정부차원의 정책협조와 개도국에 대한 경제보조를 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발전과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족된 정책조정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OECD는 협정문에 규정된 제반의무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가입자격을 부여하며 전회원국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할 수 있는 등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가입요건이 엄격하고 가입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OECD의 주요조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정점으로 사무국과 각종 전문분야별 위원회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반독립적인 부속기구와 민간 자문기관이 있다.

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Ministerial Sessions}와 상주 대표이사회^{Sessions of Permanent Representatives}로 구분된다. 또한 이사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이사회 결정사항의 집행 감독 기관), 특별 집행위원회(무역자유화와 통화제도 개혁방안 검토기관)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토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이사회 및 위원회(실무작업반 포함)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토의에도 참여한다. 전문분야별 위원회는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각 분야별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분석, 각 회원국 정부시책의 감시, 가이드라인 설정 및 이사회에 권고안 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10개 분야의 26개 전문분야별 위원회, 특정 프로그램, 연구센터 등이 설립되어 있고, 그 산하에 77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Part}이 있다.

2) OECD의 주요활동

가.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된 활동

각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 협조 및 효과를 토의, 분석하며 이 토의과정에서 각국의 경제정책 조정과 조화를 모색하며, 도출된 결과

와 기본적인 거시경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로 발간한다.

나.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활동

1980년 각료급 회의는 각 회원국들이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를 유지, 개선하고 GATT의 역할을 강화하는 '무역정책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rade Policy'을 채택한 바 있으며 각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철폐요청 등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한다.

다.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활동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를 통해 회원국들의 대 개도국 원조증대를 권고하는 한편, 개발센터에서는 개도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상호 교환하고 토론한다. 또한 선·후진국간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UNCTAD, GATT, IMF 및 IBRD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라. 기타

이외에도 OECD는 외국인투자, 에너지정책, 첨단기술, 환경문제, 농어업 문제 등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항들을 분석·검토하여 적절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거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OECD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과 양대 자유화 규약의 구조

1) OECD 가입에 따른 의무

OECD 가입에 따르는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은 일반적 의무, 권고

적 의무, 정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의무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회원국들의 일반적 의무사항은 OECD 회원국으로서 OECD의 설립목적을 지지하고, 230여 개에 달하는 제규정acts을 준수하며, OECD의 운영경비를 분담하는 것이다.

두번째, 권고적 의무사항은 GATT 제11조국 및 IMF 제8조국으로의 이행과 개도국에 대한 경제원조(자국 GNP의 0.7% 이상을 공적 개발원조로 공여)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입의 전제가 되는 의무사항은 정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의무가 있다. 이 자유화 규약의 목적은 회원국간 서비스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촉진시켜 보다 자유로운 국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11개 분야 57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과 16개 분야 91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이 자유화 의무 준수의 핵심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이동에 따라 OECD와의 협의하에 2대 자유화 규약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적용의 유보, 또는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즉 회원국은 자국의 경제 및 재정금융 상태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유화 조치를 전부 취할 필요가 없으며(양대 자유화 규약 협정문 제7조 a항),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자국에 중대한 경제 및 재정금융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유화 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고(양대 자유화 규약 협정문 제7조 b항), 자국의 종합 국제수지가 그 속도 및 상황에 비추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 이미 이행했거나 이행중인 자유화 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양대 자유화 규약 제7조 c항).

또한 가입시에 자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OECD측과 협의하여 유보할 수 있다(양대 자유화 규약 제2조 b항).

2) 양대 자유화 규약의 구조 및 주요내용

가. 자본자유화

자본거래 자유화 규약은 16개 대항목, 91개 소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는 재유보가 불가능한 리스트 A군 항목과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유보가 가능한 리스트 B군 항목으로 나뉜다.

각 대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직접투자 : 직접투자는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주식의 취득이며 기업신설뿐 아니라 기존기업의 인수·합병까지도 모두 자유화 대상이 된다. 이 자유화 항목은 새로이 진출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OECD의 원칙인 내국민대우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공공질서·안보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b. 직접투자의 청산 : 이는 외국기업이 자체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청산절차를 밟고,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c. 부동산거래 : 기업활동 목적이 아닌 순수 투자목적의 부동산거래 자유화를 의미한다.

d.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 : 직접투자 분야와 함께 자본자유화 규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항목에서 말하는 증권이란 주식, 만

기 1년 이상의 채권과 어음, 저당권부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등 기타 채무증서를 말한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상기 증권을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해 발행하거나, 공인 자본시장에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기 증권을 제한 없이 사고팔 수 있다. 최근 포항제철·한전이 뉴욕증시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뉴욕증시에 상장한 것이 한 예이다.

e. 단기 금융시장의 거래 : 여기서 단기 금융시장이란 만기 1년 미만인 기업어음CP,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채권RP, 재정증권TB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d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국내에서 이 증권을 발행·상장할 수 있으며, 이를 투자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f. 기타 양도가능 금융수단 및 조건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 : 이 항목은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옵션, 스왑, 선도거래 등 파생금융상품(derivative)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1992년 개정 때 규약에 포함되었다. 파생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투자자들은 어디에서나 거래할 수 있다.

g.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 공동투자증권이란 다수 투자자들의 자금을 한곳에 모아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공동투자증권은 미국의 MMMF(Money Market Mutual Funds)이며, 우리나라 투자신탁회사들이 발행하는 수익증권도 여기에 속한다.

h. 국제상 거래, 또는 국제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된 신용 : 무역을 할 때 현금결제할 수도 있으나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연지급 수입이나 연불수출을 할 때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는 어느 나라에서든 신용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업자가 미국에서 농산물을 외상으로 수입할 때 수입대금을 미국은행, 혹은 영국은행

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i.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 이는 내외국인간에 돈을 자유롭게 빌려주고, 빌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만기 5년 이상의 장기대부는 직접투자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미국 GM사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 미쓰비시은행에서 만기 3년으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j. 담보보증 및 보충금융 : 자금을 대출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흔히 금융기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보증료를 감안해서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도가 다소 낮은 미국의 중소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보증료율이 시티은행은 0.05%이고 영국의 미들랜드은행은 0.045%라면 이 기업은 미들랜드은행을 선택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충금융back-up facility이란 채권이나 어음을 발행하면서 발행된 물량이 전부 소화되지 않을 때 나머지를 인수해주는 금융 편의수단으로서 1992년 개정 때 도입되었다.

k. 예금계정의 거래 : 내외국인은 어떤 금융기관에도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통신판을 통해 스위스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l. 외환거래 : 이 항목에 포함되는 외환거래는 자본자유화 규약의 다른 항목의 거래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외환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국제무역이나 자본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 거래가 여기에 포함된다.

m. 생명보험 : 이 규정은 생명보험 계약 자체의 자유화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확정연금이 자유롭게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확정연금은 자유롭게 한국의 거주지로 지

급되어야 한다. 한편 생명보험 계약의 자유화는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에서 다루고 있다.

n. 개인적 자본이동 : 증여나 기증, 결혼지참금, 상속 및 유증, 해외이주의 경우 자산이동 등 개인적 차원에서 자금을 국내외로 이전시킬 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o. 자본의 실물이동 : 증권이나 기타 자본적 성격을 갖는 권리증서의 실물을 지역간에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비산업용 금도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다.

p. 외국인 소유 봉쇄자금의 처분 :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타국의 재산을 동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형태의 봉쇄자금을 자유롭게 해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미국내 일본자산의 봉쇄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이 자금은 일본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의 부속서 A에는 OECD 회원국들이 자유화해야 할 서비스 거래가 총 11개의 대항목과 57개 소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규약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비는 자유화 항목으로 명시된 각종 서비스거래를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대가의 지급 및 이전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경상무역외 거래 규약의 경우에는 일단 자유화된 항목에 대해 재유보가 불가능하다.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업무 및 산업활동 :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계약과 이에 따른 용역대가의 자유이전을 의미한다.

b. 무역 : 수출입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계약의 자유화와 이에 따른 비용지급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수출입 수수료 및 중개료, 외환딜러의 서류작성 비용, 창고사용료, 통관수수료, 관세 등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c. 운송 : 운송서비스 계약과 이에 따른 경비지급, 운송수단의 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상운송, 내륙수로 운송, 육로운송, 항공운송, 연료 및 물품공급 등 해상운송과 관련된 각종 용역, 선박수선 등을 포괄한다.

d. 보험서비스 : 각종 보험체결의 자유화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금 이전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이 항목에서 포괄하는 보험으로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국제교역 상품에 대한 보험, 생명보험, 기타 손해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이 있다. 내외국인은 상기의 보험상품을 국경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듯이 보험서비스의 경우 동등대우equivalent treatment 원칙이 적용되어 외국 보험업자가 지점·대리점을 설치할 때 주재국이 준수해야 할 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설립을 위한 구비서류 및 관련정보의 문서화 및 공개화, 경제적 필요성 심사Economic Needs Test(ENT)에 의거해서 설립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할 것, 6개월 이내 결과통보 및 재심기회의 부여 등이 규정되어 있다.

e. 은행 및 금융서비스 :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지불서비스, 은행 및 투자서비스, 결제 및 청산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투자자문 서비스 등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총망라되어 있다. 한편 은행예금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 자체가 자본이동을 의미하는 경우는 자본자유화 규약에서 다루어지고 이 규약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경우에도 동등대우 원칙이 직접과 대리점의 설립 때 적용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가기준이나 절차의 투명성 제고, 대표자 선정 때 국적제한 철폐,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단체 가입시의 제한 철폐, 금융감독 규제조항의 동등한 적용, 설립시 요구되는 예치금의 적립 등 금융조건 부과 배제 등이다.

f. 자본소득 : 모든 형태의 자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이전 자유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포괄되는 자본소득에는 사업이익, 이익 배당금,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

g. 여행 및 관광 : 이민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여행·관광을 자유화하고, 이에 따른 경비지출 제한도 철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h. 영화 : 개인용, 극장상영용, TV방송용 영화나 기타 기록매체를 자유롭게 수출입하고 유통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타 기록매체에는 케이블이나 인공위성을 통한 시청각물의 수신·송신·배급도 포함된다.

i. 개인소득 및 지출 : 개인이 취득하는 소득이나 개인용으로 지출하는 자금의 이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연금소득, 법률상의 의무나 법인판결에 따른 부양비 지출, 이민자 송금,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구독, 스포츠 상금 등이다.

j. 공공수입 및 지출 : 공공부문이 취득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국경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전되어야 한다. 조세, 정부지출, 공공운송 서비스 관련 정산, 영사수입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k. 기타 : 광고, 재판비용, 손해배상금, 벌칙금 등의 용도로 자금을 지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제한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1-1 • 자본거래 자유화 항목의 구조와 내용

I. 직접투자(6)	
List A(6항목)	<p>A. 비거주자의 국내 직접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전 소유기업, 자회사, 또는 지점의 설립·확장, 또는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전 취득 2. 신설, 또는 기존기업에의 자본 참여 3. 5년 이상의 대출 <p>B. 거주자의 해외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전 소유기업, 자회사, 또는 지점의 설립 및 확장, 기존기업소유권의 완전 취득 2. 신설, 또는 기존기업에의 자본 참여 3. 5년 이상 대출
II. 직접투자의 청산(2)	
List A(2항목)	<p>A. 거주자의 해외투자 청산</p> <p>B.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청산</p>
III. 부동산거래(4)	
List A(2항목)	<p>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매각 <p>B. 거주자의 해외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매각
List B(2항목)	<p>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 또는 구입 <p>B. 거주자의 해외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 또는 구입

IV.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8)	
List A(8항목)	A. 국내증권의 외국 자본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2. 외국 공인 증권시장 상장
	B. 외국증권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2. 국내 공인 증권시장 상장
	C. 비거주자의 국내매매 1. 증권매수 2. 증권매도
	D. 거주자의 국외매매 1. 증권매수 2. 증권매도
* 증권 : 주식 및 기타 참여적 성격의 유가증권,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및 채부증서	
V. 단기 금융시장 거래(6)	
List A(6항목)	A. 국내증권 및 기타 증서의 해외 단기 금융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2. 외국 공인 단기 금융시장 상장
	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 단기 금융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2. 국내 공인 단기 금융시장 상장
	C.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단기 금융시장 증권 매수

	2. 단기 금융시장 증권 매도 3. 기타 단기 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대부 4. 기타 단기 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차입 D. 거주자의 국외거래 1. 단기 금융시장 증권 매수 2. 단기 금융시장 증권 매도 3. 기타 단기 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대부 4. 기타 단기 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차입
VI. 기타 양도가능 금융수단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10)	
List B(10항목)	A. 국내 금융수단 및 권리의 해외 금융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2. 해외공인 금융시장에의 상장 B. 외국 금융수단 및 권리의 국내 금융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2. 국내 공인 금융시장에의 상장 C.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매입 2. 매출 3. 기타 자산과의 교환 D. 거주자의 국외거래 1. 매입 2. 매출 3. 기타 자산과의 교환
* 자유화 의무대상 : 금융선물·옵션, 스왑 및 기타 신종 금융수단의 거래 등	
VII. 공동투자증권의 거래(8)	
List A(8항목)	A. 국내 공동투자증권의 외국 증권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2. 외국 공인 증권시장에의 상장 B.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국내 증권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2. 국내 공인 증권시장에의 상장

	<p>C. 비거주자의 국내매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투자증권의 매입 2. 공동투자증권의 매출 <p>D. 거주자의 국외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투자증권의 매입 2. 공동투자증권의 매출
VIII. 국제무역 및 용역관련 신용(3)	
List A(2항목)	<p>i) 원인이 되는 해당거래에 거주자가 참여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List B(1항목)	<p>ii) 원인이 되는 해당거래에 거주자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IX.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2)	
List B(2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
X. 담보,보증 및 보증금(Back-up Facility)(8)	
List A(6항목)	<p>i) 국제무역 및 무역의 거래와 관련되거나 거주자가 개입되는 자본거래 관련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담보 및 보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B. 보증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p>ii) 국제무역·무역외 및 자본거래와 관련되지 않거나 해당 국제거래에 거주자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담보 및 보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List B(2항목)	ii) 국제무역·무역외 및 자본거래와 관련되지 않거나 해당 국제거래에 거주자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 A. 보증금융Back-up Facility 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XI. 예금계정거래(4)	
List A(2항목)	A. 비거주자의 거주자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 1. 국내통화 표시 2. 외화표시
List B(2항목)	B. 거주자의 비거주자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 1. 국내통화 표시 2. 외화표시
* 예금업무가 인가된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정에 의한 경우 동 거래 및 송금 자유	
XII. 외환거래(6)	
List A(6항목)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매입 2. 매도 3. 외환간 거래 B. 거주자의 국외거래 1. 매입 2. 매도 3. 외환간 거래
* 동 거래가 해당국내 공인대리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거래 및 송금 자유	
XIII. 생명보험(2)(생명보험 계약에 따른 자본이동)	
List A(2항목)	A. 비거주자인 보험자로부터 거주자인 보험수익자로의 자본이동 및 만기가 도래한 확정연금의 송금 B. 거주자인 보험자로부터 비거주자인 보험수익자로의 자본이동 및 만기가 도래한 확정연금의 송금

XIV. 개인적 자본이동(8)	
List A(7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인간의 대출 B. 증여 및 기증 C. 결혼지참금 D. 상속 및 유증 E. 이주자의 원거주국에서의 채무면제 F. 타국 이민자의 자산 H. 비거주 근로자의 저축
List B(1항목)	G. 상금
XV. 자본의 실물이동(4)	
List A(4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유가증권 및 기타 자본적 권리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 2. 수출 B. 지불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 2. 수출
XVI. 비거주자 소유붕쇄자금의 처분(4)	
List A(4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붐쇄자금의 송금 B. 붐쇄자금의 국내에서의 사용 C. 비거주자간의 붐쇄자금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적 거래의 경우 2. 경상거래의 경우

표 1-2 •경상무역의 거래 자유화 항목의 구조와 내용

A. 업무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선 및 조립 2. 가공, 완성, 계약하에 있는 작업의 가공 및 동일성질의 기다 용역 3. 기술도입 4. 공사계약 5. 저작권 사용료, 특허, 의장, 상표 및 발명관련 사용허가 계약 및 송금 6. 급료 및 임금 7. 해외거주 모회사의 일반경비에 대한 자회사 및 지점의 분담액, 그리고 반대의 경우 분담금
B. 무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 및 중개료, 통과거래 및 환적transhipment 거래로 발생되는 이윤, 은행수수료 및 부과금, 대리인 비용 2. 최종 상품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매차금, 마진 증거금deposits 3. 환거래업자의 서류작성 비용 4. 창고사용 및 보관료, 세관통관료 5. 통과비용 6. 관세 및 과징금
C. 운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상화물 운송(용선, 항만비용, 어선에 관계되는 지불금) 2. 내륙수로 화물운송(용선 포함) 3. 육로운송(여객 및 화물) 4. 항공운송(여객 및 화물) 5. 운송관련 용역제공(연료 및 식량의 적재, 유지비, 수선비, 선원에 대한 지출 등) 6. 선박, 기타 운송수단의 수신
D 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관련 이전거래 2. 무역관련 보험의 체결 및 이전거래 3. 생명보험의 체결 및 이전거래 4. 기타의 모든 보험 체결 및 이전거래 5. 재보험 및 재재보험에 관련된 거래 및 송금 6. 외국 보험업자의 자사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건 및 본사와의 송금

E. 은행 및 금융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불서비스 2. 금융 및 투자서비스 3. 결제, 청산, 보관 및 예치서비스 4. 자산관리 5. 투자자문 및 대리서비스 6. 수수료 7. 외국은행 및 금융서비스업자의 지점, 대리점 설치 및 영업
F. 자본소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2. 이익배당금 및 분배금 3. 이자 4. 임대료
G. 여행 및 관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면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여행 및 관광의 자유화와 이에 따른 경비지출 및 청산 2. 해외여행이나 해외주재에 있어서의 규제상황의 자유화 3. 국제여행이나 국제관광을 목적으로 거주자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규제의 자유화 4.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규제의 자유화 등
H. 시청각 관련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적, 또는 영화상영용, 또는 TV방송용 기록필름 및 기타 기록매체(재생산 수단에 관계없이)의 수입, 수출, 배포 및 사용
I. 개인소득 및 지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금 및 유사한 형태의 기타 소득 2. 법률상의 의무, 또는 법정의 판결에 따라 부양비의 지불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의 급전적 보조 3. 이주자 송금 4. 해외의 사유재산에 대한 경상유지 및 보수 5. 해외로의 소액 송금 6. 신문, 정기간행물, 지적, 음악출판물의 예약구매 7. 스포츠상품 및 경주에 의한 소득
J. 기타 일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매체에 의한 광고 2. 재판비용 3. 손해배상금 4. 벌금 5. 협회, 클럽 및 기타 단체의 가입회비

(3)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여건 및 절차

1) 가입여건

1980년대 후반 교역규모의 급격한 신장과 함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세계 경제무대에서의 지위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OECD 가입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경제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분담하고 쌍무적 통상압력을 국제적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소해나가기 위해 정부는 OECD 정식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즉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1996년을 전후하여 OECD 가입이 실현되도록 하고 그 준비단계로서 1994년초 OECD와 한국경제검토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OECD 산하 전문위원회 및 부속기구에 단계적으로 가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5월 7개 위원회 및 교육연구센터에 정회원, 또는 옵서버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1993년 7월에는 금융·재정분야 5개 위원회에의 옵서버 가입의사를 OECD에 통보하였다.

GNP, 교역규모 등 우리나라의 기본경제력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OECD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총체적으로는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GNP 규모는 1995년 현재 OECD 25개 회원국 중 10위인 네덜란드 수준이며 총교역규모(수출+수입)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0위인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 중 무역, 자본소득, 공공수입 및 지출 등 분야의 경우 상당한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유화율 수준(1995년 2월말 현재 86.8%)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중에서도 비거주자

소유 이용자금 blocked funds의 처분 등 일부 분야에서만 어느 정도 자유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여서 아이슬란드(100% 적용면제)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훨씬 미흡한 실정(1995년 2월달 현재 OECD 평균 자유화율 82.9%)이므로 이에 따른 개방화의 부담이 OECD 가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표 1-3 • 한국과 OECD 회원국의 경제수준 비교

	추계인구 (천 명, 1995)	정상GDP (10억 US달러, 1994)	1인당 GDP (US달러, 1993)
1. 캐나다	28,537	541.5	20,670
2. 멕시코	93,670	373.6	3,750
3 미국	263,138	6,638.2	24,750
4. 일본	125,879	4,651.1	31,450
5. 호주	18,338	318.4	17,510
6. 뉴질랜드	3,552	50.9	12,900
7. 오스트리아	7,861	195.6	23,120
8. 벨기에	10,031	226.7	21,210
9. 덴마크	5,192	147.4	26,510
10. 핀란드	5,046	95.9	18,970
11. 프랑스	57,769	1,318.9	22,360
12. 독일	81,264	2,041.5	23,650
13. 그리스	10,253	77.6	7,390
14. 아이슬란드	268	6.1	23,620
15. 아일랜드	3,469	51.8	12,580
16. 이탈리아	57,910	1,020.2	19,620
17. 룩셈부르크	386	13.6	35,850
18. 네덜란드	15,499	328.5	20,710
19. 노르웨이	4,357	108.2	26,340
20. 포르투갈	9,884	87.5	7,890
21. 스웨인	39,276	480.3	13,650
22. 스웨덴	8,773	194.7	24,830
23. 스위스	6,955	259.6	36,410

	추계인구 (천 명, 1995)	정상GDP (10억 US달러, 1994)	1인당 GDP (US달러, 1993)
24. 터키	62,032	134.5	2,120
25. 영국	58,093	1,013.6	17,970
OECD 총계	977,432	20,375.9	495,830
한국(93년)	44,851	379.5	7,513

자료 :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통계청, 1995년 5월

2) OECD 가입절차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 3월 정식으로 OECD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95년 하반기중 정상무역외 거래, 자본이동, 국경간 서비스 이동, 외국인 직접투자 등 4개 분야의 자유화 정도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루어진 후 96년에 가서야 가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표1-4와 같다.

표 1-4 • OECD 가입절차

일반적 절차	한국의 가입절차(예상)	*참고 : 멕시코의 사례
① 가입절차 개시 전 단계 • OECD와의 관계 확대 • 국내 가입여건 조성	92년 4월 외무장관 명의 서한을 통한 가입추진 의사 전달 93년 4월 실무대책위 구성	91년 2월 외무장관 명의 서한을 통해 관계확대 의사표명 후 위원회 참여 등 관계 확대 91년 9월 정부내 '차관급 준비조직'을 창설하여 준비작업
② 가입희망국의 가입신청 • 가입희망국의 공식적인 가입 희망 표명 및 가입규정과 조건에 관한 문의	95년 3월 정식가입 신청 95년 7월 최초 의향서 Initial Memorandum 전달	93년 1월 외무장관이 OECD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가입 절차 개시희망 표명

일반적 전차	한국의 가입절차(예상)	* 참고 : 멕시코의 사례
3 OECD 상주 대표이사회의 내부검토 • 가입희망국의 세관외부 수락용의 검토		93년 3월 OECD 상주 대표 이사회의 내부검토
4 OECD 각료이사회(사무총장에게 가입희망국과 가입조건을 협의하도록 위임)		93년 6월 OECD 각료이사회 - 사무총장에게 OECD 가입조건을 멕시코 정부와 협의하도록 위임
5 OECD와 가입희망국간 분야별 가입조건에 관한 협의 • 가입희망국은 사무총장에 자유화 규약 및 제규정의 수락분제 등 가입조건에 관한 협의문서 기재 유보에 관한 입장 제출 • OECD 관련 위원회에서 이미 제출된 유보내용을 검토한 후 이사회 보고 • 필요시 유보사항의 재조정	95년말경 본격적 가입협상 협의	93년 9월부터 OECD측과 멕시코 정부간 가입조건 협의 • 멕시코 정부는 사무총장과 협의문을 거쳐 분야별 가입조건에 관한 입장 제시 • OECD 관련위원회에서 멕시코측 유보내용 검토
6 가입희망국은 가입의사와 함께 이부수리, 관련 유보내용에 대한 최종입장을 서면제출	96년 5월 최종 가입희망서 제출	
7 각료이사회에서 가입희망국의 가입승인 여부 결정	96년 6월경	94년 6월 각료이사회에서 멕시코 가입 승인
8 가입희망국은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한 후 가입문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	96년 하반기	

제 2 장

자유화 현황 및 평가

1. 자본거래

(1) 직접투자

해외 직접투자는 경영참가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행위로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경영 통제권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국제금융시장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또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구별된다.

OECD 자유화 규약은 직접투자를 투자방향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와 내국인 해외투자자로 나누고 직접투자의 유형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a. 완전소유 기업이나 자회사, 또는 지점 등의 신설 및 확장과 기존 기업소유권의 완전 취득
- b. 새로운 기업, 또는 기존기업에의 참여

c. 5년 이상의 대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 관련법은 외국환관리법, 동법시행령, 외국환관리 규정이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외자도입법에서 다루고 있다. 외국환관리 규정은 해외 직접투자의 방법을 외화증권의 취득, 외화 대부채권의 취득, 개인기업 영위 및 공동사업의 참여, 해외지사 설치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유화에 대한 평가

- 비거주자의 국내 직접투자

OECD 국가와의 비교

표 2-1 • OECD 회원국(총 25개국)의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자유화 현황

자유화 항목	유보국가수	자유화 국가명	항목별 자유화지수 (완전자유화=100)
1. 완전소유 기업, 자회사, 또는 지사의 설립 및 확장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전 취득	부분유보 : 24개국 완전유보 : 0	룩셈부르크	52
2. 신설, 또는 기존기업에의 참여	부분유보 : 22개국 완전유보 : 0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위스	56
3. 5년 이상 대부	부분유보 : 19개국 완전유보 : 0	벨기에,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62

OECD 25개 회원국 중에서 비거주자의 국내투자를 완전 자유화하고 있는 나라는 룩셈부르크 1개국뿐이다.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거주자 국내투자 세 가지 자유화 항목 모두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다. 각국의 자유화 유보내용은 그 나라의 제도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기반이 취약하거나 국민경제적으로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 항공, 부동산, 방송, 금융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제외업종과 제한업종 수가 매우 많고 그 범위가 넓어 OECD 가입과 함께 자유화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화 수준을 최근에 가입한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비슷한 그리스, 포르투갈 3국과 비교해보면 표2-2와 같다.

표 2-2 • OECD내 선별 3국과 한국의 비거주자 국내투자 제한내용

국가명	주요 투자제한 업종
그리스	1. 국경지역 부동산 취득, 광업투자, 은행 자사설치 2. 항공, 해운, 어업선박, 라디오방송, TV방송(유선 포함)
멕시코	1. 농업, 목축, 임업용 토지 2. 가솔린, LPG 4. 선박, 항공, 철도장비용 인료, 운환유, 송유관, 시추공 건설, 비양식 어업 5. 자동차 제조업, 부품조립업 6. 금융업 7. 방송업, 전화, 통신사업 8. 건설, 법률, 교육서비스
포르투갈	비EU 회원국 투자자에 의한 1. 금융회사 2. 국내 수상운송업, 일반 항공운송업, TV방송국, 보완적 통신서비스업 3. 여행
한국	1. 정기간행물(신문 포함), 방송업, 광업, 항공, 운송업, 통신사업, 무선, 부동산, 수산업, 석유정제업, 항공, 금융업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제한업종

위의 3국 중 멕시코의 투자제한 정도가 가장 크며 우리나라의 현재 자유화 수준과 그 내용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의 자유화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앞서 있어서, OECD 가입 초기에 해당 2국 수준의 자유화 조치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내투자 자유화 전망

우리나라는 1994년 6월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예시안을 수정·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유화율이 95년 1월의 90.6%에서 97년 1월에는 95.3%에 이르고 합작의무업종은 37개에서 7개로 축소된다.

표 2-3 • 외국인 국내투자 자유화 전망

(단위 : 업종수)

	총 업종수	제한 업종수	연도별 개방계획				유보
			94년 7월	95년 1월	96년 1월	97년 1월	
농림·어업, 광업	68	26	1	2	6	9	8
제조업	585	12	1	-	6	1	4
서비스업	495	144	1	42	35	11	55
합계	1,148	182	3	44	47	21	67

자료 : 재부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80년대 중반 이후 투자조건 완화로 활성화되었다가, 90년대 들어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하락추세는 94년 6월 발표된 외국인투자 활성화대책이 발표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다.

향후 외국인투자는 업종개방과 함께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차차 작아지고,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즉 석유, 화공, 비료산업 등의 비중은 커진 반면, 중소기업 형태에 치중해온 금속, 기계, 전기, 전자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표 2-4 •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

(단위 : 천, 백만 달러)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1~6
제조업	건수	135	108	82	80	136	162
	금액	583.4	1,069.3	648.0	526.8	401.6	461
전산업	건수	295	286	233	273	414	394
	금액	802.5	1,396.1	894.5	1,044.3	1,316.5	946

주 : 인가, 신고수리 기준

자료 : 재무부, 『외국인투자 동향』 및 『재정금융 통계』

•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

OECD 국가와의 비교

OECD 가입국 중 일본, 포르투갈, 터키 3국을 제외하고는 23개국 모두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하고 있다.

거주자의 해외투자 유보국 중 터키가 가장 제한적이다. 특징적인 것은 가장 선진화된 일본의 경우 아직도 은행 및 증권업에 대한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국의 어업과 진주양식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업종에 대한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내 거주자의 해외투자 유보국 모두가 금융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표 2-5 • OECD내 자유화 유보 3국과 한국의 거주자 해외투자 제한내용

국가명	투자제한 내용	92년 1인당 GNP(달러)
일본	1. 은행업 및 증권업 2. 어업활동, 진주양식	29,787
포르투갈	1. 비EU 회원국에 신용기관과 금융회사 지점설치 2. 특정 금융회사의 지점을 EU 회원국내에 설치	8,592
터키	5백만 US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1,963
한국	1. 3천만 US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2.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 3.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되는 일부 업종	7,007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자유화 전망

정부의 계획은 1단계로 95년중에 투자 제한업종을 축소하고 허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2단계로 97년까지 대외관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자유화한다는 방침이다. 비금융업자의 금융업 해외투자는 95년까지 영업과 관련된 금융업을 허용하고 99년까지 허가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개방속도가 빨라질 경우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 또한 자유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금융관련업종의 경우 일본을 보더라도, 비금융업자의 해외투자는 상당기간 완전자유화가 유보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1994년 전년대비 85.6%의 커다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저임노동력 활용을 위한 중국 등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소액투자에 대한 외국환은행 인증제 도입(94년 2월 28일 시행) 등 정부의 투자절차 간소화조치, 국내기업의 국제화전략 추진 등에 힘입은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 증가추세는 국내 임금가격의 상승, 현지투자국 내수시장에의 접근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증가와 OECD 가입에 따른 제반 제한제도의 단계적 자유화로 지속될 것이다.

표 2-6 •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현황과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총허가	1,625	1,606	1,210	1,872	3,525
총투자	959	1,125	1,255	1,256	2,331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 연보』

표 2-7 • 주요국 해외 직접투자와의 비교(1993년)

(단위 : 백만 달러,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대만	한국
해외직접투자금액	57,870	13,714	11,672	4,440	2,451	1,056
GDP 비중(%)	0.9	0.3	0.7	0.8	1.1	0.3

주 : 국제수지 기준

자료 : 『世界と日本の海外直接投資』(1995년), 일본부역진흥회

(2) 부동산거래

OECD 자유화 항목의 부동산거래는 직접투자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거래는 외국환관리법, 동법시행령, 외국환관리 규정,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OECD의 부동산거래 자유화 항목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행 제한제도와 유보현황, 그리고 금후의 계획은 표2-8과 같다.

OECD 회원국과의 비교평가와 전망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OECD 국가와의 비교

OECD 25개 회원국 중에서 비거주자의 국내거래에서 신축, 또는 매수항목을 완전 자유화하고 있는 나라는 총 9개국이며, 완전유보국은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4개국이다. 유보국들의 자유화

제한내용을 보면 대개 외교사절의 거주용 부동산 취득, 합작법인이거나 국내기업을 통한 간접취득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지역의 부동산 취득은 그 경우에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거래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거래 또한 법인의 경우 일반 해외사업활동에 직접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표 2-8 • OECD회원국(총 25개국)의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부동산거래 자유화현황

자유화 항목	유보국가수	자유화 국가명	항목별 자유화지수 (완전자유화=100)
1. 신축, 또는 매수	부분유보 : 11개국 완전유보 : 4개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총 9개국)	62
2. 매도	그리스의 자유화 조치를 마지막으로 완전 자유화	25개국 전체	100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내 부동산거래 자유화 전망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자유화 계획이 없으며, 기존 OECD 가입국의 상당수가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OECD 가입 후에도 이 항목에 대한 개방압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거래

OECD 국가와의 비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마지막으로 OECD 가입국 모두가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거래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도 외환관리법을 통해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거래 자유화 전망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분야제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앞으로는 거주자의 경우 기업의 해외 부동산거래를 개인의 해외 부동산거래보다 앞서서 자유화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산운용을 위한 해외 부동산투자도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예정이다.

표 2-9 ● 해외부동산 투자현황(신규투자분)

(단위 : 건, 백만 달러)

연도	1990	1991	1992	1993
건수	1	10	2	1
금액	4.0	10.3	36.4	17.0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외환제도개혁안』, 1994년 12월

(3) 자본시장

주식 및 채권 등의 거래를 포함하는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볼 때 자유화 정도가 낮고 선진국 투자기관 등이 지속적인 개방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OECD 가입 협상시 쟁점소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OECD 가입과는 별도로 WTO 금융협상이나,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은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 또한 자본,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므로 OECD 가입을 위한 최초 의향서(Initial Memorandum) 제출을 계기로 대내외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평가
- 거주자의 외국 자본시장 참여
- 해외증권 발행규모의 증가

표 2-10 ● 주식관련 해외증권의 발행실적

(단위 : 백만 달러)

종류 \ 연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1-5월
전환사채DR	180	594.5	424	538	639.1	367.2
신주인수권부 사채BW	70	270	65	50	45	50
주식에탁증서DR	40	200	150	328	1,168	150
계	290	1,064.5	639	916	1,852.1	567.2

자료 : 증권감독원 통계자료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형태는 주식예탁증서DR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채권BW 등의 주식연계 채권과 고정금리부 채권 및 변동금리부 채권FRN 등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포철의 DR은 94년에 NYSE에 상장되었다. 표2-10에서 보듯이 주식관련 해외증권 발행은 90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차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원화표시 증권에 대한 과감한 자유화 필요

우리나라의 자유화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그 정도가 미흡하다. OECD의 25개국 회원국 중에서 단 5개국(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멕시코, 포르투갈)만이 유보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 중 4개국은 자국화폐 표시 유가증권의 발행 및 상장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발행 및 상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회원국이 규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표시 유가증권의 경우는 전면 유보, 외화표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발행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자본유입의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빨리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도 자유화가 미흡하므로 주식이나 주식연계 채권 등은 과감하게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거주자의 외화표시 채권발행은 대규모의 자본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화를 추진하되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표 2-11 • OECD 회원국과의 비교

자유화 항목	유보국가수	회원국의 자유화지수(완전자유화=100)	한국
사모, 또는 공모 발행(A/1)	5	90	부분 유보
상장(A/2)	2	96	부분 유보

• 비거주자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
점진적 개방이 필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주식 및 주식연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의 금지(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사항)에서 1단계 조치로 자유화 될 예정이나 아직도 유보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와 멕시코가 발행에 대한 유보의 정도가 심하며 그외 6개국만 어느 정도의 유보만을 하고 있으며, 상장에 대해서도 6개국만이 다소간의 유보를 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유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는 우리의 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할 때 OECD 가입 협상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예상된다.

표 2-12 • OECD 회원국과의 비교

자유화 항목	유보국가수	회원국의 자유화지수(완전자유화=100)	한국
사모, 또는 공모 발행(B/1)	8	82	부분 유보
상장(B/2)	6	88	부분 유보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을 국제금융시장으로 육성하려면 발행 및

상장의 허용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거주자에게도 국내에서 외
화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도 자유화가 요구되
므로 거주자의 해외증권 발행 규모나 속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개
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화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 의
한 발행이 1단계 조치로 자유화되었으며,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95
년 9월 1일에 8백억 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며 IBRD 등에 의한 추가
발행도 검토중이다.

•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투자

자본유입은 대체로 대내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그 형태
를 구별할 수 있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단기성 투자자금이며, 경제
환경의 변화가 이의 급격한 유출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유화·
개방화에는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대규모 부동산자금의 국내유입 유의 및 유출가능성 대비 필요

지금까지 외국인의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는 자본시장, 특히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주식시장의 개방으로 93년에는 4조
5천8백억 원이 주식투자 자금으로 순수입되었고, 94년의 한도확대(10
·12%)로 1조 5천억 원 정도가 순수입되었다. 그러나 95년초에는 선
진국의 경기호조와 멕시코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외국인 투자자급
은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부터 유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6월까지 7천억 원 정도가 순수출되었다. 그러나 총외국
인 주식투자 자금의 순수출은 95년 7월 1일의 2차 한도확대(12·15%)
에 힘입어 순수입으로 재반전되어 이후 한 달 동안에 약 1조 2천억
원이 순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95년 7월까지의 외국인 보유주식은

시가총액으로 약 15조 3천억 원에 이르며, 이는 상장주식 전체총액의 10.7% 정도에 상당하는 액수이다. 이 중 직접투자의 형태로 약 2조 9천억 원(2%)이, 주식투자 자금으로 12조 4천억 원(8.7%)이 순유입된 결과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은 이와 같이 그 규모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추가 한도확대의 경우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유출에 대한 대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표 2-13 • 주식투자 순유입액 추이

(단위: 백억 원)

연도	93년	94년(10 →12%)	95년	
			상반기	7월 (12 →15%)
주식투자 순유입액	458	150	-70	120

한편 채권시장은 94년부터 극히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하여 95년 5월 현재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전용 채권펀드 설정이 결정되었으며 추가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펀드 설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모는 94년 7월부터 95년 7월 15일 현재까지 46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주식투자 한도의 재점화 예상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자본유입을 초래하여 환율의 절상과 이에 따른 수출감소 및 국제수지의 악화, 해외부문 요인에 의한 통

화중발과 인플레이션 유발 등 국내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나 OECD 회원국들의 자유화 정도로 볼 때 OECD 가입 협상시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주식투자의 개인당 투자상한(3%)이 M&A와 관련하여 문제로 제기될 소지가 크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은 OECD 가입과 무관하게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유화는 미흡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OECD 회원국 중 14개국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에 대한 유보조항을 달고 있으나 멕시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유보국의 대부분이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법률과 관계가 없는 한 완전 자유화하고 있으며, 멕시코나 아이슬란드의 경우도 우리나라보다는 자유화가 훨씬 더 진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14 • OECD 회원국과의 비교

자유화 항목	유보국가수	회원국의 자유화지수(완전자유화=100)	한국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증권의 매수(C/1)	14	72	부분 유보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증권의 매도(C/2)	1	98	부분 유보

개방의 방향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해나가되 자본유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개방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장기자본이 단기자본에 선행하여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자유화 순서는 대내 직접투자

가 국내 증권투자에 선행하여 개방되어야 하며, 국내 증권투자는 주식, 채권, 공동투자증권, 단기 금융상품의 순서로 개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통시장의 개방은 국제 부동산펀드(Hot Money)의 급격한 유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발행시장의 개방은 오히려 기업의 저렴한 해외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므로 유통시장의 개방에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면들은 정부관련 자유화 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OECD 가입 협상시 채권이나 단기 금융상품 등의 개방속도나 폭을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확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의 개인당 3% 한도가 M&A와 관련하여 문제로 제기될 소지가 많으며, 채권의 경우 국내의 금리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규모 자본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개방시기를 주식보다는 늦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육성이 자본유입에 대처할 주요 정책수단인 불태화정책(sterilization)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금융의 축소, 금리자유화, 매매정보 공시체제 확립 등의 채권시장 육성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안정에 더 높은 비중을 둔 거시경제정책을 통하여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금리차를 해소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일반투자자의 투자제한 철폐 요망

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 및 채권투자는 이미 자유화되었으며 일반투자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개인 5억 원, 법인 10억 원 한도내에서 투자가 허용되어 있다. OECD 국가 중 해외 증권매수에 대한 제한

이 있는 나라는 멕시코를 비롯한 3개국에 불과한 실정(자유화지수-94)이며 매도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자본유입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반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도 투자제한을 가급적 빨리 철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94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해외 직접투자는 통상마찰 회피, 선진기술 습득, 물류비 절감 환위험 감소 및 마케팅에서의 신속·적절한 대응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자본유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단기 금융시장

국내의 단기 금융시장은 콜, 양도성 예금증서NCD,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RP, 상업어음CP, 무역어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 금융상품은 상품 자체의 특성상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단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며 유동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급격한 자본이동을 경계해야 하므로 주식이나 채권시장보다 대내외 개방이 늦추어질 전망이다.

● 단기 금융시장의 자유화 현황과 평가

자본거래 자유화 이후의 개방이 적절

단기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주로 시설투자가 아닌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속성을 가지며 유동성 또한 높으므로 주식 및 채권시장의 개방 이후에 개방될 전망이다. 거주자의 외화표시 단기 금융상품의 발행은 3단계까지 발행요건을 완화해나가되, 3

단계에서도 현행과 같이 심사부 신고사항으로 유지함으로써 과도한 단기자본의 유출입에 최소한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원화표시 단기 금융상품의 발행은 원화의 국제화가 선행조건이므로 아직은 요원한 일이며 OECD 가입 협상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거주자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제3단계까지 현행대로 허가제를 유지하되 3단계에서 외화표시 단기 금융상품의 인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기관투자자는 자유화되어 있으므로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일반투자자는 개인은 5억, 법인은 10억 원으로 투자상한이 높아졌으며, 2단계에서는 자유화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의 해외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자본유출을 통한 자본유입의 부작용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국내외 금리차를 고려할 때 유출의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아이슬란드가 단기 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해 전면 유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자유화 정도가 더 높다. 그 밖의 회원국들은 대부분의 단기 금융상품 거래가 자유화되어 있다. 자유화지수를 비교해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유화지수는 92로 우리나라의 42를 훨씬 웃돌고 있다.

OECD 가입과 관련해서는 주식, 채권거래 등의 자유화에 대한 협상이 단기 금융시장 자유화에 우선할 것이며 아이슬란드 등의 사례도 있으므로 단기 금융시장의 개방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5 • OECD 회원국과의 비교

자유화 항목	소분류 항목	유보국가수	회원국 자유화지수 (완전자유화=100)	한국
국내증권 등의 해외 단기 금융시장 참여	사모, 또는 공모 발행(A/1)	4	90	부분 유보
	상장(A/2)	2	94	부분 유보
외국증권 등의 국내 단기 금융시장 참여	사모, 또는 공모 발행(B/1)	9	78	완전 유보
	상장(B/2)	5	88	완전 유보
비거주자의 국내 단기 금융상품 거래	매수(C/1)	2	94	부분 유보
	매도(C/2)	2	94	부분 유보
	기타 단기 금융상품을 통한 대부(C/3)	2	94	부분 유보
	기타 단기 금융상품을 통한 차입(C/4)	1	94	부분 유보
	매수(D/1)	3	92	부분 유보
거주자의 해외 단기 금융상품 거래	매도(D/2)	2	94	부분 유보
	기타 대부(D/3)	1	96	부분 유보
	기타 차입(D/4)	1	94	부분 유보

(5) 기타 양도가능 증서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

파생금융상품 주식인수권 신주인수권 등의 거래와 관련된 규정

이 항목은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공동투자증권 거래, 그리고 외국환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양도가능 금융증서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로 구성된다. 모든 항목은 리스트 B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래형태로는 주식인수권rights, 신주인수권 증서warrants, 금융선물· 옵션· 스왑· 선도계약 등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그리고 담보대출· 상업신용· 채무증서 등과 같은 금융적 채권의 유통시장 거래가 있다. 한편 외환관련 파생상품 거래는 외환거래에 포함된다.

여기서 요구되는 자유화는 새로운 금융상품 시장의 개설, 또는 기

존시장의 선진화보다는 이러한 거래가 거주자간에 허용될 경우 비 거주자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록 국내에 이러한 유형의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개설된 이런 유형의 거래시장에 거주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나 단기 금융시장 거래의 비교사항의 내용이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규정 13장에서 금융선물 거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금융선물 거래의 적용범위, 정의, 목적 등을 기술하고 (장외) 금융선물 거래의 허용범위, 반대거래, 실수요 증빙제출, 그리고 세부 시행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2-16 • 본 항목의 적용대상

<p>a. 주식인수권rights, 신주인수권 증서warrants, 금융옵션(예 : 주식옵션), 금융 선물futures로서 공인거래소에서의 거래 여부를 불문함. 단 통화옵션 및 선물은 외환거래(XII항)의 적용대상임</p> <p>b. Sovereign loan, 담보대출mortgage loan, 상업신용, 대출에 기초한 양도성 증서(예 : 채무증서), 수취 및 할인 무역어음과 같은 기타 금융적 채권의 유통시장 거래</p> <p>c.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 공동투자증권, 여신 및 대출스왑, 이자율스왑, 채무-주식 스왑, 주식-주식 스왑, 외국통화스왑, a) 및 b)에 언급된 증서의 스왑 등</p> <p>d. 모든 선도거래forward operations(XII항의 적용대상인 외환선물환 거래 제외)</p> <p>e. 본 규약의 타항목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양도성증서·비증권 권리의 거래</p>
--

• 우리나라 자유화에 대한 평가
 선물시장 개방 실수요 증명제출 의무완화 단계적 추진계획
 먼저 이 항목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금융선물 거래 규정과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의 실수요 증명제출 의무를 표로 정리하면 표2-18과 같다.

표 2-17 •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금융선물 거래

<p>• ‘금융선물 거래’란 별표5의 금융선물 시장에서 금융선물 거래소가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행해지는 대통령령 제7조에 정한 거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함 (별표5에서는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등 세계 51개 금융선물 거래소를 열거하고 있음)</p> <p>i) 환율변동 위험의 방지를 위한 통화선물, 통화옵션 및 통화선물·옵션 거래</p> <p>ii) 이자율변동 위험의 방지를 위한 이자율선물, 이자율옵션 및 이자율선물·옵션 거래</p> <p>iii) 주식(주식파생 증권 포함)의 가격변동 위험의 방지를 위한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주식옵션 및 주가지수 선물·옵션 거래 등</p> <p>iv) 기타 i) 내지 iii)과 유사한 거래</p> <p>• ‘장의 금융선물 거래’란 거래의 목적 및 성격이 상기 금융선물 거래와 동일하나, 금융선물 시장 이외에서 행해지는 거래를 말함</p>
--

표 2 - 18 • 현재의 실수요 증명제출 의무(94년 11월 개정)

선물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간 : 면제 • 원화-외화간 : 1천만 US달러 이내 면제
금융선물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내거래 : 면제 • 장외거래 : 2천만 US달러 이내 면제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선물거래제도 개혁의 기본원칙은 기업 및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자유롭게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외여건 및 수용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단계(95년)에서 금융선물 거래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제2단계(96년)에서는 금융선물 거래 관련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조업체나 무역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실수요 증명대상 완화와 관련해서도 1단계(95년)에서 증명 제출의무 추가완화를 검토하고 2단계(96~97년)에서 실수요증명 제출의무는 완전히 면제하되 선언적 의미의 실수요 원칙은 유지할 계획이다.

<각 중항목별 자유화의 방향>

A. 국내 증서 및 권리의 해외 금융시장 참여

거주자의 금융선물, 옵션과 관련된 거래는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실수요거래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국내 양도가능 증서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해외 금융시장에의 참여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인 실수요 증명제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선진시장을 통해 국내업체들이 금융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 외국 증서 및 권리의 국내 금융시장 참여

우리나라에는 아직 금융선물 거래 등의 파생상품과 발행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 증서 및 권리의 국내상장은 불가능하나, 국내에 금융선물 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유화 2단계인 96년부터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므로, 국내 선물시장의 발전 및 활성화 추이를 보아가며 비거주자의 국내 주가지수 선물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C.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거래

비거주자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통화간에 한해서 금융선물 거래와 스왑거래를 할 수 있다. 거주자와의 거래는 거주자가 외화수취, 또는 외화지급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외화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하에 스왑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나 외국 금융기관간의 금융증서 거래시 원화표시 거래를 허용하고, 장내 시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스왑거래를 위한 실수요증빙 의무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D.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거래

비거주자의 국내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환은행의 경우도 자유로이 허용되나 거주자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거주자와의 스왑거래가 허용된다. 여기에서도 장내 시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스왑거래를 위한 실수요 증빙의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평가>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자유화 요구가 커질 전망

이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자유화와 관련된 앞으로의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실수요증빙 의무 면제, 국내 선물시장의 개방, 그리고 원화표시 거래의 허용이 그것이다. 당장 내년으로 닦친 국내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법률체제 정비,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전문가 육성 등의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과 자유화 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전 중항목에 걸쳐 부분 유보에 그치는 데 반해, 회원국의 자유화율은 96%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유화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회원국들과의 마찰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분야는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만이 부분 유보하고 있는 항목이므로 가입추진시 쟁점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9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유보현황 비교

	국내증서 및 권리의 외국시장 참여		외국증서 및 권리의 국내시장 참여	
	A1. 발행	A2. 상장	B1. 발행	B2. 상장
OECD 회원국들의 유보현황	• 아이슬란드 (전면 유보)	• 아이슬란드 (전면 유보)	• 아이슬란드(전면 유보) • 호주(부분 유보) • 벨기에(부분 유보) • 멕시코(전면 유보)	• 아이슬란드(전면 유보) • 호주(부분 유보) • 벨기에(부분 유보)
* 자유화 지수 (자유화=100)	96	96	88	92
우리의 현황	부분 유보(50)		부분 유보(50)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거주자에 의한 해외거래		
	C1. 매수	C2. 매도	C3. 교환	D1. 매수	D2. 매도	D3. 교환
OECD 회원국들의 유보현황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핀란드 (부분 유보) • 멕시코 (부분 유보)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자유화 지수 (자유화=100)	98	98	98	94	98	98
우리의 현황	부분 유보(50)			부분 유보(50)		

(6)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공동투자증권의 매매와 시장참여의 자유화에 대한 규정

과거에 공동투자증권은 증권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관리할 목적으로 조직된 공동투자기관에 대한 지분증서나 기타 그 기관에 대한 투자자증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 후 개정 규약에서는 그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기타 양도가능 금융증서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와 단기증권 등에 투자하는 기관이 판매하는 공동투자증권까지도 포함시켰다.

거래항목 모두 리스트 A로 분류되어 있는데, 중항목 A와 B는 개정 자유화 규약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으로서 공동투자증권을 발매하는 기관에 의한 공동투자증권의 국내외 공인시장에의 참여를 나타내며, 중항목 C와 D는 각각 국내와 해외에서의 공동투자증권의 매매를 나타낸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 단기 금융시장 거래, 기타 양도

가능 금융수단 및 비증권 권리의 거래에 적용되는 비교사항이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회원국은 공동투자증권의 거래와 송금에 관하여 1) 동 거래 및 송금은 거주자인 공인대리인을 통해서만 행할 것 2) 동 거래 및 송금에 대하여 거주자는 상기대리인을 통해서만 자금 및 증권을 보유할 것 3) 매수·매도는 현물거래로서만 약정할 것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회사 허가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되는 수익증권을 발행, 모집, 인수, 판매, 또는 환매와 발행자금의 해외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탁회사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다.

표 2-20 •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증권의 종류

종류	내용
국채수익증권	• 비거주자를 수익자로 하고 발행자금을 국내에서 운용
혼합수익증권	•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수익자로 하고 발행자금을 국내외에서 운용 (거주자가 수익자인 경우는 국내발행이므로 본 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해외투자 수익증권	• 거주자를 수익자로 하고 발행자금을 해외에서 운용 (국내발행이므로 본 항의 적용대상 아님)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각 항목별 자유화의 방향>

A. 국내 공동투자증권의 외국 증권시장에의 참여

현재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으며 해외발행이 허용된 수익증권은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외화표시 발행의 경우, 조달자금의 해외운용시에는 1단계에 심사부 신고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고, 국내운용시에는 3단계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원화표시의 경우에는 현재 발행실적이 없는데, 1단계에서는 현행대로 허가제로 유지하다가 2단계에서 허가요건을 명시하고 원화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B. 해외 공동투자증권의 국내 증권시장에의 참여

현재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 모집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금지규정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내발행이 허용된 수익증권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는 상장규정도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 실제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동투자증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앞으로 1단계에서는 현행대로 허가사항으로 유지하고, 2단계에서 심사부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며 3단계 후반부터 신고사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C.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매매

비거주자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외국 투자전용 회사를 제외하고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투자신탁증권 매

매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의 매입이 허용된 공동투자증권의 매도는 허용하고 있다.

상품별로 보면 현재 외국인 전용 주식형 수익증권과 매칭펀드만이 금액한도 제한을 두고 허용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외국인전용 채권형 수익증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며, 3단계에서 국내발행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D.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매매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는 자유로운 데 반해 기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투자신탁증권의 취득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자에게 해외에서의 매입이 허용된 공동투자증권의 매도는 허용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해외 공동투자증권 투자대상 상품으로는 국제수익증권, 혼합수익증권, 외국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국내 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발행의 수익증권이 있다. 기관투자자의 해외거래는 1단계에서 자유화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2단계 이후 자유화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평가>

채권형 수익증권 개방, 금융시장 국제화 등이 우리나라의 과제

이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자유화와 관련된 향후 이슈는 공동투자증권의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확보, 원화 및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진, 채권형 수익증권 개방의 신중한 추진 등이 될 것이다.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외화표시 공동투자증권의 발행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증권투자신탁업법이나 금융기관의 신탁자산

운용준칙 등에 의해 공동투자증권의 자산운용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표시 공동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거주자가 유로원 공동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거래에 대한 원화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외화표시 공동투자증권의 발행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은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외화표시 공동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의 국제화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표시 공동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국내 투자신탁업을 외국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 투자신탁업의 국제화와 투자신탁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형 수익증권은 국내외의 금리차가 크며(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연 13% 내외 수준인 데 반해 미국의 장기채 수익률은 7%를 넘지 않고 있음) 투자수익이 안정적이고 환매가 보장되어 있어 주식형에 비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권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자유화는 채권개방과 마찬가지로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국내 증권시장 참여문제 쟁점화 가능성

OECD 회원국들의 공동투자증권 거래 자유화율이 95%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멕시코, 터키와 함께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국내 증권시장 참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선진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적정 포트폴리오 구축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당국이 걱정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이나 통화수급면에서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단계적으로 이 조항을 자유화하여 개방화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거래와 관련해서 대상기관과 금액을 확대하는 단계적 개방안을 갖고 있으나, 이에 대응되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유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회원국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 부문에서는 현재 회원국 중 핀란드만이 유보국가로 남아 있다.

표 2 - 21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유보현황 비교

	국내 공동투자증권의 외국시장 참여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국내시장 참여	
	A1. 발행	A2. 상장	B1. 발행	B2. 상장
OECD 회원국들의 유보현황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터키(전면 유보) • 멕시코(전면 유보) • 프랑스(부분 유보) • 벨기에(부분 유보) • 이탈리아(부분 유보) • 포르투갈(부분 유보) • 스위스(부분 유보)	• 터키(전면 유보) • 프랑스(부분 유보) • 벨기에(부분 유보) • 포르투갈(부분 유보)
* 자유화지수 (자유화=100)	98	98	82	90
우리의 현황	부분 유보(50)		부분 유보(50)	

	비거주자에 의한 공동투자증권의 국내거래		거주자에 의한 공동투자증권의 해외거래	
	C1. 매수	C2. 매도	D1. 매수	D2. 매도
OECD 회원국들의 유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란드(전면 유보) • 멕시코(부분 유보) • 아이슬란드(부분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부분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란드(부분 유보) • 멕시코(부분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없음
* 자유화지수 (자유화=100)	92	98	96	100
우리의 현황	부분 유보(50)		부분 유보(50)	

(7) 국제무역,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된 신용

연자급 수입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리스 팩토링 등과 연관되는 규정
여기서 취급되는 신용거래는 먼저 거주자의 해당 무역, 또는 용역
거래의 참여 여부에 의해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비거주자
에 의한 거주자에의 신용공여와 그 반대의 경우로 분류된다. 이때
거주자가 참여하지 않은 무역거래, 또는 용역거래의 경우 비거주자
에 의한 거주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일종의 금융신용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금융상의 신용 및 대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국제무역,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된 신용, 다음에
서 다루는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담보, 보증 및 보증금음은 모두
신용 및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국제무역, 또는 용역제공과 관

련된 신용이 실물거래와 연관되는 거래인 반면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는 실물거래와 무관한 신용 및 대출이며 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은 이 두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 및 대출이다.

국제무역,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된 신용은 크게 무역관련 신용, 상품 및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유사은행 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는 연지급 수입, 분할수입,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등이 속하며 후자에는 리스leasing, 팩토링factoring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자유화에 대한 평가

<각 항목별 자유화 방향>

원인이 되는 거래에 거주자가 참여하는 경우

먼저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은 수출입의 경우 몇몇 사항 이외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신용수혜는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이므로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있으며, 무역외 거래 관련 신용수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은, 수출입의 경우 몇몇 사항 이외의 신용공여는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이므로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있으며, 무역외 거래 관련 신용공여는 일부 군납의 경우만 허가사항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원인이 되는 거래에 거주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은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로 간주된다. 그리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의 경우, 비거주자 상호간의 수출입 및 용역거래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확인, 또는 인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항목의 신

용공여는 자유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거주자에 의한 신용공여는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제도 개혁 계획을 통해 연지급 수입, 수출선수금 및 수출착수금, 중계무역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후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을 국내 물가와 통화의 교란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시대에 기업들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종합적인 평가>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향적인 개방 필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슈는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연지급 수입, 중계무역 등의 분야에서 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국제수지 변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방 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다.

향후 수출선수금, 수출착수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자금조달 및 운용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유리한 조건의 신용을 국내 수입업자가 수혜할 수 있도록 하고, 내수용의 경우에는 국제수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할 것이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도 인증사항을 거쳐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며, 또 수입에 대한 선지급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수입결제 후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출 결제방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또 원화표시

무역거래 관련 신용공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부분 유보상태이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개방폭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가입추진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당국은 국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 전체의 물가 및 통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정책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표 2-22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유보현황 비교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해당 상거래,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는 경우(리스트A)		거주자가 해당 상거래,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리스트A)
	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OECD 회원국들의 유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슬란드(부분 유보) • 터키(부분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슬란드(부분 유보) • 터키(부분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슬란드(부분 유보) • 호주(부분 유보)
* 자유화지수 (자유화=100)	96	96	96
우리의 현황	부분 유보(50)	유보 없음(100)	부분 유보(50)

(8) 금융상의 신용 및 대출

여기에는 직접투자, 직접투자의 청산, 국제무역 및 용역제공과 관

련된 신용, 그리고 개인적인 자본이동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가 포함된다. 이 항목은 상업차관과 상품 및 서비스무역과 무관한 유사은행 거래(리스, 팩토링 등)로 대별되며 모두 리스트 B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거주자의 해외차입>

현재 외국환은행의 해외차입(뱅크론)은 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상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차입의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심사부 신고하고, 1천만 달러 미만, 1년을 초과하는 차입의 경우는 사전보고하고, 또 현지금융을 위해 차관단을 구성하여 차입할 경우에도 2천만 달러 이상,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사전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액 1백만 달러,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차관계약(상업차관)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사항인데, 1986년부터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물가, 환율불안과 기업간 형평문제 발생으로 민간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을 불허하고 있다(포철, 한전 등 공기업에 대해서만 허용).

상업차관 이외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차입은 인정된 결제방법에 의한 단기 무역신용 및 원유도입 자금 결제를 위한 단기차입 등이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이외의 거주자가 3년 이내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브리지론 및 기타 금전의 대차계약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표 2 - 23 • 거주자의 해외차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구분	1990	1991	1992	1993
뱅크론	1.3	10.3	3.1	1.9
단기 무역신용 및 원유 단기차입	21.4	24.8	26.4	32.6

향후 1단계에서 현재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차관을 외환관리법으로 이관하고, 금액 1백만 달러, 상환기간 3년 초과 차관계약(상업차관)에 대한 별도구분을 폐지하며 차관계약을 시설채 도입 및 현금도입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기업의 시설채 도입 관련 해외차입은 1단계에서 SOC 및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심사부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고, 2단계에서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부 신고사항으로 바꾸며, 3단계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업 및 개인의 해외차입은 지금처럼 국내외 금리차가 있는 한 대규모 자본유입을 초래하여 통화량 및 환율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직접적인 해외차입보다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을 확대하여 기업의 외화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금리차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직접차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SOC 확충 및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자금으로는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자원 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SOC 관련 및 시설채 도입 관련 차입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해야 할 것이다.

<거주자의 해외대부>

현재 외국환은행의 해외대부에서 2천만 US달러 이상 대부하는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하고, 역외금융으로 조달한 외화자금의 국내기업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대출에서 2천만 US달러 이상 상환기간 1년 초과인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상환기간 1년 이상의 대부방법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금액이 1천만 US달러 이하일 때에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이다. 향후 점차적으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들에게도 3단계에서는 신고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OECD 가입과정에서 큰 마찰은 없을 전망>

현재 OECD 회원국 중 이 분야에서 자유화를 부분 유보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 멕시코, 호주 등 3개국이다. 우리나라도 부분 유보상태이나 나중대로 개방안이 있어 가입과정에서 큰 장애는 없을 듯하다. 이 부문에서는 상업차관 도입과 같은 관련제도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24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유보현황 비교

	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	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
OECD 회원국들의 유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슬란드(부분 유보) • 멕시코(부분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슬란드(부분 유보) • 호주(부분 유보)
* 자유화지수 (자유화=100)	96	96
우리의 현황	부분 유보(50)	부분 유보(50)

(9) 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

보증, 보증신용장, 회전인수 보증 등을 포괄하는 규정

여기서 말하는 담보 및 보증에는 보증(warranties), 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s),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s of credits) 등이 포함된다. 신종 금융수단의 일종인 보충금융(financial back-up facility)이란 자금조달을 위한 증권의 공모발행시 배각되지 않은 증권의 인수를 약정하거나 발행자의 지급능력에 대하여 보증하는 금융제공의 한 형태로서 보증신용장, 회전인수보증(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RUFS)) 등이 속한다. 즉 보충금융이란 독립적인 금융거래의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편의로서 채권이나 어음의 발행 등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보증으로 시장에서의 채권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금융편의 수단이다.

여기서 자유화 의무는 국제무역이나 용역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거주자가 자본거래에 참여한 경우(리스트 A)와 국제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거주자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담보 및 보증은 리스트 A, 보충금융은 리스트 B)로 구분해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는 현재 보충금융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담보 및 보증분야는 부분 유보되어 있다. 즉 보충금융의 경우에는 국제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거주자가 참여하지 않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금융을 제공할 때에만 부분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 및 담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보증, 담보를 제공받을 때는 외국환은행의 경우 인정된 거래에 한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거주자의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이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보증이나 담보이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대내외 경영활동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비거주자의 보증, 담보 제공을 조속히 자유화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증여, 외화의 국내송금 등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자유화가 바람직하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 및 담보>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할 때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이나 한국은행 총재 및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영역 조정에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 및 개인의 경우 우발채무 발생시 외환거래의 원인행위가 되고 증여 및 해외자금 도피 등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자유화가 바람직하다.

<OECD 회원국, 담보 및 보증분야 자유화 확대요구 전망>

현재 OECD 회원국과 우리의 자유화 현황을 비교해볼 때,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 및 보증에 대한 자유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 분야는 모든 회원국이 완전 자유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부분 유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비거주자의 보증, 담보제공을 조속히 자유화하여 금융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표 2 - 25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유보현황 비교

	국제무역, 또는 무역외 거래와 직접 관련되거나 거주자가 참여하는 국제 자본이동 거래와 관련된 경우(리스트 A)			
	A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 및 보증	A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 및 보증	B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금융	B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금융
OECD 회원국들의 유보현황	유보 없음	유보 없음	• 아이슬란드 (전면 유보)	• 아이슬란드 (전면 유보)
* 자유화지수 (자유화=100)	100	100	96	96
우리의 현황	부분 유보(50)		부분 유보(100)	

	국제무역, 또는 무역외 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거주자가 당해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A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 및 보증 (리스트 A)	A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 및 보증 (리스트 A)	B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금융 (리스트 B)	B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금융 (리스트 B)
OECD 회원국들의 유보현황	유보 없음	• 멕시코 (부분 유보)	• 아이슬란드 (전면 유보)	• 아이슬란드 (전면 유보)
* 자유화지수 (자유화=100)	100	98	96	96
우리의 현황	부분 유보(50)		부분 유보(50)	유보 없음(100)

(10) 예금계정 거래

이 항목에서는 은행의 예금계정 중 특히 당좌예금과 저축예금계정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자유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에서 논의된 자본시장 거래, 단기 금융시장 거래, 상업신용, 금융신용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은행계정의 개설 및 운영은 각각 해당거래의 자유화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개정규약에서는 과거 규약의 신용기관과의 계정거래와 구별해서 예금계정 거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비거주자의 국내거주 금융기관과의 계정거래>

이 경우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향후에도 비거주자 국내 원화예금의 외화환전 및 외화예금의 원화환전은 국내외 금리차가 있는 한 핫머니 유출입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화환전 및 원화환전을 인정된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현재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건당 30만 달러 이하 유효, 보험료를 포함한 수출거래 대금 및 재보험거래 대금으로 제한하고 있음)은 정상거래에 있어서 원화국제화의 추진과 병행하여, 기업의 환위험 축소와 원활한 결제를 위해 건당 한도를 확대하고 용도를 용역거래로 확대하며 최종단계에서 건당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주자의 비거주 금융기관과의 계정거래>

거주자의 비거주 금융기관과의 국내통화 표시 계정운영은 금지되어 있다. 원화예금은 1단계에서 일정액 초과시 허가사항으로 전환하

며, 2단계 이후에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거주자의 해외 외화예금은 대외채권의 회수의무에 따라 최종단계까지 한도를 유지하되, 거주자의 원활한 대외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우 대상기업 및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거주자의 해외 예금계정 거래에 대한 자유화 요구가 커질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비거주자의 국내거주 금융기관과의 계정거래는 자유화되어 있어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거주자의 해외거주 금융기관과의 계정거래는 원화계정이 전면 유보되어 있고 외화계정은 부분 유보되어 있어 가입추진시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해외에서 원화계정을 개설, 운영하는 문제는 OECD 회원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원화의 국제화와 기업들의 금융활동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인다.

표 2-26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유보현황 비교

	비거주자의 거주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리스트 A)		거주자의 비거주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리스트 B)	
	A1.	A2.	B1.	B2.
	내국통화 거래	외국통화 거래	내국통화 거래	외국통화 거래
OECD 회원국들의 유보현황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멕시코 (부분 유보)	• 아이슬란드 (전면 유보)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자유화지수 (자유화=100)	96	98	96	98
우리의 현황	유보 없음(100)		전면 유보(0)	부분 유보(50)

(11) 외환거래

외환관련 파생상품 외환의 보유기간 등에 관한 규정

이 항목에 포함되는 자유화 내용은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에 포함된 여타 항목의 거래에 수반되는 외환거래를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외환거래 항목에는 유보사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규약의 여타 자본이동 항목에서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그 항목과 관련된 외환거래의 자유화도 유보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표 2-27 • 선물환 및 금융선물 거래 추이(단위: 억 달러)

	90년	91년	92년	93년
선물환	1,509.5 (89.6)	1,282.9 (85.5)	1,648.6 (91.2)	2,787.6 (94.5)
(위-외화간 거래)	326.4 (19.4)	381.7 (25.4)	474.5 (26.3)	1,613.5 (54.7)
(외화간 거래)	1,183.1 (70.3)	901.2 (60.0)	1,174.1 (65.0)	1,174.1 (39.8)
금융선물 거래	175.4 (10.4)	217.9 (14.5)	158.7 (8.8)	161.0 (5.5)
(통화관련 거래)	71.1 (4.2)	58.4 (3.9)	24.1 (1.3)	16.5 (0.6)
(금리관련 거래)	104.3 (6.2)	159.5 (10.6)	134.6 (7.4)	144.5 (4.9)
합계	1,684.9 (100.0)	1,500.8 (100.0)	1,807.3 (100.0)	2,948.6 (100.0)
대고객 거래	737.9 (43.8)	562.2 (37.5)	617.3 (34.2)	569.1 (19.3)
은행간 거래	947.0 (56.2)	938.6 (62.5)	1,190.0 (65.8)	2,379.5 (80.7)
국내은행	311.6 (18.5)	480.7 (32.0)	616.9 (34.1)	1,396.7 (47.4)
외국은행 지점	1,373.3 (81.5)	1,020.1 (68.0)	1,190.4 (65.9)	1,551.9 (52.6)

주 : () 안의 수치는 각 항목별 구성비중임

좀더 구체적으로는 선물환, 통화선물 및 옵션 등 외환관련 파생금융상품, 수입대금 지급시 필요한 외환의 보유기간 등이 이 항목에 해당되며 모두 리스트 B로 분류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93년중 외국환은행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949억 달러로 전년대비 63.1% 증가하였다.

이처럼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은행간 원화외화간 1일 선물환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형태별로는 전통적인 선물환거래가 전체거래의 94.5%를 차지하며, 신금융상품인 금융선물 거래는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현재 비거주자의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파생상품 거래는 외국통화에 한해 자유화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국환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이나 비거주자와 외국통화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을 활성화하고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국내외 외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현행 실수요제도가 외환거래를 제약하여 외환시장, 특히 선물환시장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업 및 은행의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금융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이 규정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경제에 미칠 양면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화 국제화는 세계경제내에 우리경제의 위상 제고, 국내기업의 환리스크 감소에 따른 무역거래의 증진 등이 기대되나, 장단기 자본의 유출확대로 인한 환율변동 심화와 통화신

용 정책의 독자성 훼손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상거래에 있어서는 원화의 계약통화 및 지불수단으로서의 국제적 사용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르는 환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거래에 따른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원화의 국제적 사용은 환율을 불안정하게 하고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의 매수·매도가 쟁점화될 가능성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중 내국통화의 매수유보 항목이 OECD 가입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문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거주자의 해외거래 중 내국통화 매입을 위한 외화매도는 전면 유보되어 있어 OECD 회원국의 전체 자유화율 95%와는 큰 대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이 항목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원화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시켜 생각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표 2-28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유보현황 비교

	A.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B. 거주자에 의한 해외거래		
	A1. 외화물 대가로 한 내국통화 매수	A2. 외화 매입을 위한 내국통화 매도	A3. 외국 통화간 교환	B1. 내국통화를 대가로 한 외화매수	B2. 내국통화 매입을 위한 외화 매도	B3. 외국 통화간 교환
OECD 회원국들의 유보현황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아이슬란드 (부분 유보)	• 유보 없음	• 아이슬란드 (전면 유보)	• 아이슬란드 (전면 유보) • 터키 (부분 유보)	• 유보 없음
* 자유화지수 (자유화=100)	98	98	100	96	94	100
우리의 현황	부분 유보(50)		유보 없음 (100)	부분 유보(50)	전면 유보(0)	유보 없음 (100)

100 OECD 가입과 한국경제의 자유화

(12) 생명보험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된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에 관한 규정

이 항목은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된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에 관한 내용이다. 생명보험과 관련되는 기타 거래, 즉 보험의 계약이나 보험료, 기타 연금 등의 거래는 경상무역의 거래의 자유화 규약(D3)의 적용을 받는다. 생명보험 관련 자본이나 확정연금의 국내외로의 이전은 그 계약자가 계약 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한다. 자본 및 확정연금의 국내, 그리고 해외로의 이전을 나타내는 A, B 두 항목 모두 리스트 A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도 생명보험에 관련되는 확정연금의 송금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자유화되어 있다(외국환관리 규정 제10·102조 1항).

(13) 개인적 자본이동

개인적 자본이동은 친족관계 여부, 자선, 또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조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한 개인을 대신하여 또 다른 개인의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송금에 관한 규약이다. 개인간의 대출, 이주자의 원거주지에서의 채무변제 항목은 이자를 동반한 반환약정의 재산거래이며, 증여 및 기증, 결혼지참금, 상속 및 유증, 해외이주자의 자산이전, 도박, 비거주 근로자의 저축 등은 수혜자에 대한 무상 이전거래이다.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 개인간의 대부허용이 쟁점화될 가능성

이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금지, 부분 자유화, 완전 자유화 항목을 모두 갖고 있으며, 외환제도 개혁안에서는 앞으로 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개인간의 대부는 금지하고 있으며, 증여 및 기증, 결혼지참금, 상속 및 유증, 해외이주자의 자산항목은 부분 유보하고 있고 기타 항목은 자유화하고 있다.

현재 거주자의 경우 전당 5천 달러 이하의 대외송금이 자유화되어 있어 사실상 개인적 자본이동과 관련된 많은 항목이 자유화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전당 대외 송금액수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회원국 모두가 개인간의 대부를 자유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완전 금지하고 있어 향후 이 부문이 쟁점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개인간 대출을 허용하는 유연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14) 자본자산의 실물이동

유가증권 지불수단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

이 항목은 크게 증권 및 기타 자본적 성격의 자산에 대한 권리증서의 수출입과 지불수단의 수출입에 관한 자유화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자유화 항목이 리스트 A로 분류되어 있는데, 거주자와 관련된 자본의 수출자유화는 외국증권의 수출만이 자유화 대상인 동시에 그것도 행정상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인 경우에 국한하여 수출이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의 부분 유보에 대한 회원국들의 자유화 요구 전망

OECD 회원국 중에 이탈리아와 멕시코, 불과 두 국가만이 특정항목에서 유보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모든 부문에서 부분 자유화에 그치고 있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큰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항목을 원칙적으로 유보하고 자유화되는 소항목을 열거하고 있어, 실제 이와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증이나 허가절차가 불가피하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회피하는 큰 이유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잡성과 시간지연 문제라고 볼 때, 상당히 큰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외환집중제의 완화, 대내외 증권투자의 자유화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이 분야의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인증사항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15) 비거주자 소유의 봉쇄자금의 처분

봉쇄자금은 통화당국이나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는 해외송금, 이중통화간의 이체를 금지함으로써 비거주자의 외화에 대해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외환사정이 어렵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행해진다. OECD에서는 이 항목을 봉쇄자금의 송금, 봉쇄자금의 국내사용, 비거주자간 봉쇄자금의 양도로 구분하는데, 모두 리스트 A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현재 봉쇄자금의 송금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 송금할

수 있는 상황이다. 봉쇄자금의 해제는 자본자유화 추진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거주자 및 비거주자 자유계정의 설정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상무역의 거래

(1) 업무 및 산업활동

이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국내의 어느 곳에서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생산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 건설공사의 계약, 특허권 및 상품의 도입, 수선 및 조정, 제품의 가공 및 완성 등과 관련된 서비스 계약을 정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외국업자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해외에 소재한 모회사의 일반경비를 자회사가 일부 부담하기 위한 송금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선 및 조립(A/1), 가공, 마무리, 계약하에 있는 작업의 가공과 관련된 용역 및 기타 동일성질의 용역(A/2), 기술도입(A/3), 공사계약(A/4), 저작권 사용료, 특허, 의장, 상표 및 발명관련 사용허가 계약 및 사용

료 송금(A/5), 급료 및 임금의 송금(A/6), 해외에 위치한 모회사의 일반 경비에 대한 자회사 및 지점의 분담액 송금, 또는 그 반대의 경우(A/7) 등이 업무 및 산업활동 관련 자유화 항목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기술도입(A/3)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기술도입을 의미하는데, 전문가의 조언, 계획수립, 공정감독, 시장조사, 직원훈련 등이 포함된다. 급료 및 임금 송금(A/6)의 경우는 수령 급료 및 임금 중 생활비나 세금, 기타 사회보장 보험료의 지출을 제외한 수입의 자유로운 본국송금을 의미한다. 전문기술과 제조과정과 관련된 사항들은 그 성격에 따라 A/3, A/5, 또는 A/7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OECD 국가와의 비교>

업무·산업분야에서 자유화 현황을 기존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A/4(공사계약)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부분 유보의 상태에 있다. A/2(영화가공) 항목에서 이탈리아가, A/7(본지사간 경비부담) 항목에서 터키가 부분 유보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의 현상항은 우려하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OECD 가입시 큰 쟁점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2-29 • OECD 회원국과의 비교 : 업무 및 산업활동 분야

	A. 업무 및 산업활동						
	A/1	A/2	A/3	A/4	A/5	A/6	A/7
OECD 25개국의 자유화 정도	유보국 없음	이탈리아 1국 부분 유보	유보국 없음	유보국 없음	유보국 없음	유보국 없음	터키 1국 부분 유보
우리나라의 자유화 현황	유보사항 없음	유보사항 없음	유보사항 없음	부분유보 (건설업)	유보사항 없음	유보사항 없음	유보사항 없음

<우리나라의 각 항목별 현황>

수선 및 조립

국내의 거주자가 기계, 설비 등의 설치, 수리, 조립 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지급은 갑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만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외국환관리 규정상 이는 곧 수선 및 조립과 관련된 용역계약의 체결이 자유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가공, 마무리 계약하에 있는 작업 및 기타 동일성질의 용역

거주자가 물품의 가공, 또는 마무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는 갑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으로 이 항목의 거래는 자유화되어 있다.

기술도입

이 항목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분배와 관련된 기술제공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전문가의 조언, 계획입안, 공정감독, 시장조사 및 직원훈련 등이 포함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술용역 계약과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술도입 계약,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으로서 기술대가가 10만 US달러 이하인 기술도입 계약을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계약의 체결은 갑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이, 지금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종류의 기술도입 계약에 한해 자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 2)대가가 30만 US달러 이상인 엔지니어링 기술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쟁점화 가능성이 높다.

공사계약

외국 건설업자가 국내 건축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존 업체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회사설립이 요구되므로 이 항목과 관련된 국경간 거래는 자유화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내 기존업체와의 합작투자 및 지사설치 의무(국내건설업 면허 발급조건)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저촉하는 것으로 쟁점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도 전문건설업의 경우 1996년 1월 1일부로 합작투자 의무해제 및 1998년 지사설치 허용이 UR 서비스협상에서 양허되어 있고, 일반건설업도 1996년 1월 1일부로 지사설치가 허용되므로 실질적 자유화가 예정되어 있다.

저작권 사용료 특허 의장 상표 및 발명

저작권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으로 자유화되어 있으며 특허, 의장, 상표 및 발명과 관련해서는 기술도입(A/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용역육성법과 외자도입법상의 허가를 요구하는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도입을 제외하고 자유화되어 있다.

급여 및 임금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들을 고용함에 따라 대외지급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주재원의 국내보수의 대외송금 및 자유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소득의 대외임금은 자유화되어 있으므로 이 항목은 자유화 사항으로 간주된다.

해외에 위치한 모회사의 일반경비에 대한 자회사 분담금의
송금 및 그 반대 경우의 송금

외국인투자 기업,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외국기업 국내 지사 등을 위하여 외국의 친회사가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한 분담금의 대외송금은 갑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으로 자유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무역

수출입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급 및 용역계약의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다. 수수료 및 중개료, 통과거래 및 환적 transshipment 거래에 의한 이윤, 그리고 대리비용(B1), 일종의 상품선물 시장을 의미하는 최종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되는 매매차금, 증거금, 또는 예치금(B2), 외환시장의 공인달러에 의한 서류작성 비용(B6) 등의 항목과 관련된 서비스계약의 체결 및 관련비용의 대외 송금 및 지급 등이 무역관련 자유화 의무내용이다.

자유화에 대한 평가(무역)

<OECD 국가와의 비교>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중 이 항목은 수출입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급 및 용역계약의 자유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각국은 GATT를 중심으로 실물무역 거래의 자유화를 꾸준히 전개시켜 왔기 때문에 거래에 직결되는 비용의 이동도 같이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의 무역(수출입 합계)비중은 전세계의 72% 정도

를 차지할 만큼 국제경제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무역항목의 유보국가는 현재 한 나라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무역면에 있어서는 실물거래, 무역관련 외환거래는 꾸준히 자유화시켜 왔으므로 OECD 가입시 유보할 항목은 없다고 평가된다.

표 2-30 •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자유화 비교 : 무역분야

	B. 무역					
	B/1	B/2	B/3	B/4	B/5	B/6
OECD 25개국의 자유화 정도	유보국 없음	유보국 없음	유보국 없음	유보국 없음	유보국 없음	유보국 없음
우리나라의 자유화 현황	유보사항 없음	유보사항 없음	유보사항 없음	유보사항 없음	유보사항 없음	유보사항 없음

<무역관련 우리나라의 현황>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실물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화·개방화의 일환으로 수입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국내기업이 국제시장에서는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상품,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조정해왔다.

이 결과 1994년의 수입자유화율은 공산품의 경우 99.9%, 농수산물물의 경우 92.0%에 달하여 전체적으로는 98.5%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UR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EU간에 합의된 6개 분야의 관세인하에 대한 참여요청을 받아 그 중 목재부문을

제외한 전자, 종이, 과학장비, 완구, 비철금속 부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최종 관세양허계획을 1994년 3월 GATT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산물은 총 338개 품목 중 42.6%에 해당하는 144개 품목을 양허하였고, 공산품은 총 8,705개 품목 중 91.8%에 해당하는 7,990개 품목을 양허함으로써 양허범위는 1988년의 수입액 기준으로 23%에서 90%로 확대되었다.

양허세율은 수산물의 경우 1986년의 19.9%에서 13.6%로 인하됨으로써 수입액 가중 평균으로 31.6%가 인하되었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1986년의 17.86%에서 8.18%로 인하됨으로써 수입액 가중평균으로 54.2%가 인하되어 무역과 관련된 실물부문의 자유화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31 • 수입자유화율 추이

(단위: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전체	94.7	95.5	96.4	97.3	97.7	98.1	98.5
농림수산업	71.7	75.9	80.4	84.7	87.2	89.7	92.0
농산물	79.0	83.6	87.9	90.6	92.2	93.7	95.3
축산물	63.3	66.3	70.7	74.0	77.3	80.7	83.7
임산물	94.3	94.7	95.0	97.5	97.5	97.9	97.0
수산물	41.8	49.4	58.2	68.7	74.6	80.4	86.6
공산품	99.5	99.5	99.7	99.9	99.9	99.9	99.9

주 : 수출입 공고상 제한품목 기준임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 구조의 개편방향』, 1994년

한편 무역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용역거래의 체결에 따른 대외지급에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문에 속하는 항목은 모두 자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존 OECD 가입국들도 이 무역에 관한 항목에는 유보사항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수료 및 중개료 통관거래 및 환적거래에 의한 이윤과 대리비용
수출입 대금의 100분의 10, 또는 10만 US달러 이내의 대리점 수수료, 대형 지급금, 그리고 중개수수료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사항이므로 이들의 지급은 자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 기업의 국내지사 등 영업수익의 대외송금은 갑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이므로 통관거래 및 환전거래에 의한 이윤의 대외송금 또한 자유화된 사항이다.

*정상적인 상거래와 일치하는 최종상품 시장의 운영과
관련되는 매매차금 증기금 또는 예치금*

이 항목을 해외 상품선물 거래의 참여 그 자체에 대한 자유화로 해석하기보다는 참여에 따른 관련 자금의 대외지급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상품선물 거래 자금을 외국에서 보유, 운용하는 것은 갑류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사항으로 자유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공인달러에 의한 서류작성 비용

이 항목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대외지급 관련규정은 없으나 실질

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화된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창고사용료 및 보관료, 통관료

수출물품의 해외현지 하역비, 통관비, 창고료, 운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이나 우발적 비용의 지급에는 제한이 없다.

통과비용

B/4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자유화되어 있다.

관세 및 과징금

이 항목과 정확히 해당되는 규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수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세 및 과징금의 지불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화된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운송

운송관계 자유화 내용으로 운영서비스 거래 그 자체에 관한 것과 개별 운송수단의 경상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의 구입 및 대금지급, 그리고 운송수단의 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상 화물운송 서비스(C1) 항목은 국제간의 해상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어느 회원국의 거주자가 여타 회원국의 거주자가 제공하는 해상운송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해상운송 계약 및 대금지급이 회원국의 외환통제, 내국선 우선주의 정책, 차별적인 항만운영 관련규정이나 조세정책 등에 의해서

제한받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내륙수로 화물운송(C2), 화물과 승객을 포함하는 육로운송(C3), 항공운송(C4), 그리고 해상, 내륙수로, 육로운송의 경상운항에 필요한 제반서비스의 구입 및 지급, 그리고 항공기 및 수송자원의 수선 등을 포함하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경상 및 고정비용의 지급(C5), C5에 포함되는 사항을 제외한 선박수리 및 기타 운송수단의 수리 중 수출입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항(C6) 등이 운송부문 자유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항공운송(C4)의 경우는 서비스거래 그 자체의 자유화보다는 항공권 및 초과 수화물에 대한 비용지급과 항공권 판매대금의 본점송금 등이 자유화 대상이 되고 있다. C5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의 경상운항과 관련된 서비스 구입, 또는 지불에는 연료적재나 경상적인 수리, 승무원에 대한 비용지출 등이 포함된다.

자유화에 대한 평가

<OECD 국가와의 비교>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의 자유화 대상항목은 C1에서 C6까지 6개 항목이다. 이 운송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많은 국가들이 유보를 가지고 있고, 특히 육로운송(C3 항목)은 거의 모든 나라가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C2, C3 두 항목에서만 완전 유보를 하고 있고, C1 한 항목만 부분 유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항목도 OECD 국가 평균수준에 머무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32 •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자유화 비교 : 운송분야

	C. 운송					
	C/1	C/2	C/3	C/4	C/5	C/6
OECD 25개국의 자유화 정도	터키 완전 유보 4개국 부분 유보	터키 완전 유보 7개국 부분 유보	21개국 부분 유보	유보국 없음	멕시코1국 완전 유보	터키1국 부분 유보
우리나라의 자유화 현황	부분 유보	완전 유보	완전 유보	유보 없음	유보 없음	유보 없음

<우리나라의 현황>

해운관련 항목에서는 해상 화물운송의 자유화를 명시한 'C/1' 항목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해상운송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주요쟁점은 정기운송의 웨이버제도, 부정기운송의 지정화물제도, 일부에 대한 선박투입의 실질적 제한, 선박매매의 허가제도 등이다.

정기선 운송의 웨이버제도는 우리나라 선박에 의한 화물을 우선 함으로써 외국선사들의 우리나라 해상운송 시장 접근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여러 나라와 체결한 해운협정 등에 의하여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그 실효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실효성이 약하면서도 해운규제국이라는 국제적 이미지만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본 제도를 1995년 1월 1일부로 철폐하였다.

한편 현재의 선박매매 허가제는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유보내용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OECD 25개국 중에서 교역규모가 11위이고, 선박량 규모가 6위 정도인 우리나라가 선박

매매 자유화를 유보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선박매매와 용대선의 자유화는 우리나라 선사들의 자율적 경영에도 필요하다.

부정기선 운송의 지정화물에 대해서는 외국의 개방압력이 강력함을 감안할 때 전면 유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2~3개 화물만 유보하는 부분 유보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내륙수로 운송을 지칭하는 'C/2' 항목에 대해서는 상업성 차원에서 볼 때 한강 수로운송이 대상이 될 것이나 북한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유보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육로운송은 다른 국가들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쟁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상운송 관련 항만용역 자유화 항목인 'C/5' 항목에 대해서는 소규모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사업(예산사업과 선용품 공급사업 등)에 한하여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전략적으로 부분 유보를 한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2-33 • 운송분야의 주요 쟁점사항

항목	자유화 내용	주요쟁점	대응방향
C/1	해상운송의 자유화 (선박 임대차, 항만사용, 화물운송계약 등)	• 지정화물제도 • 선박매매 • 선박투입 제한	단계적 축소(부분 유보) 자유화 자유화(남북 항로 제외)
C/2	내륙 수로운송(용선 포함)	불개항상에 외국선박 기항금지 * 자유화될 경우 외국선사의 복합운송 가능	전면 유보(한강 수로운송)
C/3	육로운송(여객 및 화물)		전면 유보, 또는 부분유보
C/4	항공운송(여객 및 화물)		자유화
C/5	해상운송관련 항만용역 (인료 및 불품공급, 선박유지 및 수선비, 승무원비용 등 포함)	외국환관리 규정 (경상 운항경비)	자유화, 또는 부분 유보
C/6	선박수선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		자유화

(4) 보험

1987년부터 개방되었지만 현재의 자유화 정도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뒤떨어진 상황이며, 시장진입, 영업활동, 국경간 거래, 상품개발 등에 많은 규제가 상존한다. 자유화 정도에 따라 구분해볼 때 규제가 심한 국가군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들도 보험분야는 유보율이 커서 다른 금융분야보다 OECD 가입의 추가부담이 적다.

표 2-34 • 경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중 보험관련 자유화 항목

	항목	해설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규약	D/1 사회보장 및 시회보험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의 이전거래
	D/2 국제교역 상품 관련보험	국내거주자와 해외보험업자간의 국경간 거래
	D/3 생명보험	단체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의 국경간 거래체결 및 보험료, 인금, 보험금 등의 자본 이전
	D/4 기타 모든 보험	직화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중 단체 및 강제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의 국경간 거래체결 및 보험료, 배상금 등의 지급 이전
	D/5 재보험 및 재보험에 관련된 거래 및 송금	재보험 계약 체결 및 지급사유화, 재보험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보증에탁금 계좌 개설 및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간의 청산 등
	D/6 외국 보험업자의 지점 및 대리인의 사무소 설치 및 영업조건	외국 보험업자의 지점 및 대리점의 설립, 영업조건 및 본사와의 송금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XIII A. 비거주 보험업자가 거주자인 보험수익자에서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인금의 송금(리스트 A)	생명보험 계약 관련 자본 및 확정인금의 이전거래(보험의 계약, 보험료, 인금 등의 거래는 경상무역외 거래로 취급되어 경상무역외 거래 규약에서 다룸)
	XIII B. 거주자인 보험업자가 비거주 보험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인금의 송금(리스트 A)	

OECD 보험관련 자유화 규약은 OECD 설립 직후인 1961년 경상 무역 거래 및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 규약이 채택된 이후 1970년 말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국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서 1984년에 '해외 보험사업 운영규정'이 '외국 보험업자의 지사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건'으로 확대 개정되었고, 1987년에 유보검토가 완료되면서 보험분야에서 자유화가 큰 진전을 보였다.

OECD 보험관련 자유화 규약은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 중에는 본문에 보험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부속서에는 지점 및 대리점의 설립조건, 대표자의 조건, 예탁금의 설정조건, 자산운용 조건, 보험계약 및 체결, 보험료 및 보험금 송금 등의 자유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에는 부속서 중 보험과 관련한 이사회 의 권고서(No.32·76)가 들어 있다.

이러한 권고서의 내용은 국가간의 보험감독에 대한 통일과 제도적인 협조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과 보험종목에 대한 일반적 분류에 관한 사항으로 각국간 보험종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막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보험부문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은 자본거래 부문에서 설명하였다.

• 우리나라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보험중개업의 허용, 재보험업의 개방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
현재 한국은 보험산업 개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규제 정도가 심

한 편에 속한다. 보험분야 자유화 유보율이 올해 수입적하보험에 대한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국제교역 상품 관련보험의 거래(D/2)가 자유로워져 유보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OECD 회원국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 재보험산업에 대한 자유화가 추진중에 있고 보험가격 자유화 및 영업조건에 대한 규제도 계속적으로 완화될 예정이어서 자유화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부문의 자유화 규약보다 보험부문은 개방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부문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도 많은 조항을 유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부문에 대한 유보협상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OECD 보험분야 자유화 규약상에 기존 회원국의 자유화 정도와 한국의 자유화 정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일부 부문에 대해서 개방폭과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유화 항목들로는 '적하보험을 제외한 기타 손해보험의 국경간의 거래 및 지급 이전'을 다루고 있는 D/5 항목과 '외국 보험업자의 상업적 주재의 설치 및 영업조건'을 다루고 있는 D/6 항목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이 부문에 대해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해 이 부문에서의 개방압력이 타부문보다 클 것이다.

특히 외국 보험업자의 상업적 주재의 설치 및 영업조건에 관한 항목은 세계 6위권의 보험시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항목이다. 기존 국내 보험회사와 외국 보험회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면에서 다소 취약한 국내 보험회사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 동안 관련조항의 유보를 신

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보험시장은 OECD 가입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 부문이 쟁점사항으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 보험중개업의 허용 2) 재보험업의 개방 3) 해상운송보험의 완전한 국경간 공급거래 4) 보험회사 ENT(경제적 수요심사) 5) 손해사정업 및 보험계리업의 상업적 주재 허용 등이다. 이 부문은 장단기에 걸쳐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국내 보험회사와 외국 보험회사간의 직접적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5) 은행 및 금융서비스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더불어 OECD 가입에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사항은 금융서비스의 개방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자본자유화가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의 안정저해라는 부정적 면은 없으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과 이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과의 경쟁과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국내시장의 개방수준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미흡하므로 협상시 설립 및 영업제한에 대한 개방확대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보험서비스를 제외한 은행 및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은행 및 금융서비스의 현황과 평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개방 정도를 금융서비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험, 은행, 증권, 기타 투자자문 및 투자신탁, 신용조사 등의 순서로 개방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험서비스를 제외한 금

음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낮은 자유화 정도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자유화 정도는 타부문과 비교할 때 굉장히 낮은 수준(평균 자유화지수=78)으로 스웨덴 및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회원국 대부분이 대외개방을 어느 정도 유보하고 있다. 이중 이탈리아, 멕시코, 아이슬란드, 터키 등이 이 부문에 대한 개방 정도가 가장 낮으나 우리나라보다는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2-35 • OECD 회원국과의 비교 :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분야

자유화 항목	유보국가수	회원국 자유화지수 (완전자유화=100)	한국
지불서비스(E/1)	7	86	부분 유보
은행 및 투자서비스(E/2)	17	66	부분 유보
결제, 청산과 관리 및 예치서비스(E/3)	11	78	부분 유보
자산관리, 현금관리, 포트폴리오관리 등의 서비스(E/4)	13	74	부분 유보
자문 및 대리서비스(E/5)	6	88	부분 유보
요금,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E/6)	0	100	부분 유보
지점·대리점 등의 사무소 설치 및 영업조건 (E/7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23	56	부분 유보

설립 인허가 및 영업제한 규제 등의 쟁점화 예상

은행 및 금융산업의 부문에 대한 외국의 개방압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금융산업의 영세성, 금융업종의 지나친 세분화, 전문인력 미비, 전산화 미비 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미비를 고려하면 가입협상시 이 부문이 쟁점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현행 제한제도 중 OECD 가입 협상시에 가장 쟁점이 될 사항은 부속서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또는 영업소 설치 인허가에 관한 것이다. 외국은행 및 증권회사의 현지법인 설립은 각각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 및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사항이며, 설립허가를 얻지 못한 비거주 금융기관의 각종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다만 외국은행에 대한 지점 및 사무소, 투자신탁회사의 사무소 설치시 경제적 필요성 심사(ENT)는 폐지하기로 WTO 금융협상 양허안에 포함시켰다.

그 밖에 WTO 금융협상 양허안에서는 96~97년중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지분참여 허용, 외국 증권사에 대한 복수지점 설치 허용, 외국증권사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 심사 철폐, 외국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외국은행의 신용카드 취급 허용 등의 개방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은행의 영업제한에 대한 규제가 많으므로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자본금 인정,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금융 신상품 도입의 허용, 외환포지션 규제완화, 외화대출 용도제한 폐지, 중소기업 대출의무 폐지 등에 대한 요구가 가입협상시 제기될 소지가 높다.

증권업에 대한 자유화 요구는 경제적 필요성 심사 철폐, 외국증권

사의 영업기금 인하, 기존 국내증권사에 대한 지분참여 한도확대, 투자신탁업 및 투자자문업의 실질적 개방(95년 10월 투자신탁업 및 자문업 개방계획안 발표, 관련제도 현황 및 계획표 참조), 신용평가회사 설립시의 경제적 필요성 심사 폐지 및 외국인 지분참여 한도확대 등에 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외국은행이 점포망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은행의 소매금융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외국은행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국내은행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외국은행의 스왑한도의 축소 등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의 개방이 국내은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증권, 투자신탁, 투자자문, 신용평가 등의 경우 외국업계의 활발한 진출과 영업규제 완화는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국내시장의 잠식이란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겸업화 및 금융전업자 양성 등의 대내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업계는 대형화, 또는 전문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자본소득

자본소득에 관한 OECD 자유화 규약항목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으로 이는 설치허가를 받은 외국회사의 국내지사 등의 영업수익 송금 등을 말한다. 둘째, 배당금 및 이익분배금으로 기승인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이자(사채, 담보대출 등을 포함)로서 차관이자, 국제수익 증권발행자

의 이자, 투자전문회사의 예치금, 해외 현지금융 이자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있다.

OECD 회원국과의 비교평가와 전망

<OECD 국가와의 비교>

OECD 회원국들은 그리스를 마지막으로 가입국 전부가 자본소득의 송급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업수익, 임대료의 대외송금을 제외한 배당금 및 이익분배금과 이자의 송금은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고 단지 상속과 국민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원화표시 증권의 경우만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송급 자유화 전망>

외환제도개혁 소위원회 안에서는 97년 안으로 자유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경제원의 최종 외환제도 개혁안에는 언급이 없다.

(7) 여행 및 관광

여행 및 관광에 대한 OECD 자유화 규약은 국제여행 및 여흥·오락, 휴일·스포츠·사업·친지방문·사절단, 회의참석, 또는 건강·교육·종교 등과 같은 이면목적 이외의 해외체류에 적용된다.

자유화에 대한 평가

<OECD 국가와의 비교>

그리스, 아일랜드 두 나라를 제외한 23개국 전부 여행 및 관광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OECD 두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라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제한제도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즉 우리나라는 그리스와 같이 국내은행권 반입한도를 정해놓고 있고,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한도를 아일랜드의 경우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표 2-36 • 여행 및 관광의 자유화 규약 유보국가와 한국과의 비교

국명	제한내용
그리스	1. 국내은행권의 반입 (1) 거주자 입국의 경우 1인당 4만 드라크마 이상과 (2) 비거주자의 입국의 경우 10만 드라크마 이상의 경우만 적용됨. 2. 국내은행권의 반출 (1) 거주자 출국의 경우 1인당 4만 드라크마 이상과 (2) 비거주자 출국의 경우 2만 드라크마 이상의 경우만 적용됨.
아일랜드	6.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 여행당 1인당 1,650 US달러 상당의 신용카드 해외사용 한도에만 적용
한국	· 해외여행 경비한도 - 여행, 또는 해외체재의 목적 및 기간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정해진 경비한도. 1. 국내은행권 반입 - 거주자에 의한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국내은행권의 수입에 적용됨 6.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 다음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1) 규정에서 정한 기본경비, 체제비, 현지정착비, 기타 경비 등 인정된 범위내의 여행경비 (2) 여객운임, 숙박비, 현지교통비, 치료비, 통신비 등 당해 여행, 또는 체재에 직접 필요한 금액범위내에서의 추가적인 신용카드 사용

<향후 우리나라의 여행 및 관광경비 자유화 전망>

정부의 방침은 여행경비 한도에 있어서 외환자유화 2단계에서 경비한도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자유화하며,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는 3단계까지 해외여행 목적의 신용카드 사용을 완전 자유화한다는 계획이다.

(8) 영화

영화에 대한 OECD 자유화 규약은 사적(私的), 또는 극장상영용 및 TV방송용 프린트영화 및 기타 기록매체(재생수단 불문)의 수출, 수입, 유통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부속서 A의 부속서 V의 규정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OECD 회원국과의 비교평가와 전망

<OECD 국가와의 비교>

호주,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을 제외한 20개국 모두 영화부문 OECD 자유화 규약을 자유화하고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자유화를 전면 유보하고 있다.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데다 미풍양속을 어지럽힐 수 있는 외국산 영화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표 2-37 • OECD 국가와의 비교 : 영화 및 필름분야

자유화 항목	유보국가수	유보국가명	항목별 자유화지수 (완전자유화=100)
영화 및 필름	부분 유보 : 5개국 완전 유보 : 0	호주,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90

표 2-38 • 여행 및 관광의 자유화 규약 유보국가와 한국과의 비교

국가명	제한내용
호주	1. 외국제작 TV방송용 광고물 2. 외국산 TV프로그램의 시간할당 제한
핀란드	• 비디오 카세트
독일	• 독일어로 제작·녹음된 영화의 유통과 전면 사용에만 적용됨
이탈리아	1. 비디오 카세트 2. 영화 및 TV프로그램의 스크린 할당
한국	전면 유보

<향후 우리나라의 영화관련 수출입·유통의 자유화 전망>

정부의 자유화 방침은 지금까지 발표된 일이 없다. 이 부문의 자유화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요구될 것이나, OECD 가입에 따라 회원국가의 압력이 뚜렷하게 예상되고 있다.

(9) 개인소득 및 지출

개인소득 및 지출에 관련된 OECD 자유화 규약은 다음 일곱 가지로 나뉜다.

- a. 연금 및 유사한 성격의 기타 소득
- b. 금전적 보조
- c. 입국이민자 송금
- d. 해외소재 사유재산의 현상유지 및 수선
- e. 해외로의 소액 송금
- f.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등의 정기구독

g. 스포츠상금 및 경마이익

OECD 회원국과의 비교평가와 전망

<OECD 국가와의 비교>

25개 OECD 가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캐나다만이 제6항목의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정기구독에 관련하여 두 가지 제한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표 2-39 • 개인소득 및 지출자유화 규약 유보국가와 한국과의 비교

국가명	유보항목	제한내용
캐나다	6.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음악간행물의 정기구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순수예술, 문학, 학문, 또는 종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의 정기간행물로서 최근 4개 발간물 중 하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1. 캐나다 시장에서의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동 발간국내에서 배포된 책자에는 그 내용이 없는 특별판으로서, 별책부록, 또는 지역판 포함 2. 광고 게재면수의 5% 이상이 캐나다내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원 및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같은 공급원 및 조건의 제시가 캐나다 국외의 소비자들 주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3. 이민자 송금	건당 5천 US달러 초과외 송금은 제한
한국	6.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음악간행물의 정기구독	자가수요, 학술조사, 연구업무용이 아니거나 연예관련 음반, 녹음·녹화 테이프인 경우 이외의 구독료, 구입대금 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소득 및 지출관련 송금의 자유화 전망>

이 부문의 자유화는 그동안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평가하기에 따라서 현재의 제한제도도 자유화 항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민자송금, 소액송금 등의 항목에 대한 한도가 계속 늘어나면 이 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유화 정도는 OECD 가입시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0) 공공수입 및 지출

공공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OECD 자유화 규약은 다음 네 가지로 나뉜다.

- a. 조세
- b. 정부지출
- c. 공공운송, 우편, 전보, 전화서비스와 관련한 정산
- d. 영사수입금

OECD 회원국과의 비교평가와 전망

<OECD 국가와의 비교>

25개 OECD 가입국 전부 이 부문에 대해서 자유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1) 기타 일반

기타 일반에 관련된 OECD 자유화 규약은 다음 여덟 가지로 나뉜다.

- a. 모든 매체에 의한 광고

- b. 재판비용
- c. 손해배상금
- d. 벌과금
- e. 협회, 클럽 및 기타 단체의 회비
- f. 전문용역
- g. 계약취소, 또는 초과 지급금의 환급
- h. 특허권 및 상표등록

OECD 회원국과의 비교평가와 전망

<OECD 국가와의 비교>

기타 일반의 범주 중에서 전문용역에 대해서 터키가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24개 OECD 가입국이 이 부문에 대해서 자유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터키와 마찬가지로 전문용역 분야에서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은 전문용역거래의 대가로서 외국인 개인에 의한 해외송금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보내용을 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이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광고관련 용역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이 필요한데, 엄격히 본다면 이것을 유보조항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문용역 관련 자유화 전망>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부문 협상에서 제시한 양허안에 따르면, 96년 1월 1일을 기해 회계사, 세무사업이 개방된다.

3. 종합평가

(1) 대분류별 자유화지수 비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상무역의 거래 자유화 규약에서는 자유화 대상항목을 11개 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는 다시 57개 소항목으로 나뉜다. OECD 회원국의 경상무역외 거래 대분류별 자유화지수 현황을 우리나라와 비교·요약하였다(표2-40 참조).

요약된 바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를 볼 때,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항목 중에서 운송, 보험, 은행 및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세 항목의 자유화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덧붙여 여행 및 관광, 영화부문의 국제간 거래에 있어 규제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들은 자유화지수가 거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지수산정 방식

을 감안할 때, 대분류 산하의 소항목들 거의 모두에서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는 셈이다.

대분류 중 운송부문에서는 세번째 소항목을 유보하고 있는 국가수가 21개국에 달하고 있는데, 그 항목은 육로수송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육로운송은 제한의 경제적 의미가 거의 없는 사항이므로 유보의 실익이 거의 없다. 보험부문의 경우 세번째 소항목, 즉 생명보험을 유보하고 있는 국가수가 19개국에 이른다. 또한 여섯번째 항목인 '외국보험업자의 지점 및 대리인 사무소 설치 및 영업조건'을 유보하고 있는 국가수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물론 이들 경우에 대해서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다.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금융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점·대리점 설치에 대해서는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국의 신중함이 엿보인다. 인수업무, 중개-매매 서비스, 금융시장 정보, 의사교환 등이 해당되는 은행서비스 및 투자서비스 항목에 있어서도 자유화한 국가수가 8개국에 불과해 항목자유화율이 낮은 편이다.

자본이동에서의 대분류별 자유화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자유화 유보가 직접투자, 부동산거래,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의 세 항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접투자의 경우는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자유화지수가 상당히 높은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이 한 항목 이상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 산업상의 특성에 따른 고유산업 보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직접투자과 관련되지 않은 외국인의 자산운용 목적의 부동산

산거래에 있어서는 16개국이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는데, 이 중 4개국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신축이나 매수를 전면 유보하고 있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그리스 등 몇 국가를 마지막으로 회원국 모두가 자유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방향의 부동산거래 모두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자유화지수가 낮은 분야는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이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각국별로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는 소항목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여타의 부문에서는 각국이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는 소항목들의 조합이 서로 유사하지만 증권거래 항목에 있어서는 8개 소항목 중 외국인에 의한 증권의 매수에만 유보가 집중되어 있을 뿐, 그외에는 다양하게 유보항목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는 외국인에 의한 증권의 매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항목에 대해 전면 자유화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선진국들에 비해 미성숙된 증권산업으로 인해 외국인의 증권시장 참여에 관한 8개 항목 모두에 대해서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다.

자본이동이 단기간에 걸쳐 급격히 일어날 수 있는 단기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단기 금융시장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못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자유화를 전면적으로 유보하고 있고, 멕시코의 경우도 상당히 단기 자본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개혁과 함께 단기 금융시장까지도 자유화를 실시한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마지막으로 나머지 선진회원국들은 몇몇 항목들을 예외로 하고는 대부분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증권거래 항목에서와 같이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해 자유화를 전항목에 걸쳐 유보하고 있다.

표 2-40 • 대분류별 자유화지수 비교

자유화 규약 분류		대분류별 자유화지수	
		OECD 평균	한국
경상 무 역 외 거 래	업무 및 산업활동	99	93
	외국무역	100	100
	운송	87	58
	보험	81	58
	은행 및 금융서비스	78	50
	자본소득	100	75
	여행 및 관광	96	50
	영화	90	50
	개인소득 및 지출	100	93
	공공수입 및 지출	100	100
	기타 일반	100	75
	경상무역외 거래 전체	94	77
자 본 이 동	직접투자	75	50
	직접투자의 자산	100	100
	부동산거래	91	75
	자본시장에서의 거래	90	50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92	46
	기타 양도증서와 비증권 권리의 거래	96	35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95	44
	무역 및 용역거래 관련 신용	96	67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94	50
	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	98	69
	예금계정 거래	97	63
	외환거래	98	50
	생명보험	100	100
	개인적 자본이동	99	63
	자본의 실물이동	99	50
비거주자 봉쇄자금의 처분	100	100	
	자본이동 전체	94	56

금융선물, 옵션 같은 금융파생상품, 양도성 증서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단기 금융시장 거래에 대한 자유화 유보현황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멕시코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파생상품이 이제 막 도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론 이 부문 전 항목에 걸쳐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 금융발행 시장 참여와 외국인의 국내 발행시장 참여,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의 상장 등 3개 소항목에 대해서는 자유화를 전면 유보하고 있다.

국제수익증권, 혼합수익증권, 해외투자수익 증권 등의 공동투자증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회원국가들 중 상당수가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고, 멕시코, 터키 등 몇몇 국가는 둘, 또는 세 항목에 걸쳐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동투자증권 거래 전자자유화 항목에 걸쳐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다.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대분류 중 무역 및 용역거래 관련 신용, 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 예금계정 거래, 외환거래, 생명보험, 개인적 자본이동 등 나머지 부문들의 경우에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면적으로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2) OECD 회원국가별 자유화지수 비교

자유화지수는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같게 하고, 자유화된 경우는 100을, 부분 유보의 경우는 50, 완전 유보의 경우는 0을 주어 국가별로 경상무역외 거래와 자본이동의 자유화지수를 산정하였다. 물론 부분 유보의 경우는 나라마다 다양한 제한규정들이 있고 그 정도면에서 차이가 나 부분 유보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항목간에도 국가경제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에서 요약한 대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자유화를 집중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부문이나 그 부문의 소항목들은 국가별로 뚜렷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항목간 중요성의 차이로 인한 지수산정 방식에서의 분제점을 상당히 상쇄시킬 수 있다.

경상무역외 거래에 있어서 자유화지수가 90 미만인 국가는 표2-41을 참조하면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3개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자유화지수가 77로서 이들 3개국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전체의 경제력 측면에서 이들 3개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입과 동시에 적어도 이들 국가수준의 자유화 정도는 요구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편 자유화지수 95를 넘어서는 국가들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6개국으로서 대부분 선진경제국들이다.

부분 유보 항목에 있어서의 국가별 다양성의 차이는 사실 개관적으로 수치화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자유화지수 산정방식은 OECD 자유화 규약에 대한 국가별 자유화현황을 대략적으로 비교하는 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거래 자유화지수를 보면 회원국 대부분이 자유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가 처져 있는데, 그 중 특히 아이슬란드는 자유화지수 58로서 타회원국에 비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유화 수준(자유화지수 56)과 거의 비슷하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경상무역외 거래에서와는 달리 자본이동의 자유화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룩셈

부르크와 덴마크의 자유화가 가장 앞서 있어 이들 두 나라는 거의 완전한 경제활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2-41 • OECD 회원국가별 자유화지수 비교

1995년 2월 10일 현재

	경상무역의 거래 국가별 자유화지수	자본거래 국가별 자유화지수	OECD 자유화 규약 국가별 중자유화지수
호주	95	92	93
오스트리아	94	98	96
벨기에	95	95	95
캐나다	95	97	96
덴마크	97	99	98
핀란드	93	93	93
프랑스	92	95	94
독일	93	96	95
그리스	91	97	95
아이슬란드	92	58	71
아일랜드	95	98	97
이탈리아	88	97	94
일본	95	96	96
룩셈부르크	97	100	95
멕시코	86	84	85
네덜란드	95	98	97
뉴질랜드	98	97	97
노르웨이	95	97	96
포르투갈	93	92	92
스페인	97	97	97
스웨덴	98	97	97
스위스	95	98	97
터키	86	89	88
영국	97	98	98
미국	94	96	95
OECD 평균	94	94	94
한국	77	56	64

표 2-42 • OECD 회원국 경상무역의 거래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1995년 2월 현재

	A. 업무 및 산업활동							B. 무역						C. 운송						
	A-1	A-2	A-3	A-4	A-5	A-6	A-7	B-1	B-2	B-3	B-4	B-5	B-6	C-1	C-2	C-3	C-4	C-5	C-6	
호주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	△				
덴마크																△				
핀란드															△	△				
프랑스														△	△	△				
독일															△	△				
그리스								○								△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				
이탈리아		△														△				
일본																				
룩셈부르크														△	△	△				
멕시코															△	△				
네덜란드																△				
뉴질랜드																				
노르웨이																△				
포르투갈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터키								△								△				
영국																△				
미국														△	△	△				
분류별 자유화지수	소분류	100	98	100	100	100	100	98	100	100	100	100	100	100	88	82	58	100	96	100
	대분류					99					100							87		
한국의 자유화지수	소분류				△									△	△	△	△			
	대분류					93					100							58		

주 : ○ 최후 자유화 실시 × 전면 유보 △ 유보 ▲ 유보내용 변경

표 2-43 • OECD 회원국 경상무역의 거래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1995년 2월 현재

	D. 보험						E. 은행 및 금융서비스							F. 자본소득				G. 여행 및 관광
	D-1	D-2	D-3	D-4	D-5	D-6	E-1	E-2	E-3	E-4	E-5	E-6	E-7	F-1	F-2	F-3	F-4	
호주					×	△	△						△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					△	△	△			△					
캐나다						△							△					
덴마크			△					△					△					
핀란드						△	△		△	△			△					
프랑스	△	△	△		△		△						△					
독일	△	△	△				△						△					
그리스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아일랜드			△	△									*					
이탈리아	△	△	△	△	△	△	△	△	△	△			△					
일본			△	△	△			△	△				△					
룩셈부르크			△	△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	△				△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	△					△					
포르투갈		△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스위스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미국								△	△				△					
분류별 자유화지 수	소분류	100	86	62	70	90	78	86	66	78	74	88	100	56	100	100	100	96
	대분류	81						78						100				96
한국의 자유화지 수	소분류	△		△	△	△	△	△	△	△	△	△	△		△	△		△
	대분류	58						57						75				50

주 : ○ 최근 자유화 실시 × 전면 유보 △ 유보 ▲ 유보내용 변경

*는 상호주의원칙하의 자유화 항목임

표 2-44 • OECD 회원국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1995년 2월 현재

		H 보험	I. 개인소득 및 지출							K. 공공수입 및 지출			
		H1	J1	J2	J3	J4	J5	J6	J7	K1	K2	K3	K4
호주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					
덴마크													
핀란드		△											
프랑스													
독일		△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											
일본													
북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항목별 자유화	소분류	90	100	100	100	100	100	98	100	100	100	100	100
자유화	대분류	90				100						100	
항목별 자유화	소분류	△			△								
자유화	대분류	50				93						100	

주 : ○ 최근 자유화 실시 · 전면 유보 △ 유보 ▲ 유보내용 변경

표 2-45 • OECD 회원국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1995년 2월 현재

	L. 기타 일반								경상무역외 거래 국가별 자유화지수	
	L.1	L.2	L.3	L.4	L.5	L.6	L.7	L.8		
호주									95	
오스트리아									94	
벨기에									95	
캐나다									95	
덴마크									97	
핀란드									93	
프랑스									92	
독일									93	
그리스									91	
아이슬란드									92	
아일랜드									95	
아바리아									88	
일본									95	
룩셈부르크									97	
멕시코									86	
네덜란드									95	
뉴질랜드									98	
노르웨이									95	
포르투갈									93	
스페인									97	
스웨덴									98	
스위스									95	
터키							△		86	
영국									97	
미국									94	
항목별 자유화 지수	소분류	100	100	100	100	100	98	100	100	OECD 평균
	대분류	100								94
한국의 자유화 지수	소분류	△				△	△		△	한국
	대분류	75								77

주 : ○ 최단 자유화 실시 × 전면 유보 △ 유보 ▲ 유보내용 변경

표 2-46 • OECD 회원국 자본이동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1995년 2월 현재

	I. 직접투자						II. 직접 투자의 청산		III. 부동산거래				IV.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								
	A1	A2	A3	BI	B2	B3	A	B	A1	A2	BI	B2	A1	A2	BI	B2	C1	C2	D1	D2	
호주	△	△	△						△						△	△	△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	△					
캐나다	△	△	△						×								△				
덴마크	△								△												
핀란드	△	△	△						×								△		△		
프랑스	△	△	△										△				△				
독일	△	△											△		△		△				
그리스	▲	▲	▲	○	○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이탈리아	▲	▲																			
일본	△	△	△	△	△	△													△		
룩셈부르크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						△								△				
노르웨이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스페인	△	△	△						△								△				
스웨덴	▲	▲	▲						▲								▲				
스위스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미국	△	△	△													▲	▲	△			
항목별 자유화 지수	소분류	52	56	62	94	94	94	100	100	62	100	100	100	90	96	82	88	72	98	94	100
	대분류	75						100						91				90			
한국의 자유화 지수	소분류	△	△	△	×	△	△	△		△		△		△	△	△	△	△	△	△	△
	대분류	50						100						75				50			

주 : ○ 최근 자유화 실시 × 전면 유보 △ 유보 ▲ 유보내용 변경

표 2-47 • OECD 회원국 자본이동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1995년 2월 현재

	V. 단기 금융시장 거래													VII. 기타 양도가능 금융수단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												
	A1	A2	B1	B2	C1	C2	C3	C4	D1	D2	D3	D4	A1	A2	B1	B2	C1	C2	C3	D1	D2	D3				
호주			△	△				△							△	△										
오스트리아																										
벨기에			△	△											△	△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												△					
프랑스	△		△																							
독일	△		△																							
그리스	○	○	○	○	○	○	○	○	○	○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탈리아																										
일본						△																				
룩셈부르크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	○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											
터키			△	△					○																	
영국																										
미국			▲	▲																						
항목별 자유화 지수	소분류	90	94	78	88	94	94	94	94	92	94	96	94	96	96	88	92	98	98	98	94	98	98			
	대분류	92													96											
한국의 자유화 지수	소분류	△	△	×	△	△	△	△	△	△	△	△	△	×	△	×	×	△	△	△	△	△	△			
	대분류	46													35											

주 : ○ 최근 자유화 실시 × 전변 유보 △ 유보 ▲ 유보내용 변경

표 2-48 • OECD 회원국 자본이동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1995년 2월 현재

	VII 중동투자증권의 거래								VIII 무역 및 용역거래 관련 신용			IX 금융장 신용 및 대부		X 유보 보증 및 Back-up Facility									
	A1	A2	B1	B2	C1	C2	D1	D2	A	B	B	A	B	A1	A2	B1	B2	A1	A2	B1	B2		
호주											△		△										
오스트리아																							
멕시코			△	△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															
프랑스			△	△																			
독일																							
그리스	○	○	○	○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				△																
일본																							
북해협지역																							
멕시코					△		△					△	○								△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	△	○		○		○	○	△	△	△									○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타이							○		▲	▲	○		○										
영국																							
미국			○	○																			
향후별 자유화 지수	소 분류	98	98	82	90	92	98	96	100	96	96	96	94	94	100	100	96	96	100	98	96	96	
	대 분류	95						96			94		98										
한국의 자유화 지수	소 분류	△	△		△	△	△	△	△	△	△	△	△	△	△	△			△	△	△		
	대 분류	44						67			50		69										

주 : ○ 최후 자유화 실시 × 전변 유보 △ 유보 ▲ 유보내용 변경

표 2-49 • OECD 회원국 자본이동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1995년 2월 현재

	XI 예금계정거래				XII 외환거래						XIII 생명보험		VX 개인별 자본이동								
	A1	A2	B1	B2	A1	A2	A3	B1	B2	B3	A	B	A	B	C	D	E	F	G	H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	△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	○	○	○				○	○	○			○							○	
스페인			○	○																	
스웨덴			○	○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항목별 자유화 지수	소분류	96	98	96	98	98	100	96	94	100	100	100	100	98	98	98	100	100	98	100	
	대분류	97				98						100		99							
한국의 자유화 지수	소분류		×	△	△	△		×	×				△	△	△				△		
	대분류	63				50						100		69							

주 : ○ 최근 자유화 실시 × 전면 유보 △ 유보 ▲ 유보내용 변경

표 2-50 • OECD 회원국 자본이동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1995년 2월 현재

	XV. 자본의 상품이동				XVI. 비거주자 통제자금의 지분				자본거래 국가별 자유화지수	OECD 자유화 규약 국가별 총자유화지수	
	A1	A2	B1	B2	A	B1	B2	C			
호주									92	93	
오스트리아									98	96	
벨기에									95	95	
캐나다									97	96	
덴마크									99	98	
핀란드									93	93	
프랑스									95	94	
독일									96	95	
그리스		○	○	○	○	○	○	○	97	95	
아이슬란드									58	71	
아일랜드			○	○					98	97	
이탈리아			△	△					97	94	
일본									96	96	
룩셈부르크									100	99	
멕시코				△					84	85	
네덜란드									98	97	
뉴질랜드									97	97	
노르웨이									97	96	
포르투갈									92	92	
스페인									97	97	
스웨덴									97	97	
스위스									98	97	
터키									89	88	
영국									98	98	
미국									96	95	
항목별 자유화 지수	소분류	100	100	98	96	100	100	100	100	OECD 평균	OECD 평균
	대분류	99				100				94	94
한국의 자유화 지수	소분류	△	△	△	△					한국	한국
	대분류	50				100				56	64

주 : ○ 자유화 실시 × 전변 유보 △ 유보 ▲ 유보내용 변경

제 3 장

자본자유화의 영향 및 파급효과

지금까지 우리는 경상무역의 거래 및 자본거래 자유화 등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보현황 및 금후계획 등을 살펴보고 OECD 각국과 이를 비교·평가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OECD 가입시의 가능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분야에서 자유화가 진전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국제자금 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영향을 살펴본 다음 자본유출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소개한다.

자유화의 파급효과는 먼저 각국의 사례분석과 VAR 모형분석을 통해 자본 유출입이 우리나라 거시경제 변수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다음, 은행·증권 등의 금융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여기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 대응방안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1. 자본자유화의 파급효과

(1) 자본 유출입의 영향과 국제자금의 성격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그 변동폭도 확대된다는 데 있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국내 금융시장을 직접적으로 세계 금융시장과 연결시킴으로써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가 곧바로 자본 유출입의 변동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의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금리차와 환율의 변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국내외 금리차의 확대와 환율절상 등이 자본유입을 유발한다. 과도한 자본유입은 환율, 물가, 금리, 주가 등 국내 가격변수들의 변동을 초래하여 경제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유입된 자본 중

투기적 성격이 강한 국제 부동산자금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출로 반전되어 환율절하와 금융위기를 초래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초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선진국의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국제자금이 신흥시장에서 미국 중심의 선진국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94년 한해 동안 멕시코의 4백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감소와 신흥시장 투자자금의 순유출에 의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멕시코는 인위적으로 고금리와 고폐소화 정책을 통해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지난해 말 고폐소화 정책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자본이 단기간에 대거 국외로 유출되어 폐소화 폭락과 금융위기를 맞고 말았다.

1995년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1980년대초 남미국가들Southern Cone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해외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역류에 대한 거시경제적 적응은 아주 힘들 수도 있다. 자본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해외 자본흐름의 급격한 변동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제 자본시장은 법률시행 절차상의 문제들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매우 불완전하다. 상품교역과는 달리 금융자산 거래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지불약속에 근거한 미완결된 거래이다. 계약 체결과 이행 사이의 시차는 낙후된 금융시스템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자본유입이 부족해질 경우 대외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내투자의 축소가 요구되는데, 저축-투자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저축이 상승하기보다는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자본유입의 감소는 투자감소를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셋째, 태화된 자본유입은 대내신용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자본유입이 유출로 역전될 경우 국내이자율은 상승하며 국내자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한 통화증발이나 부실기업의 정리로 인한 재정적자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단기간의 과도한 자본유입은 실질환율의 절상을 가져올 수 있다. 실질환율의 절상은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감소와 수입 확대를 가져와 성장에 차질을 준다. 단기간의 일시적 절상은 최적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교역증진, 수출 다변화와 생산성 증가를 저해하며, 자본의 급속한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 일시적인 자본흐름의 결과로 실질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 기계·설비투자가 현저히 감소되고, 따라서 장기적 성장이 저해된다.

이와 같은 자본 유출입의 불안정성이 가져오는 경제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출입 자본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터너(Turner, 1991)는 국제자금의 장기적 흐름 대 일시적 흐름, 자율적 흐름 대 수용적accomodating 흐름 사이의 차이를 보기 위해 서로 다른 자본계정들의 변동을 연구하였다. 터너는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 자율적 흐름일수록 장기적이고, 수용적 흐름일수록 단기적인 경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여, 가장 자율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이동에서부터 가장 수용적이고 일시적인 이동까지 장기 은행대부, 외국인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단기 은행자금 이동의 순서로 자본 이동을 분류했다.

그는 위의 분류를 따라 다음과 같은 자본흐름의 특성을 발견하였

다.

첫째, 장기 은행대부의 경우 평균만기는 OECD 국가들의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만기보다 개발도상국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만기가 더 길다. 90년대의 OECD 차입자에 대한 평균만기는 5년에서 6년 사이인 데 비해 개발도상국 차입자에 대한 만기는 6년에서 9년 사이이다. 이는 개도국 차입자에 대한 장기대부에서 장기 프로젝트론 loan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는 장기이윤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상 갑작스런 자본이동이 거의 없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연도별로 변동폭이 크지만, FDI의 자본총량은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매우 적다.

셋째, 포트폴리오 투자는 안정성면에서 투자내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금펀드와 생명보험회사에 의해 행해지는 투자는 장기투자자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자금이 신흥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투자운용 전략보다는 장기보유(buy-and-hold) 전략하에 투자되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다른 대부분의 투자자들과는 달리 연금펀드나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에 근거한 정기적인 자금유입과 상기부채(만기 전 인출이 없는)로부터 수익기반을 마련하며, 이들 모두는 유동성 위험이 거의 없다.

넷째,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거주자, 민간 외국인 투자자, 관리기금(국가기금과 상호기금)에 의한 주식관련 투자는 단기수익을 지향한다. 1990년대 초엽 미국과 기타 OECD 회원국들은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위험이 크지만 수익률이 높은 투자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로 인하여 주로 상호기금을 통해 신흥 주식시장으로 많은 투기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다섯째, 기타의 포트폴리오 투자, 특히 채권관련 투자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90년대 남미의 자본유입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였던 회사채나 정부채 발행을 통한 차입은 주로 금리차이에 의해 이루어져 결국 자금흐름의 역전가능성을 높였다.

여섯째, 단기의 은행대부와 차입수단들은 중기 유로어음, 유로 상업어음같이 주기성과 유동성이 매우 크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기업과 은행들의 이와 같은 차입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터너의 국제 이동자금의 분류와 그 특성에 대한 설명은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과도한 자본이동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금들의 이동은 단기적으로는 그 특성에 따라 국내외 금리차와 환율에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물가수준, 경제정책 등 경제의 보다 근본적인 부분, 즉 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성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은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하여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반면, 높은 물가수준은 환율의 평가절하를 예상하게 하여 자본유입을 둔화시킨다. 또 다른 관점에서 정부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시 그 자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단기 부동산자금의 성격을 띤 자금들에 대해서는 유입을 적절히 억제하고 그에 대해 불태화정책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자금흐름의 역전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자본 유출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자본자유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

제여건이나 제도, 자본 유출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자본 유출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운용하고 있는 환율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 유출입과 관계없이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외환의 초과공급, 또는 초과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따라서 자본 유출입의 변동이 직접적으로 국내통화량 변동에 영향을 준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은 환율의 변동을 통해 흡수된다. 현실적으로는 자본 유출입 변동의 일부는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되고 일부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상례이다. 우리나라 역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 하면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유입은 일차적으로 국내통화량의 증가 및 금리하락 효과를 가진다. 자본유입으로 국내통화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금리의 하락을 가져오며, 금리하락은 자본유입을 둔화시키고 환율의 절상압력을 줄인다. 그러나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그러나 자본유입의 궁극적 파급효과는 유입된 자본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생산적인 부문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투자확대 및 생산증대로 이어질 경우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질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의 절상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로 인해 경상수지는 악화되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될 수도 있으나, 유입자금이 비

생산적 부문에 머물러 통화팽창 압력으로 작용하면 결국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금리도 오히려 자본유입 이전 수준보다 높아짐으로써 자본유입이 오히려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응책으로 통화긴축을 하면 금리는 더욱 오르고 높은 금리로 인해 해외자본 유입이 가속화되는 한편, 경상수지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으로 인한 자본수지 흑자로 환율이 절하되지 못하고 오히려 절상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3) 자본 유출입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자본 유출입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정부의 정책반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불태화정책(Sterilization)을 들 수 있다.

불태화정책은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인한 통화증발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국내의 재정, 또는 금융을 긴축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의 증가를 국내정부, 또는 민간부문의 통화공급 축소로 상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불태화정책은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금융시장이 외부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발달해 있어야 그 실효성이 있다. 특히 채권시장의 규모가 크고 공시제도 등의 도입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불태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본유입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장기간에 걸쳐 유입될 경우 불태화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무리

가 따를 수 있다.

무리한 불태화정책은 전체 금융시장에 자금경색을 가져오거나 전체는 아니더라도 원활한 자금순환을 막아 부분간 자금수급에 불균형을 가져오기 쉽다. 금융시장의 자금사정 악화는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해외자금의 유입 이전보다 높은 금리가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추가자본 유입가능성은 불태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면 불태화정책은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의 추진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자본도입이 활발하여 자본수지가 연간 1백억 달러 흑자에 이르고 있으나, 다른 한편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전체 종합수지는 약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즉 자본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적자로 일부 상쇄되면서 통화증발 압력으로는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다음에는 각국의 사례분석과 VAR 모형을 이용해 자본자유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주요국의 자본자유화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입 현황

(1) 자유화의 배경

자본자유화를 실시한 각국의 배경은 나라마다 제각기 다르다. 대내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유화가 추진되기도 할 뿐 아니라 대외적인 자유화 압력에 의한 경우도 있으며,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자유화 사례도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80년대 후반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국내 통화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본유출 축진의 필요성이 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었다. 대만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물가안정 속에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자유화를 실시하기에 알맞은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대만은 83년 8월, 3단계 자본자유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

따라 87년에 외환자유화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90년 이후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경상수지 흑자가 증대되면서 이의 해소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등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80년대말 해외 직간접 투자를 크게 완화하여 자본유출을 촉진한데 이어 90년대 들어서는 급격한 자본유입을 우려하여 자유화를 미루어왔던 국내 자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였다.

외환자유화는 87년 7월에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자본유출을 촉진하였고, 92년 10월에는 국내외 송금한도를 크게 확대하여 사실상 외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했다.

자본자유화는 88년 2월 외국 증권회사의 지점설립을 허용하였고, 90년말 외국 기관투자자의 직접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하였다.

일본의 자본자유화 추진배경은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자유화 의무 이행 압력 등 선진국들의 자본자유화 요구도 컸지만,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누증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 필요성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자유화의 추진 등 내부적 필요에 의해 자유화가 추진된 측면도 강했다. 특히 일본은 1964년에 OECD에 가입하였는데 이때만 해도 OECD 가입을 위한 의무이행 요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았고 후발선진국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배려도 컸다.

자본자유화 추진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여건은 전체적으로 고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흑자 증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금리는 대체로 5~7% 수준으로 높은 성장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일본의 자본자유화는 60년대초에 시작하여 80년대초까지 장기간

에 걸쳐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70년대에 몇 차례의 석유파동에 따라 경상수지 기조가 바뀌었으며 이에 맞춰 자본자유화 규제와 완화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이 커지면서 자본유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80년 12월에 외환관리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였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들의 자본자유화 추진배경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유치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자본자유화 추진은 대부분 70년대말부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자유화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중남미국가들은 개방 당시의 경제여건이 자본자유화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자도입의 필요성 때문에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2) 자본자유화 이후 아시아와 남미의 자본이동의 성격비교

여기서는 아시아와 남미 각국의 평균적인 자본자유화 시기 직후가 되는 1990년대의 대규모 자본이동을 두 개의 지역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와 같이 두 지역을 대비해보는 이유는 아시아와 남미 두 지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과 아시아(필리핀 제외)지역과 남미(칠레 제외)지역의 경험이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지역내에서의 각국의 정책과 경험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르다. 이는 국가별 분석으로 지역적 분석이 보완되어야 함을 뜻한다.

표 3-1 • 아시아와 남미의 대규모 자본이동(연평균)

	1978~82		1990~93	
	아시아	남미	아시아	남미
총 자본유입(10억 달러) (구성항목별 비중 : %)	19.3	36.5	74.7	36.7
• 외국인 직접투자	15.0	15.1	37.1	33.5
• 포트폴리오 투자	3.6	4.9	14.2	68.1
• 기타 장기자본	53.9	63.6	21.7	-32.1
• 기타 단기자본	27.5	16.4	27.0	30.5
순자본유입(10억 달러)	15.8	26.3	46.6	23.8
외환보유고 증가(10억 달러)	6.9	0.6	31.0	18.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994

1990년대초 자본이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와 남미 두 지역이 몇 가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80년대의 외채문제를 야기했던 자본이동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 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초의 자본유입은 정부예산 적자나 공공기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민간투자가와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양지역에서 은행대부가 우세를 보였던 80년대와는 달리 자본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의 형태로 양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양지역 평균을 볼 때, 총자본 유입에서 해외 직접투자(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78년에서 82년 동안에는 15%였던 것이 90~93년 기간 동안에는 35%로 증가했다. 두 지역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유사점은 GDP에 대해 순자본유입 규모가 크다는 것과, 이들 자본이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종종 연결되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유입의 구성과 원천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총자본 유입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아시아가 남미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성격상 두 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미에서는 그것이 주로 부채-지분 스왑과 사유화의 형태를 띠는데, 이는 반드시 추가적인 자본형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새로운 기업의 인수나 설립의 형태를 띠었다. FDI의 내용상 차이는 거시경제적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아시아에서의 FDI는 대내투자의 증가나 수출용 생산 쪽으로 투입되기가 더 용이했다.

둘째, 포트폴리오 유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성격은 아시아와 남미 두 지역간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포트폴리오 자본유입은 총자본 유입의 단지 14.2%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 남미의 경우는 68.1%나 된다. 남미의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중 1/4만이 지분관련 자금유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분관련 포트폴리오 자본유입의 비중은 아시아가 남미보다 더 높을 뿐 아니라, 주식매입 기관이 연금 및 보험회사 등과 같은 장기투자자들이며, 이에 따라 주식 투자 자금 자체도 남미보다 더 장기적·안정적 성격을 지닌다.

세번째 차이는 IMF에 의해 '장기'로 분류된 대부가 아시아의 총자본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인 반면, 남미의 경우에는 브래디형 Brady-type 외채감축과 신규대부의 제한으로 인해 장기대부가 오히려 마이너스의 값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미의 기업들과 은행들은 아시아의 차입자보다도 단기 차입수단을 약간 많이 끌어썼다.

장기적 자본유입과 일시적인 자본유입을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은 특정한 자본유입을 수용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와, 얼마를 수용하고 얼마를 막을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3) 자본자유화의 영향

일본의 자본자유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졌고 경제여건도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적합해 전체적으로 자유화에 따른 큰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은 자본자유화 추진기간 중에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내외 금리차로 인한 외화유입 등 통화 및 시장교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본은 자본수지보다는 경상수지 흑자의 누증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이 커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유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자본시장 개방보다는 오히려 70년대 석유위기나 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와 그에 따른 환율절상 등이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70년대 들어서부터는 일본경제의 급부상으로 국제 결제통화로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엔화환율의 절상이 시작되었다. 자본자유화 계획에 따른 엔화표시 해외채권 발행 등은 유로엔채시장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어 동경 자본시장을 국제 자본시장으로 끌어올리는 기초가 되었다.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 시장의 경우 규제가 점진적으로 풀어져 자본자유화가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개방초기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화 기간 동안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꾸준히 유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등 경제여건이 일본의 개방시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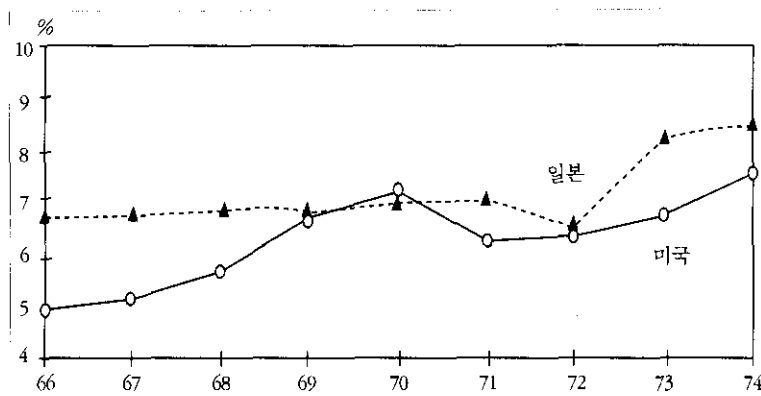
못하다.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자본수지 흑자가 확대될 경우 환율이 오히려 절상되고, 이에 따라 국제 가격 경쟁력 약화, 경상수지 악화 등의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표 3-2 • 한국과 일본의 개방초기의 경제비교

구분	일본					한국			
	1967	1968	1969	1970	1971	1991	1992	1993	1994
경제성장률(%)	13.0	12.7	10.9	10.3	7.3	9.1	5.0	5.6	8.4
물가상승률(%)	4.0	5.3	5.6	7.6	6.3	9.3	6.2	4.8	6.2
경상수지(억 달러)	-1.9	10.4	21.2	19.7	57.9	-87.3	-45.3	3.9	-47.8
외환보유고(억 달러)	20.0	28.9	34.9	43.9	152.3	137.3	171.5	202.6	256.7

금리수준을 보면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의 채권수익률이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금리차가 점차 좁혀들어 그 격차가 1% 이내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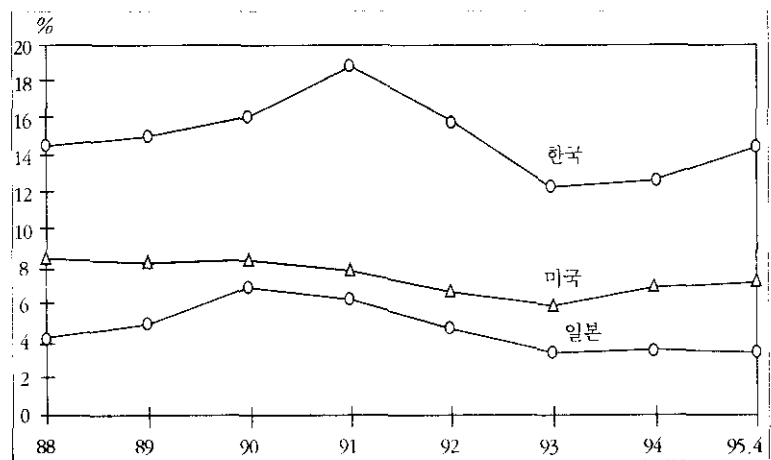
그림 3-1 • 일본 자본시장 개방 당시의 금리차 비교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본시장 개방시 해외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자칫 경제를 크게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진 속도는 일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60년대초에 시작하여 80년대초까지 거의 20년에 걸쳐 완만하게 추진한 데 비해 우리의 경우 80년대말에 시작하여 90년대말까지는 자유화를 완성한다는 계획하에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 • 한국 자본시장 개방 당시의 금리차 비교



특히 최근에는 WTO 체제의 출범, OECD 가입추진과 맞물려 자본시장 개방속도를 더욱 빨리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만의 경우 자본자유화의 결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발생으로 인한 통화증발과 환율절상 압력이 자본 순유출의 증가로 완화되었

다. 개방초기에 증시과열 현상과 핫머니의 유입으로 한때 환율절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90년대 들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자본유출 촉진책에 의해 자본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종합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80년대말까지 가파르게 절상되던 대만환율의 절상추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내외 금리차로 인한 자금유입 유인이 크지 않았고, 가급적 국내자본시장 개방을 늦추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항상 자본유출을 하회하였다.

표 3-3 •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

(연평균, %, 억 달러)

	1980~84	1985~89	1990~93
GNP 성장률(%)	6.1	10.0	6.2
소비자물가상승률(%)	1.8	1.4	4.4
M2증가율(%)	22.2	22.0	16.3
금리수준(CP, %)	11.7	5.4	8.6
경상수지(억 달러)	26.5	130.1	92.3
자본수지(억 달러)	5.7	-18.8	-71.4
대미 환율절상률(%)	-8.7	50.8	-1.7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들은 70년대말부터 개방을 시작했으며, 8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개방을 이루었다. 이들 국가들은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자본시장 개방 노력을 통해 해외자금을 유치하고 왕성한 투자활동을 유도하여 80년대 후반까지는 유입된 해외자본이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반적으로 동남아국가들의 자본시장 개방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부터 자본유입이 급증하면서 해

외부분 통화증발 압력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통화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는 한편 투자와 생산증대가 지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났다. 해외부문에서의 통화 공급 증대로 인해 물가상승과 환율절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그 대응책으로 이들 국가들은 성장정책 중심에서 긴축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외자유입의 억제 및 자본유출 촉진정책을 수행하였다.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절상압력을 받고 있는 자국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추가적인 절상을 막았다. 이와 동시에 긴축으로 인한 금리상승과 그에 따른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하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어 통화흡수가 이루어진 태국을 제외하고는 자본유입 급증에 따른 불태화정책으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였다.

표 3-4 • 말레이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연평균, %, 억 달러)

	1980~84	1985~89	1990~93
GDP 성장률(%)	6.9	5.0	8.7
소비자물가상승률(%)	6.0	1.3	4.0
M2 증가율(%)	16.2	8.7	18.0
금리수준(CP, %)	6.5	5.3	7.7
경상수지(억 달러)	-23.1	7.0	-22.1
자본수지(억 달러)	29.3	1.4	62.3
대미 환율절상률(%)	-1.3	-2.9	1.3

표 3-5 • 태국의 주요 경제지표 (연평균, %, 억 달러)

	1980~84	1985~89	1990~92
GDP 성장률(%)	5.9	8.6	8.6
CPI 상승률(%)	8.5	3.2	5.3
M2증가율(%)	21.2	17.7	20.7
금리수준(푼, %)	14.5	9.2	10.1
경상수지(억 달러)	-21.3	-11.6	-71.8
자본수지(억 달러)	20.9	26.3	101.9
내미 환율절상률(%)	-2.9	-1.5	0.4

한편 중남미국가들에서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사이와 90년대 초반에 많은 해외자본이 유입되었다. 특히 중남미로의 자본 유입은 낮은 국제금리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주된 요인이었다. 국제적 저금리는 중남미 채무국들의 외채상환 비용을 낮추고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높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선진국 자금들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들 국가로 국제자금이 급속히 유입되었다.

그러나 높은 금리와 초고율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전하지 못한 경제상황하에서 추진된 자본시장 개방은 마이너스 성장과 인플레 가속, 외채누적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들의 경우 저축률이 높아 경상수지 악화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나,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들의 경우 저축률이 계속 낮아짐으로써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외채가 누적되어 갔다.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유입의 촉진을 통하여 보전할 목적으로 국내금리를 인상하고 환율을 능력 이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기업

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 결과 유입된 자본의 성격 및 운용면에 있어서 중남미국가들과 동남아국가들 사이에는 차이가 컸다. 즉 동남아국가들의 경우 유입자본의 절반 정도는 직접투자였으나, 남미에서는 그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표 3-6 • 아시아와 남미의 1990년대 자본유입의 선행조건 지표

	구조차익 1970~88 평균 (% of GDP)	정부예산 흑자 1988~93 (% of GDP)	공공부채 1994 (% of GDP)	암시장 프리미엄 무역개혁 후 1992년까지의 평균	수출증가율 1980~92 평균	중 국내저축 1989~91 평균 (% of GDP)
중국	n.a.	-2.6	n.a.	88.0	11.9	33
인도	1.5	-7.4	45	23.8	5.9	24
인도네시아	1.4	-0.6	39	8.9	5.6	37
한국	1.6	0.5	22	3.0	11.9	36
말레이시아	1.3	-3.7	58	0.0	11.3	33
필리핀	1.0	-3.3	96	4.6	3.7	20
태국	1.0	3.3	16	1.2	14.7	34
아시아 평균	1.3	-	-	-	9.3	31
아르헨티나	4.2	-5.9	22	21.1	2.2	19
브라질	2.3	-46.9	40	51.7	5.0	24
칠레	3.7	2.0	18	16.1	5.5	28
콜롬비아	2.1	-0.4	22	12.9	12.9	24
멕시코	3.1	-3.2	32	10.3	1.6	20
페루	3.6	-4.0	42	11.5	2.5	17
남미 평균	2.9	-	-	-	-	22
알고르카스탄	2.0	-7.4	-	7.7	4.3	14

자료 : 구조차익 Easterly and Schmidt-Hebbel(1994)

정부자료 J. P. Morgan, *Emerging Markets Outlook*, December, 1994

암시장 프리미엄 Dean, Desai and Riedel(1994)

수출 World Bank, *WDR*, 1994

저축 World Bank, *World Table*, 1994

이에 따라 아시아국가들에서는 GDP에 대한 투자지출 비율이 자본 유입 기간에 상승했으나, 중남미국가들은 투자지출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동남아국가에서의 자본유입은 직접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므로 유입자금이 생산부문에 머물러 생산확대에 이용됨으로써 통화증발이 과도한 물가상승이나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남미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된 부동산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머물면서 투기자본Hot Money적 성격을 띠었으므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졌고, 물가상승과 외환시장 불안요인이 되었다.

표3-6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자본유입을 위한 전제조건들에 있어서 아시아(특히 동아시아)와 남미간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첫째, 튼튼하지 못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남미는 과거에는 아시아 보다는 통화팽창 재정조달 방식에 더 많이 의존해왔다.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GDP 대비 조폐이익(액면과 실비의 차액에 의한)에 의해 확인된다. 1990년대초까지 대규모의 자본유입을 경험한 국가들 대부분이 그들의 재정적자를 줄여왔던 반면, 인도와 브라질은 지속적인 자본유입에 대한 재정적 요구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필리핀은 공공부문 부채가 상대적으로 커서 재정적으로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또 하나 두 지역이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것은, 1990년대의 대규모 자본유입이 아시아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가져왔지만, 남미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과도한 실질환율의 절상으로 인해 자본유입이 진행됨에 따라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1990년대 자본유입이 있기 이전에, 남미의 압시장 프리미엄은 아시아에 비해 크게 높았는데, 이는 남미에서 반수출 성향이 뚜

렸했으며 자본유입으로 인한 악영향의 위험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수출증진 노력이 남미보다 아시아에서 더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이는 훨씬 더 동적인 수출성장률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것이 또한 의미하는 것은 실질환율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무역진흥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수출 다변화와 수출용 생산장려 노력이 받은 타격이 아시아보다 남미가 더욱 컸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뚜렷한 차이점 하나는 총 국내저축 수준이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GDP 대비 총 국내저축이 30%대에 이른다. 남미에서는 훨씬 낮다. 그러나 두 지역내에 중요한 예외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칠레, 필리핀).

표3·7을 보면, 전반적으로 자본유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순환(virtuous cycle)에 필요한 요소들은 남미보다는 아시아에서 더 찾아보기 쉽다.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의 자본수입국들은 해외저축 중 소비로 흘러 들어간 부분이 크지 않았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우 민간부문은 자본유입에 대응하여 투자를 높였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정부소비가 자본유입 직후 상당히 줄어들었다. 대조적으로 남미의 자본수입국들은 자본유입을 소비부문으로 많이 흘려보냈다(칠레, 콜롬비아 제외).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민간소비가 크게 늘어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는 정부소비가 GDP 대비 40% 이상까지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아시아와 달리 남미는 자본유입이 진행될 때, 평균저축률 이상으로 한계저축률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988년 이후 자본·산출량 비율 증가로 측정된 투자효율이 두 지역간 매우 대조적인 한편, 투자와 성장률은 아시아가 남미보다 상당

히 높았다. 건설투자보다 기계설비투자가 장기적인 성장력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부채상환에 필요한 교역재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표 3-7 • 아시아(89~93 평균)와 남미(85~89 평균)의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경제적 조정

(% of GNP)

	민간소비 변동	정부소비 변동	설비투자 (89~91년 평균)	실질GDP 증가율(94년)	단기외채 (94년말)
중국	-1.5	0.1	n.a.	11.5	2.4
인도	-4.2	-0.3	12.5	6.0	3.2
인도네시아	-4.3	-0.6	n.a.	7.0	13.2
한국	-0.7	0.5	12.8	8.0	5.6
말레이시아	2.0	-1.7	n.a.	8.6	8.6
필리핀	1.8	1.4	10.6	4.7	12.1
태국	-3.7	-1.8	19.3	8.5	15.7
아시아 평균	-1.5	-0.3	13.8	-	-
아르헨티나	-1.1	4.3	3.6	5.8	3.4
브라질	-2.3	4.0	n.a.	4.3	6.4
칠레	0.0	-1.7	8.6	6.3	6.7
콜롬비아	-0.3	0.5	8.2	4.8	5.2
멕시코	3.6	0.2	9.6	3.1	16.5
페루	7.7	-1.7	9.7	12.7	15.0
남미 평균	1.2	0.5	8.8	-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Emerging Markets Investor*, March 1995;

J.P. Morgan, *Emerging Markets Outlook*, December 1994;

UN, *National Accounts*

표3-7은 두 지역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989~91년 사이에 아시아에서는 설비투자가 GDP의 평균 13.8%에 달했던 반면, 남미에서는 8.8%에 불과했다. 이 분석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남미에서는 칠레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최근의 자본유입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해주는 합당한 근거가 된다.

끝으로 표3-8은 자본유입의 사용과 그 효과에 있어서도 양지역 간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물가상승률의 전반적인 증가를 보였다(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여기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정책담당자들은 이로 인한 환율절상과 그에 따른 국내 총 통화량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자본유입을 꺼리게 된다.

표 3 - 8 • 1990년대 환율관리제도와 실질환율

	환율관리제도	연간소비자물가 상승률 92~94	실질환율 CPI/US-CPI 1990=100 94년 9월	실질실효환율 (교역규모기준, 도매물가조정) 1990=100 94년 9월
중국	조정가능 고정환율	8.8-27.0	75.9	na.
인도	조정가능 고정환율	8.0-9.4	75.7	78.7
인도네시아	소극적 소폭변동	5.0-10.0	105.3	97.0
한국	관리고정환율	4.5-6.3	101.6	82.0
말레이시아	관리고정환율	4.9-4.2	108.9	106.2
필리핀	관리변동환율	8.2-7.8	126.9	103.2
태국	관리고정환율	3.0-4.6	111.4	98.4
아르헨티나	동화위원회	17.5-3.4	168.8	107.2
브라질	소극적 소폭변동	114.9-93.6	130.5	105.4
칠레	목표환율대	12.7-9.0	119.0	115.1
콜롬비아	관리변동환율	25.1-22.0	133.9	119.5
멕시코	적극적 소폭변동	11.9-7.0	122.2	111.6
페루	변동환율	56.7-16.0	122.0	96.4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Emerging Markets Investor*, 1994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가 인플레이 수준을 빠른 속도로 낮추기 위해 환율정책과 자본 유출입을 이용했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미국달러에 대해 기대인플레이션율과 환율을 고정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 실질환율은 아르헨티나에서는 거의 70%나 절상되었고,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필리핀에서는 20% 이상 절상되었다.

실질환율은 교역재 대 비교역재의 상대적 소비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상대가격이다. 실질실효환율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명목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실효환율에 다시 교역상대국의 물가지수를 감안한 값이다. 이 실질실효환율은 국내생산 완제품의 가격을 가장 정확히 나타내주는 지표에 근거하여 상대가격 변동으로 조정된 환율이다.

남미국가들이 이전에 경험한 바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1990년대 들어 실질실효환율은 어느 국가에서도 20% 이상의 절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의 상대적 경쟁력은 떨어졌고, 자유재량적인 절하에 힘입어 중국과 인도에서는 향상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90년을 전후해 자본자유화를 단행한 대부분의 개도국 사례를 보면 대만을 제외하고는 자본자유화 이후 상당 규모의 자본유입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자본자유화 추진의 결과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국의 경제여건과 자본유입에 대한 대응형태가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이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면서 경제여건이 양호한 국가들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제여건이 양호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썩 나쁘지도 않았던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자본자유화에 따른 일시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

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칠레를 제외한 중남미국가들의 경우 고인플레이와 외채누적, 재정악화 등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가운데 통제능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입 추이 및 현황

우리나라는 80년대초부터 경제발전 단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쌍방투자가 아닌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대한 자유화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외국의 금리수준이 국내 금리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지속적인 역동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생산부문에서의 자본수요가 커짐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은 꾸준히 자본유입을 증대시켰다. 80년대초까지는 수출경쟁력의 약화와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는데, 이러한 경상수지 부문에서의 적자는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보전되었다.

이 기간에는 보유외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생산을 위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을 위하여 주로 차관을 이용하였으며, 이것은 자본수지 흑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호황과 국내 경제여건의 호조로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로 반전한 반면, 자본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수출호황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였던 80년대 중반부터는 차관의 상황에 주력함에 따라 자본수지는 적자를 나타냈으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워낙 커서 종합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종합수

지 흑자는 정부의 법정지불준비율 인상,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통화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화공급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자본유출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국내주가와 실물자산의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같은 현상은 과소비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으며, 결국 몇 년 안되어 경상수지 흑자기조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

90년대는 80년대 후반 거품경제의 영향과 임금상승으로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를 보이고 자본수지는 차관 및 외국인 투자의 증대로 흑자를 보였다. 특히 1992년에는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가 허용됨으로써 본격적인 자본자유화 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자본수지가 80억 달러를 넘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볼 때 자본수지가 흑자를 보인 것은 80년대 전반과 90년대 전반인데 이 두 기간에서의 자본유입은 서로 성격을 달리한다. 80년대초의 자본수지 흑자는 경제개발에 따른 공공·상업 차관의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동적 요인의 자본유입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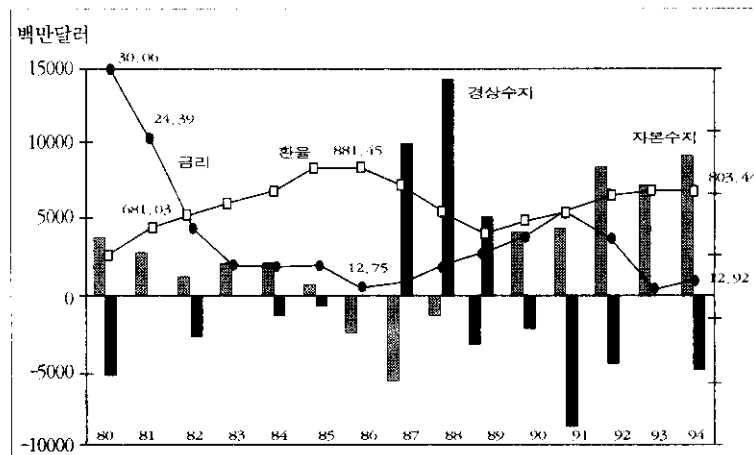
90년대초의 자본수지 흑자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경제가 신흥 성장시장으로 부각되면서 외국의 해외로부터의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의 대외개방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일본 및 동남아국가들같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가입과 가입시의 추가개방 약속 등으로 자유화가 무리하게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현경제상황이 개방 당시의 남미제국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남미국가들(칠레 제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국의 경험사례 분석은 대외개방에 앞서 경제안정과 같은 자유화의 선행조건들을 만족시켜 나가야 하

며, OECD 가입은 필연적으로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크게 할 것이므로 신중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표 3-9 • 80년대 이후 자본수지, 경상수지, 금리, 환율 추이

	자본수지	경상수지	회사채수익률	환율
1980	3,801.0	-5,320.7	30.06	607.43
1981	2,759.6	-464.6	24.39	681.03
1982	1,233.9	-2,649.6	16.89	731.08
1983	2,163.9	-160.6	14.23	775.75
1984	1,309.5	-1,372.6	14.12	805.98
1985	513.3	-887.4	14.21	870.02
1986	-2,734.0	461.7	12.75	881.45
1987	-5,842.8	9,853.9	12.86	822.57
1988	-1,396.5	14,160.7	14.23	731.47
1989	-3,302.2	5,054.6	15.23	671.46
1990	3,881.2	-2,179.4	16.41	707.76
1991	4,227.0	-8,727.7	18.86	733.35
1992	8,342.6	-4,528.5	16.31	780.65
1993	6,878.6	384.6	12.63	802.67
1994	9,084.1	-4,778.8	12.92	803.44

그림 3-3 • 80년대 이후 자본수지, 경상수지, 금리, 환율 추이



3. VAR 모형을 이용한 자본자유화 효과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자유화의 추진은 필연적으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본 유출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파급 메커니즘을 계량경제 모형인 VAR 모형을 사용하여 자본유입이 통화량, 물가, 환율,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는 이연호(1994)와 이승엽(199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의 거시 계량경제 모형을 설정하고 외자유입시 국내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연호(1994)는 유입된 외국자본의 100%, 75%, 50%, 25%, 0%가 중앙은행의 개입에 의하여 본원통화 증가로 흡수되고 나머지 부분은 환율절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다섯 가지의 정책조합을 고려하였다. 외자유입의 효과를 2차년도에 걸쳐 각 분기별로 파악하였으며

추정한 변수는 환율, 회사채수익률, 통화, 소비자물가, 국민총생산, 경상수지 등이다. 중요한 결론은 자본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거시경제 변수의 동향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고 경상수지가 적자일 경우에는 자본유입이 본원통화로 흡수되는 비율을 높이고 물가상승이 우려될 때에는 본원통화로 흡수되는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승엽(1994)은 동태적 일반 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본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승엽의 연구가 이연호의 연구와 다른 점은 국내경제의 영향분석시 외자유입에 따른 중앙은행의 개입정책에 따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채택한 환율제도와 자본유입의 지속성으로 정책조합을 만들어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자본유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자본유입으로 인한 총수요 증대 효과로 장기적 균형으로 회귀하는 성격으로 인해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 두 연구와 달리 본 분석은 자본유입의 효과를 거시경제 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유입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자본유입을 장·단기 자본유입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유입이 통화량, 물가, 환율,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1) 모형의 설정

VAR 모형은 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 방법이 상호 결합된 형태인 다변량분석 모형이다. 전통적인 회귀분석에 의존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예측능력에 회의가 일면서 시계열분석 방법에 의한 예측

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시계열분석 방법 중에서도 그동안 주로 사용되어 오던 ARIMA 모형이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무시하는 일변량분석 모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다변량분석 모형인 VAR 모형이 개발되었다.

VAR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모형작성자의 선택적 주관이 가급적 배제된다는 점과 모형내에서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구분이 필요치 않으며, 특정한 이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VAR 모형은 다변량분석 모형으로서 N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방정식은 도입변수들의 현재 관측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신과 여타 변수의 과거 관측치들을 독립변수로 한다. 기본적인 VAR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X_t &= A(L)X_t + e_t \\
 &= \sum_{s=1}^l A_s X_{t-s} + e_t \quad (\text{시차가 } l \text{ 일 경우})
 \end{aligned}$$

자본자유화의 일차적 파급효과는 자본 유출입의 변동으로 나타나므로 자본수지를 자본자유화의 측정변수로 모형내에 도입했으며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받는 주요 경제변수로는 통화량, 물가, 환율, 금리 등을 상정했다. 통화량은 M2를, 물가는 소비자물가를, 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을 대표변수로 정하고 분석자료는 1980년 1월부터 1995년 3월까지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선 개별 변수의 안정성(stationarity) 정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불안정성이 강해 각 변수를 로그변환(log transformation)하여 차분한 값을 분석변수로 사용하였다.

VAR 모형에서는 추정결과를 가지고 예측 또는 충격반응 분석을 할 때 변수의 순서ordering가 상당히 중요한데, 변수의 순서를 설정하기 위해 인과관계 분석causality 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외생성이 강한 변수들부터 자본수지, 통화량, 소비자물가지수, 환율, 금리순으로 순서를 결정하였다. 또한 우도비율likelihood ratio test 검정과 왈드Wald test 검정 등의 통계량 검정결과 설명변수들의 시차lag는 과거 9개월까지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충격반응 분석

충격반응 분석은 모형내의 어느 특정변수에 대하여 일정한 충격을 가한 다음 모형내의 모든 변수들이 시간결과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변수간의 상호관계, 또는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충격이라 함은 방정식체계내에서 충격을 가하는 변수의 한 표준편차 단위one standard deviation unit를 의미한다. 즉 자본수지를 충격변수로 하여 충격이 통화, 금리, 환율, 물가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비교를 위해 경상수지를 충격변수로 한 파급효과도 분석하였다. VAR 모형과 충격반응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다루었다.

1) 통화량 파급효과

이론적으로는 자본유입에 대해 불태화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내통화량은 증가하나, 많은 경우에 정부의 불태화정책이나 환율절상 등에 의해 통화증발 효과가 상당부분 희석된다. 불태화정책을 통해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에 대응하여 국내부문의 통화공급을 줄임으

로써 전체적으로 통화증발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국내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절상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경상수지가 악화됨으로써 자본유입 증가가 희석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충격반응 분석을 통해 자본유입이 통화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부록 2-1 장기 자본수지가 통화량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부록 2-2 단기 자본수지가 통화량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자본유입 후 첫 1개월에는 통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자본유입에 따른 통화증발 억제를 위해 강력한 불태화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3개월 후부터는 통화량이 증가하고 특히 장기 자본유입보다는 단기 자본유입시 통화량 증가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유출입에 있어 단기자본이 장기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도 심하고 부동화 경향도 더 크기 때문이다. 한편 경상수지의 증가는 자본수지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통화량 증가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2-3 경상수지가 통화량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경상수지의 개선은 자본수지와는 달리 즉각적인 통화량 증가를 가져오며, 5개월 정도 후에야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본 유출입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여 유출입에 따른 통화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불태화정책 등으로 미리 대응함으로써 처음에는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나, 경상수지의 변동은 바로 통화량 변동에 영향을 주다가 불태화정책이나 환율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효과가 수그러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물가 파급효과

자본의 유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입된 자본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본유입은 곧바로 국내통화량 증가요인이 되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나, 유입된 자본이 생산적 부문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생산능력을 확대시키면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

실제 충격반응 분석 결과 장기자본의 유입은 첫 2개월까지만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충격 이전보다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부록 2-4 장기 자본수지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반면 단기 자본수지의 경우 장기 자본수지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전반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부록 2-5 단기 자본수지가 통화량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이러한 결과는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장기자본은 물가상승 압력 없이 자금의 이용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나, 단기자본은 단기 부동자금화되면서 통화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첫 2개월 동안은 물가하락효과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2-6 경상수지가 통화량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3) 환율 파급효과

이론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은 불태화정책을 쓰지 않을 경우 외환시장에서 외화공급의 증가로 인해 일차적으로 환율의 절상을 가져온다. 국내통화의 평가절상은 수출의 부진과 그에 따른 경상

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환율을 절하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불태화정책이나 외환시장 개입 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충격반응 분석 결과 자본 유출입의 변화가 환율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자본의 유입은 초기에는 오히려 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7개월 이후에야 환율이 절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과거 자본유입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부록 2-7 장기 자본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즉 자본유입으로 인해 환율이 절하된 것이 아니고 경상수지 적자와 그에 따른 정부의 의지에 의해 환율이 절하되는 한편으로, 종합수지 균형을 위해 자본유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단기 자본수지 충격에 대해서는 환율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2-8 단기 자본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자본수지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환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데 반해 경상수지 충격에는 원화환율이 즉각적이고도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2-9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경상수지의 개선은 즉각적으로 환율을 절상시키고 그 효과도 장기간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수지가 환율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분석기간이 자본 유출입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고 정부에 의한 인위적 환율통제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자본 유출입의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금리 파급효과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었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유입된 자본이 일차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국내금리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증가된 통화량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할 경우 명목금리는 자본유입 이전보다도 높아질 수 있으며, 자본유입으로 인한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쓸 경우 단기적인 자금정색에 의해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본자유화로 인해 자본 유출입이 빈번해지면 국내통화량의 변동성도 커지고 금리의 변동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파급효과도 경제여건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장기자본의 충격에 대한 금리의 반응은 처음 1개월에는 금리가 즉각적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3개월째 잠깐 상승하고 이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부록 2-10 장기 자본수지가 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위 그림에서 보면 금리가 2개월 시점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기는 하나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단기 자본수지 충격에 대한 반응은 처음 1~2개월은 금리가 떨어지지만 3개월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2-11 단기 자본수지가 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단기 자본수지의 증가는 일단 통화량 증가를 가져와 금리를 떨어뜨리지만,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통화증발 우려로 인한 불태화정책이 취해짐에 따라 명목금리가 오히려 충격 이전보다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단기자본 유입으로 인한 금리하락 효과는 1~2개월에 그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듯이 장기자본과 단기자본 유출입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단기 자본의 성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기자본의 유입은 그 성격상 주로 생산적 부문에 쓰임으로써 물가상승 압력 없이 자금의 이용가능성을 높여주어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나, 단기 자본유입은 단기 부동자금화되면서 통화불안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상수지의 충격에 대한 금리의 반응은 9개월까지는 금리가 줄곧 떨어지는 효과를 보이다가,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금리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부록 2-12 경상수지가 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 참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기업들의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시중 자금사정이 좋아지면서 단기간에는 금리하락 효과를 가져다주다가, 중장기적으로는 통화증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명목금리가 충격 이전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종합적 결과

자본 유출입, 또는 경상수지의 변화가 금리, 환율, 물가 등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격의 파급효과는 대체로 12~18개월 간 지속되다가 점차 소멸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 유출입, 또는 경상 유출입의 변동은 약 1~2년에 걸쳐 국내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장기자본과 단기자본의 충격반응 분석 결과 양자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장기자본의 유입은 일단 국내통화량을 증가시키지만 이것이 과도한 물가상승과 그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이어지

지는 않는 반면, 단기 자본수지의 경우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에 이은 금리상승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본유입의 변동은 환율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자본유입의 성격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많았고, 또한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정부의 환율절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경상수지 개선은 즉각적으로 환율을 절상시키고 그 효과도 장기간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불 이루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정부에 의한 자본 유출입 통제나 환율통제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 과거와는 달리 자본 유출입의 변동이 환율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경상수지 변동이 통화, 물가, 환율, 금리 등 제반 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자본수지의 경우에 비해 훨씬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상수지의 개선은 즉각적으로 통화량 증가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단기적인 금리하락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상승 효과도 강하여 9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는 금리가 충격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에 대한 파급효과도 강해 경상수지 개선은 즉각적이고도 일관되게 환율을 절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과 더불어 자본수지 세부항목 중 한 항목이 다른 자본수지 항목과 대체관계, 또는 보완관계에 있다면 이들 항목간에 상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세돈(1995)의 연구는 자본유입의 기간을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 1992년 이전에는 단기 자본수지가 외국인의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고, 1992년 이후에는 장기 자본수지 중의 여러 항목과 외국인 국내 포

트플리오 투자 사이에 대체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장기 자본수지 중 순포트폴리오 투자유입이 공공차관, 상업차관, 장기 무역신용과 대체관계를 지니고 있고, 해외 증권투자, 연불수출과는 보완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들 항목들의 영향을 고려한 정책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3-10과 같다.

표 3-10 • 유입자금 유형별 파급효과

	단기자본 유입	장기자본 유입	경상유입
통화량 파급효과	유입으로부터 통화량 증가	통화량 증가효과 크지 않음	즉각적으로 통화량이 증가
물가 파급효과	즉각적인 물가상승 효과	유입 2개월 이후부터 물가하락 효과를 보임	유입 4개월 이후부터 장기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환율 파급효과	파급효과 거의 없음	파급효과 크지 않음	장기적이고도 일관된 절상압력으로 작용
금리 파급효과	유입 후 첫 1~2개월은 금리가 하락하나, 이후 상승세로 반전	일시적인 상승이 있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금리하락 효과가 이어짐	유입 후 8개월까지는 금리하락효과를 보이나, 이후 장기적인 상승세로 반전
종합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자본의 유입은 물가상승 압력 없이 자금의 이용가능성을 높여주어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반면 단기자본의 유입은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에 의한 금리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경상유입의 증가는 초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 압력이 현세화됨 		

4.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절에서 우리는 OECD 가입에 따른 금융개방이 물가, 금리 및 환율 등 가격변수들 포함하여 경상수지 등 국내 거시경제적 여건에 미치는 제반 실증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금융개방과 거시경제변수의 역학관계는 물론 단기적, 또는 중기적 성격이 강하다. WTO 체제의 출범, 그리고 OECD 가입관련 금융개방은 이러한 단·중기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개방 가속화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한국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두 가지 관점은 바로 외생적 개방압력과 대내적인 우리나라 금

용제도에 대한 내생적 개편 필요성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필요한 제반요건 등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하여 개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개방압력은 국내 금융시장의 체질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금융개방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적 풍토를 조성하고 전통적인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여신활동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신용도가 높은 우량 대기업일수록 해외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기업에 대한 국내 여신비중은 하락하는 반면에 중소기업 및 가계대상 여신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금융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두번째 요인은 우리경제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개발경제시대에서의 정부 주도형 금융정책은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여러 형태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책금융 및 창구지도형 신용할당을 통한 관주도형 금융정책은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제도를 발전시킬 수 없었고, 이러한 제도적 낙후성이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시장기능이 성숙되어 가고 경제발전 단계 측면에서 경쟁적 토양 위에 금융시장 고유의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산업 개편문제는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자유화 기조와 병행하여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절에서는 OECD 가입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금융개방이 장기

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방향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외국의 추세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에 관련된 다음 세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금융개방의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한 첫번째 파급효과는 국내 증권시장의 성숙화이다. 대기업의 해외 직접금융시장 의존도 심화, 금융기관간 수익성 위주 영업활동의 경쟁심화,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의 도입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험 및 최근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은행산업의 금융시장 점유율 축소와 금융기관간 경쟁유도정책은 은행의 겸업화를 촉진시키리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은행의 대형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 국내 증권시장의 성숙화

금융제도 및 금융시장구조는 기본적으로 정책당국의 인위적 개입에 따른 금융규제, 경제발전 과정,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 규모 등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제발전 과정은 금융제도를 구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잣대를 제공한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업투자재원 중에서 외부자금external funds이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되었는가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 구조는 두 개의 커다란 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영·미식Anglo-American model의 직접금융 주축체제securities market-based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종종 일·독식Japanese-German system이라 일컬어 지는 간접금융 주축체제banking-based system이다.

영·미식의 직접금융 주축체제는 그들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제도이다. 영국과 미국의 산업화과정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 민간주도private efforts에 의해 자생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민간주도형 경제발전 경험은 그들의 시장중심 금융제도의 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직접금융 주축체제의 특징은 기업이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증권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영국과 미국은 산업화 초기단계부터 시장중심의 경제발전이 점화되면서 증권시장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벤처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매매가능한 장기성 위험자본risk capital의 조성은 참여자간에 자발적인 위험분산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특히 당시 영국의 경제여건 및 금융환경은 증권시장의 발달에 유효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일찍이 발달한 상업문화를 바탕으로 축적된 상업자본은 기업내부 유보자금을 통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당시 은행의 업무가 은행상업주의real bills doctrine에 입각하여 단기 상업금융에 치중되어 있어 기업의 은행차입은 주로 운영자금 조달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장기성 자본조달은 증권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경제발전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대륙 국가, 그리고 일본의 경제발전은 후발산업 국가로서 활발한 정부개입에 의해 진행되었다. 자국의 유아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한다는 보호주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쟁국에 뒤늦은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략적 산업금융 등 특수목적에 부합하는 금융기

관의 설립을 통하여 정부가 신용창조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즉 상업자본의 축적이 미비하고 자본시장이 자생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의 공급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유럽대륙 국가들과 일본은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을 함께 취급하는 다목적 은행제도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부연하자면, 후발산업 국가들의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간접금융 주축체제는 금융기관의 정부소유, 혹은 금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 보조 등을 통해 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기업투자의 위험을 정부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당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산업화의 활로를 개척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금융발전 경험은 19세기 유럽국가들, 그리고 20세기 일본의 금융발전 경험과 상당히 유사하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개입형 경제정책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의 공급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외부자금 조달에서 주축을 이루었다.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 특히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 및 금융제도의 발전양상은 좋은 실례를 제공한다. 정부주도형 금융정책의 대표적인 실체로는 정부소유의 금융기관, 정부보증의 해외차입, 진입장벽, 그리고 전략적 산업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취해진 금리규제 및 엄격한 신용할당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특히 한국의 경우) 유럽대륙 국가 및 일본에 비하여 정부개입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였는데, 후발산업국가일수록 공급선도형 간접금융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금융 주축체제의 생성배경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11 • 직접금융 주축체제와 간접금융 주축체제의 일반적 특징비교

	직접금융 주축체제	간접금융 주축체제		
		은행 중심	겸업주의 은행제도	주거래 은행제도
국가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개발도상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일본
정부의 역할	경제발전 과정에서 민간주도private hands, 시장market 중시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시된 적이 많음		
금융개방 정도 및 국제화 수준	개방적very open	폐쇄적protectionism		
경쟁	경쟁적highly competitive 진입규제 존재	비경쟁적less competitive 진입규제 존재		

표3-11은 직접금융 주축체제와 간접금융 주축체제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직접금융 주축체제에 속하는 나라들은 영국과 미국이며 간접금융 주축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유럽대륙 국가들, 일본 및 개발도상국가들이다. 특히 간접금융 주축체제는 유형에 따라 세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첫번째 유형은 간접금융 주축체제의 일반적 형태인 은행중심 금융제도이다.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들이 대부분 이러한 금융제도를 취하고 있다. 두번째 유형은 간접금융 주축체제의 특수한 형태로서 은행중심의 금융제도에 속하면서도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겸업주의 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이다. 독일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고 스페인이 이러한 겸업주의 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유

형은 기업과 은행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는 일본의 주거래은행제도(Main banking system)이다.

금융제도의 두 유형인 직접금융 주축체제와 간접금융 주축체제의 특징적 차이는 우선 그들의 생성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직접금융 주축체제는 민간주도(private hands)와 시장(market)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하였으며, 간접금융 주축체제는 후발산업국가들의 산업화과정에서 간접금융의 공급선도적 역할이 중시되면서 정부개입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제도이다. 이러한 생성·정착 배경 때문에 직접금융 주축체제하에서는 금융개방 및 국제화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경쟁적 금융환경이 만들어진 반면에 간접금융 주축체제 아래에서는 보호주의적 색채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비경쟁적인 금융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간접금융의 공급선도적 역할이 강조되어 오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국의 직접금융시장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환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OECD 가입을 계기로 향후 대외적인 금융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 증권시장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우리나라 직접금융시장은 1980년대 후반 소위 3저현상에 힘입어 일시적인 경상수지의 흑자실현으로 호황국면을 맞기도 하였다(표3 12 참조).

1988~89년 기간 동안 신규공모주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격감하게 되었다. 반면에 회사채 발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식발행이 위축되었던

1990~93년 기간 동안에는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증권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총액은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 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인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증권시장 성숙도는 아직까지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표3-13 참조). 전형적인 직접금융 주축 체제에 속하는 일본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및 대만과 비교해도 주식시장의 발달 정도가 현저히 뒤쳐져 있다.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P/E 비율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추이

(단위 : 10억 원)

	주식		소계	회사채	합계
	신규공모주	유상증자			
1981	3	303	306	1,036	1,342
1983	31	432	463	1,427	1,889
1985	35	260	395	3,177	3,471
1986	42	798	840	2,729	3,569
1987	244	1,655	1,899	3,189	5,088
1988	1,049	6,721	7,770	4,244	12,014
1989	3,545	11,125	14,670	6,959	21,628
1990	336	2,582	2,918	11,084	14,001
1991	507	2,180	2,687	12,741	15,428
1992	82	1,711	1,793	13,797	15,590
1993	181	2,789	2,970	15,598	18,568

자료 : 증권거래소

표 3-13 • 아시아 각국 주식시장 비교

	주식시장 시가총액				P/E 비율	시장집중도 (Market Concentration Rate)
	1986		1991			
	10억 US달러	%GDP	10억 US달러	%GDP		
일본	1,781	89.7	2,904	86.4	36.5	
싱가포르	28	157.7	45	112.5	17.2	
말레이시아	15	54.1	56	118.5	14.5	
대만	15	19.4	110	61.0	43.2	
홍콩	40	155.0	119	163.0	11.9	
한국	14	13.2	111	39.2	12.8	

주 : 시장집중도 :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아시아개발은행(1993)

우리나라의 금융개방은 1993년 6월에 발표된 자본시장 개방계획에 의거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1996년 OECD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금융개방계획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증권시장 관련 금융개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증권 투자한도 확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한도 확대, 채권시장 개방,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외환증권 발행 및 상업차관) 확대 허용, 해외기업의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 허용,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가속화될 이러한 모든 분야의 금융개방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경쟁적 풍토를 조성하고 직접금융 시장의 급성장을 초래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우량 대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의존도가 꾸준히 상승하여 대기업의 국내은행을 통한 차입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심화는 내외 금리차의 점진적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3-14는 OECD에 가입된 국가들 중 12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회사채 해외발행 현황을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을 통한 회사채 발행이 아직 유아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이 표는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간접금융 주축체제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과 독일이 최근에 와서는 해외 회사채 발행에 있어 영국과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 14 • 회사채 해외발행 국제비교

	1990	1991	1992	1993	1994
미국	21.8	21.1	17.6	24.8	45.6
영국	20.2	30.9	33.7	34.5	32.5
일본	55.4	72.1	56.2	61.0	38.5
이탈리아	13.2	10.7	7.9	17.8	16.3
독일	1.3	16.2	20.2	44.7	45.9
프랑스	17.4	26.3	32.7	41.1	32.4
캐나다	12.9	26.8	23.1	32.1	23.5
스페인	3.3	2.9	5.9	7.3	7.6
스웨덴	6.6	6.5	13.3	24.0	21.7
호주	3.5	4.1	4.8	9.5	11.6
벨기에	3.7	6.0	4.2	4.2	8.0
핀란드	7.0	9.5	14.2	9.9	9.0
한국	1.5	2.8	3.2	5.6	5.4

자료 : OECD, *Financial Market Trends*, 1995

또한 국내 채권시장 개방, 해외기업의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 및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은 우리나라 직접금융 시장의 경쟁적 풍토를 강화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허용되고 허용한도가 확대되면서 주식가격이 점차 내재가치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가는 추세를 우리는 익히 경험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외국기업의 상장이 아직 하나도 없어 증권시장 국제화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증권시장의 경쟁력은 외국기업들이 그 나라의 증권거래소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표3-15는 주요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기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991년 당시 외국기업이 가장 많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영국의 런던 증권거래소이며, 프랑스 파리 증권거래소와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가 각각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국제금융 중심지 역할은 1986년에 단행된 빅뱅(Big Bang)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자에 들어서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싱가포르와 홍콩도 해외기업의 주식상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제금융센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상반기중에 외국기업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 및 주식연계 증권을 발행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국내투자자들에게도 외국기업의 주식을 국내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허용은 외국 투자신탁회사의 지분참여 한도 확대 및 지점설치 허용과 맞물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 상장기업은 신용도가 우수한 외국기업에 한정시키고 상장기업수도

초기에는 10여 개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시아 주변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의 금융개방의 가속화로 인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망되는 국내증시 파급효과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 우선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통해 직접금융 시장의 도약을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외국 우량 대기업의 국내상장은 투자자들에게 국제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증권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상장과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등 소위 복수상장의 사례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와 직접적 경쟁적 관계에 놓임으로써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적 풍토 조성에 일조할 것이다.

표 3-15 • 주요국 증권거래소의 내외국 기업 상장현황(1991년 기준)

주요국 증권거래소		뉴욕	런던	파리	동경	싱가포르	홍콩	
상장기업	국내	1,780	1,852	551	1,641	157	333	
	외국	105	604	231	125	26	24	
상장종목	주식	국내	2,303	1,927	590	1,650	162	344
		외국	123	813	267	125	27	24
	채권	국내	1,773	2,704	3,002	1,257	44	8
		외국	168	1,902	267	159	113	5

자료 : Tokyo Stock Exchange, 1993

앞서 언급한 제반분야의 증시관련 금융개방 이외에도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활성화는 한국 증권시장의 발전에 또 다른 차원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국내시장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외국에 비해 극히 미미한 상태이나 향후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파생상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리라 전망된다. 수요증가의 원인으로는 파생상품의 이용이 기업입장에서는 자금의 조달비용을 낮추고 금융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금 조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이용은 제반 금융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측면 이외에도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금융시장내 중요한 공급요소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OECD 가입을 계기로 향후 가속화될 금융개방 및 금융자유화에 힘입어 경쟁적 금융환경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물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업무영역의 확대허용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기반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풍토 조성과 새로운 금융기법을 학습하고 개발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개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직접금융 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국·내외 직접금융 의존도가 심화되고 해외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사금융시장은 점차 제도금융권으로 흡수되면서 증권시장의 급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된다.

(2) 기존은행의 대형화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은행산업의 금융자산 보유비중 및 예금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3-16, 3-17 참조). 1970년에 예금은행의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72%에 이르고 예금점유율은 무려 82%에 달하였으나 꾸준히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1991년에는 각각 약 42%, 38% 수준으로 격감되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투자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저축기관 및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보유는 상대적으로 확장일로에 있다. 투자기관의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1975년의 2.4%에서 1991년의 12.7%로 급성장하였으며, 이와 비슷하게 저축기관 및 보험회사의 상대적 비중도 1970년의 3.7% 및 1.2%에서 1991년의 24.4% 및 7.9%로 각각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은행의 상대적 축소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상대적 확대는 서로 상반되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초과공급논리이며 다른 하나는 규제부담논리이다. 초과공급논리는 은행산업이 전통적으로 금융당국의 정책적 보호를 받아오면서 비정상적인 높은 수익률을 향유하였다는 견해에서 출발한다. 반대로 규제부담논리는 은행의 여·수신활동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비하여 더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

우선 규제부담 측면을 살펴보면, 은행권과 비은행권과의 규제차이는 수신고 경쟁에서 은행권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은행과는 달리 비은행 금융기관은 법정 지불준비율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리체계 및 진입장벽에 있어서도 보다 더 유리한 입

장에 있게 되어 예금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여신활동 측면에서도 대출한도 및 대상에 있어 직접적 간섭을 받은 예금은행과는 대조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은 보다 자유로운 금융환경을 지나고 있다.

은행보호에 관한 당국의 논리는 은행의 전통적인 신용창조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통화공급 경로에서 예금은행의 중추적 역할은 경제 전반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어 은행보호론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당국의 정책적 보호의 대표적인 실체로는 정부소유의 금융기관 및 진입규제 등을 꼽을 수 있고 이러한 은행보호는 은행산업내 비경쟁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비록 1980년대 이후 일반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영자율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은행의 정부소유는 정부주도형 경제발전과정에서 전략적 산업부문에 대한 엄격한 신용할당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었지만, 은행대출 위험을 정부로 하여금 떠맡게 함으로써 은행의 파산위험을 면하게 해주었다. 더욱이 은행이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특별지원은 은행의 자연퇴출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은행보호 차원의 경쟁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파생된 높은 자본수익률은 경쟁적 시장에서의 경우보다 은행산업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제2금융권의 부상은 예금은행의 경쟁적 입지를 약화시켰고,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자유화 기조는 은행산업내 은행간 경쟁까지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은행산업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산업 밖으로의 자본

유출이 은행산업의 상대적 쇠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은행산업의 쇠퇴는 단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직접금융 주 축체제에 속하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는 은행산업의 시장점유율 축소 및 수익률 감소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아직 외국은행의 국내시장점유율이 극히 미미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을 강화시키리라 판단된다.

은행산업과 기타 금융산업간, 그리고 은행간 경쟁심화는 은행산업 시장점유율의 축소 및 은행수익률의 감소 이외에도 은행부도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은행으로 하여금 비전통적인 은행업무 영역, 예를 들어 증권업 및 보험업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경쟁적 금융시장 환경은 은행산업의 구조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도위험을 피하고 겸업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형의 은행시장구조보다는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는 이제 세계적 추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역외 지점확장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은행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인식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금융규제완화 추세와 더불어 은행들의 합병·대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95년 한해 동안 이미 여러 건의 은행합병이 성사되었다. 1995년 6월에 퍼스트 유니온 은행이 퍼스트 피델리티 은행을 전격 인수하여 은행간 합병붐을 예고한 데 이어 7월에는 퍼스트 시카고 은행과 NBD은행, PNC은행과 미들랜틱은행이 잇따라 결합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케미컬은행과 체이스 맨해튼 은행이 전격적으로 합병함에 따라 미국 최대 은행으로 탄생되었다. 일본에서도 미쓰비시은행

과 외국환 전문은행인 동경은행이 합병키로 지난 3월 합의하여 조만간 일본 최대 은행의 대등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일본 최대 은행인 사쿠라이은행도 지난 90년 합병을 통해 태어났다.

표 3-16 • 금융기관별 금융자산 보유비율

(단위 : %)

금융기관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예금은행	72.1	70.4	67.2	56.5	42.7	41.6
일반은행	35.7	42.8	43.9	35.7	30.9	30.1
특수은행	36.4	27.6	24.3	20.8	11.8	11.5
개발기관	22.9	21.4	16.6	14.6	8.0	8.7
한국산업은행	22.9	21.1	15.5	10.1	5.7	5.9
한국수출입은행	0.0	0.3	1.1	3.5	0.7	0.8
한국장기신용은행	0.0	0.0	0.0	0.9	1.6	2.0
투자기관	0.0	2.4	4.3	8.6	13.3	12.7
투자금융회사	0.0	2.0	2.1	3.2	4.5	4.4
종합금융회사	0.0	0.0	1.0	1.4	1.3	1.4
투자신탁회사	0.0	0.4	1.2	4.0	7.7	6.9
저축기관	3.7	4.1	7.6	13.5	23.9	24.4
상호금고	0.1	0.9	1.6	1.9	3.4	3.7
상호신용금고	0.0	0.5	0.9	2.2	2.7	3.0
신용협동조합	0.0	0.2	0.4	0.6	0.9	1.0
새마을금고	0.0	0.0	0.9	0.9	1.8	1.9
은행신탁	3.1	2.1	3.7	7.0	14.3	14.0
채신예금	0.6	0.4	0.2	0.8	0.9	0.9
보험기관	1.2	1.6	2.5	4.7	7.5	7.9
생명보험회사	0.5	0.8	1.6	4.0	6.5	6.8
손해보험회사	0.7	0.8	0.9	0.7	1.0	1.1
증권기관	0.1	0.1	1.8	2.2	4.6	4.8
증권회사	0.0	0.0	1.6	2.0	3.8	4.0
한국증권금융회사	0.1	0.1	0.2	0.2	0.8	0.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은행,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세무부, 한국증권감독원

표 3-17 • 금융기관별 예금점유율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예금은행	82.1	74.5	64.2	49.4	37.6	37.7
제2금융권	17.9	25.5	35.8	50.6	62.4	62.3

자료: 한국은행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대형은행들이 서로 우호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초대형 은행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러한 은행합병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본금을 키움으로써 위험대처 능력을 키우고 증권 및 보험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겸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구조를 갖자는 데 있다. 또한 은행대형화는 상호보완적인 중점업무 영역을 합하여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중복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업은 제조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이는 비경쟁적 금융환경을 조성한 과거 금융억압 정책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과 은행업의 상대적 발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3-18~21은 독일, 일본, 미국 및 한국의 10대 은행 총자산/10대 기업 총자산 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간접금융 주축체제에 속하는 전형적인 국가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671.9와 769.6으로 미국과 한국의 비율, 138.8과 331.6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의 은행산업이 이렇듯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금융국제화·개방화시대에 시장지배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표 3 - 18 • 독일 10대 은행 총자산/10대 기업 총자산 비교(199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10대 은행(A)		10대 기업(B)		A/B
Deutsche Bank	369,810.9	Daimler-Benz	60,365.3	612.6
Dresdner Bank	258,234.5	Volkswagen	52,329.1	493.5
West Deutsche Landes Bank	244,319.5	Siemens	50,579.1	483.0
Commerz Bank	220,753.2	Bayer	27,339.8	807.4
Bayerische Vereins Bank	205,336.8	Hoechst	26,187.2	784.1
Bayerische Landes Bank	181,386.8	Basf	25,078.3	723.3
Bayerische Hypo Bank	177,764.3	BMW	24,971.3	711.9
Deutsche Genossenschafts Bank	160,158.1	Ruhrkohle	18,601.3	861.0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158,736.0	Robert Bosch	17,665.7	898.6
Bank Gesellschaft Berlin	157,197.0	Thyssen	14,461.0	1,087.0
합계	2,133,697.1		317,578.1	671.9

주 : 10대 기업은 서비스업종 제외

자료 : Fortune, 1995, Aug. 7, The Banker, 1995, July

표 3 - 19 • 일본 10대 은행 총자산/10대 기업 총자산 비교(199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10대 은행(A)		10대 기업(B)		A/B
Sanwa Bank	624,393.5	Hitachi	105,257.5	593.2
Dai-Ichi Kankyo Bank	622,927.0	Toyota Motor	98,037.1	635.4
Fuji Bank	615,189.4	Matsushita Elec. Ind.	94,440.7	651.4
Sumitomo Bank	613,855.7	Nissan Motor	82,820.0	741.2
Sakura Bank	600,513.9	Toshiba	62,904.9	954.6
Mitsubishi Bank	592,446.6	Nippon Steel	52,360.0	1,131.5
Norinchukin Bank	513,341.2	Sony	48,634.7	1,055.5
Industrial Bank of Japan	470,446.1	NEC	47,798.7	984.2
Long Term Credit Bank of Japan	392,681.4	Mitsubishi Heavy Industries	46,222.2	849.6
Tokai Bank	373,814.4	Fujitsu	42,761.3	874.2
합계	5,419,609.2		681,237.1	796.6

주 : 10대 기업은 서비스업종 제외

자료 : Fortune, 1995, Aug. 7, The Banker, 1995, July

표 3-20 • 미국 10대 은행 총자산/10대 기업 총자산 비교(199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10대 은행(A)		10대 기업(B)		A/B
Citicorp.	250,489.0	Ford Motor	219,354.0	114.2
Bankamerica Corp.	215,475.0	General Motors	198,598.7	108.5
Chemical Banking Corp.	171,423.0	General Electric	194,484.0	88.1
Nationbank Corp.	169,604.0	Exxon	87,862.0	193.0
J.P.Morgan & Co.	154,917.0	IBM	81,091.0	191.0
Chase Manhattan Corp.	114,038.0	Phillip Morris	52,649.0	216.6
Bankers Trust NewYork Corp.	97,016.0	Loews	50,336.0	192.7
Banc One Corp.	88,922.6	Chrysler	49,539.0	179.5
First Union Corp.	77,314.0	Mobil	41,542.0	186.1
First -Chicago Corp.	65,900.0	Du Pont	36,892.0	178.6
합계	1,405,098.6		1,012,347.7	138.8

주 : 10대 기업은 서비스업종 제외

자료 : Fortune, 1995, Aug. 7, The Banker, 1995, July

표 3-21 • 한국 10대 은행 총자산/10대 기업 총자산 비교(199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10대 은행(A)		10대 기업(B)		A/B
외환은행	37,336.2	포항제철	15,464.1	241.4
제일은행	35,681.7	삼성전자	11,313.9	315.4
한일은행	31,110.8	현대자동차	8,209.0	379.0
조흥은행	30,757.8	유공	8,030.5	383.0
상업은행	29,345.6	기아자동차	6,921.7	424.0
서울은행	27,494.5	현대건설	6,211.3	442.7
신한은행	21,595.3	LG전자	5,510.7	391.9
장기신용은행	17,634.0	대우자동차	5,072.8	347.6
대구은행	8,547.6	현대전자산업	4,069.6	210.0
하나은행	7,904.2	대우전자	3,817.0	207.1
합계	247,407.7		74,620.4	331.6

주 : 10대 기업은 서비스업종 제외

자료 : 한국기업 재무총람, 1995

물론 국내은행간 합병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는 많다. 미국은행들의 합병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대형화를 모색하기보다는 리스트럭처링 개념의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연하자면, 상호보완적 업무를 통합하는 전략적 제휴의 성격이 강하고 중복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인원축소 및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민영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병 시 직원축소는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국내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은행의 대형화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우선 남겨두고 앞으로 다가올 금융개방을 계기로 합병에 필요한 제반 제도적 요건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3) 일반 시중은행의 증권업 참여

산업국가들의 은행제도는 업무영역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발전되었다. 하나는 분업주의 은행제도(Specialized banking system)이며 다른 하나는 겸업주의 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이다. 직접금융 시장이 발달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분업주의 은행제도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아 각각의 업무를 별도의 기관들이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전통적 분업주의 체제에 속했던 과거 영국의 금융제도 아래에서 일반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주의에 입각하여 주로 단기 상업금융 업무에 치중하였다.

영국계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독일을 비롯하여 많은 유럽국가들은 단기금융뿐만 아니라 장기금융 및 증권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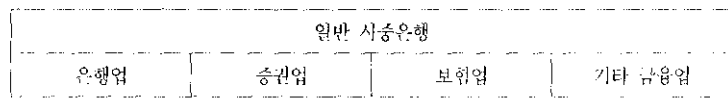
차입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목적 특수은행, 또는 겸업은행제도를 발전시켰다. 독일의 은행업은 산업화 초기단계부터 산업화에 필수적인 장기자본 공급과 기업심 고취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후발산업국가로서 영국에 비해 뒤늦은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도화된 독일의 겸업은행은 산업기업의 성장전망 및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업가의 기능을 떠맡음으로써 은행은 장기 자본공급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부족을 대체해주는 사회적 제도였던 것이다.

겸업은행이란 원칙적으로 일반 시중은행 업무(전통적인 예·수신환 등), 증권관련 업무(증권인수, 중개 및 투자신탁 업무), 외환업무, 보험업무 및 기타 금융업무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일컫는다. 그러나 보통 겸업과 분업의 분류는 은행업과 증권업을 통합 경영하느냐, 또는 분리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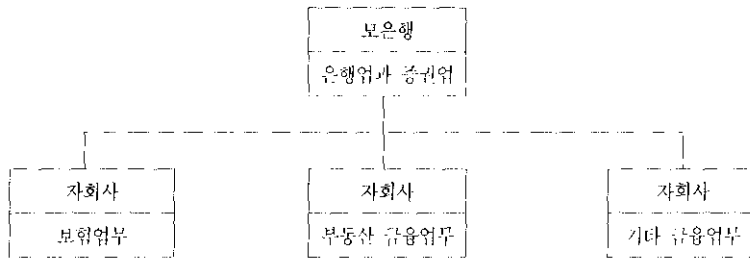
비록 겸업주의 은행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겸업체제는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림 3 4 참조). 예를 들어 독일의 은행법은 은행업무를 예금, 대출, 어음할인, 증권인수 및 중개, 증권매매, 투자신탁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무 및 주택금융 업무는 겸업은행의 자회사를 통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분업주의 은행제도를 유지하다가 1986년 빅뱅(Big Bang)으로 은행의 증권업 참여를 허용한 영국은 독일식 겸업체제와는 달리 은행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최근 영국의 겸업화추세는 국제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강화시키고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취지 아래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영국의 겸업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금융재벌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의 형성이다.

그림 3-4 • 겸업은행의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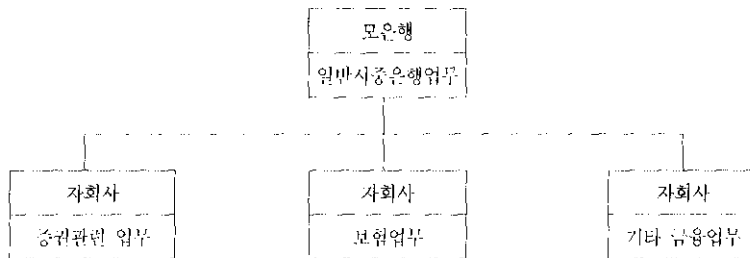
1. 완전 겸업형태



2. 독일식 겸업형태



3. 영국식 겸업형태



이러한 은행의 겸업화 추세는 그동안 분업주의 은행제도를 고수해온 주요선진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은행제도는 1948년에 제정된 증권법에 의거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이 엄격하게 분리되었으나, 1993년에 입법조치된 금융제도개혁안(Financial System Reform Bill)으로 은행의 본격적인 증권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참여 형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중은행이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4년말 현재 거의 모든 주요 시중은행들이 증권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미국의 분업주의 은행제도는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이라는 강력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면서 존속되었다. 사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겸업주의체제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초 대공황을 맞이하게 된 원인으로 은행의 과도한 증권업 참여가 은행의 연쇄부도를 부추겼다는 인식이 널리 퍼짐에 따라 미국회는 은행의 증권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부연하자면, 글래스-스티걸법이 제정·집행된 근본적 이유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이 증권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규제 완화 추세로 인하여 증권업과 은행업을 분리한 과거법안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고, 금융기관간 경쟁우도를 통해 미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글래스-스티걸법안은 곧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의 증권업 참여의 현황과 향후 진로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은 앞으로 다가올 외국증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국내진출 등 금융개방으로 촉진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적 풍토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한국의 은행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형식적으로 분업주의 체제를 지니고 있으나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과 같은 은행법이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비록 한국의 은행법은 증권관련 업무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은행이 증권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당국의 창구지도형 단속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자회사 및 지분참여를 통하여 증권업 및 투자신탁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하여 6개의 예금은행들이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업무 영역에 대한 참여는 은행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책당국의 지도 아래 추진되었다.

최근 은행의 겸업화에 관한 외국의 경험들은 우리나라 은행의 증권업 참여의 향후진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세계 각국이 겸업화를 추진하는 보편적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금융기관간 업무 영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세고하는 데 있다. 특히 은행의 증권업 통합경영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ope)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가능한 비용함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ies)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은행과 고객기업간에 장기적 관계가 형성되면 은행은 그 기업의 성장배경 및 경영스타일을 숙지하고 있고 향후 성장 전망까지도 타 금융기관에 비해 정보의 우월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우월성의 긍정적 측면은 바로 정보의 규모경제(informational scope economies)이다. 고객기업에 대한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기업의 증권발행 업무를 관장하는 데 있어 일반 시중은행은 타 금융기관(특히 증권업에 주력하는 증권회사)에 비해 정보의 우월성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은행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의 우월적 입장은 이해상충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만들어낸다. 여기서 이해상충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은행과 예금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외부효과(externality)이다. 예를 들어 만약 어느 은행이 시장에서 널리 인식되기 전에 특정 고객기업의 경영악화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은행은 특정기업에 제공되었던 대출금을 돌려받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은행은 이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인수하여(또는 기업으로 하여금 증권발행을 독려하여) 일반대중에게 배분함으로써 얻은 매상금으로 그 기업의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여기서 일반대중이 은행의 예금자라면 그러한 은행의 유인은 이해상충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상충이 의미하는 바는 은행 스스로 어느 고객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가치를 오인시킴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을 충분히 속일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유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면 과연 일반 시중은행의 증권업 참여는 은행의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상기된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역사적으로 겸업주의체제에서 분업주의체제로 전환해본 적이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은행의 증권업 겸업이 은행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았고 이해상충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이트(Whitc(1986)는 은행부도와 증권업 참여간의 직접적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은행의 증권업 진출이 은행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가설을 반박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는 대공황 당시 은행의 증권업 참여는 은행부도의 가능성을 높였다기보다는 낮추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해상충 문제는 크로즈너(Kroszner와

라잔(Rajan(1994)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정보의 우위에 서 있는 은행과 정보의 열세에 있는 일반투자자, 또는 예금자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는 가설은 증권업을 겸업하는 은행에 의해 인수·발행된 증권의 성과와 투자은행에 의해 인수·발행된 증권의 상대적 성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실증적으로 분석 가능하다. 만약 은행이 예금자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을 종종 경험하였다면 그 은행이 인수·발행한 증권은 부도위험성이 다분히 높고 투자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실증분석 결과는 은행이 인수한 증권의 부도율(부도금액 및 부도건수 양쪽 모두)이 투자은행에 의해 인수된 증권의 부도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한발 더 나아가서 크로즈너(1995)는 1921~29년 기간 동안 발행된 회사채의 수명분석을 통해 투자은행이 인수한 증권의 수명이 은행에 의해 인수된 증권의 수명보다 평균적으로 더 짧았음을 밝히고 있다.

상기된 실증분석 결과는 증권관련 업무를 겸업하는 은행의 이해 상충 문제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인수한 증권이 상대적으로 부도율 및 부도시기에 있어 월등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은행이 정보의 규모경제로 인하여 전망이 좋은 기업(아마도 시장에 덜 알려진 중소기업)을 고를 수 있는 여건이 투자은행보다 훨씬 더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 해석은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한 은행의 합리적 적응(rational adaptation)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 합리적인 일반투자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부도덕한 행위를 예의 주시

할 것이며, 이러한 일반투자자들의 행태는 증권발행 기업에 대한 시장 인지도가 낮을수록(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일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일반투자자들은 레몬스 마켓(Lemons-market) 원칙을 적용하여 은행에 의해 인수된 중소기업증권의 가치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대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정보집약적(information-intensive)인 중소기업의 증권보다는 시장인지도가 높은 우량 대기업 증권의 인수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 은행의 합리적 적응행태이다. 크로즈너와 라잔(1994)은 증권업 취급에 있어 은행의 월등한 성과가 정보의 규모경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합리적인 일반투자자들의 행태를 고려한 은행의 적응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반 시중은행의 증권인수 대상기업은 투자은행의 고객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우량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의 합리적 적응행태를 시사하는 또 다른 실증적 증거는 증권업을 수행하는 은행의 기업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구조의 법적 계약조건이 없는 상황 아래서 만약 정보의 규모경제가 유력하다면 은행은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증권업을 내부부서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만약 이해상충 문제가 하나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은행은 그러한 요소를 경감시키기 위해 자회사조직을 통해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할 것이다. 실제로 대공황 이전 미국은행들이 선택한 조직행태를 보면 대부분 자회사를 통하여 증권업을 관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해상충 문제를 인식하는 일반투자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고자 하는 은행의 조직선택을 통한 합리적인 적응행태라고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시키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미국 글래스스티걸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셈이 된다. 더욱이 겸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미국은행들은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였다. 우량 대기업의 증권을 주로 인수하였으며 내부부서보다는 자회사형태 조직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정책당국이 우려했던 겸업의 문제점들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의 금융산업 개편 논의에서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하여 겸업주의로 전환하고 조직의 형태로서는 자회사를 통한 겸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 추세와 더불어 금융기관간 영업영역 조정에 관한 논의가 최근 한국에서도 심도있게 진행된 바 있다. 1993년 8월에 발표된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개혁안은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종의 금융재벌, 즉 금융전업 기업군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외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제안은 바로 자회사제도를 통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교류이다. 이 제안에 의하면 각 금융기관에게 다른 업무영역을 지닌 금융기관의 지분소유를 허용하여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관계를 정립시킴으로써 금융전업 기업군의 형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증권업 참여는 이미 국제적 추세이며 금융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내 은행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효율적인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은행은 자회사 방식으로 이미 타 업종에 상당부분 진출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회사제도는

부실기업 인수라는 명분으로 정책당국의 창구지도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증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한 여건조성은 경쟁적 풍토이며 금융시장내 경쟁적 환경은 바로 금융개방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숙될 것이다.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에 있어 자회사 형태의 장점으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직형태상 겸업의 내부부서화는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반면에 자회사제도는 그러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나마 유지시켜 온 분업주의의 이득이 보다 용이하게 보존될 수 있다. 셋째, OECD(1993)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어느 한 금융기관이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업무영역에 진입할 때 제한적 책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회사 형식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부서화보다는 자회사 형식이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형태라는 점이다.

제 4 장

대 책

1. 개방의 선행조건과 순서

OECD 가입은 자본, 금융 및 외환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며,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유입과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등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증대나 국내 금융시장의 잠식과 같은 부정적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개방에 앞선 선행조건, 개방시의 순서 등을 살펴보고 자본유입 및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책수단들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우선 개방에 선행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경제상황이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느냐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시장의 개방이 전체 국가경제의 효율과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동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통화체제의 안정, 낮은 인플레이션 및 작은 국내외 금리차,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규제감독 기능의 확립 등이 요구된다.

양호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면 재정적자를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보전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되면 정부는 국내 금융중개로부터의 세금징수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정의 건고성은 필수적인 선행조건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대규모의 자본유입 이전에 안정적 통화공급으로 실제 및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낮추어둔다면,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여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환율절상을 통해 흡수해야만 할 필요가 없다.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 국내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므로 국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이는 금리차를 노리는 대규모의 부동자금의 유입을 막아준다. 무역자유화 및 수출다변화 또한 대규모 자본유입기에 선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중요한 선행조건 중 하나로는 높은 국내저축률을 들 수 있다. 국내저축률이 충분히 높지 않으면 유입자본이 국내투자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국민소득 증가분 중 저축분이 증가된 투자분보다 작아 또다시 해외로부터 투자재원이 유입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함으로써, 자본유입국은 국제수지 제약하에 상당히 빨리 놓일 수 있다. 해외자금이 국내투자 증가로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순외채의 상환에 기여할 저축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달성하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해외자본은 소비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일관성 있게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둘째, 투자는 효율적이어야 한다. 셋째, 부채상환에 요구되는 무역흑자 창출을 위해 투자는 건설부문이나 비교역재보다는 교역재에 집중되어야 한다. 넷째, 한계저축률이 평균저축

률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내저축률을 끌어올리려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선순환을 위해서는 요소생산성 증대에 맞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본을 유입해야 한다.

자본유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고통을 피하고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금융서비스 시장의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고,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내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엄격한 규제감독 정책 등을 통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건실도와 성장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자본이동의 유출입으로 인해 환율 등의 가격변수들의 변동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위협에 노출되는 정도는 더 커질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선진 위험관리 기법 등을 사전에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괄적 구제는 금융기관의 고수익을 얻기 위한 모험적 자산, 부채운용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파산을 정부가 과감히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소액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제의 도입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차별적 요율적용 등 각종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선행조건들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목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외 금리차는 채권시장 개방시 대규모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초래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자본

유입에 따른 원화 환율의 절상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자본유입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더 상승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재정 및 통화정책 등을 혼용하여 물가 및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아직 국내 금융제도의 정비가 미흡하고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 및 업계의 대응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경제의 안정화, 금융의 선진화 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는 OECD 가입과 이에 따른 자본·금융시장의 추가개방에 앞서 우선 이러한 선행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행조건이 충족이 미흡한 가운데 자유화 유보에 대한 OECD측의 양해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가입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마지막으로 장단기 자본의 차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의 선순환은 단기자본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의 유입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또한 제3장의 각국의 경험사례 분석과 VAR 모형분석을 통해 우리는 단기자본의 유입은 부정적 영향이 강하고, 장기자본 유입의 경우 긍정적 영향이 강하며 부정적 효과 또한 단기성 자본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유입시 이에 주목하여 적절히 대응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개방의 순서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 국가의 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될 때 실물상품, 서비스, 장단기 금융, 그리고 통화의 순서로 개방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실물상품과 관련된 거래는 경상무역 거래,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는 경상무역외 거래, 장단기 금융과 관련된 거래는 장단기 자본거래, 그리고 통화와 관련된 거래는 외환거래라고 한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수출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경상거래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점차 경제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금융서비스 거래, 자본거래 및 외환거래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시행해온 순서대로 경상거래의 개방 후에 금융거래의 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상개방으로 인한 위험은 개방된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방이 다시 유보될 수 있는 반면에 금융개방으로 인한 위험은 전체경제에 파급될 수 있으며 일단 개방이 되면 효과적으로 다시 유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이 경상개방보다 금융개방을 먼저 추진하여 개방에 실패한 예가 있다.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장기자본 거래-단기자본 거래-금융서비스 거래-외환거래의 순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금융서비스 거래의 개방은 기본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자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외국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금융서비스 거래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융거래 시장은 외국 금융기관에게 대부분 잠식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서비스 거래는 자본거래가 개방된 이후에 개방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산업은 개방된 장단기 자본거래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거래의 완전한 개방은 금융개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거래가 완전히 개방될 경우에 금융거래자는 외환의 내입·매도, 보유, 송금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원화도 국제거래에서 자유롭게 결제되며 원화환율의 변동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외환거래가 완전히 개방되면 자본거래는 자연히 개방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도 효과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의 개방은 자본거래의 개방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외환거래가 완전 개방되면 금융개방 경제의 체제가 완성되어 소규모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도 국제경제에 완전히 노출된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가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경제의 영향에 따라 국내경제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예컨대 국내금리 및 환율이 변동하여 금융투자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내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기 부동자금의 이동이 발생하여 국내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환거래의 개방은 금융서비스 거래의 개방보다도 늦게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약속은 1957년 EU 회원국간의 로마협정이다. OECD도 61년에 설립되면서 자본이동 자유화협약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 외환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말부터이다(캐나다, 독일, 스위스, 미국 등은 애초부터 외환규제가 없는 나라였다). 그러나 80년대 접어들면서 개방과 경쟁이 국제경제의 주된 흐름이 되자 각국의 통화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경제의 효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OECD 회원국들의 금융개방은 가속화되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기타 회원국들에게도 이러한 개혁의 불결이 밀어닥친 것이다.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들은 자본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해 위험이 더 작은 거래, 그리고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문에서 외환통제를 철폐해왔다. 예를 들어 해외 직접투자가 증권투자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무역관련 신용이 금융대출보다 먼저 자유화되었다. 또 주식거래가 채권보다 선행되었으며, 채권거래도 장기가 단기보다 먼저 개방되었다.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이러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다. 가령 터키는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동시에 자유화시켰으며 스웨덴은 장기채와 단기채를 1987년에 한꺼번에 개방하였다. 또 이탈리아와 아일랜드는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자유화시켰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개방의 순서에 주목하는 동시에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등을 고려한 개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자본유입에 따른 대책과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정책적 대응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2. 자본유입에 대한 정책대응

OECD 가입은 우리나라 자본·금융시장의 개방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해외자본의 유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국내로 유입된 자본은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환율의 절상과 경상수지의 악화, 통화량 증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부적절한 자원배분으로 인한 투기와 과소비조장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유입된 자본은 국내의 금융·통화정책 및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출로 반전될 우려가 있으며, 자본유출은 심한 경우 멕시코와 같은 거시경제혼란 및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본유입이 초래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해보기로 한다.

(1) 단기자본 유입에 대한 억제책

유입되는 자본의 성격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장기자본의 경우 투자확충, 기술개발, 생산능력 제고 등의 긍정적 영향이 큰 반면 환율절상이나 통화량, 물가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다. 이와 달리 단기자본의 유입은 제3장에서 보듯이 부정적 측면이 보다 강하므로 가급적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장기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기가 길수록 낮은 지불준비율을 부과하는 토빈 Tobin 세의 도입이나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최소 보유기간 설정 등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해 크게 높으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므로 국내외 금리차의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무역정책

수출부문의 실질환율절상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수출보조금, 관세인상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재의 세계 무역환경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가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선물환거래를 통한 환위험 제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와 외화간 선물환거래가 취약하므로 중앙은행이나 재무부 외환평형기금이 선물환시장에 개입하여 선물환 매매를 실시하여 환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불태화정책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경우 유입된 자본은 본원통화의 증가로 흡수하고 물가불안이 우려되면 환율절상으로 흡수하는 것이 자본유입에 대한 일반적 정책이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불안이 동시에 우려되는 경우 불태화정책은 이론적으로 이 둘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불태화정책이란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에도 불구하고 국내통화량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말하며, 그 방법들로는 공개시장 조작, 지불준비율의 상향 조정, 제한인 방식의 축소, 직접대출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불태화정책은 비교적 정책수행이 용이하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불태화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규제 통화관리 방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국공채시장이 발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 등 적절한 불태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불태화정책 수단으로서 통화안정 증권의 발행, 민간신용의 축소, 지급준비율의 인상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모두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즉 통화안정 증권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발행잔액이 크게 누적되어 동 증권의 이자지급에 따른 본원통화의 증가뿐만 아니라 시중의 유동성 관리면에서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발행이 어렵다. 대출규제 등 민간신용의 축소는 정책금융의 비중이 큰 상황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지급준비율의 인상은 본격적인 금융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된다는 측면과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급준비율의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불태화정책 수단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국공채시장을 활성화하여 공개시장 조작을 활용할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권의 수요기반 확충, 금리자유화, 매매정보 공시체제 확립 등의 채권시장 육성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은행이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하여 불태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채권발행 금리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률과 환율의 평균절하율을 합친 것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손실에 따른 재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자본자유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불태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내금리의 상승 등으로 해외자본이 추가 유입됨으로써 통화량이 증가하고 평가절상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불태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는 없다.

(4) 재정정책

지속적인 자본유입에 따른 경기과열, 인플레이 및 과도한 실질환율 절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공급 증가를 국내여신의 삭감으로 상쇄한다면 자금의 흐름이 경색되고 국내금리가 상승하며, 이는 추가적 자본유입으로 악순환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자본유

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화정책만을 운용하기보다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거나 흑자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재정정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간접자본, 교육, 연구개발 이외의 분야에서는 정부지출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 남북협상에 의한 상호 국방비 삭감, 정부기구의 개편,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부동산 세제개선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자본유출 규제완화 정책

불태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통화공급의 제약과 국공채발행 증가로 국내이자율이 상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자본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외로의 자본유출을 유도하는 자본유출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유출 규제완화의 형태로는 거주자들의 해외 증권투자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외환집중제의 완화, 외국기업들의 이윤 및 자본의 분국송환에 대한 제한 완화, 공공차관의 조기상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자본유입에 대한 상쇄효과뿐만 아니라 선진기술 습득, 물류비 절감, 환위험 감소 및 마케팅부문에서의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통상마찰 회피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자본유출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국내외 이자율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의 자본유입 정책수단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스왑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 보유외환을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이들은 동 외화로 해외자산을 운용하고 일정기간 뒤 중앙은행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국내유동성을 해외로 완전히 방출하고 국내금리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저금리에 원화 절상시의 환차손 발생으로 이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자본유입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 국내외 금리차의 축소, 건설한 재정, 채권시장의 활성화 등의 선행조건의 충족이 없는 과도한 자본유입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며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대책들도 그 효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에는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3.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OECD 가입을 계기로 향후 가속화될 금융개방의 확대는 한국 금융산업의 체질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외부 금융개방 압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기반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적 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학습하고 개발하는 데 기여하리라 전망된다. 또한 금융개방은 전통적인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 여신활동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체질변화는 이러한 외부 개방압력의 결과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발전 단계 측면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내부적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산업 개편문제는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자유화 기조와 병행하여 국내 금

용산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조치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은행산업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증권업 참여는 최근 주목할 만한 세계적 추세이다. 특히 전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은행산업의 시장점유율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산업기업에 비해 질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은행의 현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은행의 합병·대형화는 은행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제도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으로 실질적인 은행의 민영화가 구축되도록 은행장 인사에 대한 정책당국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의 폐지와 함께 확대이사사회제도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두번째로 상호보완적인 중점업무 영역을 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중복조직의 통폐합으로 경영효율화를 증대시키는 합병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현행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합병형식으로 대등한 합병을 제약하고 흡수합병으로만 국한시키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증대라는 합병의 기본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합병을 통한 대형화의 이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도록 정책당국의 개입을 간접적으로 용

인하는 합병인가 요건이 대폭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 상업은행의 증권업 참여 역시 당국의 상황적 판단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겸업화추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 관련규제를 손질해나가야 한다. 국공채, 회사채 및 주식의 인수 발행 등 증권관련 업무를 순차적으로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회사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겸업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2) 증권산업

한국의 증권시장 성숙도는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훨씬 뒤떨어진 실정이다. 향후 증권시장 관련 금융개방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한도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 확대, 채권시장 개방,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확대허용, 해외기업의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 허용, 외국증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국내진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개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 개방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업무영역 확대허용이 우리나라 증권산업에 미치는 중·장기적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금융개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취하되 이보다 앞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역외금융을 활성화시키고 해외점포망의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제조업 기업과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금융국제화에 맞는 전산시스템의 확충은 시

급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활성화는 한국 증권시장의 발전에 또 다른 차원을 제공할 것이다.

시장이 육성되기도 전에 규제·감독의 강화를 논하기보다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장의 활성화에 우선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1) 김태준, 『OECD 경상부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2) 김세원 외 7명, 『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비봉출판사, 1995.
- 3) 경제기획원, 『우리나라의 대 OECD 정책추진 현황』, 1994.
- 4) 박찬일,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개혁과 경제성장』, 한국경제연구원, 1994.
- 5) 박찬일, 『금융제도의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1995.
- 6) 삼성경제연구소, 『자본자유화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 1995. 9.
- 7) 신세돈, 『자본시장 개방과 자본수지의 구조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5. 8.
- 8) 손정식·박대근,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12.
- 9) 이연호, “외국자본유입의 효과와 대응방안”, 『대우조사 월보』, 1994. 9.
- 10) 이승엽, “자본유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1994.12.
- 11) 외무부, 『OECD :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의 가입추진』, 1994. 6.
- 12) 왕영균, 『자본자유화, 실질환율 및 정책대응 : 남미, 아시아제

- 국의 경험 및 한국의 정책」, 한국금융연구원, 1995.
- 13) 재정경제원, 『OECD 자유화 규약 유보현황(항목별, 국가별)』, 1995.
 - 14)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1995.
 - 15)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 증권시장의 과제』, 1994. 3.
 - 16) 한국금융연구원, 『외환제도개혁 연구』, 1994. 12.
 - 17) 한국무역협회/산업연구원,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992.
 - 18) 한국증권업협회, 『OECD 자유화 규약 중 증권관련 항목에 대한 분석』, 1994.
 - 19) 한국조세연구원,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 방향 : 개원 2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4. 9.
 - 20) Ang, J. S. and T. Richardson, "The Underwriting Experience of Commercial Bank Affiliates Prior to the Glass Steagall Act : A Re-Examination of Evidence for Passage of the Act",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994.
 - 21) Fischer, B. and H. Reisen, "Towards Capital Account Convertibility", *OECD Development Centre Policy Brief*, No. 4, 1992.
 - 22) Fischer, B. and H. Reisen, *Liberalising Capital Flows in Developing Countries: Pitfalls, Prerequisites and Perspectives*, Paris: OECD Development Centre, 1993.
 - 23) Fry, M. J., *Money, Interest, and Banking in Economic Development*,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 24) Gerschenkron, A.,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 A Book of Essay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 25) Greenwood, J.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Stability in Asia", *Asian Monetary Monitor*, Vol. 18, No. 4, 1994.
- 26) Hoshi, T., "Back to the Future : Universal Banking in Japan", 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Universal Banking, New York, 1995.
- 27)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994.
- 28) Hamilton, J. D., *Time Series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1994.
- 29) Kroszner, R. S., "The Evolution of Universal Banking and Its Regulations in Twentieth Century America", 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Universal Banking, New York, 1995.
- 30) Kroszner, R. S. and R. Rajan, "Is the Glass-Steagall Act Justified? : A Study of the U.S. Experience with Universal Banking before 1933",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94, pp 810~832.
- 31) Lee, C. H.,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 Lessons For The Transition Economies*, Paris : OECD, 1995.
- 32) McKinnon, R., *The Order of Economic Liberalization : Financial Control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
- 33) OECD, *OECD Economic Survey: Mexico*, 1992.
- 34) OECD, *OECD Economic Survey: Greece*, 1994.
- 35) OECD, *OECD Economic Survey: Greece*, 1995.
- 36) OECD, *OECD Decisions, Recommendations and Other Instruments in Force*, Vol. I, Vol. II, Vol. III), 1993.
- 37) OECD, *Financial Market Trends*, 1995.

- 38) OECD,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5.
- 39)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 Policies and Trends in the 1980s*, 1992.
- 40) OECD, *The Benefits of Free Trade : East Asia and Latin America*, 1994.
- 41) OECD, *Integrating Emerging Market Economies into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1994.
- 42) OECD, *Introduction to The OECD Codes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and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1995.
- 43) OECD, *Transformation of the Banking System: Portfolio Restructuring and the Payment System*, 1993.
- 44) Reisen, H., "Macroeconomic Policies Towards Capital Account Convertibility", in Helmut Reisen and Bernhard Fischer, eds, *Financial Opening: Policy Issues and Experiences in Developing Countries*, Paris : OECD, 1993.
- 45) Reisen, H., "Managing Temporary Capital Inflows: Lessons from Asia and Latin America", a paper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Meeting of the Pakistan Society of Development Economists, Isamabad, 18~21 April 1995.
- 46) Rhee, S. G, *Securities Markets And Systemic Risks In Dynamic Asian Economies*, Paris : OECD, 1995.
- 47) Roe, M. J., "Some Differences in Corporate Structure in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Yale Law Journal*, 1993, pp 1~84.
- 48) Rybezinski, T. M., "Industrial Finance System in Europe, U. S. and Japa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984, pp

275~286.

49) Saunders, A. and I. Walter, *Univers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 What could we gain? What could we lo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50) Turner, P., "Capital Flows in the 1980s: A Survey of Major Trends", *BIS Economic Papers*, No. 30, 1991.

|

부 록

1. VAR 모형의 추정절차

단위근 검정 Unit Root Test

VAR 모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형내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이 안정적(stationary) 시계열 자료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분석변수가 안정적 시계열을 갖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단위근 검정식은 다음과 같다.

$$dX_t = a + bt + cX_t + e_t$$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는다는 것은 시계열이 확률적 추세를 가지고 있어 차분(difference), 파워변환(power transformation), 또는 추세제거(detrend)를 통해 시계열의 안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한다.

VAR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이 표본기간 동안 안정적인가를 보기 위해 보강된 디키-풀러(Augmented Dickey-Fuller) 및 필립스-페론(Phillips-Perron) 검정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록 1-1 • 기초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ADF 검정 통계량	P-P 검정 통계량
장기 자본수지	-27.98	-70.28
단기 자본수지	-288.19	-155.96
경상수지	-11.86	-40.62
총통화	-171.43	-188.45
소비자물가	-47.16	-94.86
환율	-31.58	-182.86
금리	-174.32	-120.40

주 : ADF 검정과 P&P 검정은 추세항(Trend)을 고려한 경우로 시차변수를 3기까지 고려했으며, 편의상 부호를 바꾼 값으로 유의수준은 표본수 250의 경우 1% 임계치가 28.4, 5%의 임계치가 21.3임.

VAR 모형의 설정

VAR 모형의 구성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시차 lag의 결정인데, 우도비율 검정(likelihood ratio test)과 왈드 검정(Wald test)을 이용하여 시차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검정방법은 제약되지 않은 형태의 시차를 가진 VAR 모형과 제약된 형태의 시차를 갖는 또 다른 VAR 모형을 동일 표본기간에 대해 추정한 후 차이가 나는 시차에서 변수들의 계수들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으로 검정 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T - C)(\log|\sum r| - \log|\sum u|)$$

T : 표본의 수

C : 소규모 표본에서의 추정치 조정계수

$\sum r$: 제약된 모형의 공분산행렬

$\sum u$: 제약되지 않은 모형의 공분산행렬

위 통계량은 점근적으로 제약의 수만큼의 자유도를 갖는 χ^2 분포를 따르며, 본 자료를 검증한 결과 시차변수를 9로 하는 VAR(9)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시차의 수 결정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변수의 순서ordering문제인데, 변수들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외생성이 강한 변수별로 앞에 두어 분석하였다.

충격반응 분석

모형내의 특정변수에 대해 일정한 충격shock을 가하여 모형내의 각각의 변수들이 시간경과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관계와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충격반응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VAR 모형에서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의 문제이고, 둘째는 잔차들끼리의 동시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s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충격반응함수는 통상 VAR 모형체계의 이동평균함수로 정의된다.

$$\begin{aligned}
X_t &= A(L)X_t + e_t \\
\rightarrow X_t &= [I - A(L)]^{-1} e_t \\
&= B(L)e_t \\
&= B_0 e_t + B_1 e_{t-1} + B_2 e_{t-2} + \dots
\end{aligned}$$

결국 VAR 모형의 전환을 통해 방정식체계를 백색잡음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함으로써 계열상관의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상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홀레스키(Cholesky)의 행렬분해법(decomposition of a matrix)을 이용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이 아닌 원행렬의 잔차분산 $Var(e_t)$ 를 Ω 라 하면, 홀레스키 행렬분해에 의하여 $\Omega^{-1} = GG'$ 로 표시되고 $u_t = G \cdot e_t$, $C(S) = B(S)G^{-1}$ 가 된다.

이를 방정식체계로 나타내면,

$$X_t = \sum_{s=0}^{\infty} B(S)G^{-1}G e_{t-s} = \sum_{s=0}^{\infty} C(S)u_{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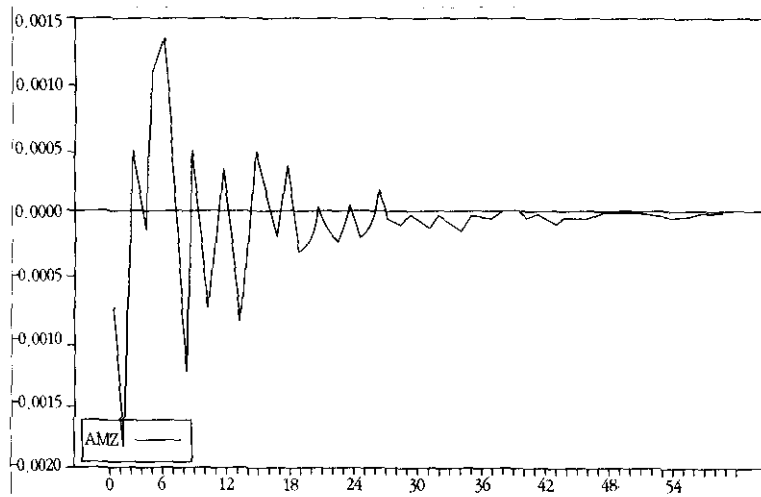
u_t : 계열상관의 문제가 해결된 잔차시계열

$$\rightarrow X_t = C(L)u_t = \sum_{s=0}^{\infty} C(S)u_{t-s} : \text{충격반응 분석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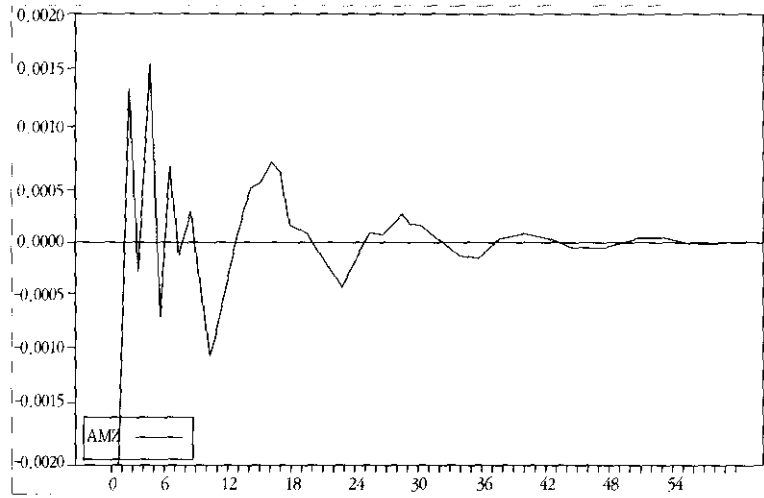
최종모형이 도출

2. 충격반응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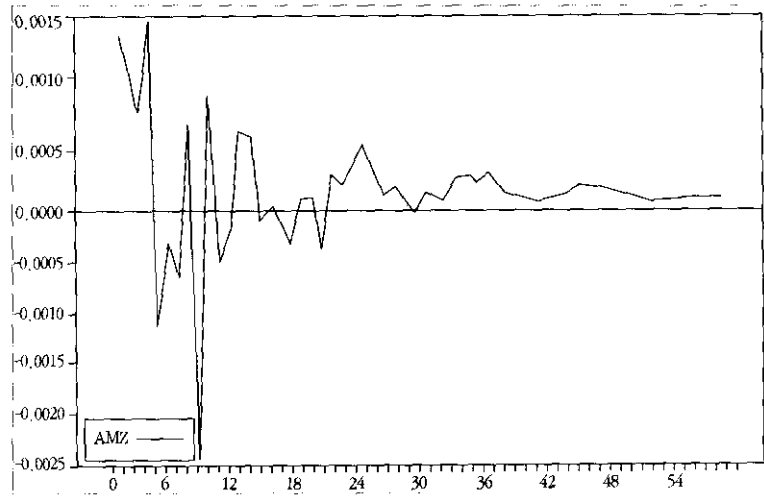
부록 2-1 • 장기 자본수지가 통화량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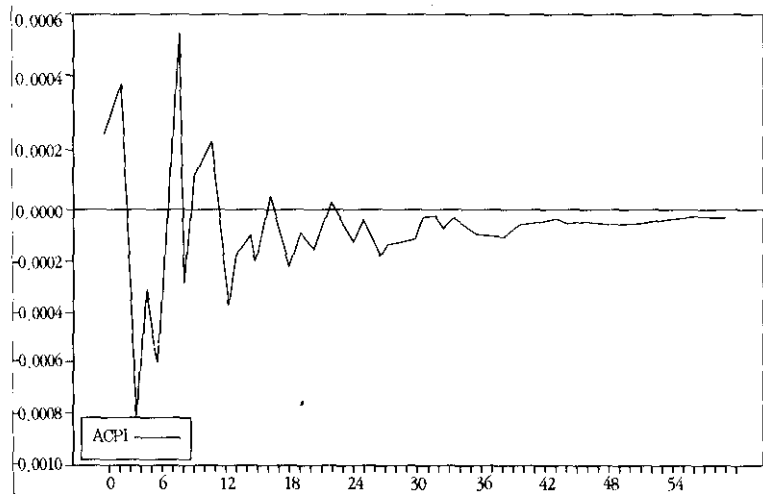
부록 2-2 • 단기 자본수지가 통화량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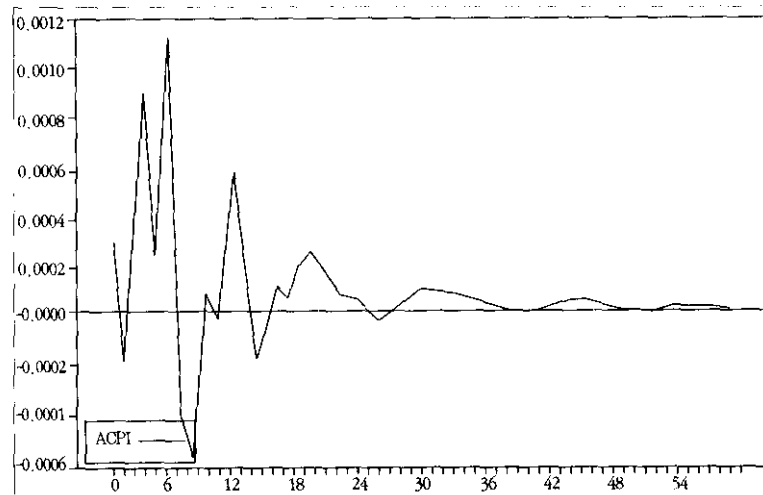
부록 2-3 • 경상수지가 통화량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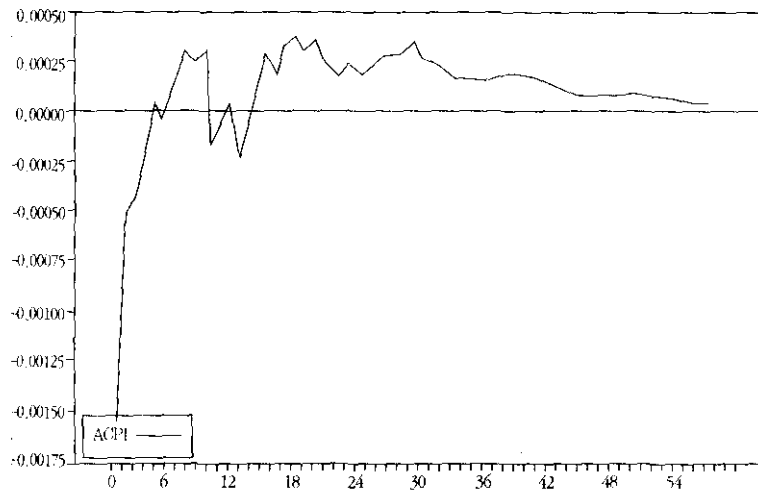
부록 2-4 • 장기 자본수지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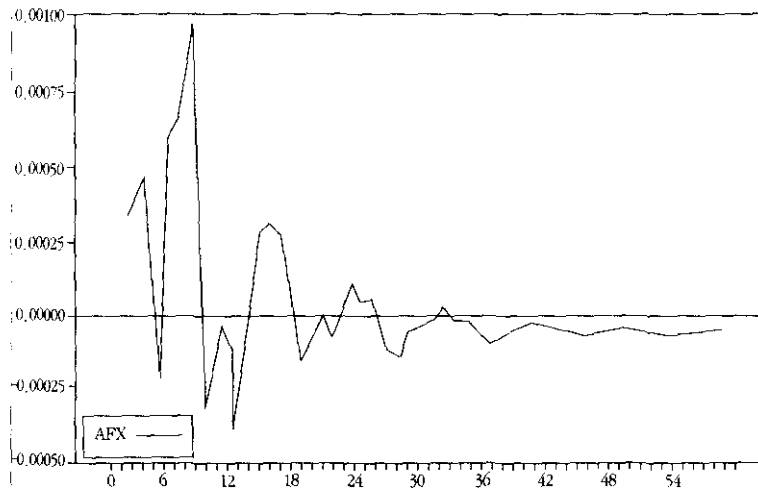
부록 2-5 • 단기 자본수지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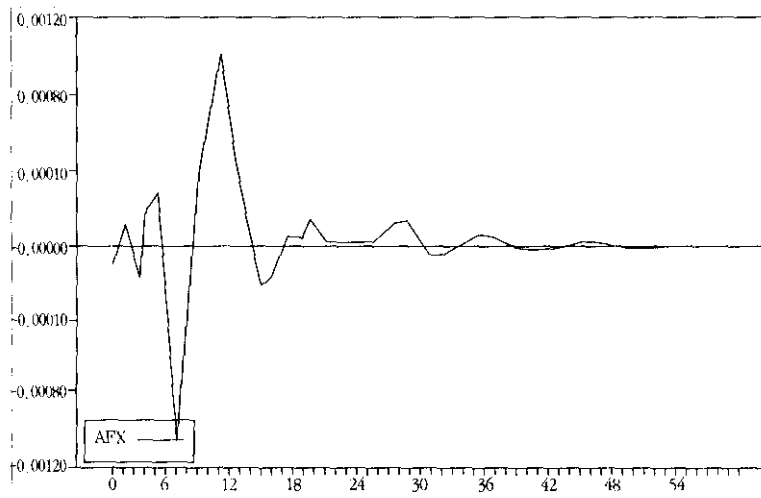
부록 2-6 • 경상수지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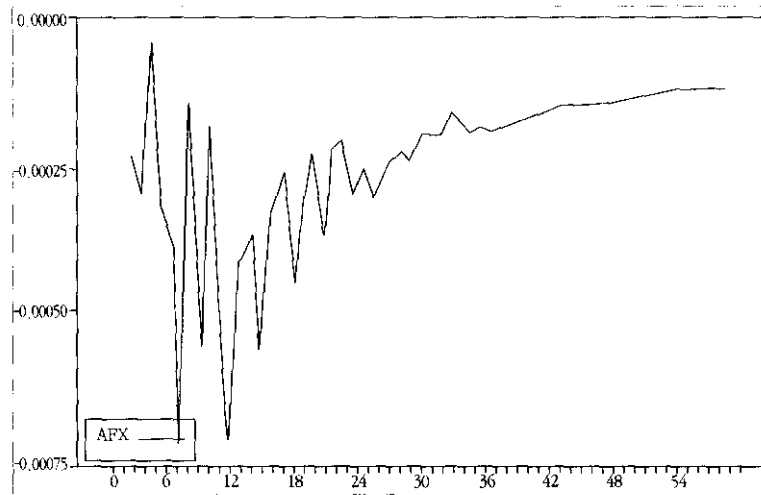
부록 2-7 • 장기 자본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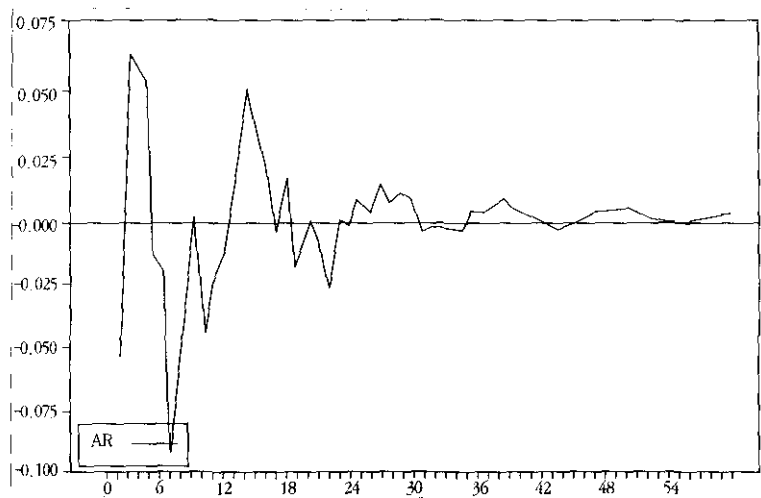
부록 2-8 • 단기 자본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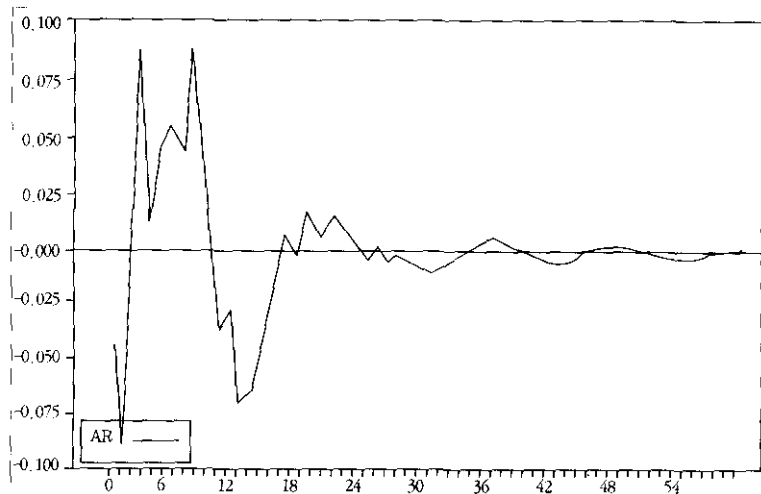
부록 2-9 •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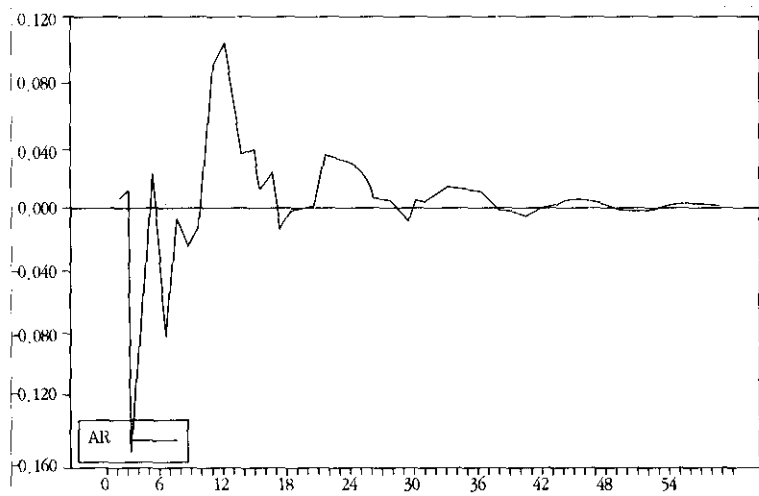
부록 2-10 • 장기 자본수지가 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



부록 2-11 • 단기 자본수지가 통화량에 미치는 파급효과



부록 2 - 12 • 경상수지가 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



3. OECD 자유화 규약에 비추어본 우리나라의 자유화 현황과 향후 계획 및 OECD 회원국 현황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1. 직접투자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1/A 비거주자의 국내투자</p> <p>1. 완전소유기업, 사외사, 또는 지점의 설립 및 확장과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전권 등</p> <p>2. 신설, 또는 기존기업에의 참여</p> <p>3. 5년 이상의 대부</p> <p><제한제도></p> <p>- 외자도입법은 공익, 보건위생, 환경보존, 마중양육을 이유로 특정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1,148개 업종 중 94년 7월 현재 180개 업종 투자제한(합작외국인 투자 37개 별도) ※180개 업종 중 종합무역업 등 33개 업종은 허용기준 충족시 투자 가능 • 이들 제한업종은 개별법상 제한도 수용 • 또한 외자도입법은 3년 이상의 차관계약의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제19조) 현재로는 통화관리, 국제수지상 이유로 중소기업, SOC 영위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다만, 순수한 상업차관은 직접투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p>-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 적용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간행물(신문 포함) 및간사업, 방송업(뉴스제공업, 라디오, TV, 유선방송업 포함), 광업, 항공, 운송업, 통신사업, 무선, 부동산 2. 수산업, 식육정제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또는 의견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게 되는 투자 3. 국내에 등록된 항공기 소유기업에 대한 주식이나 지분의 1/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투자 4. 국내에 등록된 선박을 소유하는 기업에 대한 주식의 1/2, 또는 의견권의 2/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투자 5.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투자 6. 외국기업(은행 및 금융서비스, 증권, 보험서비스 기업 포함)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점, 대리점, 사무소 설치에 관계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p>- 94년 7월 현재 제한업종 147개(자유화율 87.2%)</p> <p>• 94년 7월 현재 제한업종 180개(부분개방 제외) : 자유화율 84.3%</p> <p>• 98년 54개(자유화율 95.3%) 합작외국인 업종은 37개에서 7개로 축소</p>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개발법상 외국투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행물 사업에의 출자, 외국 정기간행물의 시사원치 제한(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방송업, 종합 유선방송 사업, 유선방송 사업에의 출자 제한(방송법 등) • 수산업 면허 및 출자지분 제한(수산업법) • 항공기 소유 제한(항공법) • 국내 항공운송, 외국 해상화물운송 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제한(항공법, 해운법) • 통신사업, 무선국 기업의 외국인의 출자지분 임원취임 등 제한(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 광업권 소유기업 및 동기업에 대한 출자지분 제한(광업법) • 석유정제업에 대한 출자지분 제한(석유사업법) •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규정 제10-96조) • 비거주자 국내지점 설치는 한국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또는 금융통화위원회 인허가 사항(규정 제14-24조, 증권거래법, 은행법)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I/B 거주지의 해외투자</p> <p>1. 완결소유기업, 자회사 또는 지점의 설립 및 확장과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전취득</p> <p>2. 신설 또는 기존기업에의 참여</p> <p>3. 5년 이상의 대부</p> <p>- 상기 A 및 B에 따른 거래 및 송금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자유임</p> <p>1. 투자의 목적이 오로지 투자자가 외국의 자금 또는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순전히 금융적 성격의 투자</p> <p>2. 특정의 거래 또는 송금이 그 금액이나 기타 요인으로 당해 회원국의 이익에 상당한 해를 끼치는 경우</p> <p>- 회원국의 관계당국은 다음의 것들을 유지하거나 신설할 수 있음</p> <p>• 비거주자에 대하여(거주자와 비교하여) 특별한 장벽-제한을 가하고, 비거주자의 내내 직접 투자를 방해하거나 원저한 정도로 제약하는 허가·승인·인가제(부가되는 조건·요건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요건 포함)를 적용함; 규정-위행</p> <p><제한제도></p> <p>- 해외직접투자 요건(외국환관리규정 제12-4조)</p> <p>- 자기자금조달비율(95년 10월 신설) : 투자금액 1억 달러 이하 10% 이상, 1억 달러 초과 20% 이상 자기자금 조달</p> <p>• 투자자가 불참금융거래사가 아니어야 함</p> <p>• 출자비율이 20% 이상이거나,</p> <p>1. 임원파견 계약의 체결</p> <p>2. 1년 이상에 걸친 원자재 또는 제품판매 계약의 체결</p> <p>3. 제조기술의 제공·도입, 공동연구개발 등의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투자일 것</p> <p>• 1년 이상의 대부금, 상기 출자비율 또는 경제관계 수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한 것</p> <p>- 해외직접투자의 허가</p> <p>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투자(규정 제12-7조)</p> <p>1. 해외직접투자 인증</p> <p>• 범위 : 연간 50만 US달러 이하</p> <p>• 담당기관 : 지정은행</p> <p>2.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p> <p>• 범위 : 50만 US달러 초과 3천만 US달러 이하</p> <p>• 담당기관</p> <p>수출입은행, 또는 산업은행 금융지원사(투자금액의 50% 이상) : 당해 은행</p> <p>- 여타 외국환은행 금융지원사(투자금액의 50% 이상) : 당해은행 본점</p> <p>- 기타 : 한중은행</p>	<p>-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 적용됨</p> <p>1. 투자금액이 3천만 US달러를 초과하는 경우</p> <p>2. 금융·보험업자의 해외투자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p> <p>3. 경제적 효율성 및 대외관계를 이유로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됨: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p> <p>4. 금융·보험기관의 해외직접투자(실사부 신고로 운용할 경우 유보 불필요)</p>	<p>- 신경제 5개년계획, 3단계 금융자유화 및 외환제도개혁(안)</p> <p>• 기본방향</p> <p>•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대상은 정리·제한시위 등으로 구분 운용</p> <p>• 국제수지·내외금리차· 통화관리 등 여건에 따른 단계적 자본거래 자유화의 일환으로 해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95년 10월 10일 투자의 신설 허용 목적으로 자기자금조달 비율 부과 변경)</p> <p>• 단계별 계획</p> <p>• 1단계(95년)</p> <p>투자제한업종 축소, 허가기준에 상향 조정</p> <p>• 2단계(96-97년)</p> <p>자유화(단, 대외관계 및 공시양속에 한함: 경우 제외)</p> <p>※비금융업자의 금융업 투자</p> <p>• 1단계(95년)</p> <p>영업과 관련된 금융업 허용</p> <p>• 2~3단계(96-99년) 허가요건 완화</p> <p>※금융기관의 해외투자</p> <p>• 3단계에서 실질적 자유화</p>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3. 해외 직접투자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 3천만 US달러 초과 • 담당기관 - 수출입은행 또는 산업은행 금융지원시 (투자금액의 50% 이상) : 당해 은행 - 기타 : 한국은행 <p>※거주자 외국법인의 자채이익 유보금에 의한 증액투자 는 최초 투자시 허가, 신고수리, 인증을 한 기관의 장의 신고수리 또는 인증 필요 단 증액투자금액이 1만 US달러 이하이고 거주자가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사후보고 가능(규정 제12-7조)</p> <p>가. 금융보험업자의 해외투자(규정 제12-7조) 또는 금융 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필요(규정 제12-21조 제1항)</p> <p>나. 금융·보험업에 대한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지점설치, 자회사에의 투자 또는 상법법인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가 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 장관의 허가 필요(규정 제12-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제한사업(규정 제12-18조, 해외직접투자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기술의 해외이전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사업 • 생산제품의 역수입 등으로 관련사업에 피해조래가 예상되는 사업 • 해외진출업체간 과당경쟁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공시양속에 반하는 사업 • 국제수지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부동산 관련 사업 • 기타 국내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주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투자제한사업 - 외국환은행의 국외점포(지점·사무소) 설치 •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외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외국환관리규정 제2-23조 제1항) - 비은행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필요(규정 제14-17조 제1항)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규정 제14-3조, 제14-7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은행장의 인증으로 해외지점 설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 실적이 1백만 US달러 이상인 자 ii) 기타 주무부 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 전망을 고려하여 해외지점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iii) 단 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 본점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 해외사무소의 경우 설치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규정 제1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융기관의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만으로 해외지사를 설치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경우 인가, 허가 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지정선립에 대해서는 유보 필요 		

II. 직접투자의 청산(List A)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II/A. 거주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경우</p> <p><제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청산(외국환관리규정 제12-14조)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청산은 당해 허가기관에 사전 신고 필요 - 해외투자사업의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잔여재산은 즉시 국내로 회수 - 투자금의 회수(규정 12-13조) - 투자원금과 이자는 원금으로 1주내에 회수해야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원금회수 허가 가능 <p><규약내용></p> <p>II/B.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하는 경우</p> <p><제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송금의 보장(외국투자법 제4조) -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주식지분의 매각대금, 차관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노임 대가는 투자자가, 신고수리 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 보장 - 배당금·회수출자금 등의 대외송금(외국투자법 시행령 제5조) - 외국투자자, 차주 또는 기술노임자의 대외송금은 외국환은행상의 확인 필요(대외송금 확인은 규약상 유보대상 제한이 아님 : 자본이동규약 제5조) - 자본거래 관련 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 (외국환관리규정 제6-13조) -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배지 및 청산대금의 회수 (규정 제14-31조) - 외국기업 국내지사(금융, 증권, 보험관련 지사 제외)를 배지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필요 - 청산대금 회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회수금액은 당해 지사의 영업자금 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의 범위내) - 외국은행, 증권, 보험사의 국내지점, 사무소의 폐쇄 (은행법 제9조,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 금융통화위원회, 재정경제관 장관의 인가 필요 - 청산종료 후 국내 잔여재산 회수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 <p>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청산 또는 폐쇄의 신고 인허가 높은 실제로 확인 정도의 의미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OECD 규약에 대한 유보 불필요: 한국은행 의견)</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I. 직접투자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호주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은행업, 부동산, 내량 배포되는 고유신문, 방송(TV 포함), 민간항공 및 우편업 업종에 대한 투자 2. 호주의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합병법에 의한 사항으로서 고지보자 취득, 종자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호주기업의 부분적 또는 지배적 지분 취득 및 법인, 기업에 대한 외국지배에 관련된 조치 등에 관한 것임 3. 총투자금액이 10백만 호주달러 이상인 신규사업 또는 프로젝트 4. 외국정부 또는 그 기관의 투자 5. 호주 주 또는 지방정부가 임명적 행정적 권한을 갖는 투자 6. 호주 국적상의 보유(호주내 법인설립을 통한 보유 제외)
오스트리아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특정 지방정부가 부동산 취득 제한 권한을 갖는 경우의 부동산 투자 2. 국내수출 또는 국민경제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면허가 제한되는 은행업 3. 회계감사, 법무서비스, 에너지, 운송 4. 오스트리아 등록선박의 25% 이상 지분 취득
벨기에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비EU 회원국 투자자에 의한 공개매수 2. 주사부수가 벨기에 있지 않은 선박회사의 벨기에 국적선 취득
캐나다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캐나다 기업의 대규모 취득은 심사 필요(5백만 달러 이상 자산의 직접 취득, 50백만 달러 이상 자산의 간접취득, 총국제거래 자산의 50% 이상인 5백만 - 50백만 달러의 간접취득) 2. 캐나다의 문화유산 또는 국가적 동일성 관련활동(특히 서적, 잡지, 신문의 출판·배포·판매, 영화, 음악, 비디오·오디오 기록, 라디오, TV관련 분야) 3. 은행 및 금융서비스, 보험, 항공운송, 통신, 에너지, 어업
덴마크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덴마크 국적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만 적용되며, 덴마크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경우를 제외한다
핀란드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허가받지 않은 외국기업의 직접 설치 2. 총 외국지분이 핀란드 기업 자본금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취득 또는 당해취득이 중대한 공익에 위배되는 비법인 핀란드 기업 주식의 취득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 3. 외국 보험회사의 사회사 설립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 4. 외국은행의 완전 및 과반수 소유 지점 또는 사회사, 합식금융기업 및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 설치로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 5. 핀란드 상업은행, 담보은행 또는 여신기관의 주식의 20%, 또는 외결권의 10%를 초과하는 취득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 6. 부동산투자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프랑스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비EU 회원국 투자자의 50백만 프랑 이상의 지분 또는 거주기업의 거래액에 500백만 프랑을 초과하는 영향을 미치는 취득으로서, 다음 조건에 따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신고 필요, 경제재무 장관이 신고 후 1개월내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자 인가(신고수리 거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허가 부여 ② 다음 경우에는 사전신고·사전승인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 통제기업이 이미 주식의 66.66%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증자 - 비거주자 통제하에 있음: 프랑스 기업 또는 동일그룹내 비거주자 기업에 의한 용자, 신용, 보증, 재무질리 또는 갭면, 직접양도 등의 거래 - 외국인 지배하에 있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증액출자로서 당해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 - 소기업, 호텔, 소매업, 각종 용역업, 채석업에 대한 10백만 프랑까지의 직접 투자 - 모도원 이외의 농지 취득 2. 비EU 회원국의 아래 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승인 또는 허가받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운송업으로서 지분의 50% 이상을 프랑스 국민이 소유하지 않거나, 공식적인 국제협약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것. 또한 정부는 국내 항공운송에 대해서는 전권을 보유함 ② 보험회사의 설립으로서 이 경우 비상수요의 기준을 고려함 ③ 프랑스 국민 지분의 50% 이상 소유로서, 프랑스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 당해 선박을 소유하는 경우 제외
독일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자본투자회사의 투자기업 예치은행 역할로서, 주사무소가 EU 역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지점에는 허용되지 않음 2. 항공운송기업에 대한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투자 3. 독일내국법인을 통하지 않은 독일 국적선의 소유 4. 방송(라디오 및 TV)부문에 대한 투자, 독일내 설립된 자회사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며, 기수사 및 비거주자 모두에게 요구됨
그리스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국경지역의 부동산 취득 2. 광업투자로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 3.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설치로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 4. 항공회사 자본금의 4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국내은행은 그리스항공사들이 우선권을 가짐 5. 해운, 어업 목적의 그리스 국적선 자본금의 49% 이상 지분 소유 6. TV방송(유선 포함)국 자본금의 25% 이상 지분 소유와 라디오 방송국 자본금의 49% 이상 지분 소유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아이슬란드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단일투자자에 의한 연간 250백만 ISK를 초과하는 투자로서 허가되지 않은 것 2. 동력집약적 산업, 무역 및 서비스업 이외의 것으로 양어장, 통신, 제조업에 대한 비거주자 투자지분이 25% 이상이 되는 투자로서 허가되지 않은 것 3. 기업간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아이슬란드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투자 4. 외국국영 또는 국가소유 기업에 의한 투자로서 허가되지 않은 것 5. 부동산투자·기업경영 권리를 취득한 법인을 제외하되 토지에 부수되는 정상적 권리만이 인정되고, 어업권 또는 수력개발권 같은 기타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한함. 6. 자연자원 또는 에너지개발권의 취득 및 에너지생산 및 유통업투자 7. 어업 및 1차 어류가공업 투자(수 어업생산물의 유통 및 소비준비를 위한 소매포장 및 그 이후 단계 제외) 8. 외국은행 사회사 설립 및 국내은행에 대한 주식 25% 이상의 투자 9. 항공운송 기업에 대한 주식의 49% 이상의 투자 10. 아이슬란드 국적선의 소유·아이슬란드내 설립된 법인을 통한 경우 제외
아일랜드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비EU 회원국 투자자에 의한 항공운송에 대한 투자 2. 비EU 회원국 투자자에 의한 허가받지 않은 농업용 토지의 취득 3. 아일랜드내 설립된 법인을 통하지 않은 아일랜드에 등록된 화물선의 취득 4. 비EU 회원국 투자자에 의한 아일랜드에 등록된 해양어선의 취득 5. 비EU 회원국 거주자에 의한 소매점제업에 대한 투자
이탈리아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일간지나 정기간행물 발간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과반수 자본참여나 경영지배 2. 비EU 회원국에 본사를 둔 음성·화상 통신업체에 대한 면허 부여 3. TV, 음성라디오 방송면허를 가진 기업에 대한 비EU 회원국 거주자의 과반수 자본참여, 법인이 아니면서 TV와 음성라디오 방송면허를 가진 기업에 대한 비EU 회원국 거주자의 투자 4.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항공기의 취득과 국내항공기 소유기업의 자본금의 1/3을 초과하는 지분 소유 5. 이탈리아 국적 선박에 대한 비EU 회원국 거주자의 과반수 지분취득이나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선박 보유기업에 대한 지배적 지분 취득 6. 이탈리아 영해내에서 작업하는 이탈리아 국적이전의 취득 7. 유가증권 투자회사의 지점, 중개사무소 등의 설립
일본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B. 내국인 해외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1차 산업, 광업, 석유업, 피혁업 및 피혁제품 제조업 2. 항공운송업 3. 해운업 4. 일본에 설립된 합작기업을 통한 경우를 제외한 투자신탁 관리업에 대한 투자로서 농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거주·비거주자 모두에게 규제되는 사항임 • 본 유보는 다음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1. 일본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에 의한 은행업 또는 증권업 2. 일본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규제되는 어업 또는 일본 어업법이 적용되는 어업활동 3. 전주양식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멕시코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멕시코 기업에 대한 49% 이상의 지분취득은 그 기업의 종자산가치가 2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검도 2. 농업, 목축, 임업용 토지 취득: 단 그러한 토지 가치를 반영하는 T지분은 그 토지 증가치의 49%까지 취득 가능 3. 다음과 같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솔린의 소매와 액화천연가스LPG 사업 (2) 선박, 항공, 철도장비용 연료의 혼합유 공급사업에 대한 49% 이상의 지분참여 (3)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석유와 타 부산물의 총유관 건설, 석유, 지주공의 건설사업에 대한 49% 이상의 지분 참여 4. 안락, 민물 또는 바다작 경세지역에서의 양식이 아닌 어업에 대한 49% 이상의 투자 5. 투자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제조업과 부품조립업에 있어서 총주식의 49%를 초과하는 투자 6. 다음 경우를 제외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관련 지주회사, 상업은행, 그리고 허가가 나는 경우 증권회사, 증권전문기관에 대한 보통주의 30%까지 소유 (2) 협의의 금융기관, 은행, 투자자문회사, 투자자금관리회사, 그리고 허가가 나는 경우, 보험회사, 금융리스회사, 채권금융회사, 일반저장은행, 그리고 외국환은행기업에 대한 보통주의 총 49%까지의 소유, 그리고 투자회사 고정주식의 49%까지 소유 (3) 허가가 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와 주식평가기관의 보통주 100%까지의 소유 (4) 다음 종류의 회사에 보통주의 최소 99%의 소유: 채권회사, 일반저장은행, 외국환은행, 증권전문기관, 투자회사 관리기업, 그리고 허가가 나는 경우, 같은 종류의 활동을 하는 비거주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회사의 고정주식fixed stock의 최소 99%의 소유 7. 다음 사항을 제외한 국내유통권과 항만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해양, 육상수송업과 관련서비스에 대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항공운송업, 항공택시업, 전문직업 항공관련 서비스업의 25%까지의 지분참여, 그리고 허가가 나는 경우, 항공터미널 관리의 49% 이상의 지분참여 (2) 내항운항, 연안항해에 대한 49%까지의 지분참여. 단, 관광용 선박업과 항구의 운영과 다른 항양장비의 개발은 예외임: 필수적인 항만관리와 내항운항 관련항만의 안내·감시서비스, 그리고 100%까지의 참여가 인가될 수도 있는 상륙선적 내항운항에 대한 항구서비스업에 대한 참여 (3) 철도관련 서비스업 주식의 49%까지의 투자 8. 라디오와 TV방송에 대한 투자, 케이블TV, 전화, 영상사업과 고급문화 서비스 국내배분용 신문제작, 그리고 참여가 100%까지 인가받을 수도 있는 무선전화사업에 대한 40% 이상의 지분투자 9. 인가가 나지 않은 경우 건설활동, 법률서비스와 민간교육 서비스에 대한 49% 이상의 지분참여
뉴질랜드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주식양도금액 또는 자산가치가 10백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면 뉴질랜드 회사의 주식이나 의결권의 25% 이상을 허가받지 않고 취득할 수 없음 2. 10백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뉴질랜드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업의 개시 또는 기존기업의 매수 3. 투자금에 관계없이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뉴질랜드 기업주식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 취득: 원형어업(참치 또는 오징어 어업 제외), 농업토지 4. 투자금에 관계없이 3에 인식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5.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등록으로서, 뉴질랜드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경우를 제외함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네덜란드	A. 비주주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항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네덜란드가 체결한 국제협약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네덜란드 법률에 의해서 네덜란드내에서 설립되고 네덜란드에 설립 관련장소를 갖고 있는 선박회사에 의한 투자가 아닌 네덜란드 국적선의 소유
노르웨이	A. 비주주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허가를 받지 않은 광산, 수력 및 기타 부동산의 취득 및 이들에 대한 인정 임대권의 취득 2. 허가를 받지 않은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회사에 대한 33 1/3%를 초과하는 의결권 주식취득 및 비주주 1인에 의한 비금융 부동산소유 또는 임대회사에 대한 20%를 초과하는 의결권 주식의 취득 3. 금융기관에 대한 전체의 33 1/3%(공개회사나 공동투자기관인 경우는 10%)를 초과하는 의결권 주식에 대한 출자 4. 외국은행 지점 설립 5. 증권회사 설립 6. 외국보험회사 지점의 설치로서 최저예치금이 요구되는 범위내 7. 최소한 자본금의 2/3를 노르웨이인이 소유하고 있는 합명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통하지 않은 노르웨이 국적선의 소유 8. 자본금이 적어도 60% 이상을 노르웨이 국민이 소유하는 합작회사를 통하지 않은 여선 또는 동선박을 소유하는 회사주식의 소유 9. 자본금이 적어도 60% 이상을 노르웨이 국민이 소유하는 합작회사를 통하지 않은 여선 또는 소유하는 회사주식의 소유
포르투갈	A. 비주주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비EU 회원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는 국가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정의 허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 2. 비EU 회원국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받는 신규 신용회사나 신규 금융회사의 설립 3. 비EU 회원국에서 만족한 외국인 보험회사의 지점설립, 단 이 경우 특별예치금과 재정상의 보증이 의무이며, 그 보험사는 적어도 5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했음이 확인되어야 함 4. 주식의 과반수가 포르투갈인에 의해 보유되지 않고, 주주의 과반수가 포르투갈인들이 아닌 경우, 국내 수상운송업에 관련된 기업의 설립 : 그리고 포르투갈내 설립된 법인을 통하지 않은 포르투갈 국적선의 소유 5. 회사자본금의 49%를 초과하는 비EU 회원국 투자자에 의한 일반 항공운송업(국내외 모두)에 대한 투자 6. 비EU 회원국 투자자에 의한 자본금의 15%를 넘어서는 TV방송수 운영에 대한 투자 7. 비EU 회원국 투자자에 의한 보완적 통신서비스업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투자 8. 포르투갈내 설립된 법인을 통하지 않은 투자자에 의한 비EU 회원국의 여행중개사부조의 설립
	B. 내국인의 해외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비EU 회원국내에 신용기관과 금융회사의 지점을 설치 2. 1989년 12월 15일 EU규정집 89/646의 18(2)항에서 정의된 신용기관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음: 금융회사의 지점을 EU 회원국내에 설치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스웨인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아래 부문에 대한 비EU 회원국으로부터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송업, 방송업(TV 포함), 전화 이외의 통신서비스, 전력광물, 도마, 복권, 로또 및 카지노 2. 정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의한 비EU 회원국으로부터의 투자
스웨덴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국내 항공운송과 국제 항공운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스웨덴에서 설립된 법인은 경우하지 않은 스웨덴 등록 항공기의 취득 2. 스웨덴에서 설립된 법인을 경우하지 않은 스웨덴 국적선의 50% 또는 그 이상의 지분취득 3. 면허, 허가 또는 유사한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거주사유 통한 직간접의 운송, 통신분야에 대한 투자 4.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스웨덴 영해에서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설립, 또는 주식의 50% 이상의 취득
스위스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영화 매입 및 상영을 위한 외국회사 설립 2. 관할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의 취득, 원칙적으로 이 허가는 취득자가 안정적인 사업운용을 목적으로 사용함; 경우에 부여됨
터키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B. 내국인의 해외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터키 내국법인을 통하지 않은 광업부분 투자 2.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소유된 기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식유개발 및 탐사에 대한 투자 3. 허가를 받지 않은 석유정제, 송유관을 통한 운송 및 저장에 대한 투자 4. 허가를 받지 않은 터키은행에 대한 출자 및 외국은행의 자회사 설립 5.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외국은행의 첫번째 지점 설치 6.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5만 US달러 미만이거나 50백만 US달러 이상인 기타 부문에 대한 투자 • 본 유보는 5백만 US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영국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항공운송업에 대한 투자 2. EU 회원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일부 방송업에 대한 투자 (특히 상업TV, 문자다중방송, 라디오방송) 3. 영국 내국법인을 통하지 않은 영국 국적선의 취득
미국	A.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원자력 에너지 2. 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라디오 및 TV), 대중교통, 항공로 또는 지상 라디오 방송국 및 통신위성공사(Communications Satellite Corporation) 3. 항공운송 4. 연인 및 국내해운(연안에서의 운선 및 인양, 미국내 지점으로부터 국제 운항 장치 또는 대륙붕기지에 제공하는 연안운송을 포함) 5. 미국 내국법인을 통하지 않은 해양열에너지, 수력발전, 연방토지상의 지원증기 또는 관련자원, 연방토지, 원양대륙붕 또는 심해상에서의 채광, '배터리 경제 구역'에서의 어로 및 심해항구사업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II. 부동산부문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III/A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p>1. 신축 또는 매수(List B)</p> <p><제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의 다음의 국내부동산 취득은 허가신고 불필요 (외국환관리규정 제10-94조)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의 토지 또는 그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상호주의에 의해 내무부 장관이 허가) ·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국내부동산 취득(실제 허가) · 비거주자가 본인·친족·종업원 거주용으로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관련 권리를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규정 제10-95조) · 비거주자의 상속·증여로 인한 국내 부동산취득 및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근저당 설정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규정 제10-96조) · 제10-94조 및 제10-95조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재정경제원 장관 허가 -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규정 제6-13조) · 부동산 처분대금의 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 단 취득허가 내용에 처분대금의 송금허용이 포함된 경우 제외(제2항 제1호) 	<p>List B, III/A1 부동산 거래</p> <p>-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거주자가 본인·친족·종업원 거주용으로 국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2.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또는 관련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 5.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경우의 부동산 취득 <p>※상속·증여 및 임차로 인한 취득은 매수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1 및 4 항목은 삭제할 수 있음</p>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III/B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거래</p> <p>1. 상속 또는 매수(List B)</p> <p><제한제도></p> <p>- 거주자의 다음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허가되고 불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10-8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점포의 설치인가를 받은 외국환은행이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 취득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해외부동산 취득 • 정부기관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 외국인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 <p>- 지정은행상의 인증(규정 제10정 제9절 제2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상용·공무 목적으로 3년 이상 체재하고자 하는 자 • 금액 : 30만 US달러 이하의 주거용 주택 취득을 위한 10만 US달러 이내의 자금 <p>-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또는 신고(규정 제10-9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부동산 취득은 인정된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가능 • 취득금액이 1천만 US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 취득금액이 1천만 US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상거히기 전에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가능 • 허가신청 무효는 신고수리예납·세정성채원 장인이 신청하는 기준 자용(해외부동산 취득 지원) <p>- 재정경제원 장관의 신고(규정 제10-90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 취득(허가면제 거래 제외) <p>- 취득이 허용된 부동산의 매도액·세율이 없음</p>	<p>List B, III/B1 부동산거래</p> <p>-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점포의 설치인가를 받은 외국환은행이 당해 점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기관에 의한 취득 4. 거주자가 인정된 사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금액이 1천만 US달러 이하인 경우. 단,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5. 개인(개인 유사법인 포함)이 1인당 30만 US달러 이내의 부동산 취득 6. 기관투자자 등의 인정된 금액 범위내의 자산운용 목적의 부동산 취득 <p>* 상속·증여 및 일차로 인한 취득을 배수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2차분은 삭제할 수 있음</p>	<p>- 의결제도개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범위는 전반적인 자본거래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 • 단계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유사법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30만 US달러 이내 허용 • 2·3단계(96~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기원화 2. 법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95~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 목적의 투자가 가능 범위 확대 및 투자한도 확대 • 3단계(98~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 목적의 투자는 모든 기업에 허용 및 투자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화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II. 부동산 부문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 현황
호주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상속 또는 배수(Lis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음 1. 5백만 달러 이하의 비거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권리 취득 2. 외국인 직분 또는 기타의 공유권 기간이 연간 4주 미만인 기간별 공동소유제도에 의한 권리의 취득 3. 허가받은 이주자와 호주 영주권을 부여받은 기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 4. 비거주자인 호주국민의 직접 또는 호주기업 또는 신탁을 통한 간접적 부동산 취득 5. 외국 정부기관의 공적 업무나 지원의 거주를 위한 사무실 및 주택의 취득으로서, 이들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주국민이나 기타 자적있는 구매자에게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6. 외국인 취득 인수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요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공기업이나 신탁의 소수 지분 취득 7. 호주에서 영업하는 일반 보험회사의 사내유보금에 의한 부동산 취득으로서 보험감독원장이 정한 세부지침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8.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호주 법정기업의 투자로 행해지는 취득, 외국인 고용주의 호주임금기급에 의한 취득 및 호주인용 제1차 수혜대상으로 호주내에서 운영되는 외국인 지배 자선단체 또는 자선신탁의 취득
오스트리아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상속 또는 배수(Lis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지방당국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권한을 갖는 경우에 만 적용됨
캐나다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상속 또는 배수(ListB)	
덴마크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상속 또는 배수(Lis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과거에 최소한 5년 이상 덴마크 거주자였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핀란드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상속 또는 배수(ListB)	
그리스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상속 또는 배수(Lis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EU 회원국의 거주자에 의한 국경지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됨
아이슬란드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상속 또는 배수(Lis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외의 부동산 상속 또는 구입에는 적용되지 않음 1.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비거주자 소유지분이 1/5을 초과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아이슬란드 국민이 투표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2. 허가된 경우
아일랜드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상속 또는 배수(Lis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면적 2헥타르를 초과하지 않는 주거용 토지 이외의 경우로서, 허가가 필요한 농촌토지권리 취득의 경우만 적용된다
멕시코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1. 상속 또는 배수(Lis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투자자 자신의 멕시코인 간주와 취득부동산과 관련하여 투자자 자국정부의 보호요청을 삼가할 것을 동의시, 멕시코국경선 100Km와 멕시코 해안선 50Km 밖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비거주자의 취득 2. 1과 동일한 지역내에서 부동산 합작기업을 통한 외국인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 현황
뉴질랜드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I. 신축 또는 매수(ListB)	• 본 유보는 외국인(거주지 상관없음)에 의한 농업용지, 농지보존지, 연안도서의 취득에 대해서만 적용됨
노르웨이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I. 신축 또는 매수(ListB)	
스페인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I. 신축 또는 매수(ListB)	• 본 유보는 비EU 회원국의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만 적용됨
스웨덴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I. 신축 또는 매수(ListB)	• 본 유보는 과거에 적어도 5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한 적이 없는 사람에 의한 두번째 주거지 구입에만 적용됨
스위스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I. 신축 또는 매수(ListB)	• 본 유보는 합법적 추정부의 허가대상이 되는 부동산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취득허가는 자연인의 주거주용이나 특정조건하의 보조주용 건물 취득을 포함함. 또한 별장취득 허가는 쿼터로 묶임. 자산운용 부동산 투자는 금지
터키	A.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I. 신축 또는 매수(ListB)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III. 자본시장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IVA 국내증권의 외국 자본시장 참여></p> <p>- 외국 자본시장에서의 국내증권 발행은 다음의 예외 경우(심사부 신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p> <p>• 외국환은행이 역외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용 조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하는 경우</p> <p>• 발행자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일정한 용도 및 한도내에서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하는 경우</p> <p>- 발행이 허용된 외화증권의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유통은 공인된 거래소에서의 상장을 전제로 허용됨</p>	<p>- 외국 자본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국내증권의 발행에 대한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 적용됨</p> <p>1. 원화표시 유가증권의 발행</p> <p>2.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 : 발행가능한 외화증권의 형태는 보통채권 및 변동금리부 채권FRN,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 채권BW, 주식예약증시DR, 기타 무기명 양도성 외화예금증시CD, CP 등이 있음</p> <p>(1) 발행자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은행,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법인 •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량기업 • 첨단기술산업 영위자 • 다음 요건을 갖추었거나 발행일 이후 3년 이내 갖추 수 있다고 지정은행장이 인정하는 자 • 납입자본금 1백억 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2백억 원 이상인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 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 발생 법인 •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법인 <p>(2) 발행자금의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도입자금 • 해외투자자금 또는 해외사업자금 • 연불수출용 자본재 생산을 위한 부품도입 자금 • 최신 기술도입비 및 기술용역비 • 외화채무 조기 상환자금 • 해외시장 개척자금 • 연불수출용 자본재 생산을 위한 부품도입 자금 • 기타 재정경제원 장관이 인정하는 용도 <p>(3) 발행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증권의 발행으로 외국인(국민인 비거주자 포함)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 <p>- 발행이 허용되지 않은 국내증권의 외국 증권시장에의 상장은 유보됨</p>	<p>- 1단계(9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주식의 해외주식 시장 상장을 신고사항으로 명시 • 국내 DR의 해외발행 요건 완화 : 자본금 요건(2백억 원 이상) 및 납입 자본이익률 요건(3년 누적 당기순이익의 후자)이 폐지됨 <p>- 2단계(96~9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과 CB, 신주인수권부 채권BW 등과 같은 주식연계 채권의 해외발행을 자유화(심사부 신고→신고) • 외화표시채권의 발행 요건 최소화 <p>- 3단계(98~9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을 자유화(심사부 신고→신고) <p>※ 원화표시증권의 해외발행은 현행과 같이 허가제 유지</p>

주 :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는 주식 또는 기타 참여적 성격의 증권이나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또는 채부증서의 거래를 포함하며 자유도가 분가능한 List A로 분류됨.

원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IV/B 외국증권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p> <p>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 및 상장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금지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단계에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의 발행은 자유화가 예정되어 있음 • 국내에서 발행이 허용된 외국증권의 국내시장 상황은 가늠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사항 :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증권의 발행 및 상장은 유보됨 •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의 발행은 유보가 적용되지 않음 • 국내에서 발행이 허용된 외국증권의 국내시장 상황은 유보가 적용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자유화 • 외국기업의 원화채권발행 자유화 - 2단계(96-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 원화표사 채권 발행 자유화 - 3단계(9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 외국기업의 외화 표시증 발행 자유화권
<p><IV/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p>1. 비거주자의 국내매수 외국인 투자가 국내 상장주식, 중소기업이 발행한 부보증, 상장선환사채 및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된 국공채(94년 7월 1일 시행)에 투자하는 경우와 국제수익증권 발행사 및 외국투자 전용회사가 국내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한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은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p> <p>2. 비거주자의 국내매도 비거주자에게 취득이 인정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매도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않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상장주식의 종복별 외국인 1인당 3%(국민주의 경우 1%), 외국인 전체로는 15%(국민주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의 취득 2. 채권의 경우 중소기업발행 부보증 전환사채에 대해 외국인 1인은 당해 종목 상장금액의 5%, 외국인 전체로는 당해 종목 상장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의 취득 3.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 전용회사를 통한 국내증권의 매수 4.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의 매수를 통한 국내주식·채권에 관한 권리 취득 5.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선환사채, 선주인수업무 사채, 주식예탁증권 등의 주식채권, 선주인수권 행사, 주식청구 등의 절차에 의한 국내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6.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7.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근무하는 국민인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용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8.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사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10.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국공채 취득 • 비거주자에게 취득이 허용된 증권에 대해서는 유보가 적용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 투자한도 확대 실시 (12% → 15% : 95년 7월 1일) • 채권 : 투신사 권보 및 컨트리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 허용 - 2단계(96 - 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 투자한도 확대 • 채권 : 중소기업 부보증 장기채 투자 제한적 허용 - 3단계(98 - 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 투자한도 확대 또는 한도해제 검토 • 채권 : 대기업의 부보증 장기채를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IV/D 거주자에 의한 해외거래></p> <p>1. 거주자의 해외매수</p> <p>- 거주자가 외국 투자시장에서 발행한 외화증권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 혼합수의 증권, 수탁회사 및 기관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p> <p>• 증권,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단기금융회사,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기금운관리·운용하는 법인, 해외외화 보유가 인정되는 종합무역상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로서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p> <p>• 단기금융회사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기금운관리·운용하는 법인 등은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p> <p>• 일반투자자는 94년 7월 1일부터 해외증권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 이내), 95년 7월 1일부터 한도가 확대(개인 5억 원, 법인 10억 원 이내)되었음</p> <p>2. 거주자의 해외매도</p> <p>- 거주자의 해외매수가 허용된 증권의 매도는 가능</p>	<p>• 다음의 경우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않음</p> <p>1. 기관투자자 및 외국환은행의 매수, 다만 종합무역상사 및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5배만 US달러 이상인 자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30% 이하의 매수에 한함</p> <p>2. 일반투자자의 동일유수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매수, 다만 개인은 5억 원, 법인은 10억 원 이내에 한함</p> <p>3. ① 혼합수의증권, 해외투자자의증권의 수탁회사에 의한 외화증권의 매매입 ②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의 매매입 ③ 거주자의 외국법정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외화증권의 취득 ④ 국내기업이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주식취득으로서 2만 US달러 이내인 경우 ⑤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의한 외국분사의 주식취득</p> <p>- 거주자의 해외매수가 인정된 증권의 매도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않음</p>	<p>- 1단계(95년)</p> <p>• 기관투자자 : 자유화 • 일반투자자 : 성장증권 투기한도 중에 개인 1억·5억, 법인 3억·10억</p> <p>- 2단계(96~97년)</p> <p>• 일반투자자 : 자유화 지정증권사단 통한 사후관리는 유지</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III. 자본시장

국가명	유보 항목	유보현황
호주	B. 외국증권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 2. 공인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중앙은행, 외국정부, 민간부분의 상업적 단체와 유사하지 않은 외국정부기구 및 국제정부기구에 의한 조지인식 증서(bearer instruments)를 통한 차입에 대해서는: 차입이 제한됨. 또한 이같은 범주의 차입자는 호주자본시장에서 1억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차입에 대하여 호주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외국 중앙은행, 외국정부, 민간부분의 상업적 단체와 유사하지 않은 외국정부기구 및 국제정부기구에 의한 조지인식 증서(bearer instruments)를 통한 차입에 대해서는: 차입이 제한됨. 또한 이같은 범주의 차입자는 호주자본시장에서 1억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차입에 대하여 호주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국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주식이나 기타 참여지 성격의 유가증권 매수는 제한됨
벨기에	B. 외국증권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 2. 공인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에서 발행되지 않은 채권과 기타 채무증서는 제한됨 • EU에서 발행되지 않은 채권과 기타 채무증서는 제한됨
캐나다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주식이나 기타 참여지 성격의 유가증권 매수는 제한됨
핀란드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매수 D. 거주자의 해외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주식이나 기타 참여지 성격의 유가증권 매수는 제한됨 • 상호기금(Mutual Fund)에 대하여는 매수가 제한되는데, 기금은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최대 20%까지 해외투자가 허용됨
프랑스	A. 국내증권의 외국 자본시장 참여 허용 1. 사모 또는 공모 발행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프랑위원회(Euro-franc committee)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유로프랑증권의 발행에 대해서 유보 • 비EU 거주자가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비상장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독일	A. 국내증권의 외국 자본시장 참여 허용 1. 사모 또는 공모 발행 B. 외국증권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해서 유보 • 만기 2년 미만의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마르크화 표시 채권에 대해 유보 • 비거주 개인에 의한 연방저축채권의 매수는: 제한됨
그리스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방출과 해양분야에서 주식이나 기타 참여지 성격의 유가증권 매수는 제한할 수 있음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현황
아이슬란드	A. 국내증권의 외국자본시장 참여 허용 1. 사모 또는 공모 발행 2. 공인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슬란드 크로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해서 유보 • 아이슬란드 크로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의 상장에 대해서 유보
	B. 외국증권의 국내자본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 2. 공인 국내증권시장에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슬란드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되는 유가증권 이외의 외국증권의 발행에 대해서 유보 • 아이슬란드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되는 유가증권 이외의 외국증권의 상장에 대해서 유보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에는 매수가 제한됨 1. 아이슬란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 2.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주식 및 기타 참여적 성격의 증권 3.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
	D. 거주자의 해외거래 1.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에는 매수가 제한됨 1. OECD 회원국의 공인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 유가증권 2.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
일본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일 대기기간 종료까지는 일본거주자에게 재매도될 수 없는 해외에서 발행된 연화표시 증권과 180일의 대기기간 종료까지는 일본거주자에게 재매도될 수 없는 연화연계 북수통화채권에 대해서는 매도가 제한됨
멕시코	A. 국내증권의 외국자본시장 참여 허용 1. 사모 또는 공모 발행 2. 공인 외국증권시장에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소화표시 채무증서에 대해 유보 • 폐소화표시 채무증서에 대해 유보
	B. 외국증권의 국내자본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에는 매수가 제한됨 1.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주식이나 기타 참여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수 2. 폐소화로 표시된 채무증서의 매수
	D. 거주자의 해외거래 1.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방식의 외국증권 매수는 제한됨 1. 자신의 계정이 있는 증권회사에 의한 매수 2. 폐소화표시 증권의 금융기관에 의한 매수
뉴질랜드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국민에게만 허용하는 '뉴질랜드항공'의 A급 주식의 매수는 제한됨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 현황
노르웨이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배수	•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련되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주식이나 기타 참여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배수는 제한됨
포르투갈	A. 외국증권의 국내자본시장 참여 허용 1. 시모 또는 공모 발행 B. 외국증권의 국내자본시장 참여 1. 시모 또는 공모의 발행 2. 동일 국내증권시장에 상장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배수	• 포르투갈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의 주식은 유보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미EU 회원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행된 증권이 발행된 나라의 공인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은 제한됨 •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련되는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주식 및 기타 참여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배수
스페인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배수	•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주식이나 기타 참여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배수는 제한됨
스웨덴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배수	•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주식이나 기타 참여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배수는 제한됨
타지	B. 외국증권의 국내자본시장 참여 1. 시모 또는 공모의 발행 2. 동일 국내증권시장에 상장	• 환전가능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정부채권과 재무증권 이외의 비상장 유가증권은 제한됨
미국	B. 외국증권의 국내자본시장 참여 1. 시모 또는 공모의 발행 2. 동일 국내증권시장에 상장 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1. 배수	•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됨 1. 1940년의 '투자회사법'에 투자회사로 정의된 비거주 발행자에 의한 발행 2. 비거주 발행자들에 의한 소규모 비즈니스용 등록지식의 사용과 소규모 발행의 면제 • 환전가능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정부채권과 재무성 증권 이외의 비상장 유가증권에만 적용됨 1. 1940년의 '투자회사법'에 투자회사로 정의된 비거주 발행자에 의한 발행 2. 비거주 발행자들에 의한 소규모 비즈니스용 등록지식의 사용과 소규모 발행의 면제 • 원자력, 해양, 통신 및 항공산업에 있어서 대내 직접투자 및 사무소 설치에 관련되는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비거주자의 배수는 제한됨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IV. 단기 금융시장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V/A. 국내증권 및 기타 증시의 외국자급 시장 참여></p> <p>- 기주자의 해외에서의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은 대상증권 말기의 정년으로 구분되어 규제되지 않음. 따라서 단기금융상품의 해외발행 및 모집에 대한 규정은 주식 및 채권거래(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와 동일함</p> <p>- 해외에서의 발행이 허용된 증권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상장 및 모집은 허용됨</p>	<p>- 국내증권 및 기타 증시의 외국자급 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발행은 다음의 경우에만 유보가 적용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화표시증권 및 원화표시 기타 증시의 발행 2.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한 요건(발행자 요건, 발행자금의 용도, 발행한도)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이의 외국증권 및 기타 증시의 발행 <p>- 국내증권 및 기타 증시의 외국 공인자급시장에 상장; 해외에서 발행이 허용된 국내증권 및 기타 증시의 경우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않음</p>	<p>- 1단계(9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증권 발행한도 확대 <p>- 2단계(96~9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인개증권 해외 발행 자유화 <p>- 3단계(98~9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표시증권 발행 자유화 • 원화표시증권 발행은 현행과 같이 허가제 유지
<p><V/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시의 국내자급 시장 참여 허용></p> <p>-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사실상 금지</p> <p>- 외국증권의 국내자급시장 상장은 장기 발행 및 모집에 허용</p>	<p>- 외국증권 및 기타 증시의 국내자급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발행: 완전 유보</p> <p>- 국내공인 자급시장에서의 외국증권 및 기타 증시의 상장; 국내에서의 발행이 허용된 외국증권 및 기타 증시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않음</p>	
<p><V/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p>1.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단기금융상품의 매수는 다음의 예외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 또는 신고할 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의 외국투자 전용회사를 통한 국내증권 투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 필요 • 비거주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된 수익증권을 통한 국내증권투자 가능 •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또는 외국원은행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대외통화표시 증권 또는 환연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p>2.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사항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을 매입·소각하기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선언을 요하지 않으나 이는: 예외목적에 제한됨 • 다만, 외국투자 전용회사 설립 및 수익증권 발행의 승인은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투자활동의 결과인 매도: 가능 	<p>-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단기금융상품의 매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투자 전용회사를 통한 매수 2.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된 수익증권을 통한 국내증권관련 권리취득 3. 외국금융기관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과의 외화표시 자급시장증권의 거래 4. 국민인 비거주자와 국민인 거주자간의 원화표시 자급시장증권의 거래 <p>-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단기금융상품의 매도: 비거주자에게 매수가 허용된 증권의 매도에 대해서는 유보가 적용되지 않음</p>	<p>- 제3단계까지 현행대로 허가사항으로 유지 하되 제3단계에서는 외화표시 단기금융상품의 발행시장에서의 인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p>

주 : 국내의 단기금융 시장은 환, 양도성 예금증서NCD,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RP, 상업어음CP, 무역어음 등의 7개별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화가 가능한 List B로 분류됨.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3. 기타 단기금융상품을 통한 대부 ^a	-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기타 자금시장증서를 통한 대부에 대한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단 관세당국에 신고 필요 2. 외국금융기관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간의 외화표시, 기타 자금시장증서의 거래 3. 국민인 비거주자와 국민인 거주자간의 원화표시 기타 자금시장증서의 거래	
4. 기타 단기금융상품을 통한 차입	-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기타 자금시장증서를 통한 차입에 대한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외국금융기관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간의 외화표시 기타 자금시장증서의 거래 2. 국민인 비거주자와 국민인 거주자간의 원화표시 기타 자금시장증서의 거래	
<V/D. 거주자에 의한 해외 예시의 거래> - 거주자에 의한 해외증권의 매수: 자본시장증권의 경우와 동일	-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자금시장 증권 매수에 대한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기관투자가 및 외국환은행의 매수 다만, 종합부역상사 및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5백만 US달러 이상인 자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30% 또는 3억 US달러 중 적은 금액 이하의 매수에 한함 2. (1) 혼합수익증권, 해외투자수익증권의 수탁회사에 의한 매수 (2)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의 매매입 (3) 거주자의 외국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매수	- 1단계(95년) • 기관투자가: 자유화 • 일반투자가: 상장증권 투자한도 증액 개인 1억 50억 법인 3억 40억 - 2단계(96-97년) • 일반투자가: 자유화 • 지정증권사들 통한 사후 관리는 유지
- 매수가 허용된 외국증권은 매도가능	-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자금시장 증권 매도에 대한 유보는 거주자의 해외매수가 인정된 증권 매도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타 단기금융상품을 통한 대부 및 차입	-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단기금융상품을 통한 대부에 대한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기관투자가 및 외국환은행의 매수. 다만 종합부역상사 및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5백만 US달러 이상인 자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30% 또는 3억 US달러 중 적은 금액 이하의 매수에 한함 2. 거주자가 외국금융기관에 예치한 대외자금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자금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함에 따른 대부 3.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가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자금 수단, 채권의 매매에 의한 대부 -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단기금융상품을 통한 차입 : 유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의 경우와 동일함	

주 : a 기타 자금시장증서를 통한 대부lending through, 또는 차입borrowing through 거래는 증권처럼 사고팔 수 없는 환매약정RP과 같은 거래에 적용됨.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IV. 단기 금융시장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현황
호주	<p>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 단기금융시장 참여</p> <p>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p> <p>2. 국내 공인 단기금융시장에 상장</p> <p>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p>4. 기타 단기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차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중앙은행, 외국정부, 민간부분의 상업적 단체와 유사하지 않은 외국정부기구 및 국제정부기구에 의한 소지인식 증서(bearer instruments)를 통한 차입에 대해서는 차입이 제한됨. 또한 이같은 범주의 차입자는 호주자본시장에서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차입에 대하여 호주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외국중앙은행, 외국정부, 민간부분의 상업적 단체와 유사하지 않은 외국정부기구 및 국제정부기구에 의한 소지인식 증서(bearer instruments)를 통한 차입에 대해서는 차입이 제한됨. 또한 이같은 범주의 차입자는 호주자본시장에서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차입에 대하여 호주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외국중앙은행, 외국정부, 민간부분의 상업적 단체와 유사하지 않은 외국정부기구 및 국제정부기구에 의한 소지인식 증서(bearer instruments)를 통한 차입에 대해서는 차입이 제한됨. 또한 이같은 범주의 차입자는 호주자본시장에서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차입에 대하여 호주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벨기에	<p>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 단기금융시장 참여</p> <p>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p> <p>2. 국내공인 단기금융시장에 상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국에서 발행되지 않은 금융시장의 증권과 증서는 제한됨 • EU 회원국에서 발행되지 않은 금융시장의 증권과 증서는 제한됨
핀란드	<p>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 단기금융시장 참여</p> <p>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p> <p>2. 국내공인 단기금융시장에 상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기금(Mutual Fund)의 경우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20% 한도내에서만 외국 단기금융상품을 매수할 수 있음
프랑스	<p>A. 국내증권 및 기타증서의 해외단기 금융시장 참여</p> <p>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p> <p>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 단기금융시장 참여</p> <p>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프랑의 발행은 제한됨 • 비거주자들에 의한 CD 발행은 제한됨
독일	<p>A. 국내증권 및 기타증서의 해외 단기금융시장 참여</p> <p>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p> <p>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 단기금융시장 참여</p> <p>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화로 표시된 금융시장의 증권과 증서는 제한됨 • 은행에서 발행된 마르크화 표시 금융시장의 증권과 증서는 제한됨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현황
아이슬란드	<p>A. 국내증권 및 기타 증서의 해외 단기금융시장 참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모 또는 공모 발행 2. 외국공인 단기금융시장에 상장 <p>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 단기금융시장 참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 <p>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금융시장 증권의 매수 2. 단기금융시장 증권의 매도 3. 기타 단기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대부 4. 기타 단기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차입 <p>D.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금융시장 증권의 매수 2. 단기금융시장 증권의 매도 3. 기타자금시장 증서를 통한 차입 4. 기타자금시장 증서를 통한 차입 	
일본	<p>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단기금융시장 증권의 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간의 대기기간 종료까지는 일본거주자에게 채매도될 수 없는 해외에서 발행된 연화표시증권은 매도가 제한됨
멕시코	<p>A. 국내증권 및 기타 증서의 해외 단기금융시장 참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모 또는 공모 발행 2. 외국공인 단기금융시장에 상장 <p>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 단기금융시장 참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 <p>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금융시장 증권의 매수 3. 기타 단기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대부 <p>D.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금융시장 증권의 매수 2. 단기금융시장 증권의 매도 4. 기타 자금시장 증서를 통한 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소화로 표시된 유가증권과 기타 증서는 제한됨 • 폐소화로 표시된 유가증권과 기타 증서는 제한됨 • 폐소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에만 유보조건이 적용됨 • 외국금융기관이 멕시코 금융기관에 폐소화표시 대부할 때 유보조건이 적용됨 • 다음기관에 의한 외국증권의 매수는 제한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계정이 있는 증권회사의 매수 2. 금융기관의 폐소화표시 증권 매수 • 멕시코은행에 의해 폐소화로 발행된 채무증권은 외국금융기관에 매도하려는 것은 제한됨 •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금융기관이 폐소화로 차입하는 경우는 제한됨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현황
포르투갈	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단기 금융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	• 비거주자에 의한 상업용 증서의 발행은 제한
터키	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단기 금융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 2. 국내공인 단기금융시장에 상장	• 채정증권, 정부채, 환전가능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증서, 은행인수어음 이외의 비상장 자금시장 증권 및 증서에 대하여는 매수가 제한됨 • 채정증권, 정부채, 환전가능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증서, 은행인수어음 이외의 비상장 자금시장 증권 및 증서에 대하여는 매수가 제한됨
미국	B.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 단기금융시장 참여 1. 사모 또는 공모의 발행 2. 국내공인 단기금융시장에 상장	• 1940년의 '투자회사법'에 투자회사로 정의된 비거주 발행자는 제한됨 • 1940년의 '투자회사법'에 투자회사로 정의된 비거주 발행자는 제한됨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V. 기타 양도가능 증서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A. 국내 증서 및 권리의 외국금융시장 참여허용</p> <p>A1.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발행 A2. 공인 외국금융시장에 상장</p> <p><금융선물거래></p> <p>- 금융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주자 (규정 제13-4조) : 아래 거주자는 실수요거래 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선물 중개업 무자격기관(세정경제원 장관 지정)을 통하여 별표 5의 금융선물거래소와 각각 해당되는 거래를 할 수 있음</p> <p>● 통화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자(제1항)</p> <p>(i) 수출·수입·부역의 거래에 따라 외화수취 또는 지급이 예정된 자 (ii) 자기명의 거주자개정에 예정된 외화자금은 외국환은행에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 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고자 하는 자 (iii) 제10장 제6조에 의해 외화증권에 투자중인 기관투자자(수익증권 수탁회사 포함) (iv) 사관모집, 외화증권 발행, 외화대출 등에 의하여 외화부채를 보유중이거나 보유가 예정된 자 (v)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인정하는 자</p> <p>● 이사를 신탁거래를 할 수 있는 자(제2항)</p> <p>(i) 기한부 수출, 기한부 수입 및 부역의 거래 등을 함에 따라 이차용 변동위험을 부담하는 자 (ii) 자기명의 거주자 개정에 외화예금을 보유중이거나 보유가 예정된 자 등</p> <p>● 수익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자(제3항)</p> <p>(i) 제10장 제6조에 의하여 외화증권에 투자중인 기관투자자(수익증권 수탁회사 포함) 등</p> <p>- 상시 거주자는 기재된 금융선물거래 청산은 위한 반대거래 가능(규정 제13-5조)</p> <p>- 실수요 증명 제출(규정 제13-6조) : 장내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실수요 증명 제출명제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94년 11월)</p> <p>- 외국환은행의 금융선물거래(규정 제13-7조) : 외국환은행이 별표 5의 금융선물거래소와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p>	<p>A. 국내 증서 및 권리의 외국금융시장 참여허용</p> <p>A1.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발행</p> <p>●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i)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거주자가 실수요 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선물 중개업 무자격기관을 통하여 해외 금융선물거래소의 동법에 규정된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p> <p>ii)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p> <p>A2. 공인 외국금융시장에 상장</p> <p>● 본 유보는 해외에서 발행이 허용된 증서 및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p>	<p><금융선물거래제도 개혁방안></p> <p>- 기본원칙 : 기업 및 금융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자율적 관리수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외여건 및 수용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자유화</p> <p>- 자유화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95년) : 금융선물거래 관련 규제 완화 • 2단계(96년) : 금융선물거래 관련 규제 추가완화 • 실수요 증명대상 완화 • 1단계(95년) : 실수요 증명 제출의무 추가완화 검토 <p>*현행제도(94년 11월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분할거래 • 외화간 : 면제 • 원화-외화간 : 1천만 US달러 이내 면제 • 금융선물거래 • 장내거래 : 면제 • 장외거래 : 2천만 US달러 이내 면제 • 2단계(96-97) : 실수요 증명 제출의무 완전 면제하되 실인적 의미의 실수요요건은 유지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상의 금융선물거래></p> <p>-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한 거주자(통화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실수요거래 범위와 일정 허용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과 통화옵션거래 가능(규정 제13-9조 제1항)</p> <p>- 제13-4조 제2항에서 정한 거주자는 실수요거래 범위와 일정 허용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과 이자율옵션거래, 선도금리계약 거래 및 스왑금융 거래 가능(규정 제13-9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옵션 거래(제13-10조) • 이자율옵션 거래(제13-11조) • 선도금리계약 거래(제13-12조) • 스왑금융 거래(제13-13조) <p>- 실수요증빙 제출(규정 제13-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9조에 따라 상외 금융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 거래가 실수요거래 범위 이내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해당 거래금액이 2천만 US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실수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p>-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다른 외국환은행 및 비거주자와 상외 금융선물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기 제한 배제. 단 비거주자와의 상외 금융선물거래는 외국통화간 거래에 한함</p> <p>→거주자의 해외 금융선물거래는 주체, 거래형태, 범위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됨</p> <p>※ 금융선물거래 이외의 금융수단 및 권리의 해외발행 및 상장에 관하여는 규정에서 언급된 내용이 없으므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선주인수권 사채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해외발행 가능하나 선주인수권 자체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p> <p>- 해외에서 발행이 허용된 금융수단 및 권리의 외국 금융시장 상장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p> <p>B. 외국증서 및 권리의 국내금융시장 참여 허용</p> <p>B1.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발행</p> <p>B2. 공인 국내금융시장에 상장</p> <p>- 외국환관리규정은 금융선물거래란 동 별표 5에서 열거한 51개 외국 금융선물거래소에서의 거래(제13-2조 제1항)와 이에 준하는 장외 금융선물거래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동조 제2항) 외국증서 및 권리의 국내 금융시장 참여가능성은 상정되고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간 장외 금융선물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규정 제13-16) 비거주자는 외국환은행과의 거래를 통한 발행이 가능함 	<p>B. 외국증서 및 권리의 국내금융시장 참여 허용</p> <p>B1.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통화간의 장외 금융선물거래(통화옵션, 이자율옵션, 선도금리계약, 스왑금융거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한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B2. 공인 국내금융시장에 상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국내에서 발행이 허용된 외국증서 및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p>C1. 배수</p> <p>C2. 매도</p> <p>C3. 기타 자산과의 교환</p> <p>- 비거주자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통화간의 장외 금융 선물거래(통화옵션, 이자유옵션, 선도금리계약 거래, 스왑거래 등)를 할 수 있음(규정 제13-16조)</p> <p>- 상기의 경우 이외에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금융선물거래 또는 장외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가 필요함(규정 제13-1조 제2항)</p> <p>- 국내에는 아직 금융선물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아 거래소를 통한 (상대) 금융선물거래는 불가능함</p> <p>D.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거래</p> <p>D1. 배수</p> <p>D2. 매도</p> <p>D3. 기타 자산과의 교환</p> <p>- 외국환관리규정 제13-4조에 규정된 거주자는 실수요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선물 중개업무 지정기관을 통하여 해외 금융선물거래(통화선물거래, 이자유선물거래) 가능</p> <p>- 다만, 기관투자자급: 통화선물거래, 이자유선물거래 및 주식선물거래도 할 수 있음(규정 제13-4조 제3항, 제10-50조 제1항 제6호)</p> <p>-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간 장외 금융선물거래(통화옵션, 이자유옵션, 선도금리계약거래, 스왑금융거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에 있어서 각종 제한이 해제됨(규정 제13-16조)</p> <p>-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필요(규정 제13-1조 제2항)</p> <p>- 실수요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거주자가 해외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p> <p>- 인정되는 것 이외의 기타 해외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p>	<p>C.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p>-</p> <p>- 본 유보는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통화간 장외 금융선물거래(통화옵션, 이자유옵션, 선도금리계약, 스왑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D.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거래</p> <p>-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p> <p>i) 외국환은행이 금융선물거래 또는 장외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p> <p>ii) 기관투자자급 통화선물거래, 이자유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경우</p> <p>다만 주식선물거래 이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선물 중개업무 지정기관을 통하여 한다</p> <p>iii)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거주자가 실수요 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선물 중개업무 지정기관을 통하여 해외 금융선물거래소와 통화선물거래 또는 이자유선물거래를 하는 경우</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V. 기타 양도가능 증서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현황
호주	B1. 국내 자금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발행 B2. 국내 공인 자금시장에서의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외국중앙은행, 외국정부, 민간부분의 상업적 단체와 유사하지 않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정부기구에 의한 소지인식증권의 발행에 대해서만 적용됨. 또한 이같은 범주의 차입자는 호주자본시장에서의 1억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차입과 관련하여 호주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본 유보는 외국중앙은행, 외국정부, 민간부분의 상업적 단체와 유사하지 않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정부기구에 의한 소지인식증권의 발행에 대해서만 적용됨. 또한 이같은 범주의 차입자는 호주자본시장에서의 1억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차입과 관련하여 호주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아이슬란드	A1. 외국 자금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국내증권 및 기타 증서의 발행 A2. 외국 공인 자금시장에서의 국내증권 및 기타 증서의 상장 B1. 국내 자금시장에서의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발행 B2. 국내 공인 자금시장에서의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상장 C1. 비거주자의 국내매입 C2. 비거주자의 국내매도 C3.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기타 자산과의 교환 D1. 거주자의 해외매입 D2. 거주자의 해외매도 D3.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기타 자산과의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1. 아이슬란드 크로노가 관련통화가 아닌 경우 2. 원인이 되는 상업적 또는 채무서비스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거주상업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의한 경우의 선물·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유보는 1. 아이슬란드 크로노가 관련통화가 아닌 경우 2. 원인이 되는 상업적 또는 채무서비스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거주상업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의한 경우의 선물·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유보는 1. 외화채무와 관련된 리스크 회피를 위한 통화 및 이자율스왑으로서 아이슬란드 크로노가 관련통화가 아닌 경우 2. 거주상업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의한 경우에 의한 통화 및 이자율스왑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유보는 1. 아이슬란드 크로노가 관련통화가 아닌 경우 2. 원인이 되는 상업적 또는 채무서비스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거주상업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의한 경우의 선물·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유보는 1. 아이슬란드 크로노가 관련통화가 아닌 경우 2. 원인이 되는 상업적 또는 채무서비스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거주상업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의한 경우의 선물·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유보는 1. 외화채무와 관련된 리스크회피를 위한 통화 및 이자율스왑으로서 아이슬란드 크로노가 관련통화가 아닌 경우 2. 거주상업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의한 경우에 의한 통화 및 이자율스왑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현황
핀란드	D1.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매입	• 본 유보는 상호기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 핀드는 외국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최대 20%까 지 투자할 수 있음
벨기에	B1. 국내 자금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 를 통한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발행	• 본 유보는 EU 국가에 원천이 있지 않은 외국 증권 및 기타 증서에 대해서만 적용됨
	B2. 국내 공인 자금시장에서의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상장	• 본 유보는 EU 국가에 원천이 있지 않은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에 대해서만 적용됨
멕시코	B1. 국내 자금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 를 통한 외국증권 및 기타 증서의 발행 D1. 거주자의 해외매입	• 본 유보는 증권사가 자기계정으로 매입한 외국 증권 및 기타 증서에 적용됨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VI.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A. 국내 공동투자증권의 외국증권시장 참여 허용</p> <p>A1.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발행</p> <p>A2. 공인 외국증권시장에 상장</p> <p>-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회사 허가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의 국제수익증권 등을 발행, 모집, 인수, 판매 또는 환매와 발행자금의 해외유용 가능 (규정 제10-69, 7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익증권 : 비거주자를 수익자로 하고 발행자금을 국내운용 ● 혼합수익증권 :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수익자로 하고 발행자금을 국내외에서 운용 (거주자가 수익자인 경우는 국내발행이므로 본 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 해외투자수익증권 : 거주자를 수익자로 하고 발행자금을 해외에서 운용(국내발행이므로 본 항의 적용대상 아님) <p>※위탁회사의 허가 : 위탁회사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재정경제원 장관 허가(증권투자신탁업법 제12조)</p> <p>- 수익증권의 발행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거주자)로서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 필요</p> <p>- 해외발행이 허용된 수익증권은 외국증권시장에 상장 가능</p>	<p>A. 국내 공동투자증권의 외국증권시장 참여 허용</p> <p>A1.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A2. 공인 외국증권시장에 상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해외발행이 승인된 공동투자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 외환제도개혁 계획상으로 95년중 채권형 펀드의 허용이 예정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펀드수익증권의 발행자가 거주자이고 해외에서 발행됨으로써 본 규약의 적용대상(국내 공동투자증권의 외국시장 참여)이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p>B. 외국공동투자증권의 국내증권시장 참여 허용</p> <p>B1.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발행</p> <p>B2. 공인 국내증권시장에 상장</p> <p>-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모집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필요(규정 제1-77조)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모집은 사실상 금지)</p> <p>- 외국증권의 국내증권시장에 상장·유통은 증권관리위원회 승인 필요(증권거래법 제88조)</p>	<p>B.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국내증권시장 참여 허용</p> <p>B1.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발행</p> <p>B2. 공인 국내증권시장에 상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국내에서 발행이 허용된 공동투자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C. 비거주자에 의한 공동투자증권의 국내거래</p> <p>C1. 매수</p> <p>C2. 매도</p> <p>(비고) C2의 거래 및 송금과 관련하여 타 회원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동투자 기관을 차별하지 않는 한 판매촉진 활동의 규제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p> <p>- 외국환관리규정 제10-58조에 정한 경우 이외의 비거주자의 국내매입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외국환관리규정 제10-59조)</p> <p>● 제10-58조 중 공동투자증권 취득사항은 비거주자의 혼합수익증권의 취득임</p> <p>(※혼합수익증권: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수익자로 하고 발행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p> <p>•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수익자로 하므로 국내에서 발행된 경우에 비거주자의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p> <p>• 단순히 '비거주자만용' 수익자로 하는 국제수익증권의 경우는 해외발행은 상정하는 것이므로 본 항 적용 배제</p> <p>● 외국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제6호)</p> <p>●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시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제8호)</p> <p>●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투자 전용회사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제8호, 제10장 제7절 제3관)</p> <p>- 비거주자의 공동투자증권 국내매도</p> <p>●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공동투자증권의 취득은 재정경제원 장관 허가사항(내규정 제10-57조) 상기 비거주자가 취득한 공동투자증권의 매도는 성실상 허용 불가(내규정 제10-54조 제4호 참조)</p>	<p>C. 비거주자에 의한 공동투자증권의 국내거래</p> <p>C1. 매수</p> <p>•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i)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발행된 혼합수익증권의 취득</p> <p>ii)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투자 전용회사의 매수</p> <p>iii) 외국금융기관의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표시 공동투자증권 매수</p> <p>iv)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민인 거주자로부터의 원화표시 공동투자증권 매수</p> <p>C2. 매도</p> <p>• 본 유보는 비거주자에게 매수가 허용된 공동투자증권의 매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p>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D.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거래</p> <p>D1. 매수</p> <p>D2. 매도</p> <p>(비고) D1의 거래 및 송금에 관해 외국공통투자기관의 자금형태에 관해 즉관할통용 규 제할 수 있음</p> <p>(비고) 회원국은 A, B, C, D의 거래와 송금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p> <p>i) 동 거래 및 송금은 거주자인 공인대리인을 통해서만 행할 것</p> <p>ii) 동 거래 및 송금에 대하여 거주자는 상시대리인을 통해서만 자금 및 증권을 보유하고</p> <p>iii) 매수·매도는 원문거래로서만 약정</p> <p>- 거주자에 의한 해외증권의 매수: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자금시장의 경우와 동일</p> <p>● 해외증권 투자자등 기관투자자(규정 제10-49조) 투자대상(제10-50조), 투자한도(제10-51조),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제10장 제6절 제2관) 등</p> <p>- 기타 거주자에 의한 다음의 해외증권투자: 허가·신고 불필요(규정 제10-54조)</p> <p>● 혼합수의증권 및 해외투자 수익증권의 수탁회사에 의한 외화증권투자(제3호)</p> <p>●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매입·소속하기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제6호)</p> <p>● 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제7호)</p> <p>거주자의 해외매도: 매수가 허용되는 한 제한이 없음</p>	<p>D.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거래</p> <p>D1. 매수</p> <p>•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1. 기관투자자 및 외국환은행의 매수, 다만 동합부역상시 및 전년도 수증입 실적의 5백만 US달러 이상인 자는 전년도 수증입 실적의 30% 또는 3억US달러 중 적은 금액 이하의 매수에 한함</p> <p>2. 일반투자자의 유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공동투자증권의 매수, 다만 개인은 5억 원, 법인은 10억 원 이내에 한함</p> <p>3. i) 혼합수의증권, 해외투자 수익증권의 수탁회사에 의한 외화증권 매수</p> <p>ii)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의 재매입</p> <p>iii) 거주자의 외국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외화증권의 취득</p> <p>D2. 매도</p> <p>(비고) 본 유보는 거주자의 해외 매수가 허용된 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p>	<p>- 해외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단기금융회사, 인기금 등까지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확대</p> <p>- 95년 : 전년도 수증입 실적 5백만 US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상반기)</p> <p>- 1단계(95년)</p> <p>● 기관투자자 : 자유화</p> <p>● 일반투자자 : 상장증권 투자한도 증액</p> <p>개인 : 1억 ~5억</p> <p>법인 : 3억 ~10억</p> <p>- 2단계(96 ~97년)</p> <p>● 일반투자자 : 자유화 (시정증권사를 통한 사후관리) 유지</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VI.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현황
벨기에	B1.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외국 공동 투자증권의 발행	• 본 유보는 EU 국가에 원천이 있고 EU 지침 85/611/EU를 준수하는 공동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B2. 국내 공인 증권시장에서의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상장	• 본 유보는 EU 국가에 원천이 있고 EU 지침 85/611/EU를 준수하는 공동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핀란드	C1. 비거주자의 국내매입	
	D1. 거주자의 해외매입	• 본 유보는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 펀드는 외국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최대 20%까지 (외국공동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됨
프랑스	B1.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외국 공동 투자증권의 발행	• 본 유보는 EU 국가에 원천이 있고 EU 지침 85/611/EU를 준수하는 공동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B2. 국내 공인 증권시장에서의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상장	• 본 유보는 EU 국가에 원천이 있고 EU 지침 85/611/EU를 준수하는 공동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아이슬란드	A1.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국내 공동투자증권의 발행	• 본 유보는 아이슬란드 크로너로 표시된 공동투자증권에만 적용함
	A2. 외국 공인 자금시장에서의 국내 공동투자증권의 상장	• 본 유보는 아이슬란드 크로너로 표시된 공동투자증권에만 적용함
	C1. 비거주자의 국내매수	• 본 유보는 아이슬란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공동투자증권에만 적용함
이탈리아	B1.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발행	• 본 유보는 1. EU 거주자에 의해서 EU내에 원천이 있고 EU 지침 85/611/EU를 준수하는 UCITS(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공동투자증권)의 발행 2. 사모발행 협의를 통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공동투자증권의 매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C2. 비거주자의 국내매도	• 본 유보는 1. EU 거주자에 의해서 EU내에 원천이 있고 EU 지침 85/611/EU를 준수하는 UCITS(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공동투자증권)의 매도 2. 사모발행 협의를 통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공동투자증권의 매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현황
포르투갈	B1.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발행 B2. 국내 공인 증권시장에서의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정관 또는 규정에 자산의 50% 이상이 OECD 회원국의 공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외국 공동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적용됨 • 본 유보는 정관 또는 규정에 자산의 50% 이상이 OECD 회원국의 공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외국 공동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적용됨
스위스	B1.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국내 공동투자증권의 발행보다 더 높은 인지세율이 적용됨
터키	B1.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발행 B2. 국내 공인 증권시장에서의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상장	
멕시코	B1.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발행 C1. 비거주자의 국내매입 D1. 거주자의 해외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국내통화(멕시코 페소화)로 표시되는 증권에 대해서만 적용됨 • 본 유보는 금융기관에 의한 국내통화표시 증권에 대한 매입에만 적용됨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VII. 국제무역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된 신용

현행 제관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i)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해당 상거래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는 경우(List A)</p> <p>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규정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결제방법으로 물품을 수출·수입, 용역거래를 위해 있어서 신용을 부여받는 경우는 규정의 내차·제부의 모종관련 자본거래를 하나로 취급하되, 이가 및 신용을 요하지 않음. 거래로 보되,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방법에 관한 인증 등이 인정된 절차를 거치지도록 하고 있음(규정 제 10-38조 제1항 제12호) -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인 수입 결제방법 (규정 제7-11 조) • 특정물품에 대한 일정기간 이내의 연차입 수입(제7장 제8조) • 대상물품, 기간, 차수금, 신용금리, 지급보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차입 수입 (제7장 제9조) • 일정기간, 대상물품, 수입액, 요건을 충족하는 팩토링을 이용한 송금방식의 수입 •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 후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무역지원의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 수입대금의 20% 이내를 일정기간 이내에 지급하는 기계류, 산업설비의 수입 <p>-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인 수출선수금·수출차수금의 영수(규정 제7-8조, 제7-33조 내각 제7-4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선수금의 영수. 단 중견 수출기업의 20만 US달러 이하의 송금방식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및 수출선수금을 해외지사에: 인증 불필요. •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차수금의 영수 	<p>자유화 정도(유보현황)</p> <p>ii)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해당 상거래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List A)</p> <p>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아래 방법에 의한 신용공여로서 외국환관리규정이 정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p>i) 연차입 수입 ii) 분할차입 수입 iii) 팩토링에 의한 수입 iv) 수출선수금·수출차수금 영수에 의한 수입</p>	<p><외환제도 계획 개화></p> <p>1. 원차입 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제(95년) • 대수용 일반기업 : 90일 (중소기업 : 120일) 인근기업 : 60일 (중소기업 : 90일) • 수출용 일반기업 : 180일 인근기업 : 90일 (중소기업 : 120일) <p>- 2·3년제(96·9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입 수입기간 단계적 인정 <p>2. 수출선수금 및 수출차수금 영수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제(95년) • 수출선수금 대기업 : 10% 중소기업 : 한도해제 - 2년제(96·97년) • 수출선수금 : 대기업 영수한도 확대 - 3년제(98·99년) • 수출선수금 : 대기업 영수한도 30%로 확대하여 사실상 자유화 • 수출차수금 : 자유화 단 계약시 영수한도: 50%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인 동산 입차거래 (규정 제 10-10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입차하는 경우(제2형)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입차하는 계약은 제한하는 경우(제5항) <p>-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인 용역결제방법(규정 제7-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제공 완료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의 용역대가를 지급(또는) 영수하는 경우 ● 용역제공 개시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의 용역대가를 사전에(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p>※ ()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임</p> <p>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p>-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대상 수출결제방법 (규정 제7-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신용장 발행 또는 무신용상 인수인도 조건방식에 의한 일불수출로서 일성요건(아래 지급보증조건)을 충족하는 것 <p>출연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국의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지급보증 2. 수출보험에 부보 3.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외국 우량금융기관의 신용장 개설, 지급보증 또는 확인 <p>-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용 대출받아 연불수출을 할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장의 인증 필요 (규정 제7-8조 제2항)</p> <p>-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대상인 수입결제방법 (규정 제7-11조 제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 또는 증빙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을 선지서지급 또는 물품의 영수 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단 통 대금지급에 대하여 수출국의 중앙정부기관, 중앙은행 또는 우량금융기업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함 <p>-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인 용역결제방법(규정 제7-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제공 완료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용역대가를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 용역제공 개시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사전에 용역대가를 지급(또는) 영수하는 경우 <p>※ ()은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임</p> <p>- 외국환은행의 인증대상 동산 입차거래(규정 제10-10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임대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시설대여회사가 비거주자와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불필요 (규정 제10-101조 제4호) 	<p>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없음 	<p>3. 중개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제(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에서 수출대금 선영수 허용 - 2~3년제(96~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대금 선영수 허용기간 단계적 연장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ii)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상거래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List B)</p> <p>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이 경우는: 금융상의 신용 및 대출에 포함)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p> <p>(비고) 신용공여자가 자금시장에서 신용 및 대부의 공여를 허용받은 기업인 경우 VII ii) /B의 거래 및 송금은 자유임</p> <p>· 외국환은행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대외외화표시 보증 가능</p> <p>(1) 거주자의 의뢰에 의한 경우 (규정 제2-63조 제3항 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2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현지금융)에 해당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합사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의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관여하는 보증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수출,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관여하는 보증 ●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인정하는 경우 <p>(2) 비거주자의 의뢰에 의한 경우 (규정 제2-63조 제3항 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동 보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 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 지급수단, 외화증권 또는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예치받은 경우 ●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뢰에 의한 보증으로서 당해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공여 한도내에서 보증하는 경우 ● 보증의뢰인이 당해 국가가 전액 출자한 국영기업인 경우 ● 보증기업이 국제적 등급평가기관에서 우량기업으로 평정받은 자(BBB 이상)인 경우 	<p>ii)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상거래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List B)</p> <p>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 본 유보: 외국환은행이 제공하는 신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VII. 국제무역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된 신용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호주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무역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리스트 B)	• 본 유보는 외국중앙은행, 외국정부, 민간부문의 상업적 단체와 유사하지 않은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정부기구 등에 공여되는 신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같은 범주의 차입사는 호주자본시장에서 1억 호주달러를 초과하여 차입할 때 호주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아이슬란드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무역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의 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리스트 A)	• 본 유보는 1. 만기가 180일까지인 경우 2. 만기가 180일 이상 360일까지인 경우로 거주 금융기관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은 신용에는 적용되지 않음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무역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의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리스트 A)	• 본 유보는 정상적인 상업관행에 의한 것보다 장기로 공여되는 신용에만 적용됨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무역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리스트 B)	• 본 유보는 1년 이하의 신용 및 대부로서 당해 거래가 거주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는 것에만 적용되며, 그 이외에는 허가대상임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무역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리스트 B)	• 본 유보는 1년 이하의 신용 및 대부에만 적용되며, 그 이외에는 허가대상임
터키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무역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의 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리스트 A)	• 본 유보는 만기 1년 이상의 선금융신용에 대해 적용됨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무역 또는 서비스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의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리스트 A)	• 본 유보는 2년 이상의 바내구채 수출과 5년 이상의 내구채 수출시의 상품신용에는 적용되지 않음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VIII. 금융상의 신용 및 대출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p> <p>-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규정 제2-5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년 초과, 1천만 US달러 이상 차입 : 재정경제원 장관 앞 신고 ● 상환기간 1년 초과, 1천만 US달러 미만 차입: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사전보고 ● 상환기간 1년 이하의 차입 : 규제 없음 <p>※역외 금융거래를 위한 차입은 제2-70조 적용</p> <p>- 일반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p> <p>1) 허가 및 신고 예외거래 (규정 제10-38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민인 거주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일회포지 신용 제공(15호) ● 해외공인 근무자(가족 포함) 또는 해외채세자의 생활비 등의 지급을 위한 차입(16호) ● 외국에 있는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의 외국 환은행 국외지점 등으로부터의 교보이신 차입(18호) ● 국제유가증권 결제기관에 가입한 거주자의 유가증권결제와 관련한 일종대충 수혜 (규정 제10-101조 제10호) <p>2) 외국환은행(본점)장의 인증사항 (규정 제10-3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 거주자, 원양어업자, 외형운송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등의 외국에서 일정한 용도(제11-7조 제1항)에 사용하기 위한 외화자금(원지금융) 차입(1호) (규정 제11-1조 및 제11-2조) ● 정유회사, 압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의 일압물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자금 (제7-25조의 인자금 수입기관) 차입 ● 해외 광고선전비, 해외 자원개발비에 필요한 사전조사, 탐사비용 지급을 위한 차입(9호) 	<p>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i)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 다만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년을 초과하는 1천만 US달러 이상의 차입시에는 신고 필요.</p> <p>ii)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거주자, 원양어업자, 외형운송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외국에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화지금을 차입하는 경우</p> <p>iii)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압물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특정한 기간내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p> <p>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p> <p>v) 해외 광고선전비, 해외 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탐사비용 지급을 위한 외화자금 차입</p> <p>vi) 국제 유가증권결제기관에 가입한 거주자의 유가증권 결제와 관련한 일종대충(intraday credit) 수혜</p>	<p><외환제도개혁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 ● 대외금융지, 통화관리 상황은 감안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 만가 3년 이상 상입차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전채 도입용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자유화(원금차권은 분히) ※상입차권 허용계획 - 1단계(95년) ● 중소기업은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금액 범위내 ● SOC 참여기업, 첨단기술업종 해당기업, 중소기업 : 인정기준 및 한도내에서 허용 - 2단계(96-97년) ● 일반기업에게 인정기준 및 한도내에서 허용 ● 중소기업의 사전채 도입용 자유화(심사부 신고) - 3단계(98-99년) ● 시설채 도입용 상입차권을 자유화(심사부 신고)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규정 제10-39조의 2)</p> <p>(3)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규정 제10-40조)</p> <p>● 일정요인 및 용도(연불수출용 원자재 수입결제자금 등)를 충족하는 3년 이내의 단기외화자금 차입</p> <p>(4)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사항(규정 제10-41조)</p> <p>● 차관계약 등으로 차입하는 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한 일시차입(Bridge loan)</p> <p>● 상환기간 또는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1백만 US달러 이상의 차입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 필요 (외사도입법 제19조)</p> <p>● 상기 이외의 일반기업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p> <p>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p> <p>(비고) 채권사가 자금시장에서 신용 및 대부의 공여를 허용받은 기업인 경우 ix/B의 거래 및 송금은 자유임</p> <p>· 외국환은행에 의한 대부(규정 제2-61조)</p> <p>● 외국환은행이 2천만 US달러 이상의 신용을 해외에 공여하거나 비수교국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 앞 사전보고 필요</p> <p>● 외국환은행이 2천만 US달러 미만의 신용을 해외에 공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보고 필요. 다만 2백만 US달러 미만인 경우 제외</p> <p>●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있는 아래의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 대부서 허가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의 공관 및 수환외교관 등 · 국민인 비거주자 · 외국금융기관,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비거주자 지유원계정 잔액부족서 제2영업일 이내의 당좌대입 제공 <p>● 일반투자자(1천만 US달러 이내) 및 일반법인(30만 US달러 이내)로서 개인유사법인 제외이 외화자금을 대부하는 경우(규정 제0-39조의 3)</p>	<p>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p> <p>·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i) 외국환은행의 2천만 US달러 미만의 외화자금 대부</p> <p>ii) 외국환은행의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공관 또는 주한 외교관 등에 대한 외화자금 대부</p> <p>iii) 기관투자자의 1천만 US달러 이하의 외화자금 대부</p> <p>iv) 일반법인(개인유사법인 제외)의 30만 US달러 이하의 외화자금 대부</p>	<p>1. 기관투자자</p> <p>- 1단계(95년) : 1천만 US달러 이하 자유화</p> <p>- 2단계(96 ~ 97년) : 금액 상향 조정</p> <p>- 3단계(98 ~ 99년) : 금액 상향 조정</p> <p>2. 일반법인</p> <p>- 1단계(95년) : 30만 US달러 이하 자유화</p> <p>- 2단계(96 ~ 97년) : 금액 상향 조정</p> <p>- 3단계(98 ~ 99년) : 금액 상향 조정</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VIII. 금융상의 신용 및 대출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 현황
호주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 및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외국중앙은행, 외국정부, 민간부분의 상업적 단체와 유사하지 않은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성부기구 등에 공여되는 신용 및 대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같은 범주의 차입자는 호주자본시장에서 1억 호주달러를 초과하여 차입할 때 호주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아이슬란드	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 및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1년 이하의 신용 및 대부로서 당해 거래가 거주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는 것에만 적용되며, 1 이외에는 허가대상임
	B.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 및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1년 이하의 신용 및 대부에만 적용되며, 1 이외에는 허가대상임
멕시코	A.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공여하는 신용 및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1. 비거주 금융기관이 거주 금융기관에게 국내통화로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 2. 비거주 금융기관이 거주은행에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서만 적용됨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IX. 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i) 국제무역 또는 국제경상무역의 거래와 직접 관련되거나, 거주자가 참여하는 국제 자본이동거래와 관련된 경우(List A)</p> <p>A. 담보 및 보증</p> <p>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p>-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다음의 담보, 보증은 허가·신고 불필요(규정 제10-3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역외 금융대출에 관한 담보로 비거주자가 외화표시보증을 하는 경우(제9호) ● 거주자의 규정 제10-39조의 3에서 정한 외화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외화표시보증을 하는 경우(제23호) <p>- 기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규정 제10-40조 제5호)</p> <p>※ 제1단계(95년)에서 비거주자의 일반법인에 대한 보증 및 담보는 1백만 US달러 이내(부동산 담보는 한 기업당 30만 US달러 이내)에서 자유화될 예정임</p> <p>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p>- 외국환은행의 내외 화표시보증(규정 제2-6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인 비거주자와 채무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일정요건 충족시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외화표시보증 가능 <p>-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신고 불필요(제10-3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외국 의 시설대여회사와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외화표시보증을 하는 경우(제4호) 	<p>i) 국제무역 또는 국제경상무역의 거래와 직접 관련되거나, 거주자가 참여하는 국제 자본이동거래와 관련된 경우(List A)</p> <p>A. 담보 및 보증</p> <p>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i) 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역외 금융대출에 관한 담보로 비거주자가 외화표시보증을 하는 경우</p> <p>ii) 거주자의 인정된 외화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외화표시보증을 하는 경우</p> <p>iii) 상기 이외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일반법인에 대하여 1백만 US달러(부동산 담보는 한 기업당 30만 US달러) 이내의 외화표시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p> <p>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i) 외국환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보증 및 담보 제공</p> <p>ii) 외국의 시설대여회사와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한 시설대여회사의 외화표시보증</p>	<p><외환제도개혁 계획></p> <p>-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의 대외활동 원활화를 위해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 및 담보는 우선 자유화(단 부동산 담보는 해외 부동산투자자와 맞추어 자유화)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 및 담보는 우발채무의 증가 및 외화의 우회유출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히 자유화 <p>-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95년) : 일반법인에 대한 보증 및 담보는 1백만 US달러 이내 자유화(단 부동산 담보는 한 기업당 30만 US달러 이내에서 자유화) ● 2단계(96~97년) : 금액 상향 조정 ● 3단계(98~99년) : 일반법인에 대한 보증 및 담보자유화 개인 및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보증, 담보를 일정한도내에서 자유화 <p>-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95년) : 비은행 금융기관의 보증, 담보제공 자유화 ● 2단계(96~97년) : 일반법인의 보증, 담보제공을 일정한도내에서 자유화 ● 3단계(98~99년) : 개인 및 개인유사법인의 담보, 보증제공을 일정한도내에서 자유화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계약에 관하여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 표시보증을 하는 경우(제6호)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차계약에 관하여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외화 표시보증을 하는 경우(제8호) ● 거주자의 제10-46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어음 매각과 관련하여 개인기업이 외화 표시보증을 하는 경우(제11호) ● 거주자의 규정 제10-11조 제6호에 의한 해외전문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제13호) ● 모회사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의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임차보증 등을 위한 보증을 하는 경우(제14호) ● 규정 제10-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제22호) ● 국제유가증권 결제거국에 가입한 거주자가 규정 제10-38조 제1항 제21호에 정한 인증대출 Intra-Day Credit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규정 제10-101조 제10호) <p>-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상의 인증 필요 (규정 제10-3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의 담보를 위한 보증을 하는 경우(제3호) ● 거주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에 관련한 임차보증에 대한 비거주자의 보증으로 인해 당해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주자가 보증·부담하는 경우(제5호, 제6호) ● 거주자의 해외 광고건설비, 해외시원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탐사비용 지급을 위한 외화 자금 차입과 관련한 개인기업의 보증(제10호) <p>※미은행 금융기관의 보증 및 담보제공이 자유화된 예정일(제14차 개, 9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i) 거주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한 비거주자의 보증으로 인한 당해 비거주자의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 iv) 모회사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의 관련 해외사업을 위하여 임차보증을 하는 경우 v)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차계약에 관하여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외화 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vi) 거주자가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의 담보를 위한 보증을 하는 경우 vii)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계약과 관련한 외화 표시 보증 viii) 거주자의 약속어음 매각과 관련한 개인기업의 보증 ix) 거주자의 해외전문거래와 관련한 보증 x)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한 보증 xi) 국제 유가증권 결제거국에 가입한 거주자의 증권투자를 위한 인증대출과 관련한 보증 xii) 거주자의 해외 광고건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탐사비용 차입과 관련한 보증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융의 계획
<p>B. 보증금융</p> <p>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거주자의 해외 외화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은 발행자료권(제10-79조) 발행자금의 용도(제10-80조), 발행한도(제10-81조)를 규정하고 발행사실은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0-83조) 발행방법(제10-82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세부요건을 충족하여 외화증권의 발행이 신고된 경우 그에 따른 거주자의 보증금융 수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음 다만, 거주자의 해외증권발행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사항이므로(규정 제10-40조) 보증금융 수혜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유보할 필요는 없음</p> <p>※보증금융(financial back-up facility) : 자금조달을 위한 증권의 공모발행사 매각되지 않은 증권의 인수를 약정하거나 발행자의 지급능력에 대하여 보증하는 금융제공의 한 형태</p> <p>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미고 x) A와 B에 관련된 거래 및 송금이 거주자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무역, 국제건설 무역의거래 또는 국제자본 이동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해 회원국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예) : 자유입</p> <p>- 외화증권 국제인수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는 외국에서의 증권업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와 국제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국제업무를 취급하는 투자신탁 회사에 한함(제10-49조 본문 단서)</p> <p>●외화증권 국제인수단 참여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보증금융 제공 가능</p> <p>-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외국에서의 대국통화표시 증권의 발행은 재정경제원 장관 허가사항이며(규정 제10-77조) 이때 거주자에 의한 보증금융 참여여부: 허가내용에 포함됨</p> <p>- 외국환은행의 보증금융 제공에는 제한이 없음 (규정 제10-6조 제1호)</p> <p>※제1단계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담보제공 및 해외 증권투자(인수 포함)가 자유화된 예정이므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금융제공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p>	<p>B. 보증금융</p> <p>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유보 없음</p> <p>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유보 없음</p>	<p>※보증금융과 관련된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제공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이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p>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ii) 국제무역, 국제경상무역의 거래 또는 국제 자본이동 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거주자가 당해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p> <p>A. 담보 및 보증(List A)</p> <p>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보증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의한 보증을 인정한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허가 및 신고 불필요) ●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여신에 대한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규정 제10-38조 제3호) ●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도입한 시설을 거주자에게 외화표시로 임대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당해 임대 관계 외화표시보증을 하는 경우(제10-38조 제5호)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 채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규정 제10-38조 제15호) <p>- 기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규정 제10-40조 제5호)</p> <p>※제1단계(95년)에서 비거주자의 일반법인에 대한 보증 및 담보는 1백만 US달러 이내(부동산 담보는 한 기업당 30만 US달러 이내)에서 자유화된 예정임</p> <p>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신고 불필요 (규정 제10-38조)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내국 통화표시 채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5호) 	<p>ii) 국제무역, 국제경상무역의 거래 또는 국제자본이동 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거주자가 당해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p> <p>A. 담보 및 보증(List A)</p> <p>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여신에 대한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ii) 시설대여회사가 도입한 시설을 거주자에게 외화표시로 임대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당해 임대 관계 외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iii)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 채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iv) 상기 이외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일반법인에 대하여 1백만 US달러(부동산 담보는 한 기업당 30만 US달러) 이내의 외화표시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p>2. 거주자가 비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외국환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보증 및 담보 제공 ii) 증권회사가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의뢰에 의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게 외화표시보증을 하는 경우. 단 채권확보불 전제로 함(규정 제2-63조)</p> <p>-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규정 제10-3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본점을 둔 증권회사의 당해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한 보증(제4호) ●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채 임차물 위하여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제7호) ● 리스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가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제8호) <p>B. 보증금용(List B)</p> <p>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p>- 증권거래법(제203조 제1항) 및 동시행령(제87조의 제2항)은 증권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위원회는 관행상 외국인의 발행시장 인수를 제한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의 보증금용 제공도 제한됨. 다만 비거주자에게 인수가 허용되는 경우 동 범위내에서 비거주자의 보증금용 제공은 가능함 ● 비거주자의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보증제공은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임(규정 제10-40조) ●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보증금용제공은 제한이 없음 <p>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금용</p>	<p>iii) 현지법인의 외국 시설대여회사로부터의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채 임차와 관련한 거주자의 보증</p> <p>iv)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 채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v) 리스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과 관련하여 본사가 보증하는 경우</p> <p>B. 보증금용(List B)</p> <p>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외국환은행에 대한 보증금용 제공 ii) 거주자의 증권발행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인수가 허용되는 경우 <p>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없음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IX. 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 또는 국제경쟁무역외 거래와 직접 관련되거나 거주자가 참여하는 국제자본이동 거래와 관련된되는 경우의 B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참여하는 보충금융(리스트 A) - 국제무역 또는 국제경쟁무역외 거래와 직접 관련되거나 거주자가 참여하는 국제자본이동 거래와 관련된되는 경우의 B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참여하는 보충금융(리스트 A) - 국제무역 또는 국제경쟁무역외 거래 또는 국제자본이동 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음: 경우의 B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참여하는 보충금융(리스트 A) - 국제무역 또는 국제경쟁무역외 거래 또는 국제자본이동 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음: 경우의 B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참여하는 보충금융(리스트 A)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 또는 국제경쟁무역외 거래 또는 국제자본이동 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음: 경우의 A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참여하는 담보 및 보충(리스트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거주은행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 적용됨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X. 예금계정거래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A. 비거주자의 거주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 (List A)</p> <p>A1. 내국통화에 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 원화계정의 예치(규정 제10-34조) ● 외국인 비거주자가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또는 내국통화표시 채권은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 가능 - 비거주자 원화계정의 처분이 가능한 경우 (규정 제10-35조) ●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제1호) ● 당해 비거주자가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분위내 또는 2천 US달러 이내의 외국환을 매입하기 위한 처분(제2호 가목) 등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규정 제10장 제3절 제7권) - 증권투자 비거주자 원화계정(규정 제10-64조) - 외국투자 전용회사의 비거주자 원화계정 (규정 제10-67조) <p>※ 비거주자 원화계정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제한 없음(유보 불필요)</p> <p>A2. 외국통화에 의한 경우</p> <p>(비고) 예금업무를 인가받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정을 통한 경우 x/A의 거래와 송금은 자유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계정(규정 제10-25조, 제10-26조) ● 외국환은행,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 등에 외화예금 은행계정 허용 - 내외계정(규정 제10-27조, 제10-28조) ● 은행계정 설치가능 비거주자 이외의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 거주자,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내외계정 허용 - 해외이주자 계정(규정 제10-32조, 제10-33조) ● 해외이주자는 외화예금거래에 있어서 비거주자보다 외화예금계정 허용 <p>※ 실제 제한이 없음(유보 불필요)</p>	<p>A. 비거주자의 거주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 (List A)</p> <p>A1. 내국통화에 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없음 <p>A2. 외국통화에 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없음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B. 거주자의 비거주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List B)</p> <p>-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거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대상인(규정 제10-13조 제2호)</p> <p>- 허가 및 신고가 불필요한 거래 (규정 제10-11조)</p> <p>● 정부의 재외공관이 외국에서 필요한 경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2호)</p> <p>● 해외건설 또는 용역사업자가 해외에 보유할 수 있는 외화자금(건설 또는 용역사업 계약잔액의 20% 또는 2백만 US달러)으로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3호), 한도초과시에는 외국환은행장 인증 필요(제10-12조 제2호)</p> <p>● 외국인 거주자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시금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외국에 보유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4호)</p> <p>● 거주자가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차관자금을 그 인가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5호)</p> <p>● 거주자가 해외 금융선물거래, 해외 상품선물거래에 필요한 자금과 정산차액을 외국에 보유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6호)</p> <p>●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이후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보유하고 있던 2천 US달러 이내의 예금거래(제7호)</p> <p>● 정부의 재외공관과 그 근무사 또는 동거가족이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다만 공관근무사가 귀국한 이후에는 2만 US달러 이내에 한함(제8호)</p> <p>● 거주자의 해외발행 증권의 발행대금을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제9호)</p>	<p>B. 거주자의 비거주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 (List B)</p> <p>B1. 내국통화에 의한 경우 B2. 외국통화에 의한 경우</p> <p>• 본 유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i. 거주자가 다음 금액범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외국은행 포함)의 국외지점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p> <p>ii) 기관투자가 : 연간 1억 US달러 iii) 일반법인 : 연간 1백만 US달러 iv) 개인 및 개인유사법인 : 연간 3만 US달러</p> <p>2. 기타 거주자의 외화예금거래</p> <p>i) 정부의 재외공관 및 그 근무자, 가족에 의한 거래 ii) 해외건설 또는 용역회사에 의한 일정한도내의 거래 iii) 외국인 거주자에 의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로 취득한 자금의 거래 iv) 차관자금의 해외사용과 관련된 거래 v) 해외 금융선물거래, 해외 상품선물거래에 필요한 경우 vi) 국민인 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정에 의한 거래로서, 2만 US달러 이내인 경우</p>	<p><외환제도개혁 계획></p> <p>- 기관투자가 ● 1단계(95년) : 한 회사당 1억 US달러 이하 자유화 ● 2단계(96~97년) : 자유화</p> <p>- 일반법인 ● 1단계(95년) : 한 회사당 1백만 US달러 이하 자유화 ● 2단계(96~97년) : 금액 상향 조정 ● 3단계(98~99년) : 자유화</p> <p>- 개인 및 개인유사법인 ● 1단계(95년) : 1인당 3만 US달러 이하 자유화 ● 2단계(96~97년) : 금액 상향 조정 ● 3단계(98~99년) : 금액 상향 조정</p>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5백만 US달러 이상인 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30%와 3억 US달러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등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하는 경우(제10호). 단 예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대상임(제10-12조 제4조) ● 거주자가 원자금융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11호) ● 기관투자가 또는 혼합수익증권, 해외투자수익증권의 수탁회사가 외화증권 등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12호) ●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를 위한 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13호) ● 거주자가 출국 전후 각 1개월을 포함한 외국 체재기간중의 생활비, 동상용품 및 용역의 구입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14호) ● 거주자가 규정 제7-34조 제3항 제3호의 수출신수금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등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10-16조) 예치시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 ● 거주자가 규정 제7-42조 제3항의 수출차수금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등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17호) ● 규정 제10-53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에탁원이 외국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제18호) ● 규정 제10장의 제3절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일정금액(개인 : 3만 US달러, 일반법인 : 1백만 US달러, 기관투자가 : 1억 US달러)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외국은행 포함) 국외지점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인증 필요 <p>· 제10-11조 및 제10-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규정 제10-1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i) 해외에서의 증권발행 대금의 예치 viii) 종합무역상사, 수출입업자 등의 수출입에 필요한 일정한도내의 거래 ix) 현지금융과 관련된 거래 x) 기관투자가, 수익증권의 수탁회사의 해외 증권투자활동과 관련된 거래 xi) 해외 직접투자를 위한 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거래 xii) 해외채세중의 일상생활비와 관련된 거래 xiii) 수출선수금 또는 수출차수금의 해외예치와 관련된 거래 xiv) 일반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와 관련된 증권에탁원의 예금거래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X. 예금계정거래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아이슬란드	<p>A1. 미거주자가 거주기관에 개설된 내국통화계정을 통한 거래 (List A)</p> <p>B1. 거주자의 미거주기관과의 내국통화 계정에 의한 거래(List B)</p> <p>B2. 거주자의 미거주기관과의 외국통화계정에 의한 거래(List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아이슬란드에서 활동하는 업무용 계정(working account)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유보는 거주자가 외환규제법령에 의해 외환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되지 않은 계정에만 적용됨 • 본 유보는 1. 외국통화의 매출 혹은 이익 관련된 거래와 인정되지 않은 미거주 금융기관의 예금 2. 미거주자가 거주자 은행에 개설한 정기예금계정의 경우에 적용됨
멕시코	<p>A1. 미거주자가 거주기관에 개설된 내국통화계정을 통한 거래(List A)</p> <p>A2. 미거주자가 거주기관에 개설된 외국통화계정을 통한 거래(List 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1. 멕시코에 거주자를 갖고 있는 기업기관 제외한 미거주자 2. 미거주자가 거주자 은행에 개설한 정기예금계정의 경우에 적용됨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XI. 외환거래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A.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p>AI. 외국통화를 대가로 한 내국통화의 매수</p> <p>-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국환 매입 (규정 제2-42조)</p> <p>● 외국환은행은 다음을 확인 후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매입 가능</p> <p>- 외국환통증 등에 의한 당해 외국환의 휴대수입 또는 송금영수 등 취득사실 확인</p> <p>- 신분증명사 등에 의한 인적 사항 확인</p> <p>● 다만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1만 US달러 이하를 매입할 경우에는 상기 확인 배제</p> <p>※ 상기 확인은 거래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이 아님</p> <p>-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와 선물환거래 가능. 단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와 수수료 범위내에서만 가능(규정 제2-52조)하며 1천만 US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 증빙은 요함(제2-53조)</p> <p>● 국내 직접투자 허가 등을 받은 후 아직 투자실행을 위한 내국통화 매입을 하지 않은 자</p> <p>● 국내 직접투자자의 회수가 확정된 차로서 아직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내국통화 매입을 하지 않은 자</p> <p>● 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투자 관련규정(제10장 제7절 제2관)에 의하여 국내 증권 매입계약은 체결한 차로서 내국통화를 대가로 외화자금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p> <p>● 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투자(제10장 제7절 제2관), 외국투자 전용회사의 국내 증권투자(동 제3관), 비거주자의 주식취득 등(제10-86조)</p> <p>- 규정에 의하여 국내증권을 취득한 자 또는 국내 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내국통화를 대가로 외화자금을 매각한 자</p> <p>-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의 외국통화간 상의금융 선물거래는 제한 없음(제13-16조)</p>	<p>A.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p> <p>AI. 외국통화를 대가로 한 내국통화의 매수</p> <p>●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p> <p>i) 실수요가 아닌 선물환거래로서 1천만 US달러를 초과하는 경우</p> <p>ii) 외국환은행과의 원화-외화간 통화유선 및 통화선물거래</p> <p>iii)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와의 통화유선 및 통화선물거래</p>	<p><외환제도개혁 계획></p> <p>- 96년중 실수요증빙 제출 의무 완전 면제</p>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A2. 외국통화 매입을 위한 내국통화의 매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은행은 아래 범위내에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 외국환 매각 가능 (규정 제2-45조 제1항) ● 비거주자의 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은행, 채신관사 또는 환선상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표시 등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제1호)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 등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제2호)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소지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 금액 이내(제3호) ● 상기 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2천 US달러 이내(제4호) - 선불환 및 통화옵션, 통화선물거래 ● 상기 규정 제2-52조 및 제13-16조 내용 참조 	<p>A2. 외국통화 매입을 위한 내국통화의 매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i) 공인된 거래를 통한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또는 2천 US달러 ii) 실수요가 아닌 선불환거래로서 1천만 US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iii) 외국환은행과의 원화-외화간 통화옵션 및 통화선물거래 iv)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와의 통화옵션 및 통화선물거래 	
<p>A3. 외국통화간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에게 당해 비거주자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에 한하여 그 외국환을 대가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을 매각 가능(규정 제2-45조 제3항) ● 다음 사항 확인 필요 · 외국환등록증 등에 의한 당해 외국환의 휴대수입 또는 출금영수 등 취득 사실 · 신분증명서 등에 의한 인적 사항 ● 다만 당해 비거주자 명의의 대외제정에 예치된 외국환을 대가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확인 불필요 ※ 거래진실성의 확인은 유보대상 제한이 아님 -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와 선물환거래 가능 (규정 제2-52조) -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의 외국통화간 장외 금융선물거래는 제한 없음(제13-16조) 	<p>A3. 외국통화간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없음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B. 거주자에 의한 해외거래</p> <p>B1. 내국통화를 대가로 한 외국통화의 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지점은 제8장(지급수단의 수출입)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한 거주자로부터 3백만 원 이내에서 외국환을 대가로 내국지급수단 매입 가능(규정 제2-27조) - 국외지점은 재외공관 근무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또는 외국환은행 현지법인 등에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대가로 매각한 외국환 금액범위내에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매입할 수 있음(규정 제2-27조) ● 내국통화의 매입한도는 1인당 3백만 원 이내 <p>B2. 내국통화 매입을 위한 외국통화의 매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지점은 아래 한도내에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및 내국통화를 비거주자 및 재외공관 근무자, 그 가족에게 외국환을 대가로 매각 가능(규정 제2-27조) ●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는 1인당 1천만 원 이내 ● 내국통화는 1인당 3백만 원 이내 <p>※ '국외지점'이라 함은 외국환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가 외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로서(제2-22조) 비거주자로 취급됨 (→ 재외공관 근무자 등이 거주자로 간주되기는 하나, 그 대상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유보매채 거래로 별도 언급할 실익이 없으므로 전면유보)</p> <p>B3. 외국통화간 교환</p> <p>(비고) x/A 및 B의 거래와 송금은 당해 거래가 공인 지주기관을 통하는 경우 자유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및 신고가 불필요한 거래(규정 제10-45조) ● 외국에 채권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세세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제3호)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제4호) - 제10-45조 내지 제10-4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규정 제10-47조) -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 가능(규정 제2-52조) -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의 외국통화간 장외금융선물거래는 제한 없음(제13-16조) <p>※ 거주자의 외국환의 휴대수출, 해외지급 및 해외예치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으나 해외에서의 외국통화간의 교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으므로 유보할 실익이 없음</p>	<p>B. 거주자에 의한 해외거래</p> <p>B1. 내국통화를 대가로 한 외국통화의 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등으로부터의 3백만 원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매수 ii) 재외공관 근무자의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매각실적 범위내의 외국통화 매수 <p>B2. 내국통화 매입을 위한 외국통화의 매도</p> <p>• 유보 없음</p> <p>B3. 외국통화간 교환</p> <p>• 유보 없음</p>	<p><외환제도개혁상의 원화국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표시 긴세대상 거래 → 모든 경상거래로 확대 ● 원화 휴대 반출입 금액 한도 확대 : 2백만 원 → 3백만 원 ●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매각 한도 확대 : 5백만 원 → 1천만 원 - 2~3단계(96~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지점에 비거주자 사유원계정 개설(2단계) ● 원화표시 선제한도 확대 ● 원화 휴대 반출입 금액 한도 확대 ●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매각 한도 확대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XI. 외환거래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아이슬란드	A1.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외국통화를 대가로 한 내국통화의 매수 A2.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외국통화를 대가로 한 내국통화의 매도 B1.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내국통화를 대가로 한 외국통화의 매수 B2.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내국통화를 대가로 한 외국통화의 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선물거래에 의한 매수에 적용됨 • 본 유보는 이전에 아이슬란드에서 취득한 코로나의 매도를 통한 외국환 매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터키	B2.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내국통화를 대가로 한 외국통화의 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상품수출의 70%가 등록된 거주 상업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외국환의 경우에만 적용됨

1) 관련제도 현황과 금추의 계획

XII. 생명보험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추의 계획
<p>A. 비거주 보험업자가 거주자인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p> <p>-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보험계약거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임(규정 제10-100조, 제10-103조 제6호)</p> <p>• 그러나 본 허가금·계약체결에 관한 것이며, 계약체결의 결과 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확인만을 요하므로(규정 제6-3조 제2항) 유보 불필요</p> <p>B. 거주자인 보험업자가 비거주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p> <p>-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승사항임(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p> <p>- 외국인 거주자 또는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한 후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금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조종의 지급은 지정은행장의 인승권임(규정 제6-12조 제1항 제2호 나목)</p>	<p>A. 비거주 보험업자가 거주자인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없음 <p>B. 거주자인 보험업자가 비거주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없음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 모든 회원국이 완전 자유화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XIII. 개인적 자본이동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A. 대부(List A)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담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발생 거래는 개정경제원 상환의 허가를 요함(규정 제10-41조). 단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의 국내에서의 내국통화 표시 담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은 허가 신고를 요하지 않음(제10-38조 제15호)</p> <p>B. 증여 및 기증(List A) - 증여성 지급에 대한 인증·추천 및 허가(규정 제6-14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에 대한 증여를 위한 다음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 · 국제기부, 국제단체, 외국정부에 대한 의인금·기부금 지급 · 교육·문화·예술·종교관련 단체 등에 대한 증여성 지급. 단 5만 US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의 추천 필요(주무부 장관의 추천은 사실상 허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유보 필요) ● 기타 증여목적의 지급(친척·친지에 대한 축의금, 조의금 또는 생활보조금 등의 증여성 지급 등을 포함)으로서 건당 5천 US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 - 수증 및 기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음. 그러나 이할 유보배제 거래로 별도 언급할 실익은 없음</p> <p>C. 결혼지참금(List A) - 지참금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므로, 해외이주비에 준하여 허용 ● 이주정착비의 경우 세대원 1인당 10만 US달러까지 허용되므로(규정 제6-31조) 심부가 지참하는 결혼지참금도 10만 US달러까지 허용</p> <p>D. 상속 및 유증(List A) - 부동산의 상속 및 유증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불필요(규정 제10-89조 제2호) ●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증여로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필요(규정 제10-95조 제1호) ● 그러나 부동산 지분대금의 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규정 제6-13조 제2항 제1호) - 증권의 상속 및 유증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 불필요(규정 제10-54조 제1호) ●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거주자로부터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불필요하나, 상속인이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필요(규정 제10-58조 제2호)</p>	<p>A. 대부(List A)</p> <p>B. 증여 및 기증(List A)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국제기부,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 등에 대한 의인금, 기부금의 지급 ii) 5만 US달러 이내의 교육·문화·예술·종교관련 단체 등에 대한 증여 iii) 5천 US달러 이내의 기타 증여성 지급</p> <p>C. 결혼지참금(List A) · 본 유보는 10만 US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p> <p>D. 상속 및 유증(List A) · 본 유보는 비거주자가 상속 및 유증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 대금 또는 기타 자산의 대외송입에 적용된다</p>	<p><외환제도 개혁안> - 개인, 개인유사법인의 자산유용 목적의 해외 신용공여, 보증 및 담보 등의 경우는 98년 이후 일정한도 내에서 자유화</p> <p>- 95년 : 국제기구 등에 대한 증여 자유화</p> <p>- 96~97년 : 교육, 종교단체 등에 대한 주무부 장관 추천대상은 금액 상향 조정</p> <p>- 98~99년 : 교육, 종교단체 등에 대한 증여성 송금 자유화</p> <p>- 95년 : 한도 확대(5만 US달러 - 10만 US달러)</p> <p>- 96~99년 : 한도 확대</p>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	금후의 계획
<p>- 부동산 및 증권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외환관리 규정상 언급이 없음(입법 미비).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내각 제한(규정 제2-45조)에 의해서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송금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음</p> <p>E. 이민자에 의한 원거주지국에서의 채무면제(List A)</p> <p>-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한 지급 또는 영수는 당해 거래가 건당 10만 US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상(부점)의 인증 필요(규정 제6-15조 제1호)</p> <p>● 당 당해 거래가 건당 5만 US달러 초과 10만 US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p> <p>F. 해외이주자산의 자산(List A)</p> <p>- 아래 한도내 이주정착비 및 투자사업비는 해외이주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규정 제6-31조, 제6-32조)</p> <p>● 이주정착비 : 세대주 20만 US달러, 세대원 1인당 10만 US달러</p> <p>● 투자사업비 : 50만 US달러</p> <p>G. 도박(List B)</p> <p>- 스포츠 경기, 현상광고 등으로부터 취득한 상금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규정 제6-15조)</p> <p>-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및 영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규정 제6-15조 제4호)</p> <p>H. 비거주 근로자의 저축(List A)</p> <p>-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소득에서의 생활비, 조세 등 국내체계에 필요한 경비등 공제한 금액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p>	<p>E. 이민자에 의한 원거주지국에서의 채무면제(List A)</p> <p>• 유보 없음</p> <p>F. 해외이주자산의 자산(List A)</p> <p>•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i) 세대주에 대해서는 20만 US달러, 세대원 1인당 10만 US달러 이내의 이주정착비</p> <p>ii) 50만 US달러 이내의 투자사업비</p> <p>G. 도박(List B)</p> <p>• 유보 없음</p> <p>H. 비거주 근로자의 저축(List A)</p> <p>• 유보 없음</p>	<p><외환제도 개혁안></p> <p>- 95년 : 대상금액의 한도 확대</p> <p>● 세대주 : 10만 US달러 → 20만 US달러</p> <p>● 세대원 : 5만 US달러 → 10만 US달러</p> <p>● 투자사업비 : 30만 US달러 → 50만 US달러</p> <p>- 96년 이후 : 대상금액의 한도 확대</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XIII. 개인적 자본이동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자유화되어 있다. 아이슬란드는 금액이 연간 ECU 2,700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의 증여 및 기증, 결혼지참금, 상속 및 유증, 도박에 대해서는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다.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XIV. 자본자산의 실물이동

적용대상 및 제도	유보 혹은 자유화 현황	금후의 계획
<p>A. 유가증권 및 기타 자본적 권리증서</p> <p>A1. 수입</p> <p>A2. 수출</p> <p>-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증권 의 수출입은 한은총재의 허가를 필요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 됨(규정 제8-4조 제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 된 바에 따라 기명식 증권을 수 출입하는 경우(가목)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 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나목) ● 한국인 직원이 취득한 본사주 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의 수출 입(다목) 	<p>A. 유가증권 및 기타 자본적 권리증서</p> <p>A1. 수입</p> <p>•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p> <p>i)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른 기명식 증권의 수입</p> <p>ii)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 증 권의 수입</p> <p>iii)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또 는 지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취득한 본사 주식의 수입</p> <p>iv) 국제수익증권 등</p> <p>A2. 수출</p> <p>•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p> <p>i)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른 기명식 증권의 수출</p> <p>ii)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 증 권의 수출</p> <p>iii)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또 는 지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취득한 본사 주식의 제수출</p> <p>iv) 국제수익증권 등</p>	

적용대상 및 제도	유보 혹은 자유화 현황	금후의 계획
<p>B. 지급수단</p> <p>B1. 수입</p> <p>B2. 수출</p> <p>(미고) 거주자에 대한 면증허용 의무는 외국 유가증권에만 적용되며, 또한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삼정적으로만 허용됨</p> <p>- 허가가 불필요한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8조 제2항)</p> <p>● 법 제18조(지급방법의 허가), 제20조(용역거래의 허가), 제21조(자본거래의 허가), 제22조(지급거래의 신고)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허가·신고된 바에 따라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여기서 '지급수단'이라 함은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은 포함 : 규정 제8-1.3)</p> <p>- 비거주자의 송금(규정 제5-6조)</p> <p>● 비거주자: 1만 US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양도어음, 환어음, 신용장 제외) 또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세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해야 함</p> <p>-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서(규정 제8-2조)</p> <p>● 대외국통화환 지급수단이 아닌 외화화폐 수입용, 기념용, 사동원배기 지원용, 외국전사용, 화폐수집가 등에게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는 거주자는 당해 금액이 10만 US달러 이내인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 단 대외통화환 수출하는 경우 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영수하여야 함</p> <p>-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 단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재산관리가 인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제외 (규정 제8-4.3)</p> <p>- 거주자의 송금(규정 제5-2조 제1항) 1만 US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p>	<p>B. 지급수단</p> <p>B1. 수입</p> <p>·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p> <p>i)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국제거래의 결과로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른 지급수단의 수입</p> <p>ii) 세관에 등록된 대외지급수단의 휴대수입(단 1만 US달러 이하는 등록 불필요)</p> <p>iii)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재산관리가 인정된 업무수행을 위한 지급수단의 수입</p> <p>iv) 3백만 US달러 이하의 내국 지급수단(인화표서 발행자수로 제외)의 수입</p> <p>v) 10만 US달러 이하의 수집용 화폐의 수입</p> <p>vi) 선별장식품 등 소지자의 일상적 사용을 위한 귀금속의 수입</p> <p>B2. 수출</p> <p>·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p> <p>i)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국제거래의 결과로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른 지급수단의 수출</p> <p>ii)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재산관리가 인정된 업무수행을 위한 지급수단의 수출</p> <p>iii)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유권환의 수출</p> <p>iv)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p>	

적용대상 및 제도	유보 혹은 자유화 현황	급후의 계획
<p>i) 휴대수입서 등록해야 하는 대외지급 수단을 등록하지 않고 휴대수입하거나,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 이외의 대외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제1호)</p> <p>ii) 비거주자가 상기 i)에 의한 하자가 면제되거나 허가를 받아 휴대수입한 금액 및 제5.6조에 의하여 인정된 방법으로 취득한 금액을 초과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단 다음을 제외함(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유권환을 수출하는 경우(가목) •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나목) •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다목) • 주한 미합중국 군대에 의한 외국원전소득 또는 공급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리목) <p>iii) 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 중 기본 경비금액이나 이권, 환전수첩 또는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 다음을 제외함(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방법의 허가를 받거나 지급방법 허가면제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그 허가 또는 인정된 바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가목) • 외국인 거주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나목) • 외국환은행에 보관하였다가(제5.3.소) 반환받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다목) •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유권환을 수출하는 경우(라목) <p>iv)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3백만 원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원화표시 여행사수표 제외)을 수입하는 경우(제4호)</p> <p>v)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3백만 원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대외부익법에 의한 수출 및 원화표시 여행사수표 제외)을 수출하는 경우(제5호)</p>	<p>v) 비거주자가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p> <p>vi) 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이하의 수출</p> <p>vii)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3백만 원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여행사수표 제외)의 수출</p> <p>viii) 10만 US달러 이하의 수직용 화폐의 수출</p> <p>ix) 선반상식품 등 소지자의 일상수 사용을 위한 귀금속의 수출</p>	

적용대상 및 제도	유보, 혹은 자유화 현황	금후의 계획
<p>vi) 대외부역법에 의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귀금속의 수출입(신변장식품 등 개인의 일상적 사용을 위한 것 제외)(제6호)</p> <p>- 해외여행경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해외 여행자 등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 단 기본경비만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추가 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불필요 (제6-22조 제1항)</p> <p>- 해외여행경비(제6-19조)</p> <p>● 여객운임 : 왕복운임과 3천 US달러 이내의 추가운임(제1호)</p> <p>● 기본경비 : 1만 US달러 이내, 다만 20세 미만의 해외여행자는 3천 US달러 이내(제2호)</p> <p>● 기타 경비 : 여행목적상 필요한 경비로서 주정부 장관 등이 인정하는 경비(제3호)</p> <p>● 신용카드에 의한 추가경비 : 여객운임, 숙박비, 현지교통비, 치료비, 통신비 등 당해 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범위내(제4호)</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XIV. 자본자산의 실물이동

회원국 중에는 이탈리아와 멕시코가 부분 유보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특정 동전의 수출을 막고 있다.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XV. 비거주자 소유의 봉쇄자금의 처분

현행제한제도	자유화 정도	금후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제원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음(간접시 허가)(외국환관리법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의 균형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 동화가치 또는 외환시장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경우 ● 국내와 외국간의 대량의 자금이동에 의하여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제원 장관이 상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인 자본거래의 종류와 범위를 고시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제한 필요성에 의하여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거래당사사에 대한 통지로 고시를 갈음할 수 있음 - 국내법은 간접시 허가권 발동을 통한 자본거래 제한만을 규정하고, 그 국내 사용이나 비거주자간의 양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없음 	

주 : 회원국, 우리나라 모두 완전 자유화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XV. 비거주자 소유의 봉쇄자금의 처분

모든 회원국이 자유화되어 있다. 최근까지 그리스가 비EU 회원국간에 이루어지는 봉쇄자금의 송금, 자국내에서 봉쇄자금의 사용, 비거주자간의 봉쇄자금 양도에 제한조치를 두고 있었으나 이를 철회함으로써 모든 유보 조치가 없어진 것이다.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1. 업무 및 산업활동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	금후의 계획
<p><A/1 수선 및 조립></p> <p>-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또는 인증 필요 (외국환관리규정 제6-3조, 제6-15조 제1호)</p> <p>•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제조 및 수리관련 용역거래(수선, 유지, 조립, 설치, 가공, 완성,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용역거래를 모두 포함) 대가를 지급하고자 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확인) 필요</p> <p>5만 US달러 이하 : 외국환은행 확인 5만~10만 US달러 이하 : 외국환은행장 인증 10만 US달러 초과 :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 인증</p>	- 유보 없음	
<p><A/2 가공, 완성, 계약에 의한 가공 및 동일한 성질을 갖는 기타 용역></p> <p>-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또는 인증 필요</p>	- 유보 없음	
<p><A/3 기술도입></p> <p>-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주무부 장관 또는 과학기술지 장관의 신고수리</p> <p>•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권리 도입계약, 또는 그에 직접 수반되는 용역의 대가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 단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주무부 장관 앞 신고를 요하나 신고수리권을 통해 사실상 허가로 운영 :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른 대가지급은 인증 불필요(규정 제6-11조 제1항 제1호)</p> <p>-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 대가가 30만 달러 이상인 엔지니어링 기술의 수출입 등 일정한 경우 허가 필요</p>	- 유보 없음	<p>• 외자도입법상의 신고사항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점에서 생전 가능</p>
<p><A/4 공사계약(전문기업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개입찰 후 고정된 가격으로 수행되는 건물·도로·교량·항구 등의 실증 또는 보수)></p> <p>- 건설업의 면허</p> <p>•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업법 제6조 제1항)</p> <p>• 건설업면허의 기준 중</p> <p>• 도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택지 조성사업을 30원 이상 영위하고 있을 것.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30원 이상 영위한 것을 포함한다(동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p> <p>(※외국인의 건설업면허를 법령상으로는 차별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OECD 규약상 제한이 없음)</p> <p>- 그러나 관행상 국내지사가 없거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면허를 발급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지사의 설치도 허용되지 않고 있음(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p>	- 유보	<p>UR서비스 협상의 결과에 따라</p> <p>• 국내지사가 없거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p> <p>• 전문건설 : 96년 1월 1일</p> <p>• 지사설치 허용 (면허 가능)</p> <p>• 일반건설 : 96년 1년 1월</p> <p>• 전문건설 : 98년 1월 1일</p>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	금후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직사의 설치도 허용되지 않고 있음(외국환관리법 제14-24조에 의거 한중은행 총재의 허가사항) • 건설업에 대한 외국투자금: 일반적으로 허용됨. 다만 전문건설업은 국내 동종종허 소시자와의 겸사의부가 있음(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6.5) <p><A/5 지사권 사용자, 투자권, 의결, 참모 및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 외국인외의 중위직적 인장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 적용 - 지사권을 우리가 가입한 조약의 제약국 주민에 대해서만 보호 호국종도입 내가 자금, 공업소유에 도입 계약제권 및 내국자금은 외국환은행상의 인증사항 <p><A/6 금보 및 임금(적정 또는 개선노동가 및 기타 비거주자의)></p> <p>(바) 수급업 거주자(국외로의 자유로운 송금, 송금액은 생계비,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을 공제한 송금료 및 임금액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개인소득 및 지출과 관련된 지금은 지정은행상의 인증 필요 (규정 제6-12조 제21호 각목)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및 소득에서 생환비, 조세 등 국내제도에 필요한 것만을 공제한 금액 • 다만 당해인의 국내고용 또는 사업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주채원 이외의 영예 등 및 광고제작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본점 상의 인증 필요 <p><A/7 국외에 소재하는 모회사 일반경비의 회사사 또는 지점의 분담 및 1번내의 경우(A/3 A/5에 포함되는 것 이외의 일반경비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분·지사 또는 투자자와 현지법인간의 지금은 지정은행상의 인증 필요(규정 제16-12조 제1항 제3호 나목) •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자유지역 임수업체 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을 위하여 외국이 분사 또는 출자회사의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의 분담금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1. 업무 및 산업활동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이탈리아	A/2 가공, 완성, 계약에 의한 가공 및 동일한 성질을 갖는 기타 용역	-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관영소에서 가공된 영회의 사본은 송부할 권리를 이탈리아에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관영소에서 가공된 외국영회의 로지티브 복사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상의 의무에 의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유보
타지	A/7 국외에 소재하는 모회사 일반경비의 회사사 또는 지점 분담 및 1번내의 경우	- 타지는 국가기획청State Planning Organization으로부터 사전승인은 받지 않은 한도에 대하여 유보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 계획

II. 무역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	금후의 계획
<p><B/1 수수료 및 중개료(중개문의 또는 화물중개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및 대리인 비용)></p> <p>- 외국인의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등록(대외무역법)</p> <p>•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자격,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제7조 제2항, 제14조 제2항)</p> <p>□ 무역업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서도 부분적인 제한이 가능하나, 일단 허가된 무역업자의 수익금 송입은 제한이 없음(외국도입법 제4조)</p> <p>-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에 직접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수출입 내금의 100분의 10과 20만 US달러를 초과하는 대리점 수수료, 중개수수료, 대행지급금 등의 지급은 외국환은행 본점 장의 인증 필요(규정 제6-10조 제1항)</p> <p>• 상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경우에는 인증 불필요 (규정 제6-10조 제1항 제2호)</p> <p>- 각종 중개, 위탁, 대리, 알선, 대행, 보조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으로서, 그 대상거래 또는 행위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5만 US달러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으로 지급 가능 (규정 제6-11조 제1항 제7호)</p> <p>• 상기사항 이외의 중개수수료 등 지급은 외국환은행 본점 장의 인증사항(동 조 제2항 제2호)</p>	- 유보 없음	
<B/2 통상적인 상업관행과 일치하는 상품화시장 운영에 따른 차액, 이익 및 에탁금>	- 유보 없음	
<B/3 동인된 외환중개인의 자기 재산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종류의 시류작성 비용>	- 유보 없음	
<B/4 광고저장 및 보관, 통관>	- 유보 없음	
<B/5 통화수수료>	- 유보 없음	
<B/6 관세 및 수수료 보관, 통관>	- 유보 없음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II. 무역

모든 OECD 회원국이 전 항목에 대해 완전 자유화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III. 운송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C/1 해상화물(용선, 항만비용, 어선관련 지불금 등 포함)></p> <p>-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외국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 필요(해운법 제26조의 2)</p> <p>- 국적선의 이용(해운산업육성법 제16조)</p> <p>● 선박을 이용하여 아래 수송화물(지정화물)을 운송하는 자는 대한민국 선박을 이용하여야 함. 다만 국제협약 또는 운송에 관한 협약에 위반되거나 운임이 인정수준(국적선의 입찰운임이 최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선선 이용 가능</p> <p>(지정화물 :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 제12조)</p> <p>• 수입화물 : 원유, 제철원료, 비료원료, 곡물류, 설탕류, 석유화학공업 원료, 액화가스류</p> <p>• 수출화물 : 철강제품</p> <p>• 이와 해운항만청장이 고시하는 화물</p>	<p>- 부분유보 : 본 유보는 특정물품 또는 특정항보에 대하여 국적선의 이용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용선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p>	<p>- 정기선 운항지역의 국적선 이용제도(웨이버제도)는 이미 95년 1월 1일 폐지</p> <p>- 지정화물제도</p> <p>● 비료원료, 곡물류, 철강제품 : 97년 1월 1일 자유화</p> <p>● 석탄류, 석유화학 공업 원료 : 2001년 1월 1일 자유화</p>
<p><C/2 내륙수로 화물운송(용선 포함)></p> <p>-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이 불가</p>	<p>- 전면 유보</p>	
<p><C/3 육로수송(여객 및 화물전세 포함)></p> <p>- 자동차 운수사업은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으로 외국인의 면허취득이 불가</p>	<p>- 전면 유보 (외국인 투자 제한)</p>	
<p><C/4 항공운송(여객 및 화물, 용선 포함)></p>	<p>- 유보 없음</p>	
<p><C/5 모든 해상운송 수단관련 항만용역(연료 및 물품공급, 유지, 수선, 승무원 비용 등 포함)></p>	<p>- 유보 없음</p>	
<p><C/6 선박수선></p>	<p>- 유보 없음</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III. 운송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터키 미국 (5개국)	<C1 해상 화물 운송(운선, 항만비율, 이설권된 지물금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 항만규제 및 수료안내 비용에 대해서만 유보 - 프랑스 : 58년 10월 27일 프랑스와 튀니지간의 해운협정 및 67년 7월 24일 프랑스와 알제리간의 해운협정과 관련 - 터키 : 본 항목 전면 유보 - 미국 : 보조금을 지급받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선박과 경쟁하는 외국선박의 운선, 조유, 운송 또는 대리인 중 개인으로서의 활동 및 미국선박의 권분 또는 영분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은 정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미국선박이 운선하는 경우 - 멕시코 : 적동지역 운송에 관련하여 멕시코기업이 직할한 유급운 운송을 지배권을 위하여 운송사건에서 개입하거나 운송사건에 개입할수 있음(2004년 1월 1일 유보종지)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터키 미국 멕시코 (8개국)	<C2 대륙수로 화물운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프랑스, 프랑스, 루에 항구간 화물운송에 대해 유보 - 독일 : 독일 동북부 또는 남부지역 항운 연결하는 한 지역의 대륙수로 항구간 운송 및 이 지역내 항구와 독일내 타 항구간 운송에 대해 유보 - 터키 : 전면 유보 - 네덜란드 : 선적지 및 하역지가 네덜란드 영토인 대륙운선선의 운송 및 자정에만 유보하여 1968년의 면 허위법이 적용되는 수로 운송은 제외 - 미국 : 미국내 운송을 소유하는 미국적 선박을 상부장관의 승인 없이 비미국선박이 운선하는 경우 - 멕시코 : 이적선 운항의 운선선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음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멕시코 등 총 21개 국가	<C3 육로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적수송에 대해서 국제여행객은 증선사건이나 화선사건에 것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가 유보 - 이적의 통관운송 : 11개국 - 비일관장 : 10개국 - 화물수송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동회, 화물의 배달 및 국제화물의 모집, 모집이 승인된 화물의 회송, 배달이 승인된 화물의 회송 및 국내운송에 있어서 유보 - 동회 : 핀란드, 북독일, 노르웨이, 노르웨이, 미국은 유보 없음 - 국제화물의 배달 : 모든 국가가 유보 - 국제화물의 모집 : 모든 국가가 유보 - 모집이 승인된 화물의 회송 : 모든 국가가 유보 - 배달이 승인된 화물의 회송 : 모든 국가가 유보 - 국내운송 : 모든 국가가 유보
멕시코	<C5 항만 용역>	- 모든 대륙수로 운송과 관련된 항만용역은 전면 유보
터키	<C6 선박수리>	- 해외에서의 트러블러(사태)의 교환은 유보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IV. 보험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D>1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OECD 자유화 리스트 : 부속지 1의 제1부 제1, 2, 3항)></p> <p>1. 타 회원국에서 지불되어야 할 사회보장 기여금 및 사회보험료와 타 회원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로 인해 그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부담은 자유임</p> <p>2. 송금이 관련된 보험이 관련회원국 중 한 나라에 의해서만 사회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다 자유로운 조치를 부여하는 규정이 적용됨</p> <p>3. 민간보험업자가 수행하는 사회보험 거래에 대해서는 부속지 1의 제III부 및 제IV부의 규정도 적용됨</p> <p>-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관련 자금은 외국환은행등의 인증을 요함(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p> <p>가.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재비용이나, 수출물품의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생산물 책임보험의 보험료</p> <p>나. 전수의 상호보험료</p> <p>- 상기 이외의 보험료와 이에 부대하는 비용의 지급은 외국환은행 분할 장의 인증 필요(규정 제6-11조 제2 제1호)</p>	<p>유보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거주자가 외국에 지불하여야 할 사회보장 기여금 및 사회보험료의 송금은 자유화되어 있어 이 부분은 전면 자유화되어 있는 상태임 	
<p><D>2 국제교역상품 관련보험></p> <p>-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업자와의 계약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락되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함(보험업법 제4조) • 수입직하(선박)보험 및 항공보험은 95년 4월 이후 자유화되어 있음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해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있는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제11조) •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음 : 보험종목에 관한 계약 •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계약 지속 • 보험사업자가 외국보험사업자와 계보합계가 체결 •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수출직하(선박)보험 계약 체결 • 기타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의 체결이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상세위 장점이 승인되는 경우 	<p>국제교역상품과 관련된다면 회원국의 보험사업자와 동 기업사 거주자국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보험업자간의 계약으로서,</p> <p>i) 그 외국보험업자의 본사에서 명료되는 것</p> <p>ii) 가입자의 거주자국 이외의 회원국에 소재하는 보험업자의 사업장에서 발표되는 것</p> <p>이 같은 계약의 이행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행사를 위한 송금은 유보조항임</p>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	금후의 계획
<p>● 수출업에 직접 수반되는 보험료 및 보험금의 송금은 허가 불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0조 제2호)</p> <p>-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보험업자와의 계약제한</p> <p>● 국내에서 보험사업 허가를 받고(보험업법 제5조), 국내사업장을 설치한(시행규칙 제9조) 경우 외국보험업자에게 별도제한 없음</p> <p>● 그러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외국에서 발효되는 경우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보험업자를 위한 보험대리에 해당되고, 보험대리는 (국내) 보험사업자만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보험업법 제2조 제4항) 이는 허용되지 않음</p> <p><D/3 생명보험></p> <p>- 생명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소재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제한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은 체결 가능(보험업법 제4조, 동시행령 제11조)</p> <p>-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는 인정되고 있음(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 제2호)</p> <p>- 외국환관리규정은 보험사업자에 의한 보험금·세보험금·보험료·세보험료,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경비용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의 인증사항(제6-11조 제1항 제6호), 기타 보험료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부립 장의 인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동 조 제2항 제1호)</p> <p>-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다음 지급보험료는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함(소득세법 제61조의 2)</p> <p>● 의료보험료</p> <p>●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으로서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p> <p><D/4 기타 모든 보험(적화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서비스불가리건)></p> <p>- 거주자와 외국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제한은 불가능함(보험업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p> <p>-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은 가능하며(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보험료의 송금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임(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p> <p>- 특별상 보험업자의 거주지 여부, 사업장 설치여부에 따라 보험료 공제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p>	<p>- (부속서 1의 제 1 부 제2항) 어떤 회원국내의 기업자와 그 기업자 거주지국에 사업장을 갖지 않는 외국보험업사간의, 단체보험을 제외하, 생명보험과 관련된 거래 및 송금은 당해 회원국의 그 보험업사 및 보험사업을 의도하는 제3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권위를 조건으로 자유라는 항목은 유보조항</p> <p>- (부속서 1의 제 1 부 제3항 a) 거주자의 비거주 보험업자에 대한 보험료 송금은 자유라는 항목은 유보조항</p> <p>- (부속서 1의 제 1 부 제4항) 지급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목적상 공제를 허용하는 회원국은 보험업자의 자국내 사업장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유보조항</p> <p>- (부속서 1의 제 1 부 제5항) 보험신청인 거주지국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음: 외국보험업자와의 거래 및 송금은 자유라는 항목은 유보조항</p>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 보험사업자의 보험금·재보험금·보험료·재보험료·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임(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항)</p> <p>- 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영수함에 있어서 그 대자를 자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허가, 인증을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제4호)</p> <p><D5 재보험 및 재세보험></p> <p>-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내의 보험사업자와 비거주자간에 외화표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의 체결은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101조 제6호)</p> <p>- 재보험 및 재세보험의 국경간 계약은 특정 보험물건에 대한 국내사 우선준자제도 및 해외보험요율 구득에 대한 제한이 있음</p> <p>- 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에 의해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제4호)</p> <p>- 부속서에서 회원국은 재보험자의 은행계정 개설을 승인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규정(제10-20조)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정인 대외계정의 개설이 허용되므로 외국 보험사업자도 외화예금 대외계정 설치 가능</p> <p>- 국내 보험회사는 1억 US달러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외화예금생성을 개설할 수 있음(규정 제10-35조의 11)</p> <p>- 재보험에 관한 각종 규정은 재세보험에도 적용됨</p> <p><D6 외국보험업자의 직접 및 대리인의 사무소 설치 및 영업조건></p> <p>(일반사항)</p> <p>- 외국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영업기금을 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 : 30억 원 이상 •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 : 5억 원 이상 •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의 보증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1억 원 이상 <p>(승인)</p> <p>-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와 외국 보험사업자에 한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청서가 하자 없이 작성되어 제출되는 경우 심사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대리점 설치 허가에는 원칙적으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p>- (부속서 1의 제1부 제7항) 지급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목적상 공제허용하는 회원국은 보험업자의 자국내 사업장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유보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보험시장 개방시 국내 보험산업의 일정기간 보호필요성 등에 따라 내국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유보가 요망 <p>- (부속서 1의 제11부 제1항) 출세 보험업자가 보유하는 보증예탁금의 설치 및 조항과 같은 재보험 관련계정은 재보험협약 또는 약정의 규정에 따라 원보험 계약국가의 통화, 출세보험업자 거주지국 통화 또는 수재(受取)보험업자 거주지국 통화로 설정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본 유보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 →항공보험 이외의 보험물건은 국내보험회사에 우선 출세의부가 있으며, 해외로부터 보험요율 구득은 내한재보험(주)과 동의하여야 함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세화
<p>(내리임)</p> <p>외국생명보험 사업자의 국내지점 대표자(즉 보험·금융·증권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상근하여야 함)외국생명보험 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허가 기준(87년 6월 15일)</p> <p>(세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보험업법 제6조의 2, 시행령 제12조의 2) ● 보험사업자가 영업개시 전에 보험감독원에 예탁 ● 예탁금액 : 수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30% 이상 50% 이하 ● 반환 ● 책임준비금은 충실히 적립하고, 이익금 발생시 ● 해산 또는 사업폐지시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외국 보험사업자는 영업기금 중에서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금액은 계약자 보호예탁금으로 보험감독원에 위탁하고 납입하여야 함(외국생명(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p>(투자 및 예치의 규제)</p> <p>대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동일한 자산운용 준칙을 적용하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외국보험회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부동산 취득(국외의 국민·토지권원 허가 및 신고 의무지리 규정) ● 보험회사 재산운용 준칙 ● 재산운용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종사원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 초과는 불가 ● 주식소유 : 30% ● 부동산 소유 : 15%(임대용 10%, 공인사업용 5%) ● 현금 및 예금(금융(생명)보험회사 10%, 손해보험회사 20%) ● 외화증권 총액의 투자 : 2% ● 중소기업 발행 비공정수익 조율 : 0.2% (유지 50억 원 초과 금액) ● 기술권 증대, 금에 해당하면 책임준비금 등액 정액 또는 최초 예탁금은 조성방법, 시기 그리고 운용수체가 상이하므로 추자가 전자에 포함될 이치가 없음(우리제도 변동예탁금은 없음) ● 외국 보험사업자는 국내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적당할 책임준비금 및 배상위험준비(보험업법 제98조)에 상응하는 제철을 국내에 보유하여야 함(보험업법 제83조) ● 재정경제원 장관의 일제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은행장의 인증을 필요로 함(외국환관리규정 제14.30조 제1항) ● 보험사업자의 보험금·해보임금·보유금·재보유금·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지급은 외국 원은행장의 인증을 필요로 함(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 ● 마가수직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외국에 송금할 경우에는 지정은행장의 인증 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14.30조 제1항) 	<p>(부속시 1의 제III부 제5항 b) 제5항에 대한 유보는 소요예탁금의 전액 원화로 현금납입되어야 함은 의미없</p> <p>(부속시 1의 제III부 제9항) 제9항의 유보는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적용됨</p> <p>(부속시 1의 제III부 제15항) 회원국은 기술권 증대금 및 변동예탁금 중 적어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다국적국의 보험업자가 자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를 이용하라는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유보조항임</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IV. 보험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현황
호주	D/5 제II부 D/6 제III부 2절 a)	
오스트리아	D/3 제1부 4절 D/4 제1부 7절	- 유보조건은 사고와 질병관련 보험계약에만 적용됨
벨기에	D/3 제1부 4절	
덴마크	D/3 제1부 4절	
핀란드	D/6 제III부 2절 a)	- 유보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험에만 적용됨
프랑스	D/2 제1부 1절	- 유보조건은 단지 도로수송 위험에만 적용됨 또한 EU 국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D/3 제1부 4절	- 2절의 유보사항은 보험사업자의 계약이 그 국가의 법에서만 집행되고 선정된 거주국 이외의 회원국에 수혜자가 거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D/4 제1부 5절	- 보장되는 위험은 선정인의 거주국 이외의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한 경우와 선정인의 거주국 이외 다른 회원국에 등록된 재산이나 위 내용에 관련된 채무 등에는 유보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D/6 제III부 2절 a,c,d,f,g)	- EU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독일	D/2 제1부 1절 D/3 제1부 4절 D/4 제1부 7절	- EU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D/2 제1부 1절 D/3 제1부 2, 3절 a) D/4 제1부 5, 8절	- 5절에 대한 유보조건은 국제적인 수송, 선박, 항공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8절에 대한 유보조건은 보험자의 채무에 의한 손해배상 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교통사고 보증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제외됨
	D/4 제1부 5, 6절 D/6 제1부 11, 12, 17절	
아이슬란드	D/3 제1부 2, 4절 D/4 제1부 5, 7절 D/6 제III부 2절 a)	- 5절의 유보조건은 1991년 7월의 14291 법령에 명시된 보험등급과 양상에 관련된 EU 회원국의 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탈리아	D/2 제1부 1절 D/3 제1부 2, 3절a), 4절	- CIF 수출에만 적용되며 EU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2항에 대한 유보조건은 수입자 및 피보험자가 가입지 거주국 이외의 회원국에 거주하고, 보험업자의 책임이 가입지 거주국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D/4 제1부 5, 7절	제1항 a) 및 제4항의 유보는 보험료 납부자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시에는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니었으나, 그 이후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됨 이 경우 보험료의 총액은 다음의 경우에만 자유임 i) 거주변경이 계약체결 후 3년 이상 경과 후 이루어지고, ii) 상기 3년 간의 보험료가 완전히 납부된 경우
	D/5 제II부	- 5절의 유보조건은 보장되는 위험이 선정인의 거주국 이외의 다른 가입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계된 경우 또는 선정인의 거주국 이외의 다른 가입주에 임지하거나 등록된 부동산의 경우, 그리고 위와 같은 개인이나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D/6 제III부 2절 a)	- 생명보험의 무보태성인 위험의 일부를 유럽보험원에 영도한 의무가 있는 범위까지만 적용, 이 비율은 관계회사가 영입확보권 영위해후 가산에 따라 30%에서 10%까지 변화됨 - EU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가명	유보항목	유보현황
일본	D/3 제1부 2, 3절	- 제2절에 대한 유보는: 부모위험이 타 회원국 거주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D/4 제1부 5, 7절	- 제5절에 대한 유보는: 부모위험이 가입자 거주지국 이외의 회원국 거주자, 가입자 거주지국 이외의 회원국에 소재 또는 등록된 재산 또는 이같은 거주자 또는 재산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D/5 제11부	-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의무적 제3자 책임위험의 60%의 재보험 및 재재보험에만 적용됨
룩셈부르크	D/3 제1부 2, 3절	
	D/4 제1부 7절	
	D/2 제1부 1절 D/3 제1부 2절 D/4 제1부 5, 6절 D/6 제III, IV부	- 멕시코 거주자가 국경을 넘어서 물품을 이동할 때 차하는 위험에 적용됨 - 해외거주자와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5절의 유보조건은 다음 계약에 적용됨
네덜란드	D/3 제1부 2절	- 본 유보는: 네덜란드내에서의 영입이 승인된 대외국 보험업자만이 체결할 수 있는 의무적 연금보험계약 및 일부 임의적 연금계약에 적용됨. 본 유보는: 수익자의 거주지가 가입자 거주지국 이외의 회원국이고, 보험업자의 책임이 가입자 거주지국 국외에서만 이행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D/4 제1부 5절	- 본 유보는: 네덜란드내에서의 영입이 승인된 대외국 보험업자만이 체결할 수 있는 일부 불구자 보험계약에 적용됨. 본 유보는: 가입자 거주지국 이외의 회원국 거주자, 가입자 거주지국 이외의 회원국에 소재 또는 등록된 재산, 또는 이같은 거주자 또는 재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뉴질랜드	D/6 제III부 2절	
노르웨이	D/3 제1부 2절	
	D/6 제III부	- 제2절에 대한 유보는: 수익자가 가입자 거주지국 이외의 회원국에 거주하고, 보험업자의 책임이 가입자 거주지국 국외에서만 이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2항에 대한 유보는: 저축·사본 중식의 요소가 있어 순수한 위험보장이 아닌 개인적 보험계약만을 대상으로 함
포르투갈	D/2 제1부 1절 D/3 제1부 2, 3a), 4절 D/4 제1부 5, 7절 D/6 제III부 2절 a)	- 아래와 같은 행위를 참가함 a) 회원국에게 수출에 대해 C.I.F.계약은, 수입에 대해 F.O.B.계약을 상요 b) 상업회사를 부로서 라이선스의 만행이나 외환의 증여 c) 외국통화를 뺀: 보험 금액
	D/3 제1부 2, 3a), 4절	- 제3절 a)에 대한 유보는: 보험료 납부자가 생명보험 계약체결시에는: 포르투갈 거주자가 아니었다. 그 이후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함. 이때 보험료 송금은 다음의 경우에만 자유임 i) 거주지 변경이 당해 계약체결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ii) 동 3년 간의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D/4 제1부 5, 7절	- 제5절에 대한 유보는: 부모위험이 가입자 거주지국 이외의 회원국 거주자, 가입자 거주지국 이외의 회원국에 소재 또는 등록된 재산, 또는 이같은 거주자 또는 재산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적용 안됨
스웨덴	D/3 제1부 4절	- 본 유보는: 국세위원회(National Tax Board)가 부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만 적용됨
스위스	D/2 제1부 1절 b)	
	D/3 제1부 2절	
	D/4 제1부 5절	
터키	D/3 제1부 4절 D/4 제1부 5, 7절	- 제5항에 대한 유보는: 항공기 및 선박의 구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획득된 신용의 상환시까지 당해 신용한도내에서 해외에서 체결될 수 있는: 항공기 및 선박의 동채보험, 해외여행자가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는: 자동차 및 개인상해보험 및 해손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D/5 제11부 1절	
영국	D/3 제1부 4절	- 본 유보는: 퇴직연금계약 및 퇴직을 위한 유사한 형태의 공급에만 적용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V. 은행 및 금융서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E/1 지불서비스 ></p> <p>1.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영업에 의한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마다 은행감독원상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신용카드 발행업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등록하여야 함 <p>2. 외국금융기관의 해외영업에 의한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에서 제공하는 지불서비스, 지불수단, 자금이체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됨. 인가를 받을 경우 외국은행이라는 이유로 지불서비스 등에 별도의 제한은 없음 - 거주자가 인정된 바에 따라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동 범위 내에서 지분,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인정범위(개인 : 3만 US달러, 법인 : 1백만 US달러, 기관투자가 : 1억 US달러)내에서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p><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인수업무, 중개-매매 서비스, 금융시장 정보, 의사교환 및 실행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대리점 신설은 금융통화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및 투자서비스, 인수업무, 중개-매매 서비스, 금융시장 정보, 의사교환 및 실행제도에 대한 유보는 다음 경우에 적용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서비스 제공 2. 인정된 자본거래에 직접 수반되지 않은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서비스 이용 	
<p><E/3. 결제, 청산과 관리 및 예치서비스 : 증권, 공동투자증권, 기타 양도성 증서 및 비증권관리, 유동성 자금 및 외환관련></p> <p>- 제한제도는 E/2와 동일함</p>	<p>- 유보적용 대상은 E/2와 동일함</p>	
<p><E/4 자산관리, 현금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인금기금 관리, 자산보유, 신탁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가 다음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필요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업무와 관련된 업무 •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p>- 유보적용 대상은 E/2와 동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은행의 신용카드 취급 허용(외국은행의 신용카드 업무에 대해서는 95년 7월에 타결된 WTO 금융협상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음)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금융의 계획
<p><E75 자본 및 대리서비스, 신용조회 분석, 투자연구 및 자금(주식평가기관 포함), 합병, 취득, 재권, 경영권 인수, 벤처 캐피탈></p> <p>- 투자자문업은 국내계통 투자자문회사에 10% 이내 (예외사실 5% 이내)로 출자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자가 허용되므로 비거주자의 투자자문업 서비스 제공도 제한됨</p> <p>신용조사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고, 신용평가업에 대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인자본 참여가 허용되므로 비거주자의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도 제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자가 신용평가기관인 것 • 외국인출자율은 10%(1인당 5%) 이내인 것 <p>- 합병, 취득, 재권, 경영권 인수 등의 업무는 주로 증권회사가 수행하고 증권회사가 이같은 증권업 이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함</p> <p>- 벤처 캐피탈회사(투자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허용되어 있으므로 비거주자의 투자회사 등의 설치(허가대상)도 통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p> <p>-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감독위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대리점 설치도 동일 절차 필요</p> <p>-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업종별로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영업은 위한 자문·영업소의 설치에 영업의 종류별로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p> <p>- 그러나 비은행, 비증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이 제한되고 있음</p>	<p>- E75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자에 의해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됨</p>	<p>- 투자신탁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개방 확대 검토(증권사업 개편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외국인 출자 비율 49%까지 허용(95년 하반기) • 2단계 : 한도 상향 조정, 합작사 및 지분취득 허용(96년 하반기) • 투자신탁서비스 참여제한 폐지, 자본회사 합자, 현지법인 설립(97년 하반기) • 지분회사 지분참여 제한해제(98년 하반기) • 외국인 국내수익증권 투자 허용 <p>- 97년 1월 1일 신용조사업에 대한 개방 확대 예정</p>

현행 제한제도	자유화 정도(유보현황)	남후의 제취
<p><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비거주 투자자의 직접, 영업소 등의 설치 및 영업>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참조)</p> <p>부속서 A의 부속서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비거주 투자자의 직접, 영업소 등의 설치 및 영업소장 <p>- 일반사항</p> <p>1. 은행·금융서비스(증권거래 포함)에 대한 법규 및 행정행위는 외국기업의 직접·영업소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대우를 보장하여야 함</p> <p>2. 은행 및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의 설립 승인</p> <p>3. 대표</p> <p>4. 대리사무소 설치</p> <p>5. 자가고용 공개인</p> <p>6. 협회 또는 규제단체의 회원가입</p> <p>7. 금융제도의 건전성 및 애급사 보호</p> <p>8. 설립 재정요건</p> <p>b) 모든 종류의 재정요건은 영업지역의 통화자금으로 충족될 수 있음</p>	<p>-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비거주 투자자의 직접·영업소 등의 설치 및 영업소장은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보는 미은행, 미증권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됨</p> <p>- 유보사항은 없으나 건립승인 기준에 관한 조건의 이차: 있음</p> <p>- 외국증권회사의 사무소·직접 설치 허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사무소(국내영업 불가) • 국내증권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성 • 자본금이 5백억 원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인 것 • 경영의 안정성·건전성(10년 이상 증권업 계속 영위, 최근 3년 간 본국에서 영업정지, 벌금 등 처벌사실이 없을 것) • 국내지점(영업 가능) • 국내사무소 설치 후 2년 이상 경과 • 경영의 안정성·건전성(상기와 동일) • 당해국에서 국내증권회사의 증권업 영위 가능할 것 <p>- 유보 없음</p> <p>- 비거주 금융기관의 대리사무소 설립은 인가사항이므로 유보가 적용됨</p>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p>- b항을 제외하고는 유보사항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 금융기관 지점의 자본금은 그 본점이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국내통화자금이어야 함 	<p>- 제31개(96-9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에 대한 자본권이 허용 • 외국증권사에 대한 복수지점 설치 허용 • 외국증권사에 대한 강제적 필요성 심사 ENT 전례 • 외국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사무소 전차주의(前住主義) 폐지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V. 은행 및 금융서비스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호주	E1 지분서비스 ※E7 은행업과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사항은 비거주자의 지분서비스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4a, 5항 • 제 4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실 설립에 관한 허가와 관련됨
오스트리아	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오스트리아내 보증 및 중개인 거래인 서비스에 적용됨
	E3 결제, 청산, 보관 및 예치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오스트리아내 보관서비스에 대해 적용됨
오스트리아	E4 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오스트리아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 적용됨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항
벨기에	E3 결제, 청산, 보관 및 예치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벨기에내 보관서비스에 대해 적용됨
	E4 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오스트리아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 적용됨
	E5 자본과 대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벨기에내 투자자문 서비스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4a항 - 비거주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설립은 허가 필요. 신용제도(89/646/EU)에 대한 EU의 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때 EU 회원국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허가 불필요
벨기에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캐나다내 지분서비스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4a항 - 제4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실 설립에 관한 허가와 관련됨
	E1 지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캐나다내 지분서비스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4a항 - 제4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실 설립에 관한 허가와 관련됨
캐나다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캐나다내 지분서비스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4a항 - 제4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실 설립에 관한 허가와 관련됨
	E1 지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캐나다내 지분서비스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4a항 - 제4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실 설립에 관한 허가와 관련됨
덴마크	E3 결제, 청산, 보관 및 예치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덴마크 증권센터에 상장된 증권에 관계된 관리 및 예치서비스에 대한 접근에만 적용됨. 그러한 접근은 덴마크내에 설립된 공인기관만 가능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항 - 비거주 금융기관은 덴마크 내국법인 자회사를 통해서만 코펜하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
	E7 은행업과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핀란드내 중개인-대리인 서비스에 적용됨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핀란드	E2 은행과 투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핀란드내 중개인-대리인 서비스에 적용됨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E4 자산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거주자의 핀란드내 자산관리 서비스 2. 비거주자의 핀란드내 공동투자자금의 운용 3. 위탁연금기금의 관리
	E5 자본과 대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핀란드내 투자자문 서비스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 1, 4a, 5, 6항 - 제1항에 대한 유보는 은행업에 종사하는 외국여신기관의 은행지점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4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설립에 관한 허가와 관련됨 - 제5항에 대한 유보는 다음 경우에 적용됨
핀란드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회원 제한이라는 법이 허용하는 규칙이나 협회규정을 둔 법인 2. 화생금융상품 거래에 시장조성자, 중개업자로서의 활동은 핀란드-국민에게만 한정됨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항에 대한 유보는 외국인회원 제한이라는 법이 허용하는 규칙이나 협회규정을 둔 법인에 적용됨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프랑스	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프랑스내 채무증서의 발급관리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 본 유보는 프랑스와 표시 채무증서 발급관리에만 적용되며, 유보포장 발행의 경우에는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 또는 연합관리나 신디케이트 발행 참여에는 적용되지 않음
독일	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 독일내 마르크화 표시 증권의 비거주자에 의한 발행의 간사관리에만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항 - 본 유보는 자본투자회사의 투자기금 예탁은행 역할로서 EU 이외에 주사무소를 갖고 있는 비거주자 금융기관·지점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에만 적용됨
그리스	E1 지분서비스 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E3 건설, 청산, 보관 및 예치서비스 E4 자산관리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에 의한 그리스내 자본서비스에 적용됨 • 본 유보는 비거주자에 의한 그리스내의 보증 및 중개인-대리인 서비스에 적용됨 • 본 유보는 그리스 국내발행 증권에 대한 비거주자의 이사와 원상지불권리에 대해 적용됨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그리스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4a, 8b항 • 제4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설립에 관한 허가 및 관련법, 제8b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 금융기관의 지점설립시 요구되는 투자액이 해외로부터의 외환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관련됨
아이슬란드	E1 지분서비스 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E3 건설, 청산, 보관 및 예치서비스 E4 자산관리 E5 자본 및 대리서비스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거주자가 아이슬란드 국내에서 현금기금과 신용카드 모험에 가입할 때 적용됨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 1. 비거주자의 아이슬란드내 주식공모의 보증이나 중개인-대리인 서비스의 제공 2. 비거주자의 해외 중개인-대리인 서비스에 대한 국내 거주자의 접근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해외 예금서비스에 대한 국내 거주자의 접근에 적용됨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아이슬란드내 현금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인금기금 관리, 신탁서비스에 적용됨 • 본 유보는 신용조회와 분석을 위해 아이슬란드에서 수집된 정보를 해외 비거주자가 컴퓨터 처리 및 저장시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5항 • 제4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설립에 관한 허가 및 관련법, 제5항의 유보는 은행업과 금융서비스 활동상 자연중개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적용됨
아일랜드	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E4 자산관리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 1. 아일랜드내 비거주자의 중개인-대리인 서비스(특정거주자 기관투자자와 금융서비스 회사 제외) 2. 비거주자의 해외 중개인-대리인 서비스에 대한 거주자의 접근(특정거주자 기관투자자와 금융서비스 회사 제외)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 1. 비거주자의 아일랜드내 신용서비스 2. 비거주자의 해외 신용서비스에 대한 거주자의 접근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 유보조건 없음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뉴질랜드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직접 대리권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항 - 비거주자 금융기관에 의한 직접의 설립은 해외주 지위원의 OIC의 허가
	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 적용됨 1. 비거주자의 외국에 대해 동등한 증권발행의 주권자권리 2. 비거주자의 외국에 대해 공개인-대리인 서비스 3. 비거주자의 해외 공개인-대리인 서비스에 대한 국내거주 자의 접근
호주	E3 결제, 청산, 보관 및 예치서 서비스	• 본 유보는 외국증권에 관해 비거주자의 해외에 대한 서비스 에 대한 국내거주자의 접근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항
	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 1. 비거주자의 외국증권 증권발행의 주권자 또는 공동권리 2. 비거주자의 외국증권에 공개인-대리인 서비스(증권투자자 권의) 3. 비거주자의 해외 공개인-대리인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기관투자자 제외)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 1. 비거주자에 의한 외국증권에 현금, 포트폴리오, 인출가능 한리 및 전략서비스 2. 비거주자의 해외 전략서비스에 대한 국내거주자의 접근
프랑스	E3 자산관리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2c항 제1항에 대한 유보는 외국증권에 직접설치되는 제3부의 허 가가 필요하며, 모회사본, 기업조직 세무상, 인출가능 권리, 공개거래 서비스는 외국증권내에서 법인설립이 요구됨 - 제2c항의 유보는 비EU 회원국 금융기관에 의해 적용된 때만 해당됨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 거주 투자자의 직접 대리권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2c항 제1항에 대한 유보는 외국증권에 직접설치되는 제3부의 허 가가 필요하며, 모회사본, 기업조직 세무상, 인출가능 권리, 공개거래 서비스는 외국증권내에서 법인설립이 요구됨 - 제2c항의 유보는 비EU 회원국 금융기관에 의해 적용된 때만 해당됨
스위스	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 1. 스위스내에서의 증권, 스위스 프랑 표시 면허 1년 이상 무개성서 발행에 대한 비거주자 보증인의 주권자권리 한도 2. 비거주자의 스위스내 공동투자증권 마케팅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4a항 - 비거주자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설립은 허가사항임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 거주 투자자의 직접 대리권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4a항 제1항에 대한 유보는 외국증권에 직접설치되는 제3부의 허 가가 필요하며, 모회사본, 기업조직 세무상, 인출가능 권리, 공개거래 서비스는 외국증권내에서 법인설립이 요구됨 - 제2c항의 유보는 비EU 회원국 금융기관에 의해 적용된 때만 해당됨
터키	E1 지불서비스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터키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결제 에 적용됨
	E2 은행 및 투자서비스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터키내 보증과 공개거래 서비스에 적용됨
	E3 결제, 청산, 보관 및 예치서 서비스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터키내 포트폴리오와 인출권리 서 비스에 적용됨
	E4 자산관리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터키내 자문, 대리서비스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4a, 8a, 8b, 8c항 - 제4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자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한 허가와 관련됨 - 제8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자 리스회사의 최소 직접설 립을 위한 2백만 US달러 상당의 최소 자본요구량에 관한 것임 - 제8b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자 은행, 리스회사, 나 금융 기관의 직접설립을 위한 자본요구량은 외국으로부터 들어 온 외환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임 - 제8c항에 대한 유보는 최초 직접 후 각 추가적인 직접설 립을 위한 최소 자본요구량이 비거주자 리스회사에 대해 2백만 US달러 상당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관련된 것임
터키	E5 자문 및 대리서비스	• 본 유보는 비거주자의 터키내 자문, 대리서비스에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4a, 8a, 8b, 8c항 - 제4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자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한 허가와 관련됨 - 제8a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자 리스회사의 최소 직접설 립을 위한 2백만 US달러 상당의 최소 자본요구량에 관한 것임 - 제8b항에 대한 유보는 비거주자 은행, 리스회사, 나 금융 기관의 직접설립을 위한 자본요구량은 외국으로부터 들어 온 외환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임 - 제8c항에 대한 유보는 최초 직접 후 각 추가적인 직접설 립을 위한 최소 자본요구량이 비거주자 리스회사에 대해 2백만 US달러 상당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관련된 것임
	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 거주 투자자의 직접 대리권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4a, 8a, 8b, 8c항 제1항에 대한 유보는 외국증권에 직접설치되는 제3부의 허 가가 필요하며, 모회사본, 기업조직 세무상, 인출가능 권리, 공개거래 서비스는 외국증권내에서 법인설립이 요구됨 - 제2c항의 유보는 비EU 회원국 금융기관에 의해 적용된 때만 해당됨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영국	<p>E/2 은행 및 투자서비스</p> <p>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 적용됨 1. 비거주자의 영국내 파운드화 표시 증권발행의 주간사관리 2. 비거주자의 영국내 우량 정부채권시장에서의 중개서비스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절 • 증권거래, 우량 정부채권시장에서의 중개서비스는 영국내에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함
미국	<p>E/3 결제, 청산, 보관 및 예치서비스</p> <p>E/4 자산관리</p> <p>E/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1940년 '투자회사법'하의 적용규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거주자에 의한 상장투자회사에 대한 보관서비스에만 적용됨 • 본 유보는 비거주자 수탁자에 의한 신탁서비스에만 적용됨 • 부속서 A의 부속서 II 제1, 2c, 4a, 6항 - 제1항에 대한 유보는 10만 US달러 미만 세정에 대한 외국 상업은행의 지사 및 대리점의 수익 예금활동에만 적용됨 - 제2c항에 대한 유보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증권회사의 승인에 관해서만 적용됨 - 제4a항에 대한 유보는 미국내 외국은행의 대표 사무소 설립은 사전허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관련됨 - 제6항에 대한 유보는 미국에서 설립된 자회사로서 뉴욕 증권거래소, 미국 증권거래소 회원에만 적용됨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VI. 자본소득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F. 자본소득</p> <p>F/1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윤 F/2 배당금 및 이익분배금 F/3 이자(사채, 담보 대출이자 포함) F/4 임대료</p> <p>- 자본취득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된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지 않음</p> <p><제한제도></p> <p>- 영업수익의 내외송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정은행장의 인증 필요 (외국환관리규정 제14-30조) - 배당금 등의 내외송금의 보정 (외사도위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1.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2.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 3. 차관계약에 의한 원리금 및 수수료 4. 기술로임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 송금 당시의 인가, 신고수리 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송금이 보장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내외송금은 외국환은행장의 정당성여부 인가 또는 신고수리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 <p>외환관리규정에 의한 배당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거래에 따른 이윤, 이자, 이익배당금, 분배금, 임차료 등 자본소득과 이에 부대되는 비용의 지급은 자정은행장의 인증 필요(제6-13조 제1항 제1호) • 단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통화표시 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등의 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동 조 제2항 제2호) • 또한 외국환관리법(제21조)이 인정하지 않음: 자본거래에 의한 이윤, 이자, 이익배당금 및 분배금 등 자본소득의 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동 조 제2항 제4호, 제5호) <p>외국환관리법이 인정하지 않음: 자본소득 지급의 한국은행 총재 허가는 분량 비교에 따라 유보가 불필요하나, 상속증권, 비거주자 취득 내국통화표시 증권의 배당금 등 지급에 대해서는 유보 필요</p>	<p>F/1 유보 없음</p> <p>F/2 배당금 및 이익분배금</p> <p>-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증권 2.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통화표시 증권 (인정된 외국인 증권투자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p>F/3 이자(사채, 담보대출이자 포함)</p> <p>- 본 유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증권 2.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통화표시 증권 (인정된 외국인 증권투자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p>F/4 유보 없음</p>	<p>- F/2 및 F/3의 유보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대상임에 기인하나, 이는 관련 증권의 취득이 자유화되어 있음에 비추어 사실 확인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인증' 또는 '신고'로 변경 필요</p> <p>→ 변경되면 유보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제도개혁소위안에는 제2년(96·97년)에서 자유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경제원의 최종 외환제도 개혁안에는 언급이 없음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 유보국가 없음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VII. 여행 및 관광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G. 여행 및 관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항은 국제여행 및 어종·오리·휴인·스포츠·사업·진지방문·사실단·회의참석 또는 건강·교육·종교 등과 같은 이면목적 이외의 해외체류에 적용됨 회원국은 해외관광 또는 기타의 해외여행을 위한 자국 거주자의 지출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음. 부속서 IV의 규정에 따라 그 같은 지출에 따른 징산을 위한 여행자 및 그를 대신하는 자에 의한 송금 및 현금카드·크레디트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음 모든 부속서 IV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의 국내외 화폐의 취득·반출 및 반입과 여행자수표의 해외사용은 자동적으로 승인되며, 추가적인 여행자수표 또는 외국화폐는 증빙서류의 제출로 허용됨. 끝으로 부속서 IV에 의해 여행자의 외국환거래가 허용됨 <p><제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여행경비 한도(외국환관리규정 제6-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운임 : 왕복운임과 3천 US달러 이내의 추가운임 기본경비 : 1만 US달러 이내. 다만 20세 미만의 해외여행자는 3천 US달러 이내 기타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 수술, 해외진찰 등 의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 교육경비, 치료비 등으로서 주정부 장관, 한국부역협회가 추천하는 금액 외국에서의 치료비, 교육관련 경비 등 신용카드에 의한 추가경비 해외체제비 한도(규정 제6-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복운임 기본경비 : 3천 US달러 이내 현지정착비 : 2만 US달러 이내 체재비 : 월 3천 US달러 이내, 가족동반시 1인당 5백 US달러 추가 교육관련 경비 : 등록금 또는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치료비, 신용카드에 의한 추가경비 ●기타 해외체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복운임 기본경비 : 1만 US달러 이내 현지정착비 : 5만 US달러 이내 체재비 : 월 1만 US달러 이내, 가족 1인당 5백 US달러 추가 기타 경비(치료비, 교육 관련경비 등) 신용카드에 의한 추가경비 	<p>G. 여행 및 관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유보는 여행 또는 해외체제의 목적 및 기간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정해진 경비 한도에 기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화 계획 여행경비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 : 한도확대 3단계 : 자유화 신용카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사후관리 완화 2단계 : 법인카드의 사후관리 3단계 : 개인카드의 사후관리 폐지 →해외여행 목적의 신용카드 사용 완전 자유화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급후의 계획
<p>- 신용카드에 의한 추가결제 지급(규정 제6-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제6-19조 및 제6-20조에 의한 여행결제 및 여객운임, 숙박비, 현지교통비, 통신비, 저류비 등 국제 여행 또는 체재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신용카드로 지급 가능 모든 해외여행 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음 <p><규약내용></p> <p>- 부속서 A의 부속서 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권 및 여행사수표의 국제적 이동, 여행사에 의한 지출 수단 교환 및 원금카드 및 크레디트카드의 해외사용 <p>1. 국내은행권 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거주여행자가 어떤 회원국에 입국할 때 적어도 1,250 개산단위에 상당하는 당해 회원국 은행권의 반입은 자동 허용됨 거주자국으로 귀국하는 거주여행자는 출발시 반출하였던 금액 또는 해외결제준 합법적으로 취득한 금액만큼의 자국 반입은 자동 허용됨 <p><제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 US달러 이내의 대국 또는 외국통화를 지급수단이 아닌 화폐수집용 등으로 수송입항: 경우에는: 외국원은행장의 인증필을 요한다(규정 제8-2.3) 이는 여행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나머지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규정 제8-4.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외지점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지수표 이외의 3백만 원을 초과하는 대국지급수단은 수송하는 경우(제4호) 비거주자에 대한 유보 불필요 <p><규약내용></p> <p>2. 국내은행권의 반출</p> <p>어떤 회원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여행자는 해외 1인당 적어도 150 개산단위에 상당하는 당해 회원국의 은행권의 반출은 자동 허용됨. 본 반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도 요청받지 않음</p> <p><제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한 국내은행권의 수송(규정 제8-4.3) 거주자가 해외여행 경비로 대국지급수단을 수송하는 경우로서 해외결제 등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제3호) 해외여행 경비가 150 개산단위(Unit of Accounts) 초과하므로 유보 불필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원화표시 여행사수표 이외의 대국지급수단은 3백만 원을 초과하여 수송하는 경우(제5호) 유보 불필요 	<p>- 부속서 A의 부속서 IV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유보는 거주자에 의한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국내은행권의 수입에 적용됨 <p>- 유보 없음</p>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 data-bbox="368 546 453 568"><규약내용></p> <p data-bbox="368 600 635 622">3. 여행자수표 및 외국은행권의 반입</p> <p data-bbox="368 654 847 790">•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어떤 회원국에 입국할 때에 어느 나라 통화표시인자에 불구하고 외국은행권 및 여행자수표의 반입은 자유 허용됨. 본 규정은 당해 회원국의 당국이 아래 제5당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여행자수표 및 외국은행권을 구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 의무를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p> <p data-bbox="368 822 453 844"><제한제도></p> <p data-bbox="368 875 798 929">- 다음의 경우에는 관한세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필요 (규정 제5-2조, 제5-6조)</p> <ul data-bbox="368 936 847 1070"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1만 US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자금 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4만 US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자금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p data-bbox="368 1041 831 1064">→당국의무는 휴대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 (유보 불필요)</p> <p data-bbox="368 1102 453 1124"><규약내용></p> <p data-bbox="368 1155 635 1178">4. 여행자수표 및 외국은행권의 반출</p> <p data-bbox="368 1209 443 1232">a) 거주자</p> <p data-bbox="368 1238 847 1485">- 어떤 회원국을 출국하는 거주여행자는 매회 1인당 적어도 1,250 제선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행자 임의의 비율로 여행자수표(표시통화 불문) 및 외국은행권으로 취득하고 반출하는 것이 자유 허용됨. 본 규정 및 반출과 관련하여 어떤 압중도 요청받지 않음. 본 규정에 의해 외환중개인은 자국의 규제범위에서 자유롭게 외국은행권을 취득하고, 여행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본 규정은 동 회원국 당국이 여행자에게 직접 또는 외환중개인을 통해 여행자수표 또는 외국은행권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p> <p data-bbox="368 1516 453 1538"><제한제도></p> <p data-bbox="368 1570 847 1653">- 해외여행 경비: 기본경비 한도 1만 US달러(20세 미만인 자는 3천 US달러)이므로(규정 제6-19조) 1,250UA(=1,750 US달러)까지만 반출을 요구하는 본 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p> <p data-bbox="368 1684 847 1767">- 또한 해외여행 경비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기본경비만을 지급하고자 한 경우에는 인증이 불필요하므로 (규정 제6-22조) 전자상 제한도 없음</p>	<p data-bbox="868 875 952 898">- 유보 없음</p> <p data-bbox="868 1684 952 1706">- 유보 없음</p>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b. 비거주자</p> <p>- 어떤 회원국을 출국하는 비거주 여행자는 당초 반입한 금액 또는 세계 중 합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을 한도로 여행지수표(표시통화 불문) 및 외국 은행권을 반출하는 것이 자동 허용됨</p> <p><제한제도></p> <p>- 비거주자 입국시 허가가 면제되거나 허가를 받아 휴대수입한 금액과 당해 제재기간중 제5-6(비거주자의 국내취득 금액의 등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방법으로 취득한 금액을 초과한 내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규정 제8-4조, 제2호)</p> <p>• 타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허가 불필요</p> <p>→ 반입금액 및 합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수준에 제한이 없음</p> <p><규약내용></p>	<p>- 유보 없음</p>	
<p>5. 지불수단의 교환 : 비거주자</p> <p>- 회원국 통화로의 교환</p> <p>- 비거주 여행자는 다음의 것들을 어느 타 회원국 통화로 표시되는 지불수단으로도 교환이 허용됨</p> <p>1. 합법적으로 반입된 것이 증명될 수 있는 타 회원국 통화로 표시된 지불수단</p> <p>2. 타 회원국 통화로 표시된 지불수단을 대가로 제재중 취득한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국내은행권</p> <p>- 본 규정에 의하여 외환중개인은 각국의 규제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문제의 지불수단을 교환할 수 있음. 본 규정은 동 회원국 당국이 여행자에게 직접 또는 외환중개인을 통해 그 같은 지불수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p> <p><제한제도></p> <p>- 외국환은행은 아래 범위내에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매각 가능(규정 제2-45조 제1항)</p> <p>•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제재기간중 외국환은행, 재산관리 또는 환전상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지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p> <p>•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 등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지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p> <p>•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소지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 금액범위내</p> <p>• 상기 매각실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2천 US달러 이내</p> <p>-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에게 당해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을 대가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음(규정 제2-45조 제3항)</p>	<p>- 유보 없음</p>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6. 현금카드 및 크레디트카드의 해외사용</p> <p>- 분규약 G항에 규정된 현금카드 및 크레디트카드의 해외에서의 자유사용 원칙은 이들 현금카드, 크레디트카드 발급기관에게 해외여행이나 체재에서 발생할 지출의 정산 또는 해외에서의 현금취득을 위한 카드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을 개정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p> <p><제한제도></p> <p>- 신용카드에 의한 추가경비 지급(규정 제6-21조)</p> <p>• 해외여행사, 체재사는 규정 제6-19조 내지 제6-20조에서 정한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한도와는 별도로 여객운임, 숙박비, 현지교통비, 치료비, 통신비 등 당해 여행 또는 체재에 직접 필요한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로 추가경비 지급 가능. 따라서 모든 해외여행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음</p> <p>• 이같은 신용카드에 의한 추가경비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음(규정 제6-22조 제1항 제2호)</p>	<p>부속서 A의 부속서 IV 제6항</p> <p>- 본 유보는 해외여행사 또는 체재사가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됨</p> <p>1. 규정에서 정한 기본경비, 체재비, 현지정착비, 기타 경비 등 인정된 범위내의 여행경비</p> <p>2. 여객운임, 숙박비, 현지교통비, 치료비, 통신비 등 당해 여행 또는 체재에 직접 필요한 금액범위내에서의 추가적인 신용카드 사용</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그리스	G. 여행 및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서 A의 부속서 IV 1. 국내은행권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 입국의 경우 1인당 4만 δρα크마 이상과 (2) 비거주자의 입국의 경우 10만 δρα크마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됨 2. 국내 은행권의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 출국의 경우 1인당 4만 δρα크마 이상과 (2) 비거주자 출국의 경우 2만 δρα크마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됨
아이슬란드	G. 여행 및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서 A의 부속서 IV 6. 현금카드 및 크레디트카드의 해외사용 • 본 유보는 여행당 1인당 1,650 US달러 상당의 크레디트카드 해외사용 한도에만 적용됨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VIII. 영화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H. 영화</p> <p>H/I 사적 또는 극장상영용 또는 TV방송용 프린트영화 및 기타 기록매체(재생수단 불분)의 수출·수입·유통 및 사용</p> <p>- 부속서 V의 규정도 적용됨. 회원국은 1959년 1월 1일 반효중이던 규정 또는 국제협정에 의해 승인하였던 것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승인을 부여하여야 함</p> <p>- 본 항목의 규정은 캐나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없음. 1961. 12. 12 OECD/C(61)89 및 1964. 3. 3 C(63)</p> <p><새한제도></p> <p>·출산영화, 합작영화의 수출 또는 외국영화의 수입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영화법 제10조 제1항). 또한 문화체육부 장관은 영화수급상 필요시 연간제작 및 수입권수 조절 가능(동법 제6조)</p> <p>- 외국영화의 원판을 수입하여 복사프린트를 제작할 경우에는 원판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동법 제11조)</p> <p>·외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중사)을 방송을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수입승인 필요(방송법 제40조의 2)</p> <p>·수출, 수입, 유통, 사용 등과 관련된 유보 필요</p> <p><규약내용></p> <p>부속서 A의 부속서 V(영화)</p> <p>- 제작보조</p> <p>1. 문화적인 이유에 의한 극장상영용 프린트영화의 제작보조는 수출시장에서 국제경쟁을 현저하게 왜곡시키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있음</p> <p><새한제도></p> <p>- 영화진흥정책</p> <p>·문화체육부 장관은 영화산업의 육성, 영화 예술의 질적 향상, 영화인의 복리증진, 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영화법 제3조)</p> <p>·정부는 영화진흥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중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동법 제23조)</p> <p>·원래 설계 시행되고 있는 지원책을 우수영화에 대하여 편당 3천만~5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고(사후 제작지원), 기자제·시청 제공, 종합촬영소 제공 등이 있음</p> <p>·영화의 수출경쟁력은 가격보다는 질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화진흥정책의 국제경쟁 왜곡효과를 상정하기 곤란함</p>	<p>H/I 사적 또는 극장상영용 또는 TV방송용 프린트영화 및 기타 기록매체(재생수단 불분)의 수출·수입·유통 및 사용</p> <p>- 유보 없음</p>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 영화상영용 프린트영화의 상영할당제</p> <p>2. 수입국의 언어로 제작 또는 녹음된 Full-length 영화와 관련하여, 1년 이상의 특정기간 중 국내생산 영화의 최소 상영시간을 규제하는 이른바 상영할당제 형태의 국내 수량규제는 인정될 수 있음(주)</p> <p>- (주)본 규정에서의 '상영할당'은 극장별 연간 상영시간 또는 유사한 형태에 기초해서 계산된, 국산영화에 대한 상영시간 할당 이외의 공식적 또는 사산상의 공급선별 상영시간 배분은 불가함</p> <p><제한제도></p> <p>- 국산영화의 상영의무(영화법 제26조, 동 시행령 제20조의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의 경영자는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2/5 이상 상영하여야 함. 다만 문화체육부 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산영화의 상영일수율 20%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음 • 서울시, 광역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함 <p>- 방송프로그램 편성에도 유사제한 있음(방송법 제3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선별 상영시간 배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유보 불필요 <p>3. 타 회원국에서 수입국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된 극영화 feature film의 원본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산영화의 상영할당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2) 상영할당제를 통상적으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극장에서의 상영이 허용되거나, 또는 (3) 각 개별극장에 적용되는 상영할당제가 아닌 종합상영할당제가 적용되는 곳에서 언급된 특별극장 이외의 극장에서 상영이 허용되어야 함 <p><제한제도></p> <p>- 외국어로 제작된 극영화는 일반공연장에서는 흥행성이 없으므로 굳이 상영할당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일반공연장 상영시 상영할당제 제외 근거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같은 영화는 전문가 등의 관람을 위해 특별장소에서 상영되는 것이 통상적인 <p>- 유보 불필요</p>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4. 타 회원국에서 제작된 짧은 정보 또는 기록영화는 국산영화의 상영 원당 계산에서 집진적으로 제외되어야 함</p> <p><제한제도></p> <p>- 상영할당제는 사실상 국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또한 본항의 의무는 집진적 제외이므로 유보필요성 없음</p>	<p>- 유보 없음</p>	
<p><규약내용></p> <p>- 공과금·예약금 또는 조세의 면제</p> <p>5. 수입영화를 차별하는 공과금, 예약금 또는 조세는 프린트영화에 부과될 수 없음</p> <p>- 영화제작사 또는 외국영화 수입업자는 문화체육부에 등록하고, 등록시 다음 금액을 예약하여야 함(영화법 제4조, 동 시행령 제5조의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화제작업 : 2억 원 이하(시행규칙에서 5천만 원으로 규정) • 국영화가 아닌 영화제작업 : 1천만 원 이하(시행규칙에서 6백만 원으로 규정) • 외국영화 수입업 : 10억 원 이하(시행규칙에서 5천만 원으로 규정) <p>• 차별 없음</p>	<p>- 유보 없음</p>	
<p><규약내용></p> <p>6. 타 회원국에서 제작된 짧은 정보 또는 기록영화는 동일분야의 국산 영화에 부여되는 혜택이 있을 경우 그 혜택을 향유함(예 : 선택부 상급, 조세감면 등)</p> <p><제한제도></p> <p>- 현재 우수영화에 대한 사후 제작지원(상급)은 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보·기록영화에는 이같은 지원이 없음. 그러나 동 지원은 국산 영화진흥을 위한 제도이므로 외국영화에까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유보 필요)</p>	<p>부속서 A의 V 제6항, 제7항</p>	
<p><규약내용></p> <p>7. 비상업적 상영만을 의도하고, 관련당국으로부터 수입관세 및 조세가 면제되어 수입허도복 승인받는 조직에 의해 수입되는 타 회원국에서 제작된 아래 범주의 영화에는 관세 및 조세가 면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주재별로 적어도 2개 복사본까지의 뉴스영화 b) 다음에 의해서 인정되는 교육용, 과학용 또는 문화용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수입국 또는 수출국 또는 ii) 국제영화보관연맹IAF c) 관광홍보영화로서 국제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조직에 관한 1968년 2월 20일 이사회 결정 부속서(C(68)32) 제13조 10) 및 제1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 공동제작</p> <p>8. 국내 제작영화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국제공동제작협정에 의하여 제작되는 영화에 대해 그 협정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서 국내 제작영화와 동일하게 유리한 대우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어야 함</p> <p><제한제도></p> <p>- 영화법상 관련용어의 정의(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영화 :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가 제작한 영화(제1호) • 합작영화 :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와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제3호) <p>- 합작영화 제작비용의 출자비용 등(영화법 시행규칙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영화의 제작비가를 받고자 하는 영화제작업자는 당해 제작비용의 3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촬영장면의 3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촬영하여야 함 • 합작영화는 상영할당제나 기타 조치 등에 있어서 국산영화로 간주됨 	- 유보 없음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VIII. 영화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호주	H/I 사적 또는 극장상영용 또는 TV방송용 프린트영화 및 기타 기록매체(재생수단 불문)의 수출·수입 유통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외국제작 TV방송용 광고물 2. 외국산 TV프로그램의 시간할당 제한
핀란드	H/I 사적 또는 극장상영용 또는 TV방송용 프린트영화 및 기타 기록매체(재생수단 불문)의 수출·수입 유통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비디오카세트에만 적용됨
독일	H/I 사적 또는 극장상영용 또는 TV방송용 프린트영화 및 기타 기록매체(재생수단 불문)의 수출·수입 유통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독일어로 제작·녹음된 영화의 유통과 진면사용에만 적용됨
이탈리아	H/I 사적 또는 극장상영용 또는 TV방송용 프린트영화 및 기타 기록매체(재생수단 불문)의 수출·수입 유통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비디오카세트 2. 영화 및 TV 방송프로그램의 스크린 할당
스페인	H/I 사적 또는 극장상영용 또는 TV방송용 프린트영화 및 기타 기록매체(재생수단 불문)의 수출·수입 유통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사적 또는 극장상영용(TV방송 전용 제외) 기록매체로서 스페인어로 제작·녹음된 영화나 기록물의 수입·유통 및 사용 2. TV 방송용 영화물과 다른 기록물에 대한 스크린 쿼터. 부속서 A의 V 제4, 5, 6항
미국	H/I 사적 또는 극장상영용 또는 TV방송용 프린트영화 및 기타 기록매체(재생수단 불문)의 수출·수입 유통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서 A의 V 제5, 7항 • 본 유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됨 1. 제7항 b) 및 c)에 규정된 영화형식에 대한 면세대우 의무 및 최근 해외사태에 관해 현상되지 않은 뉴스필름 이외의 뉴스필름 2. 제7항 c)에 규정된 영화물이 면세수입될 경우의 담보제공 의무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IX. 개인소득 및 지출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p> <p>J1 개인소득 및 지출 J11 현금 및 유사한 성격의 기타 소득</p> <p>본국 이외의 타 회원국에서 생활한 후 다른 회원국(본국 포함)으로 이주한 자를 위한 것임</p> <p><제한제도></p> <p>현행 국민인입법은 가입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18~59세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은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므로(입의가입, 동 법 제102조) 국내(입부 후 외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에 대한 현금 등 송금이 발생할 수 있음</p> <p>· 외국인 거주자 또는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한 후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금부 또는 임금 기타 이외 유사한 소득의 지급은, 지정은행장의 인증 필요(외국환관리 제6-12조 제1항 제2호 나목)</p>	· 유보 없음	
<p><규약내용></p> <p>J2 범용적인 의무 또는 범위의 관점에 따른 생계비 지출 및 곤경에 처한 경우의 금전적 보조</p> <p><제한제도></p> <p>범용성의 의무 또는 범위의 관점에 따른 부양금의 지급은 허가를 요하지 않음(규정 제6-3조, 제6-15조 제1호)</p> <p>· 건당 5천 US달러 이하의 증여성 지급은 허가를 요하지 않음(규정 제6-14조 제1항 제2호, 제6-2조의 2)</p> <p>· 본 지급이 지급인별로 연간 합계금액이 1만 US달러 이상의 송금실적은 지정은행에 관한해부서정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는 지급 자체의 제한으로 볼 수 없음</p> <p>· 유보 불필요</p>	· 유보 없음	
<p><규약내용></p> <p>J3 (일국)이민자 송금</p> <p>· 임금, 수수료, 급여 및 기타 보수중 생활비,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의 국제지급에 자유로운 송금, 자가고용 및 자유직업 소득 송금에도 이보다 불리한 내용을 하지 않음</p> <p><제한제도></p> <p>·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가 사가의 소득을 해외 송금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아래의 지급의 자유화된 범위 감안한 때 본 항목도 자유화 항목으로 볼 수 있음</p> <p>· 거주자의 건당 5천 US달러 이하의 증여성 지급(규정 제6-14조 제1항 제2호, 제6-2조의 2)</p> <p>·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및 소득에서 생활비, 주택 등 국내세제에 필요한 경비등 공제할 금액(규정 제6-12조 제2호 가목)</p>	· 유보 없음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규약내용> J/4 해외소재 사후재산의 현상유지 및 수선</p> <p><제한제도> - 해외보유 자산에 대한 경상유지 및 보수에 위한 재비용의 지급(해외재산 보유가 인정된) 경우에 한함)은 허가될 요하지 않음 (규정 제6-3조, 제6-15조 제1호)</p>	- 유보 없음	
<p><규약내용> J/5 소액 해외송금</p> <p><제한제도> - 건당 5천 US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해외송금은 실수증명 서류의 제출 없이 가능하므로 본 항목은 자유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규정 제6-2조의 2)</p>	- 유보 없음	
<p><규약내용> J/6 신문, 정기간행물, 저작, 음악간행물의 정기구독</p> <p>- 신문, 정기간행물 저작, 음악간행물 및 레코드 - 이들 항목의 거래가 무역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p> <p><제한제도> - 다음 목록 등의 구물로 또는 구입대금 지급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 (규정 제6-10조 제1항 제1호) - 자가수요 약초조사, 연구, 업무용 와국정기 간행물, 도서 및 마이크로필름 등의 목록 - 실수요용 음반, 녹음, 녹화테이프 등의 정보개방(연예 등에 관세원 것을 제외)</p>	- 유보 없음	
<p><규약내용> J/7 스포츠상품 및 경마이익 관련 허위국의 변질이 정하는 바에 따른</p> <p><제한제도> -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 상품의 지급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 (규정 제6-15조 제1호, 제6-3조)</p>	- 유보 없음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국가명	자유화 항목	유보현황
캐나다	J. 개인 소득 및 지출 J/6 신문, 정기간행물, 저작, 간행물의 정기구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순수예송, 문화, 학문 또는 종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의 정기간행물로서 최대 4개 별간물 중 하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1. 캐나다시장에서의 광고된 주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동 별간국내에서 배포된 객차에는 그 내용이 없는 특별판으로서, 별책 부록 또는 지역판 포함 2. 광고 게재면수의 5% 이상이 캐나다내 인쇄 및 서비스의 공급원 및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같은 공급원 및 조건 제시가 캐나다 국외의 소비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미국	K. 공공 수입 및 지출 K/1 전문용역(회계사, 예술가, 컨설턴트, 의사, 기술자, 전문가, 변호사 등의 서비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유보는 사전승인을 받은 전문용역거래의 대가로서 외국인 개인에 의한 해외송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X. 공공수입 및 지출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K. 공공수입 및 지출</p> <p><규약내용> K/1 조세</p> <p><제한제도> - 외국의 법률 또는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세 등 조세, 부담금, 기타 수수료 및 국내법령 등에 의한 면세세액, 기타 환급금의 지급은 허가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6-3조, 제6-15조 제1호)</p> <p><규약내용> K/2 정부지출(비거주자에 대한 정부지출의 송금, 공적 해외대표부 및 국제기구 출자금과 관련한 송금)</p> <p><제한제도> - 정부기관 등의 지급(외국환관리규정 제6-7조 제1항, 제2항) - 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외지급수단에 의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상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허가를 요하지 않음 - 정부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분규정에 의해 별도제한이 없음 -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5조) - 국제금융기구의 출자·출연금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수 있음 - 정부지출금이 아니나 본 법에 의해 출자 가능</p> <p><규약내용> K/3 공공유통, 우편, 전보, 전화서비스와 관련한 정산</p> <p><제한제도> - 외국항로에 귀항하는 국내항상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항로의 항공권 또는 선박입과 경상유입 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 및 외국에서 판매된 국내철도, 선박, 항공기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승차권 - 이용권 등의 판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제공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규정 제7-5조 제1항 제6호, 제7호) - 국제우편업무에 따른 정산 - 외국환관리법(규정)상 관련규정 없음 - 국제우편 업무관련 정산은 만국우편연합협약(Universal Postal Union Convention) 및 소포우편물 약정(Postal Parcels Agreement)에 따라 이루어짐 -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통신시설의 이용대금을 지급하거나 국내 통신시설의 이용대금을 영수함에 있어서 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와 상호간의 세권·채무를 함께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규정 제7-5조 제1항 제9호)</p> <p><규약내용> K/4 영사수입금</p> <p><제한제도> -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은 허가를 요하지 않음(규정 제6-5조 제2항)</p>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X. 공공수입 및 지출 - 유보국가 없음

1) 관련제도 현황과 금후의 계획

XI. 기타 일반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I. 기타 일반</p> <p>I/1 모든 매체에 의한 광고</p> <p><제한제도></p> <p>-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광고대행, 광고물 기획, 작성, 제작, 기타 광고물 게시, 배포, 배치 등 광고관련 용역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규정 제6-11조 제1항 제12호)</p> <p>• 영화, 방송물 및 음반, 광고물을 외국에서 직접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외국환은행 본점 장의 인증 필요(규정 제6-12조 제2항 제5호)</p> <p>I/2 재판비용</p> <p><제한제도></p> <p>- 외국에서의 재판, 압류 등 사법절차란 위해 필요한 재판비용, 공탁금, 분담금, 보증금 등 제비용의 지급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규정 제6-3조 제2항 제1호)</p> <p>I/3 손해배상금</p> <p><제한제도></p> <p>- 법원의 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중재원의 판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벌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해약금 등의 지급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규정 제6-3조, 제6-15조 제1호)</p>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현행 제한제도	유보현황	금후의 계획
<p>L4 별과금</p> <p><제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L3 관련 규정 참조 <p>L5 협회, 클럽 및 기타 단체의 회비</p> <p><제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분담금 및 국제협정, 협약 등에 의하여 부담하는 경비 등의 부담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 (규정 제6.3조 제6-15조 제1호) <p>L6 전문용역(회계사, 예술가, 컨설턴트, 의사, 기술자, 전문가, 변호사 등의 서비스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관 관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이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 (규정 제6-11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빌리사, 법무사 등으로부터 계약당당 1만 US달러를 초과하는 회계관련 용역 시장조사 관련용역 중재 및 공공관계 용역(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요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영상담(컨설팅) 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및 경영대행이 아닌 단순자문 금융·보험 관련이 아닌 경우 컨설팅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규정 제6-11조 제3항 3호) 사업 및 경영상담(컨설팅) 용역으로서 인증대상(상기 용감)이 아닌 것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개업을 허용하는 국가의 변호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공도가 있거나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자격 인가 가능 (변호사법 제6조) 재정경제원 장관은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인정된 시험을 치른 후 공인회계사 자격 인가 가능 (공인회계사법 제4조) 	<p>- 유보 없음</p> <p>유보 없음</p> <p>- 유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보로 볼 수 있으나 1은 외국인투자 와 관련되며 본 항목은 비거주자로부터 전문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그 대가의 송금허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유보 불필요. 또한 2의 경우 컨설팅은 사업 및 경영대행을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법규에서 허용되지 않은 용역의 경우도 유보의 실익이 없음. 다만 금융·보험관련 용역의 경우 유보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으로 규정 개정하면 유보사항에서 배제할 수 있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 의해서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컨설팅용역으로서 상담대상거래·행위가 관련법규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금융·보험과 관련되지 않거나, 사업 및 경영대행 컨설팅용역인 경우 	<p>-UR 서비스에 따라 우리나라 양허안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사법, 세무사업은 '96년 1월 1일 개방 예정

2) OECD 국가별 유보현황

XI. 기타 일반

OECD 가입국 중 터키만이 유일하게 기타 일반의 제6항 전문용역 부분의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다. 단 이 유보는 사전승인을 받은 전문용역 계약에 대한 외국인 개인에 의한 해외송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OECD 자유화 규약의 대분류별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1)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 대분류	OECD 가입에 따른 쟁점사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업무 및 산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에 대한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에 있어 기업간 과당경쟁, 중복 등의 경우 이외에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맡겨 자유화 필요 • 기업은 중복투자 지양, 기술도입시 신중한 검토요망. 특히 도입기술과 기존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지정화물에 대해서 한국 국적선을 이용하도록 한 해운산업육성법이 쟁점사항이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쿼터할당제, 단계적 자유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예기간을 마련 하도록 노력 • 국내 해운업체들은 경영합리화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에 힘씀

자유화 규약 대분류	OECD 가입에 따른 쟁점사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중개업의 허용, 재보험업의 개방, 해상운송보험의 완전한 국경간 공급거래, 보험회사 경제적 필요성 심사ENT, 그리고 손해사정업 및 보험계리업의 상업적 주재 허용 등의 부문에서 쟁점화가 예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보험업자의 상업적 주재의 설치 및 영업조건에 관한 항목은 국내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개방이 필요하다. • 국내보험사들은 외국경쟁사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함.
은행 및 금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또는 영업소 설치 인허가 등 진입장벽 제거 요구가 예상된다 • 은행 : 외국은행의 분점자본금 인정, 금융신상품 도입허용, 외환포지션 규제완화, 외화대출 용도제한 폐지, 중소기업 대출 의무 폐지 • 증권 : 경제적 필요성 심사 ENT 철폐, 복수지점 허용, 외국증권사의 영업기능 인허, 기존 국내증권사에 대한 지분 참여한도 확대, 투신업 및 투자자문업의 실질개방, 신용평가회사 설립시의 경제적 필요성 심사 폐지, 외국인 지분참여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진입화 및 금융취업가 양성 등의 대내제도 정비로 대외개방에 앞서 완료해야 할 것임 • 업계는 대형화 또는 전문화 노력을 통해 전민적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임.

(2) 자본거래

자유화 규약 내분류	OECD 가입에 따른 쟁점사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직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업종 자유화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쟁점사항은 업종 개방속도임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국내기술 유출, 위주임 등을 이유로 제한. 최근 정부는 해외투자 자기자본 의무비율 다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개방 속도를 국내산업의 경쟁력상 변화에 맞춰 신중적으로 내용. 해외투자는 기업의 결정을 존중 • 해외직접투자는 금융부담 완화, 통상마찰 회피, 선진기술 습득, 불균비 절감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자본유입의 부정적 효과마저 상쇄할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 의무비율 폐지 필요 • 기업은 산업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시도. 구체적인 장기적 사업전망하의 해외투자 결심
자본시장 에서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개인당 3% 한도가 M&A와 관련해 생김화될 가능성이 큼. 또한 종목당 투자상한(현 15%) 확대 요구도 커짐 전망임 • 단계적으로 채권시장의 개방, 외화 및 원화표시 유가증권의 발행시장 개방 등을 요구할 전망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또는 주식인계 채권의 해외 발행은 가급적 빨리 자유화해야 할 것임 • 발행시장 개방은 유동시장 개방에 선행하며 주식시장 개방은 채권시장 개방보다 선행하는 것이 필요 • 상책금융 축소, 금리자유화, 매매장보 공식채세 확립 등 채권시장 육성 필요 • 장기적으로 물가안정, 국내의 금리차 해소 등 경제안정에 비중을 두고 자본유입의 유연을 제거해야 할 것임 • 개편기업은 정관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등 절대적 M&A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자유화 규약 대분류	OECD 가입에 따른 쟁점사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단기금융 시장에서 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채권 등의 자본시장 개방 이후에는 개방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비거주자의 국내거래에 대한 허가제는 향후 쟁점화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의 자유화 이후에 개방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대내적으로 신상품도입, 금리자유화,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단기금융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발행시장을 유통시장보다 우선하여 개방 • 일반투자자의 해외 단기 금융상품 투자는 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실시해야 함
기타 양도증서 외비증권 권리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회원국의 자유화율은 96%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부분 유보에 그치고 있어 자유화 요구가 커질 전망 - 특히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부문은 아이슬란드만이 부분 유보하고 있는 항목으로 향후 쟁점화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파생상품시장의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업들도 내년부터 개방되는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에 대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를 육성해야 함.
공동투자 증권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국내증권 시장 참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쟁점화 가능성이 큼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에 대해 별다른 자유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회원국의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표시 공동투자증권의 발행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더라도 증권투자 신탁업법이나 신탁자산운용준칙 등에 의해 자산운용의 건전화롤 지속 추진함 • 투자자들도 해외투자기회 확대에 대비하여 국제 포트폴리오 구축 관점에서 투자기법을 고도화해야 할 것임

자유화규약 대분류	OECD가입에 따른 쟁점사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무역 및 용역 거래 관련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부분 유보상태이긴 하나 단계적으로 개방 확대 계획을 갖고 있어 가입추진시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당국은 국제경쟁력 향상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거시지표인 물가 및 통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정책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음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호주처럼 우리나라도 부분 유보상태이긴 하나 나름대로 개방안을 갖고 있어 가입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상업차관 도입과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 및 보증분야에서 OECD 회원국 모두가 완전 자유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부분 유보에 그치고 있어 자유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비거주자의 보증, 담보제공을 조속히 자유화하여 금융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임
예금계정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해외거주 금융기관과의 계정거래는 원화계정이 전면 유보되어 있고 외화계정은 유보되어 있어 가입추진시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원화계정을 개설,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원화의 국제화와 기업들의 금융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자유화규약 대분류	OECD가입에 따른 쟁점사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외환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거래 중 내국통화의 매수유보, 거주자의 해외거래 중 내국통화 매입을 위한 외화 매도유보 항목이 쟁점화된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무실한 외환거래 실수요증빙 제도를 폐지함 •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경제에 미친 양면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함
개인적 자본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간의 대부분 OECD 회원국 모두가 자유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완전 금지하고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대외송금이 건당 5천 달러까지 자유화되어 있는 바, 향후 관련된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액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임
자본의 실물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멕시코만이 특정항목에서 유보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부분자유화에 나가고 있어 향후 쟁점화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외환검증제의 완화, 대내외 증권투자의 자유화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이 분야의 자유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